

교육과학기술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3. 1.

교육과학기술부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 사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 유 아 교 육	1
● 4세 유치원 입학	3
● 공립유치원 증설	3
● 유치원장 자격기준	4
● 놀이학교들의 수업료 징수 방법	5
● 누리과정 의무여부	5
● 다문화 무한 혜택 시정 요구	6
● 만5세 유아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6
● 사립유치원 결제 규정 및 환불 규정	7
● 사립유치원 교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7
●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유아학비 지원 가능 여부	8
● 유아교육 한국정체성 교육 문의	9
● 유치원 교육비 인상	9
● 유치원 교육비 지원기준	10
●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의 특성화활동 가능여부	10
● 유치원 보육료 타당성	11
● 유치원 보육비 지원 관련	12
● 경력증명서 발급 및 종일반 강사 경력 인정	12
● 유치원 운영	13
●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	14
● 유치원 입학금	14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요건	15

● 유치원 방과후과정 통계자료	16
●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16
● 유치원 진학 문제	17
● 유치원 체육수업의 정규수업 여부	18
● 유치원 교육비	18
● 유치원비 카드결제	19
● 장애아동의 유치원 보육료 지원	19
● 종일제 특성화 교육연수	20
● 만5세 유아학비 지원	21

■ 특수 교육 23

● 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정원내인지 정원외인지	25
● 유치원 특수학급은 학적이 일반학급인지	25
● 농아인의 교육환경 개선 요청	26
● 장애유아 의무교육 여부	26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27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필요	28
● 치료지원비 지원	28
● 특수교육 대상 과령학생 취학 허가 여부	29
● 특수교육 치료지원 인력	30
●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입학 특별전형	30
●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중·고 졸업후 진로직업 훈련	31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공과 설치	31
● 특수교육보조원 명칭	32
● 특수학교 전공과 관할	33
● 특수학교정교사(2급)치료교육 시험 응시 및 중등특수 기간제 교원 응시 문의	33
● 특수학급과 진로 및 직업교육 훈련실 면적, 교원 배치 기준	34
● 특수학급에서의 예능 교육 확대	35

■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37
● 각종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진학 근거	39
● 각종학교 학생 선발	39
● 고교 입시 전형 동시 지원	40
●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41
● 국·공립학교 설립	41
● 외국인 취학 절차	42
● 해외 유학 자녀 고교 특례입학 조건	42
● 조기 입학 관련 문의	43
● 특례입학 대상자 거주기간 산정 기준	43
● 나이스 입력 자격증 문의	44
● 결석일 산출	44
● 정원 초과 전입학 배정	45
● 정원의 관리학생의 재취학	45
● 해외 유학 자녀 특례편입학	46
● 해외 학교 수료 후 중학교 입학	46
● 해외유학 후 초등학교 입학	47
● 2014년 내신 절대평가	48
● 고등학교 지필평가 성적 분리 산출	49
●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제정	49
● 미인가 대안학교나 국내의 국제학력인정 기관에서 국내 학교로의 진학	50
● 연구학교 보고서 저작권 문의	50
● 초등학교 의무 교육규정	51
● 학생생활기록부 수상기록	52
●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변경	52
● 귀국자녀의 교과내신성적	53
● 기간제 교사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권 유무	53
● 사립중등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진행방식	54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권한 위임	55

● 학교운영위원회 지도 감독권	55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 상실	56
● 다자녀 가구 학생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 I	56
● 다자녀 가구 학생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 II	57
● 방과후 수당 지급	57
● 저소득층 방과후 지원	58
● 주5일제로 인한 수업시수 문의	58
● 초등학교 돌봄교실 자체 휴무	59
● 토요일방과후에 대한 교과부의 방침	59
● 미신고 교습소 처리기준	60
●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	61
● 초등학교 학부모동반 현장체험학습 가능일수 문의	62
● 학생 봉사활동의 의미	62
● 방학 중 외부체험활동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 제안	63
● 봉사활동 기록	63
● 봉사활동 인정기준	64
● 에듀팟 기록변경	65
● 에듀팟 자료 등록	66
● 교복의 학교장 재량 여부	67
● 교과부 체벌 규정	67
● 교복공동구매 업무추진주체	68
●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	68
● 학생 봉사활동 취지	69
● 학교폭력 발생·조치 결과 보고	69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의 이행	70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	70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71
● 학교폭력 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71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71

● 학교폭력대책 협의체 설치	72
● 공립대안학교 교사 자격기준	72
● 대안학교 교사용 대지	73
● 대안학교 설립주체	73
● 대안학교의 각종학교 포함 여부	74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교’ 명칭 사용	74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제도	75
● 검정고시 시험일 변경	76
● 검정고시 응시 서류	76
● 검정고시 응시 제한기간	77
● 검정고시생들의 처우 개선	78
● 교육비 원클릭 지원 대상	79
● 교육비 지원기준	79
● 다문화 가정 정책문의	80
● 유예와 정원외 관리, 검정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질의	81
● 중등입학자격 검정고시 연령제한	82
● 중학교 과정 지역별 학교운영비 부과 여부	82
●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	83
● 초·중 통합관련 문의	83
● 다문화가정 대학특례정책	84
● 외국인의 검정고시 응시여부	84
● 공공도서관 지자체 지원	85
● 교육기부 정보 사이트 개설 및 교과서 집필진 신청 방법 개선 요청	85
● 특수중학교 등록금 지원	86
● 전문계 고교 수업료	86
● 전문계특별전형	87
● 특성화고교 계열간 교차 이수	87
● 마이스터고 재학생 진학	88

■ 학생 건강 안전	91
● 교실의 환기 기준	93
●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93
● 교육환경평가 조건부 적합 판정	94
● 전국 학교 석면 조사 현황	95
● 학교 내 석면 처리 일정	95
● 학교 설립예정지역 내 화약류 규제	96
● 학교 보건교사 업무 지침	97
● 학교 급식법 상의 축산물 해석 요청	97
● 스포츠토토 정화구역내 개설 문의	98
● 학교 성교육 등 실시	99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	99
●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100
■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101
● 복무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	103
● 특수학교 가산연수 호봉획정 여부	103
●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건	104
● 대학원 경력 인정	104
● 사설학원 강사 경력 관련	104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분실 재발급	105
● 교원의 국외여행	105
● 전문대학 교원의 중등정교사 2급 취득	106
●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자의 수업 범위	106
● 교직이수 학생의 복수전공이수 가산점	107
● 치료교육실기교사 자격증 문의	107
● 2개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기산호봉 관련	108
● 개방형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임용방식	108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공개전형 시험 방법	109

● 고등학교 교사의 초과근무	110
● 공무원 총 정원제와 교원 총 정원제	110
● 공무원의 겸직 허가	111
● 공익근무 중 겸직 경력 인정	111
● 1정 자격연수 점수의 개선	112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제한	112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문의	113
● 교과목 인정 여부	114
● 석·박사 교원임용 제도	114
● 교권보호기구 운영 및 처리현황	115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문의	115
● 교사 국외심화연수 파견자 복무관리	116
● 교사 수업 녹음 후 인터넷 게시의 불법성 여부	116
● 교사 임용률 통계자료	117
● 교사 호봉	118
● 교사 호봉관련 문의	118
● 교사의 영리업무 해당 여부	119
● 교사의 영주권 유지	120
● 교사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120
● 교사의 주간대학원 수업 출 석시 복무	121
● 교사의 초과근무 명령 절차	121
● 육아휴직기간의 준교사 자격 연수 대상 포함	122
● 상담교사로 전직	123
● 교육대학원 진학 후 교사자격증 발급	123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124
● 교원 명퇴 후 재취업	124
● 교원 연가의 범위	125
● 교원 임용시험 장애구분모집	126
● 교원 특별휴가 관련 문의	126

● 교원 호봉인 정시 교육대학원 경력 인정	127
● 교원경력인정범위	127
● 교원노조 실시 연구대회 연구실적 관련	128
● 교원능력개발평가 열람	129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대상자 이유 없는 배제 가능한지 여부	129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참여	130
● 교원들의 근무시간 질의	131
● 영회회화 전담강사 교육현장 실습 면제	132
●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중(산전휴직) 출산휴가 시기	132
● 교원연수휴직에 대하여 문의	133
● 교원의 경력환산율관련 문의	133
● 교원의 올림픽 출전 복무 처리	134
●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	134
● 교원의 임무	135
● 교원의 정상근무시간 문의	136
● 교원임용시험 평가	137
●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	137
● 복수전공 문의	138
●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의	138
● 체육전담교사 관련 질의	139
● 보건교사 자격	139
● 자격연수 성적 평정여부	140
●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140
● 교육공무원 비영리사단법인대표 겸직	140
●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일	14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학위취득 인정	142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학위취득실적 평정)	142
● 교육공무원 연가사용	143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144

●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144
●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내용 문의	145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시행규칙	146
● 교육공무원 타시도 진출시 연구점수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점수	147
● 교육공무원 호봉(인사관리)관련 문의	147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석사) 문의	148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149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가'경력	149
●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당연 퇴직의 차이점	150
●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150
● 산업체 현장실습의 범위	151
● 교사자격 취득 관련	151
● 교육대학원의 경력인정여부	151
● 교직과정의 변동 입학정원 감소 관련	152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결원 발생 관련	152
● 교직 복수전공 자격기준	153
● 교직경력인정에 관련하여	153
● 중등교원임용 가산점	154
● 신규 교과목 교원양성 문의	154
● 1급 정교사 자격점수 대체방법	155
● 전문상담교사자격증	155
● 특수학교 교사 비교과 해당 이유	156
● 자격연수 개설 기관 등	156
● 국외여행 NEIL 기재	157
● 국제간 연금 산정기간 인정	157
● 기간제 교원의 근무연한	158
● 기간제교사, 무기전환직 채용	159
● 중등교사 임용 절차	160
● 대학원 수료 후 육아휴직중 논문발표	160

● 면직처분 취소시 보수지급 관련	161
● 명예퇴직 취소방법	161
● 중등 사립과원 복수전공 자격연수	162
● 방통대나 사이버대의 교원 경력 인정	163
● 방학 중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63
● 교원자격증 취득	164
● 계절학기 교육대학원 수료지 자격증 발급	165
● 초등교사자격증 발급 여부	166
● 유아교육정교사2급 자격증	166
● 유치원 교육실습기간	167
● 체육실기교사 자격증	168
● 비사범계열 미 이수한 교직과목 이수 후 교사자격증 취득 방법	168
● 사립유치원 원장 교육경력 인정	169
● 사립학교 경력 인정문제	169
●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에 대한 질의	170
● 사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170
● 공통사회 자격소지자	171
● 사립학교법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문의	172
● 대학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설치	173
● 사범대 재학생의 교육봉사 문의	173
● 영양교사에서 가정교사로 전과	174
● 사후 공무상 재해 판정	175
● 교생실습	176
●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박탈 관련	176
● 성범죄 관련 교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퇴직 관련 문의	177
● 세종이 근무를 위한 교원 전입 예정 절차	178
●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가산점 부여	178
● 유치원 정교사2급 요건	179
● 실기교사자격증 신청 방법	180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개정령 관련	180
● 사이버대학교 특수학과 교원자격증 문의	181
● 중등정교사 자격증 활용 관련	181
●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문의	183
● 어린이집 교육경력이 자격연수 대상 선정 시 포함 여부	183
● 유치원정교사 자격 취득 관련 전 학교 전공과목 인정 여부	184
●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요건	185
● 연구대회의 종류	185
● 연구대회의 종류 및 지정 운영	185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중 교직과목 면제	186
● 실기교사에 대해	186
● 실기교사 자격증	187
● 전문상담교사 시험 자격기준	188
● 예상퇴직급여 정정 질의	188
● 교직과목 면제 대상	189
●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응시 자격	189
● 교직과정 이수 지침	189
● 교대에 특수교육 심화과정	190
● 실기교사 자격증에 대한 건의	190
● 영양교육대학원 교생실습 문의	191
● 유치원교사경력인정	191
● 유치원장임용(부관설정)방법	192
● 중등정교사 자격증	193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서 사범계학과로 부전공 가능여부	193
● 인턴연구원 경력 호봉 인정 여부	194
●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여부	194
●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194
● 임용전 수료 한 대학원 졸업 후 호봉 인정 가능여부	195
● 자격변동 호봉재확정 관련	196

● 사서교사자격증	196
● 교육 대학원생의 교육봉사활동	196
●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대상	197
● 장학관의 급수체계에 대하여	197
● 방송통신대 교원자격증 문의	198
● 어린이집교사의 상담심리대학원 진학	199
● 전문상담 순회교사 복무규정	199
● 교직 이수 시 교육봉사활동	200
● 교생실습비	201
● 영양교사 학교현장실습 면제 여부	201
● 전문상담교사 나이 제한	202
● 어린이집경력과 상담치료대학원 진학가능 여부	202
● 전문상담교사 연수	203
● 타계엘 정교사자격증 취득	204
● 유치원 원장 자격관련 문의	205
● 전문상담교사 2급자격	205
● 부전공 교원자격	206
● 전문상담순회교사 처우	207
● 특수 재활복지 과목 소지자의 1정 자격연수 및 부전공 연수 문의	208
● 보육교사의 특수대학원 졸업 후 자격증 수령가능 여부	209
● 교원자격검정 중 무시험검정	209
● 교육대학원 모집 요강	210
● 중등교사 임용시험 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	211
● 중등교사 호봉재확정 여부	211
● 교육실습관련	212
● 교원자격증 검색	213
● 중등교원임용시험 후 병역	213
● 중등임용시험에도 교육학 폐지	214
● 보육실기교사자격증	214

● 중등 특수(직업) 교사 임용 자격 조건	215
● 직무대리발령에 따른 겸임수당지급 여부	216
● 중등교원으로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경우	216
● 징계 받은 교원 근무평정 조정(감점) 기준	217
● 징계시효 도과한 직원 유죄판결(벌금형)	217
● 징계의 감경사유 및 학교장의 임명	218
● 징계처분으로 인한 명예퇴직 가능여부	218
● 전문상담사 모집 시 교도교사 자격증 인정 여부	219
●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발급	219
● 해외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220
● 초등 관내 전보 가산점	221
● 초등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겸임 가능 여부	221
● 1급 정교사 대체가 가능 여부	222
● 초박형 교장 공모학교 취소에 관한 조건	222
● 보건교사(2급) 자격증	223
● 실기 교사 자격증 과목 변경건	224
● 교생실습 출석	224
● 관광 중등교사 자격증	225
● 특수교사 법정인원	225
● 특수교사 시간강사의 시급 기준	226
● 현직 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전직	226
●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227
● 학습연구년제 규정 신설 문의	228
● 재외동포외국인의 유아원/사립유치원 운영	228
● 해외학교 근무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	229
● 해임 후 복직된 선생님 시간외 수당	230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기본이수과목 문의	230
● 호봉확정시 임용전경력 요율	231
● 청소년상담사3급자격자의 전문상담교사 응시 절차	232

■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233
● 2009 개정(2012 운영) 교육과정 중 예술 교과 문의	235
● 2009교육과정 중 체육과 교육과정 문의	235
● 7차 교육과정 자료	236
● 고등 중국어 교과 관련 몇가지 문의	236
● 교과 과정 개편안	237
● 교과서의 저작권	237
● 교육과정 상의 수업일수	238
● 국정 교과서 리스트	239
● 국정교과서 콘텐츠 사용 가능	239
● 여고 이과반 물리교육 과정 필수개설 요청	240
● 정규교과과정의 정의	240
● 집중이수제 시행 이유	241
● 초등학교 2009개정 교육과정 적용 문의	242
● 초등학교 교과서 문의	242
 ■ 대 학 입 시	 243
● 해외고에서 한국대학입학	245
● 해외 고등학교 학력 인정	245
● 재외국민 대학 특례입학 조건	246
● 미국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여부	247
● 2013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248
● 2014년도에는 A형과 B형을 선택	248
● 공익요원 수능 응시가능 여부	249
● 군복무자의 수능대리지원	249
● 논술 미응시자 논술비 반환 요청	250
●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준	251
● 농어촌특별전형	252
● 다문화 전형의 불합리성	253

● 대학 등록금 예치금	253
● 대학 수시등록 포기 후 정시모집 응시 가능여부	254
● 대학 수시 원서 접수비 환불	254
● 대학기회균형전형	255
● 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 지원자격	256
● 대학입시 면접	257
● 대학입학 비교내신 적용 기준일	257
● 대학특례입학	258
● 방송통신고 졸업자의 대입 전형	258
● 산업체 재직자 특별 전형	259
● 색각이상자 대입지원시 차별	260
● 서울대 기회균등선발전형 자격	260
● 수시모집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261
● 수시 및 정시 입학원서 전형료 환불	262
● 외국 10년제 교육과정을 마친 유학생의 대입 문제	262
● 장애인의 특례입학	263
● 재외국민 전형요건	264
● 전문계 학생의 대학진학	264
● 정원관련 용어 정의	265
● 특례입학 시 체험학습 인정 여부	266
● 특례입학 자격요건	266
● 특성화고 특별전형 1.5% 반대	267
● 입학사정관 전형 제도	268

■ 영어 교육 관련 269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책 - 영어회화전문강사	271
● 국공립 교사 차별	272
●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지속여부 문의	272
● 영어회화전문강사 복무	273

● 외국인 강사 시급	274
● 원어민 교사 채용	275
● 한국거주 원어민 강사	276
● NEAT시험이란?	277
● NEAT시험 장소안내 및 응시료 등	278

■ 교 육 시 설 관 련 279

● 고등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하여	281
● 교사확보율 산정시 주차장 포함 여부	281
● 교육연구시설 임대사업 운영 가능여부	282
● 교육연구시설에서의 토지매입	282
● 기존학교시설사업 허가	283
● 대학 내 위탁운영 편의시설의 교사시설 여부	284
● 대학교 교사기준면적 및 교지기준면적	285
● 대학교 내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여부	285
● 대학교 내의 교회 및 불당 등 교육연구시설 여부	286
● 대학교 부속시설관련 문의	286
● 대학교 시설내 1,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유무	287
● 대학교내 주유소 설치 가능여부	287
●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학교시설 감리업무	288
● 사립대학의 교사확보율 산정시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문의	289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고시에 따른 BTL사업 운영비 산출	290
● 중고등학교 설립 시 필요면적 유무	290
● 학교 체육관 사용	291
● 학교시설 내 수익용자산 설치 가능	291
● 학교시설(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대상여부 질의	292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관련 문의	293
● 학교시설축진법상 경미한 시행범위	293
● 학교시설축진법제5조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294
● 학교운동장이용 주차장설치	295

■ 학원, 평생교육 등	297
● 4년제 대학교 부설 기관 설립	299
● 간호조무사 학원 입학 대상	299
●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	300
● 개인과외교습소 보조요원 대상 등	300
● 고교 동문 장학회를 민법32조에 의한 장학재단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까?	301
● 공익법인 기본재산담보	301
● 공익법인(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사용여부	302
●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해당여부	304
● 교습비등 조정기준의 소급 적용	305
● 교습시간 제한 대상	306
● 교습행위의 정의	307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308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 기간제한 예외 적용 해당 여부 질의	308
● 대입 수시 논술 캠프 개최	309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개설 소재지	309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310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외부업체 이용 수익사업	310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교외장소 이전	311
● 독학사 서적 구입	312
●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법령 및 설치 시기	312
● 사이버 학점은행제 기관 확인	313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의 전환발급	313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대체 발급	314
● 시간제등록생 모집횟수	315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	315
● 외국대학 학점 인정	316
● 외국인 강사 제출 서류	317
● 외국인강사 학력인증 방법	318

● 외국인이 검정고시 응시가능 여부	318
● 원격교습(온라인 수업) 인가 대상	319
● 원격평생교육기관 설립 방법	319
● 원격평생교육원 설치자	320
● 원격평생교육원 정식 인정 기관 여부	320
● 원격평생교육원 회계	321
● 자습의 교습행위 해당여부	321
● 장학재단 설립 기준	322
● 장학재단의 장학통장개설	323
● 장학회 감사 겸직 허가	324
● 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의 법적 최소기준	325
● 전문학사 학위	325
● 평생교육 교육비지원대상	326
● 평생교육사 배치	327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리스트	327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I	328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II	329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330
● 평생교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여부	331
● 평생교육시설 설치	331
●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면세 조건	332
● 평생교육시설 이전	332
● 평생교육시설의 과태료 부과	333
● 평생교육시설의 이용 연령 제한	334
●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구분	334
● 평생교육원 설치절차	335
● 평생교육원 소속 교수 전임교원 통계 포함 여부	335
● 평생교육원 지역별 개설가능 여부	336
● 평생교육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가능여부	337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	337
● 학위연계 미신청 학점 인정	338
●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료 기준	338
● 평생학습 질문	339
● 프랜차이즈 학원 교재비 징수	339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대상 성인 포함 여부	340
● 학사학위 인증	341
● 학원 공제보험 가입	341
● 학원 교과과목의 범위	342
● 학원 교습대상 범위	342
● 학원 등록 대상자	343
● 학원 보충수업비 징수	344
● 학원 수익자 부담금 문의	344
● 학원 지로 영수증 발급 의무화	345
● 학원 차량비	345
● 학원강사 등록 조건	345
● 학원강사 채용 가능 여부	346
● 학원명 및 학원시설 문의	347
● 학원법상 교습행위	347
● 학원이나 교습소 상호 표기	348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발급	348
● 학점은행제 기관과 외국대학의 공동학위제	349
● 학점은행제 인가	350
● 학점은행제의 인증기관 확인은 어디서?	350
● IT분야의 비영리단체의 설립	351
● SAT의 실용외국어 해당 여부	352
● 비영리단체 등록문의	353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354

■ 교육청 및 지방교육공무원	355
● 강임후 승진시 전 경력 인정	357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권	357
● 교육위원의 권한	358
●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358
● 방위산업체경력 민간경력인정여부	359
● 비정규직 유사경력 인정	359
● 사립유치원 교원 경력의 지방공무원 호봉 인정	360
● 지방공무원 결원직렬 전직 요건	361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361
●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362
● 지방직 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발령받을시 호봉계산	362
● 폐지된 10급 경력의 9급 경력으로 인정 여부	363
● 학교회계직원 기준	363
● 공립학교 신증설 기준 및 예산 교부 문의	364
● 과대규모 학교 기준	365
●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신설비 집행잔액 처리	365
● 교육청 미집행 예산 차기년도 집행가능 여부	365
● 기부장학금의 회계처리	366
●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토지 소유자이기 위한 기준일	367
●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공립학교 결정시 입안 제안자	368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학교용지 부담금 제외 여부	368
● 사립학교 계약관련 법	369
●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70
● 폐교 리스트	370
● 폐교법에 대한 질의	371
● 폐교재산 용도 변경 대부	371
● 폐교재산의 공유재산 적용 및 대부기간 문의	37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문의	373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부료 환급	373
● 학교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원 및 녹지 면적 축소 가능여부	374
● 학교 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375
● 학교 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해석	376
● 학교 증축비용의 부담조건 변경	377
● 학교용지 기부채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378
●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379
●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379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	380
● 학교용지부담금	381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I	382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II	383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384
● 학교용지부담금 기준 분양가격	385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386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I	386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II	387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388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389
● 학교용지부담금 분납	389
● 학교용지부담금 유예신청	390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390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391
● 학교용지부담금관련	391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문의	392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393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부담 주체	393
● 학생수용 불가로 인한 사업승인 불허 가능여부	394

■ 교육정보 및 통계 관련	395
● 교육환경평가 시기 문의	397
● 스마트 교육의 예상되는 부작용	397
● 정화구역 재심의	398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변경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관련	399
● NEIS 학생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서	400
● 국내 공학계열(소재, 재료만) 대학 현황	401
● 대학현황문의	401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름 DB 현황	401

II.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 과 학 기 술	405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차이와 문서	407
●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 수입 관세감면 가능자 조건 및 신청절차 문의	407
● 알레르기 진단칩	408
● 남극 월동 대원 파견	409
●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	410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410
●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교육 인정범위	411
● 기술사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당성	412
● 한-미 FTA를 통한 기술사 상호인정 여부	412
●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	413
●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운용방식 문의	414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해서 문의	414
● 사설 과학관 설립 문의	415
● 한국과학창의재단 감독부처	416
● 과학과 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	416
● 교육과정 적용시기	417

■ 전문대학	419
● 국비 무료 수업 실시 전문대학	421
● 대학의 학과 설치 시점	421
● 전문대 가을학기 졸업 규정	421
● 전문대학 명칭 사용에 대해	422
● 전문대학과 대학원 병행 가능 여부	422
■ 대학 및 대학원	425
● 4학년 재학중 취업한 학생의 성적 기준	427
● 5년제 건축학과의 4년제 트랙 공동운영 여부?	427
●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문의	428
● 고등교육법 개정, 조교수와 전임강사	428
● 교수 재임용	429
● 교수 창업에 대한 문의	430
● 교수신분으로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대표직 가능여부	430
● 교수자격기준에 관한 문의	431
● 교수자격인정 및 호봉산정시 인정비율	431
● 교원 인사위원회 관련	432
● 교원임용 상통직 인정 판단시 인사자문위원회 필수여부	432
● 교원자격증 갱신 가능 여부	433
● 교육공무원(조교 및 교수) 호봉 확정시 대학원에서 학위취득경력 산정 기준	433
● 교육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보수	434
● 교육공무원의 범위	434
●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	435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교수의 근무기간 질의	435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③항 겸임교수 관련	436
● 교육직공무원 민간기업 호봉인정에 대하여	437
● 국공립대 행정조교 신분	438
● 국립대 교원의 겸직 가능여부	438

● 국립대 조교 개인과의 가능여부	439
● 국립대 조교 경력 호봉확정	439
● 국립대 조교의 역할	440
● 국립대 행정조교 수당	440
● 국립대학 조교 연수기간 복무	441
● 군 휴학 기간 문의	442
● 군제대에 따른 대학 재입학 관련 사항 문의	442
● 군휴학 후 휴학신청	443
● 대학 강사 방학중 처우개선 문의	443
● 대학 상근직의 개념	444
● 대학 시간강사료 지급 관련 질의	444
● 대학 이중등록 금지규정	445
● 대학 전과 규정	445
● 대학 조교 업무	446
● 대학 졸업후 학사 학위 포기 가능 여부	447
● 대학 편입시 필요 서류	447
● 대학 학생회비	447
● 대학 학생회비 과다청구	448
● 대학과 대학원 동시 등록 가능여부	448
● 대학교 겸임교원의 정당 가입의 적법성 여부	449
● 대학교 학교규정 제정 근거	450
● 대학교 학위증 재발급 문의	450
● 대학교원 상통직 환산율 확정여부 문의	451
● 대학생 제적처리	451
●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사항 관련 질의	452
● 대학편입관련 문의	452
● 보건계열학과 정원 외 선발인원 관련	453
● 분야별 석학이 있는 대학학과나 기업 정보	453
● 사립대학 교원 징계위원 자격	454

● 사립대학 교원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사장 취임 시 휴직 가능 여부	454
● 사립대학교 교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허가) 해당 여부	455
● 사립대학교 교수연봉제 운영	455
● 사립대학직원의 겸임교원 겸직가능여부	456
● 사립학교 교수 재직기간 연가 산정 문의	456
●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절차 문의	457
● 사립학교 임용 시 군호봉 인정유무	457
● 산학협력단 경력 호봉산정 문의	458
● 상대평가 제도	458
● 석좌교수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문의	459
● 수업연한이 3년인 외국대학 졸업자의 우리 나라 대학원 입학자격 문의	459
● 시간강사 전업여부와 강의료 지급에 대해서	460
● 시간강사의 사회보장 보험 가입 관련	461
● 신입생 휴학 가능여부	461
●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과 방법	462
● 외국 학위 인정 문의	462
● 외국대학 수료 시 편입 가능여부	463
● 외국대학 전임교원의 국내대학 비전임 교원 겸직 가능 여부	463
● 외국인전임교원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관련 문의사항	464
● 외국학교졸업후 우리나라대학에 편입이가능 여부	464
● 유급지원병에서 학점이수 문의	465
● 음악전공인 정규 레슨의 정당성관련 질문	466
● 인문계와 예체능간 전과 허용여부	466
● 일반휴학 중 군입대 관련	467
● 임상병리 전공심화	467
● 재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해	468
● 재직중 대학졸업 학력 인정여부	468
●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은?	468
● 전업작가와 화가 전임교원 임용 가능	469

● 전임강사 명칭 폐지, 시간강사 제도 폐지에 따른 지침	469
●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조교수 변경 시기 관련	470
● 전임교원 임용 시 최소기준 연구실적	471
● 특정업무비 중 월정직책급 예산 편성 단가	471
● 편입시험 공개	472
● 학과 편입생의 교직과목 이수 관련	472
● 학력인정의 뜻과 범위	473
● 학생정원 관련 확보율 문의	473
● 학위 미소지자의 겸초빙 교원 임용 관련	474
● 학점 이수문의	475
● 학점 인정 문의	475
● 해임된 전임교원의 시간강사로 위촉가능여부	476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공립대학 적용여부	476
● 국립대학교 기성회직원 가족수당 지급	477
● 전국 국립대학 정부지원 예산	477
● 국립대학 총장 임기 관련 문의	478
● 국립서울대학교의 정확한 법인화일자	478
●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인한 소속공무원 지위	479
● 개방이사 추천	479
●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 신학대학의 포함여부	480
● 대학 공사계약 관련	481
● 대학교내 BTO 사업으로 설치한 판매시설에 대한 교사 분류여부	481
● 대학원대학 설립 문의드립니다	482
● 보안규정에 따른 법인 임원(이사)의 신원조사 회부 여부(중임의 경우)	482
● 사립대 운동시설 사용	483
● 사립대학 건설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관할청 허가대상 여부	483
●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교비로의 분교 설립 가능 여부	484
● 사립학교 법인 개방이사 선임	484
● 사립학교 법인이사 선출	485

● 사립학교법 해석 문의	486
● 사립학교법 해석 질의	487
●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 설립 절차	487
● 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	488
● 대학원 박사과정 설립 관련 교원확보	488
● 대학원 석/박사과정 신설학과 개설	489
● 대학원 입시 면접관 선정과정	490
● 대학원대학 설립 관련 법규 등	490
● 박사과정 논문제출 기한 및 재입학	491
● 박사학위 인정 여부	491
● 사립대학교 특수대학원 특별과정 운영	492
●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수여만 원하는 경우	492
● 예비대학원 관련 문의	493
● 비학위 과정의 졸업, 수료 용어개념 및 사용여부	493
●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494
● 외국대학교 학/석/박사과정의 학위인정	495
● 외국 학사 취득후 대학원 입학	495
●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의 벤처기업 CEO로 재직 가능 여부	495
● 대학원 이중 등록 가능 여부	496
● 대학원 재학 중 학부 등록	497
● 법학 복수전공 및 부전공	497
● 군복무 중 대학 재학이 가능한지	498
● 2013 MEET 시험 변경사항	498
●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499
● 치전원 학생 병역 특례 가능한지	500
● 교육역량 강화사업 질문	500
● 글로벌박사 장학금 신청 지원자격	501
● 부실 대학교 선정기준	501

■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503
●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505
● 국가 장학금 추가신청 기간	505
● 국가장학금 선정 절차	505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이중수혜 인정범위 문의	506
●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기준	506
● 등록금 납입 후 (병역)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	507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국공립 사립대학 학비 지원	508
●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의견	508
●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요청	509
● 든든학자금 소득분위 산출근거 공개 가능여부	509
● 등록금 납입 기한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510
● 등록금 반환	510
● 등록금 반환 시 학기개시일 기준	511
● 이공계 장학금 기준상향에 관하여	511
● 자퇴로 인한 장학금 환불	512
● 휴학 중인자가 미복학 제적 원인으로 등록금 반환 청구	512
● 학자금대출 대상 학교의 범위	513
● 일반상환학자금 조건 변경시 연체금 정리 문제	513
● 등록금 대출과 WEST 어학연수비 대출과의 중복 수혜가능 여부	514
●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록금의 반환	514
● 등록금 선납 후 복학생의 등록금 인하 차액 반환 여부	515
■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등	517
● 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신분보장	519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간의 계약시 수수료 납부	519
● 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520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법 해석	521
● 산학겸임교사 자격요건	521

● 산학협력단 내 부서 배치	522
● 학교직원의 산학협력단 근무	522
● 교원자격증 위조 도용사례	524
● 한자자격 국가공인 관할부처	525
● 지자체 출자법인 민간자격 위탁 운영 여부	525
● 민간자격증 사전등록제	526
● 과정이수형 자격 관련	526
● 계약학과 설치	527
● 학교기업 지원사업 관련 회계처리	528
●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	529
● 계약학과 수업	529
● 산학협력단 계약학부 석박사 과정 편입	530

■ 기 타	531
●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 인정	533
● 사회복지사 강의	533
● 국내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인정 여부	534
● 대입에서의 재외국민자격	535
● 수업결시에 따른 이수 자격 및 진급 자격 문의	535
● 해외 한국학교 정보 및 교직원 채용 정보	536
● 해외 한국학교 보수규정 적용	537
● 해외 한국학교 설립	537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관련 질의	538
● 공무원의 24시간 교대근무	538
● 교육전문직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련	539
● 불문경고에 대한 문의	540
● 전문직 전형 요강-기간제 교사 경력 불인정 이유	540
● 정년퇴직일의 공무원 신분	541
● 진단평가 반복 가능여부	541

● 징계와 관련한 포상대상자 선정 질의	542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542
● 공자아카데미 장학금과 정부초청장학금	543
● 국비유학 MBA 지원가능 여부	543
● 국비유학 고부가산업 분야 기준	544
● 국비유학 교수 추천서 필수유무	544
● 국비유학 그린수송 분야 해당유무	545
● 국비유학 농촌 식량 환경 정책 포함 여부	545
● 국비유학 대외활동실적 조건	546
● 국비유학 독서교육 전공분야	547
● 국비유학 응시자격	547
● 국비유학 화학공학 전공분야 기준	548
● 국비유학생 선발 개요	548
● 국비유학생 선발 영어평가 기준	549
● 국비유학생 선발관련 한국사와 영어 시험 기준	550
● 국비유학생 신청시 한국사시험 유효기간	550
● 국비유학생 전공분야 및 배점 기준	551
● 정부출연연 근무자의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 여부	551
● 국비장학생 전공분야의 폭	552
● 대학 졸업예정자의 국비유학 신청 가능여부	552
● 대학원 재학 중 국비유학 신청	553
● 영국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기준	554
● 일본 국비장학생 신청기준	554
● 일본정부초청 연구장학생 선발 요강	555
● 저소득층 국비장학생 지원	556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문의	556
● 중국대학원 국비유학 전공 문의	557
●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요강	557
● 국비유학과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여부	558

● 해외 박사과정 장학생 문의	559
● 정부지원 해외인턴 문의	561
● G-20해외동포학생 여름캠퍼스	562
● TaLK 영어 봉사 장학생 인증서	562
● 국사교과서 부록 자료 발행	563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일정	56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증 지참	564
● 퇴직공무원의 소청청구	564



I.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 아 교 육

4세 유치원 입학

질의

- 아이가 4살(09년 2월 2일생)이 되어 유치원에 보내려 하는데... 2012년에 법이 바뀌어 보낼수 없다고 유치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관련 기관(교육청) 문의를 하니 2012년 2월 이 되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9. [유아교육과]

- 문의하신 만 5세의 무상교육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었듯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자 즉 내년(2012년) 기준으로 05.1.1~12.31.생을 말하며 만5세 무상교육 지원 대상 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06.1.1~12.31생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만 3~4세 소득하위 70% 대상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2013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단가(만3~5세)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2만원 / 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입학금·수업료 면제)
 - 만3세 : 2009.1.1.~2010.2.28생 / 만4세 : 2008.1.1.~12.31생 / 만5세 : 2007.1.1.~12.31생

공립유치원 증설

질의

- 공립유치원의 좋은 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우리 아이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반을 모집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5.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유아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지역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



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관할청의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추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립유치원 설립 및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유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장 자격기준

질의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대체 학식과 덕망의 기준이 무엇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9. [유아교육과]

- 원장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2호 ‘학식, 덕망이 높은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1에 원장자격 인정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제1호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원, 다.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제2호는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참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질 관리 강화 및 유아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하여 원장자격인정기준의 교육경력에 관한 사항 정비(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사 중, '13.1월, '14.1.1 시행)

- 제1호(가, 나목 : 5년이상, 다목 : 3년이상 → 7년이상), 제2호 : 7년이상 → 11년 이상

놀이학교들의 수업료 징수 방법

질의

- 아이 친구 엄마들은 아이들을 놀이학교와 유치원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 분당지역에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3개월치 수업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아이를 그런 기관에 보낼 계획인데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4.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의무여부

질의

- 만 5세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현재 여러 유치원들이 그 유치원만의 특색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몬테소리, 프로젝트, 레지오 에밀리아, 생태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요.
- 그럼 누리과정을 하면 위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도 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0. [유아교육과]

- 5세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사실상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유치



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만, 동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질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접목·발전시키거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문화 무한 혜택 시정 요구

질의

- 다문화라면 소득구분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 다문화가정 자녀 국공립보육기관 입학 순위 1위 - 다문화가정 주택마련자금대출 금리 3.5% (배우자신용도에 따라 추가인하)*일반 서민전세대출은 금리 4% - 다문화가정 산모는 산부인과 진료비 4번 무료지원, 일반산모는 2번 무료지원 - 다문화가정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도우미 무료 지원, 일반은 제시하는 저소득층 조건에 부합해야 무료 지원. 왜 다문화라는 이름아래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3. 29. [유아교육과]

- 유아학비의 지원은 유아교육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바 우리부에서 임의로 변경,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시 다문화가정의 여러 사회 경제적 여건과 사회통합 문제 등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부터는 만 3~5세아 모든 유아에게 소득구분 없이 지원되어 역차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모두 해소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5세 유아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질의

- 2012학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종일반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7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종일반에 대한 정확한 운영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5.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종일제가 방과후 과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반비 지원 대상은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반 유아입니다.

사립유치원 결제 규정 및 환불 규정

질의

1. 사립유치원이 고액의 회비(월 60정도)를 일절 카드결제 받지 않는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한 답변
2. 자퇴로 인한 환불 규정이 일자 계산인데, 수업일수는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환불은 월 31 기준으로 나누어 환불을 수령했는데, 이러한 시행 규칙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7. [유아교육과]

1.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카드결제 문제는 법령상 유치원이 학교로 구분되어 카드결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카드결제 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납입금 환불의 일할 계산시 토, 일요일은 수업일수로 간주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유치원은 법령에 의해 연간 180일 이상의 수업을 하며 방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부는 사립유치원이 과도한 납입금을 받지 못하도록 재무회계규칙 및 정보공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질의

- 유치원 교사 중에서도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공무원처럼 휴직과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대학



부설이라도 사립유치원 교사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출산휴가를 쓰고 내후년 2월까지 휴직 후 다시 근무하고 싶은데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원장이나 기타 거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 [유아교육과]

-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사립학교로, 소속된 교원은 같은법 제55조에 의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출산휴가 부분에 관하여는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 계획'에 의해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립유치원 소속 교원의 경조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교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가 많이 열악함을 잘 알고 있으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유아학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우리군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한 영유아보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인구증가를 위한 셋째 이상 출산 자녀 보육료
 2. 보육아동 간식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청 소관 유치원(병설, 사립 등)에 다니는 셋째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가능 여부와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며, 보육료를 유아학비 포함으로 제정시 상위법 저촉과 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 [유아교육과]

-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유아학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재정교부금로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시·도의 조례로 유아학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셋째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13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단가(만3~5세)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2만원 / 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입학금·수업료 면제)
- 만3세 : 2009.1.1.~2010.2.28생 / 만4세 : 2008.1.1.~12.31생 / 만5세 : 2007.1.1.~12.31생

유아교육 한국정체성 교육 문의

질의

- 우리 유산에서 1-1 돋보기 속 민속화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데 시디롬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혹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6. [유아교육과]

- 우리부가 개발한 전통예술교육 자료는 유치원 현장에 한부씩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자료 CD는 기 배부된 유치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료 열람은 우리부 자료실을 이용하거나 우리부 홈페이지 교원-유아교육-자료실에 탑재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비 인상

질의

- 2011년도 이어 같은 유치원으로 재원을 했습니다. 2012년도 5세 누리과정이라고 20만원 지원해 준다 하더니, 유치원에서 원비 인상을 총 116,000원이나 했네요. 교육비 13,000원... 영어교육비 17,000원... 1학기 급식비 24,000원... 1학기 활동재료비 42,000원... 교재비 20,000원 인



상..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뭐합니다. 유치원에서 이런식으로 인상을 해서 반이상을 가져 가는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4.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소득구분 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일부 유치원에서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부는 전국 유치원의 수업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후 과다인상 억제를 위해 행정지도하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기준

질의

- 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부 기준과 보건복지부 기준이 다른가요?
-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복부 기준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원받기 위해 어린이 집으로 보내야 하나요?
- 지원받든 못 받든 지원기준을 통일해 주세요. 그리고 급여에서 세금은 제외하고 계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9. [유아교육과]

- 2012년 유치원비 기준 소득액은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기준, 어린이집(복지부)과 동일합니다.
- 다만, 최초 자료는 복지부에서 2012년 기준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안내하였고, 변경된 자료를 각 시도에 안내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의 특성화활동 가능여부

질의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하루 3~5시간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2.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교육과정은 하루 3~5시간 범위 안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에서는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보육료 타당성**질의**

- 올해부터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1. 기본반 (9:00~14:30) 원래 요금이 35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영어 수업이 있답니다. 그 요금이 50,000원이랍니다. 따라서 기본 금액은 40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간식은 부모가 싸서 준비하랍니다) 여기에 차량 운행비가 또 별도입니다. 6개월 15만원 따라서 $355,000 + 50,000 + 25,000 = 430,000$ 입니다.
 2. 종일반 (14:30~17:00) 종일반의 경우는 오후에 특별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100,000입니다. 하지 않게되면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후에는 특별한 간식이 없답니다. 따라서 우유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그 우유는 유기농만 있답니다. 1일 1,000원입니다. 따라서 $355,000 + 50,000 + 25,000 + 100,000 + 20,000 = 550,000$ 입니다. 위의 유치원의 비용이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또한 유치원에 보육비 지원에 대한 것을 공개요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2. [유아교육과]

- 유치원의 학비는 어린이집과 달리 기본과정, 종일제(방과후)과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납입금은 기본과정, 종일제를 구분하여 추가됩니다. 그러나 기본 과정에 영어과목을 하고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 유치원에 대한 납입금 내역은 해당 유치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유치원의 부당한 운영 및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설립인가 및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상담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보육비 지원 관련

질의

- 만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 3세아부터 만 5세아까지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해준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유아교육과]

- 만 5세의 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었듯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자 즉 내년(2012년)기준으로 05.1.1~12.31.생을 말하며 만5세 무상교육에 관한 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06.1.1~12.31생에 대한 교육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만 3~4세는 소득하위 70% 대상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누리과정 만4세, 만3세까지 적용’은 2012년초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2007, 2008년생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역시 2012년 초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확정·발표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참고] 2013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단가(만3~5세)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2만원 / 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입학금·수업료 면제)
- 만3세 : 2009.1.1.~2010.2.28생 / 만4세 : 2008.1.1.~12.31생 / 만5세 : 2007.1.1.~12.31생

경력증명서 발급 및 종일반 강사 경력 인정

질의

- 경력증명서 발급 및 종일반 강사 경력 인정에 대해서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0. 18. [유아교육과]

- 1)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교육경력증명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 한해 그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만 해당됩니다.

※ [참고]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2) 종일반 강사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3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원장이 임용합니다. 따라서 종일반 강사의 경력증명서는 강사를 임용한 원장이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

질의

1. 원생수에 관계 없이 각각의 유치원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주해야 되는 것인지?
2.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 인물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3.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원 정교사 될 수 있는지와 보육교사 1급 소지자가 유치원 원장자격이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6. 4. [유아교육과]

- 첫째,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리사배치기준 :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배치기준 : 1회 10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1명 배치
다만,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둘째,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인물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설립자라 할지라도 유치원장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임용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셋째, 유치원 정교사 및 원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관련 별표 2에 의해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입니다. 또한 원장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감자격증소지자로서 가능한 제1호 기준 또는 자격인정에 의해 가능한 제2호 기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

질의

- 저는 2012년 3월 개원하는 유치원 설립 예정자입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6. [유아교육과]

- 원장자격증 취득방법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제1호에 있는 기준에 의하여 원감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이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선생님은 원감자격증은 없지만 15년 교육경력이 있으시므로 교원자격 검정령 제23조 별표1의 제2호 규정(원장자격 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 검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장자격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 검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연초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 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금

질의

- 올해도 계속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등록금에 입학금이 또 적혀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금을 해마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1. [유아교육과]

- 입학금을 포함한 납입금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승인권한을 갖고 관리 및 감독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입학금은 최초 입학 당시 납부하는 것이나, 다만 원복비 구입 및 기타 사무처리비에 대하여는 실비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납부하신 입학금에 관하여,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시고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요건

질의

- 미국내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원장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알아본 결과, 유아교육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유치원 정교사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또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교과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한 취득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 [유아교육과]

- 우리나라의 교사자격 체계는 교사양성기능을 가진 대학,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과 학점을 이수하고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치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에 입학 또는 유아교육과에 편입학시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교원자격증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급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1급의 경우 해당 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통계자료

질의

- 전국 유치원 시설수, 종일제 실시 유치원의 수,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는 원아 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6. [유아교육과]

-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수는 8,538개원, 방과후 과정 유치원 수는 8,372개원,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 수는 380,486명입니다.
- 참고로 종전의 '종일제'가 '방과후 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유아교육법 개정, '12.3.21)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질의

-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 시범사업을 2차까지 진행하고 하반기에 3차까지 예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교과부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2. [유아교육과]

- 우리부에서는 2010년 4월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오후 방과후과정에서 허용하되,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부가 개발한 프로그램, 둘째,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추천제에 의하여 추천된 프로그램, 셋째, 학부모와 협의된 민간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천지표의 일정점수(80점 이상)이상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추천제는 현재 제4차('12.11.23)까지 시범운영 되었으며, 생활체육분야 7개, 문화예술분야 6개, 과학창의분야 9개, 언어분야 2개, 총 24개가 추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recom.kicce.re.kr>에서 추천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진학 문제

질의

-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막내가 6살인데 이사를 하면서 입학시기를 놓쳐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여러 유치원들을 방문해 보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사실, 자리가 있는 유치원이 없는 곳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리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비가 정말 하늘을 찌르더군요. 그 어느 곳도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는 없더군요. 솔직한 말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1, 2째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도 이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 이에 대한 교과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사립유치원교육비 내역은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관리감독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2. [유아교육과]

- 유치원 진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교육감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감이 납입금 승인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유치원의 납입금 문제는 관할청인 지역교육지원청에 상담시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관할청의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추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의 노력하고 있으며, 과도한 유치원의 납입금 문제는 관할청(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체육수업의 정규수업 여부

질의

- 유치원에서 수영과, 인라인 수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부터 그런 수업들이 특기수업이라며 정규수업시간(오후 2시까지)에 할 수 없다며 오후 특강수업으로 대체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수업은 유치원 정규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8. [유아교육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2012. 3. 21 일부 개정) 제13조에 의해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기본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 등을 강조하여 유아기부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의 개별 수요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이후의 방과후과정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유치원 교육비

질의

- 올해 첫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유치원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분만 내면되지요. 그런데 그 외에 유치원에서는 걷는 돈이 좀 되더라구요. 물론 교재비에 외부강사비며 등등 쓰이더라구요.
- 그런데 그런 돈들은 모두 현금으로 해야 하며 연말정산에 쓰이는 교육비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 더 투명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도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에 교육비에도 포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학비 교재비 외부활동비 등... 년으로 따지면 백만원이 넘습니다.
- 그런데 왜 그런 돈들은 신용카드나 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7.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소득구

분 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부는 전국 유치원의 수업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 후 과다인상 억제를 위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

질의

-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카드결제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운운하면서 유치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8. [유아교육과]

-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카드결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원비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선생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원비로 받고 있다면 유치원이 속해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12.31)되어 2012. 9월부터 유치원 정보가 공시되며, 유치원 원비도 정보공시 항목 중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유치원 보육료 지원

질의



- 청각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만5세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오히려 장애아가 받았던 유치원 지원금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3. [유아교육과]

- 장애아동의 유치원 보육료 지원과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의 선정, 배치 및 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동법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에 근거하여 해당지역의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나, 교육비 지원액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2년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소득하위 70%이하 지원에서 전계층으로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3년 22만원 등 점차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선 지원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학부모께서 느끼는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내용을 해당지역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고 확인된 내용을 답변 드립니다.
- 문의하신 누리과정 지원금 20만원과 장애아지원 121천원은 방학에 관계없이 매월 지원됩니다. 다만, 학교급식비 지원은 급식일 수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아 지급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방학 동안은 급식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일수만큼 지급이 안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일제 특성화 교육연수

질의

- 종일제 특성화 교육 연수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6. [유아교육과]

- 우리부에서는 종일제 특성화 강사 원격연수를 201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조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본 연수대상은 우리부가 개발한 4가지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아해뮤직, 창의아트, 튼튼체육, 코코과학)의 강사로 활동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후의 연수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5세 유아학비 지원

질의

- 5세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변경 있나요?
- 설마 다시 세금부메랑으로 날아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6. [유아교육과]

- 문의하신 만 5세의 무상교육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었듯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보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13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정원내인지 정원외인지

질의

- 유치원 특수학급 아이들은 정원내로 뽑는 건지 정원 외로 뽑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초등의 경우는 정원내로 특수교육대상자를 받는데, 원적은 일반으로 유치원의 경우도 정원내로 우리 아이들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 [특수교육과]

- (구)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제10조에서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 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정원 내·외 구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학적이 일반학급인지

질의

-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학적, 즉 원적학급이 일반학급으로 되어 장애학생이 일반학급 소속으로 특수학급이 도움반 형태를 띄는데 유치원의 경우도 특수학급 장애유아의 원적학급이 일반학급으로 아는데 일부 단설에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장애유아의 원적학급은 특수학급이라는데 어떻게 맞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9. [특수교육과]

- 현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원적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둔 상태로 일부도움을 받을 과정에 대해서 도움반 형태를 띄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며, 그에 따라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지침 등을 확인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아인의 교육환경 개선 요청

질의

- 전국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548명 중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1명으로 3.8%(국가인권위원회, 2005)으로 집계돼 구화교육 및 수화교육으로 양분된 농아인들의 언어선택권을 하루 빨리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농아인들의 교육환경이 정체돼 버린다면,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뿐 아니라 언어선택권에 대해서도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임직원에게 한해 자격요건 등 학칙을 변경하는 등 정부는 청각장애인 학교의 교육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5. [특수교육과]

-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수화로 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없어도 수화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없어도 한글로 문서작업은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우리부에서는 2012년도에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화능력 신장을 위하여 수화통역사자격증 취득지원 연수비와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수화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장애유아 의무교육 여부

질의

- 내년부터 만5세부터 의무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5세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던지 상관없이 나이가 만5세이상이면 누구나 의무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5세 의무교육에 장애유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만5세 장애유아도 의무교육대상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특수교육지원법에 만3세 장애유아도 의무교육대상자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7. [특수교육과]

- 장애학생에 대한 조기교육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의무교육 지원 범위를 유치원과정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만 4세이상 유치원과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에 있는 장애유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됩니다. 만약 민원인의 자녀가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시면 관내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에 따라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질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학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평생교육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기관에서 직접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8. [특수교육과]

-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부에서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10 .9. 장관결재) 수립에 따른 정책사업으로서 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1개씩 지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외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필요

질의

- ○ ○ 고등학교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열악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8. [특수교육과]

- 우리부는 매년 유·초·중·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정기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유·초·중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감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부 차원에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치료지원비 지원

질의

- 장애학생들의 치료지원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수업 후에 나가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라는 교육과학부의 치료지원비 지침 때문에 치료가 시급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수업을 다 받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보다 치료가 우선해야 할 상황인 아이들도 많은데 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관계 기관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의 요구사항은 “학생의 형편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장 재량으로 정규수업 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 ‘특수학생 치료지원 지침’을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5. [특수교육과]

- 먼저 치료지원 제공은 교과부 지침이 아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이전에는 현재의 치료지원과 다른 ‘치료교육’으로 교육과정 내의 한 교과로 포함하여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치료지원’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의 한 교과가 아닌 관련서비스의 하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치료지원이 하나의 교과로 제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및 보행 훈련 등을 교과시간에 병행지원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공통사항 30쪽 참고). 치료지원 및 보행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활동은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교과시간에 병행지원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의 수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과령학생 취학 허가 여부

질의

- 정신지체 특수교육대상자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과 부모가 특수학교 취학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인근 특수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취학 희망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과령(42세)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교 취학 대신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교육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경우 취학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4.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항에 의하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의 안내와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수교육 치료지원 인력

질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①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관계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한 민간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 등에서 치료 관련 전공자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의견인 듯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7. [특수교육과]

-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지원의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에서 정한 치료지원 인력인 국가면허소지자 또는 공인 민간자격소지자로 한정하여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치료지원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기타서비스(미술치료, 놀이치료 등)도 시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입학 특별전형

질의

- 특수교육대상자인 아이가 내년이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가 몸이 불편하여 사립중학교로 가면 좀 나을까 하는 생각에 집 근처 사립중학교를 알아보았는데 그 학교에는 장애아에 대한 특별 전형이 없더라고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해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왜 어디는 장애인특별전형이 있고 어디는 없는 건가요?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길 원하면 우선배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9. [특수교육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배치는 관내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희망하는 학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배치를 결정할 경우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실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중·고 졸업후 진로직업 훈련

질의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중·고 졸업 이후 진로지도교육기관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들과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3. [특수교육과]

- 최근 특수교육의 방향이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은 매우 시의적절한 의견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부에서도 전공과 확대,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 평생교육 및 대학 단계에서 진로직업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교 졸업 후 직업교육확대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공과 설치

질의

-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지만 현재 고양시 국립경진학교는 본교(국립경진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 10명(총14명중)선별하고 있으며 홀트학교 경우 본교(홀트학교)학생을 50%우선 선별기준을 세우고 있어 특수 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다수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공과 선별기준, 전공과 운영목표, 배치 기준



등을 공개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 전공과 설치가 특수학교 내 설치되었다고 해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차별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공과를 확대 설치 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6. [특수교육과]

- 전공과의 설치 및 운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공과 학생의 수업연한과 선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전공과의 설치 운영)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부에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공과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보조원 명칭

질의

- 모든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행해집니다. 위 동법 제 28조 시행규칙 5조에 따르면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학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에서 채용하고 있는 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수교육 보조원은 자신들을 “특수아동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달라며 항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특수아동 지도사 협회라는 곳이 생겨나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특수교육과]

- ‘특수아동지도사’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격과정을 개설한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2004년부터 특수학교(급)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은 우리부 차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급) 내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이 공식적인 명칭임을 알려드립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관할

질의

-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에 전공과 2년제 실시를 요구하는데 관할 부처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30. [특수교육과]

- 「초·중등교육법」 제56조에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위해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2항에서도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전공과를 담당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공과 관리 및 운영비 등은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정교사(2급)치료교육 시험 응시 및 중등특수 기간제 교원 응시 문의

질의

- 저는 2007학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특수학교정교사(2급)치료교육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교사 TO가 없어지면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지역에 관계 없이 특수중등으로 시험을 볼수 있는지 여부와 특수기간제 교원 채용시 중등 특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해도 서류상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13. [특수교육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구)「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치료교육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행정조치에 따르면, 비현직 ‘특수학교 정교사(2급) 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중등) 기간제 교사의 임용 또한 과목에 관계없이 선발할 경우,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재활복지)’로 간주하여 특수교육(중등)교사 기간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 제한 없이 특수교사 중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임용시험과목은 특수교육(중등)과 동일합니다.

특수학급과 진로 및 직업교육 훈련실 면적, 교원 배치 기준

질의

- 질의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중 질의사항 - <질의사항 1-가>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과 제18조 ①항에 명시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이상 설치』는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특수학급 공간을 제18조 ①항에 명시된 진로 및 직업교육 교실을 같은 공간에서 두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지요? - <질의사항 1-나> 제18조 ③항에 명시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라고 명시된 공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위하여”라고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시 직업훈련실이 설치된 특수학교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직업훈련실)인지? 그러하다면 그 시설의 이용절차와 방법, 시기는?
- 질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질의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학급설치기준은 중등학교일때 6인 이하시 1학급이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이면, 현재 통합교육을 시행중인 서울시 소재 ○○중학교 특수반학생이 12명이면 규정상 특수학급은 2반, 특수교육교원은 단서 규정 미적용시 3명이 배치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15. [특수교육과]

- 먼저 질의하신 특수학급과 진로 및 직업교육 훈련실 공간 모두 법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교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의미이므로 각 교실마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실을 특수학급 교실과 진로 및 직업교육 교실 등 2가지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에 설치된 직업훈련실은 대상 학교의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나 필요시 일반학교의 통합 교육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학교와 시간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중학교 한 학급에 12명이 배치되어 있다면 2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수교육 교원은 최소한 학급 당 1명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령 22조에 규정된 학생 4명당 교원 1명 배치 기준은 장애학생 총수를 기준으로 교원 배치 기준을 제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중학교 급별 학급설치 시 교원 배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중학교 학급 설치 기준은 학생 6명을 초과할 경우 2학급 이상 설치

특수학급에서의 예능 교육 확대

질의

- 자폐성 청소년 학생들 중에서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고 예능에 소질이 많은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데 자폐 청소년 학생에게는 연기, 노래, 춤 등, 재능을 살리는 특수 교육을 늘리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9. [특수교육과]

-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소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듯이 장애 아동에게도 문화 예술 교육, 직업 교육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해 직업 진로 교육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소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 예술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각종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진학 근거

질의

- 각종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시 어떤 규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국모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각종학교 내신성적을 중학교와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법을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2.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는 중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령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는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각종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희망학교에서 정한 모집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지 소재의 고등학교에 응시하는 등 해당학교의 모집요건을 충족할 경우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절차, 내신성적 산출방법 등 입학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3.31까지)하는 시·도교육청의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해당교육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고입정보포털(www.hischool.go.kr)사이트를 통해 시·도별 입학전형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학교 학생 선발

질의

- 매년 ○○중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시 면접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학과 시험을 구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특수목적 중학교가 실기전형과 면접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중 유독 ○○중학교 두 곳만 면접 시 학과 시험을 구두로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 시험유형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8.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학교(중학부)는 정규 중학교에서 교육할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로서, 학교설립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중학교의 학생 추천·배정방식과는 다르게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교규칙으로 정한 입학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교 입시 전형 동시 지원

질의

- 후기 1차로 전국구 고등학교(자율학교)랑 자공고 전형후에 후기2차인 일반 인문계 전형이 있어서 전국구 고등학교(자율학교) 응시 후 불합격하면 일반 인문계고에 진학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 자공고와 인문계는 동시 접수를 할 수 있지만 전국구 자율학교에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과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구 자율고를 지원하면 합격자 발표 이전이어서 인문계고 원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전국구 자율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고등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치구내의 자공고는 동시 지원이 가능해서 불합격하면 자동으로 인문계고에 배정하고 전국구 자율고는 동시 지원이 안 되게 해 놓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9. [학교선진화과]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선발시기를 전·후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다한 고교 지원 방지를 통한 적정한 고교 진학 기회 확보를 위해 1개의 학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교 진학의 기회 확대를 위해 전기고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에 한해 후기고에 지원할 수 있으며, 평준화지역의 후기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의거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내의 자공고와 일반고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보면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3.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 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와 같이 모두 '국내 중학교'(제2항)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제3항)를 '졸업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즉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특례입학 대상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9.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졸업자는 고등학교 입학 당일을 기준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인 학생은 특례 입학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공립학교 설립

질의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에 대하여 건물의 시설주체와 경영주체 등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 민간이 건물의 시설자금을 제공하면 국·공립학교의 정의가 성립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31.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에 의거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됩니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사립학교는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민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합니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학교)을 건설



(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지위에 따라 국립이나 공립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학 절차

질의

- 외국인의 자녀 중 적령에 달한 아동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9. [학교선진화과]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국내 일반 아동과 같은 취학통지를 받지 않으나, 적령에 도달하여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학할 수 있습니다.(미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또한, 국내불법체류자의 자녀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기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자녀 고교 특례입학 조건

질의

-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중1에 시작하여 현재 중3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특례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9. [학교선진화과]

- 고등학교의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

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또는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 2년이상 재학한 학생이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을 받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한 학생에 한해 특례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입학 관련 문의

질의

- 조기입학은 입학하는 년도의 전년도 10월에서 12월 중에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9. [학교선진화과]

- 아동의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동의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법적으로 이 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례입학 대상자 거주기간 산정 기준

질의

- 자녀가 중국에서 2009년 3월2일 입학을 하여 1학년 186일 2학년 186일 수업을 하였고 한번도 한국에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국 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래서 자사고에 특례입학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재외국민 등록일자가 4월 9일로 되어있어 한 달이 차이가 난다고 특례입학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년 이상이라 함은 출입국관리기록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재외국민 등록일자로 기간을 계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7. [학교선진화과]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각 시·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특례대상 신청자의 해외 거주기간을 재외국민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을 단축 적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할 경우에는 확인된 사항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리 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스 입력 자격증 문의

질의

- 담임선생님이 나이스에서 자격증목록을 보시는데 제가 취득한 자격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국제공인자격증 CCNA, LPIC, OCJP 이렇게 취득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기재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절망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기재가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 [학교선진화과]

- 외교 등 특목고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이 재학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관련 자격증에 한하여 입력합니다.



결석일 산출

질의

- 결석일 산출 시 조퇴, 결과, 지각이 3회 있으면 1일 결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일수에서 감해

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9. [학교선진화과]

- 출석일수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출석한 일수입니다. 지각, 조퇴, 결과 등은 출석은 하였는데, 소정의 시각에 늦게 출석하였거나 일찍 귀가 또는 해당 수업시간에 불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 하는 것은 학교 규칙에 따라 개근, 정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학생의 진급에 필요한 수업일수와는 무관합니다.

정원 초과 전입학 배정

질의

- 가족이 이주했을 때 중학교 전입학에 있어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서 전입학 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6.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전학 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정원외 관리학생의 재취학

질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장은 학칙으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은 학칙으로 본교는 미인정유학이나 미인가대안학교의 학력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민원인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요구해도 거부하며 학업중단시점의 학년에 한해 재취학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3.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으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은 해당학생의 발육상태, 학교적응능력, 학습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부모가 요구에 의해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유학 자녀 특례편입학

질의

- 중3학년과 중1학년이 2년이상 외국학교에서 재학중 귀국하게 되어 편입할 예정입니다. 7월 1일 귀국할 예정인데 귀국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편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31. [학교선진화과]

- 외국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수료 중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편입시 편입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기 중에 국내 중학교에 편입할 경우 학기 이수 인정에 필요한 적정 수업일수 확보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귀국후 편입기간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귀하의 자녀같은 경우 미국 학교에서 6월말에 학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므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학기 이수 인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교육청의 경우 귀국후 한달 이내에 편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끝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및 제75조에 따라 중학교 학생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중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준 및 안내에 따라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학교 수료 후 중학교 입학

질의

- 사업적인 문제로 현재 아르헨티나에 약1년간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학

교 정식졸업으로 인정이 어렵고 수료의 형식이 된다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중학교에 편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9. [학교선진화과]

-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였던 경우이므로 귀국학생이 외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정규교육은 그 해당 수학기간을 인정받아 국내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 외국학교 교육에 대한 확인은 재학학년과 재학기간이 기재된 학적서류(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와 (아르헨티나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재외공관의 별도 영사 확인 필요 없이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학적 관련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관련은 외교통상부나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시며, 귀국시 학교·학년 배정관련 질의는 해당교육청 담당자로 문의하시면 관내 학교의 귀국자녀 준비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귀 자녀와 귀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해외유학 후 초등학교 입학

질의

- 현재 6세 유치원 생입니다. 아버지의 해외발령으로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그곳의 국제학교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질문 1. 필리핀에서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법령 상으로...)
- 질문 2. 귀국 시 한국학교 입학을 위해 필리핀 내에서 재학하던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와야 할까요?
- 질문 3. 귀국 후 일반 공립 초등학교 입학 시에 자신의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취학이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밟아 입학 학년이 결정되니까?
- 질문 4. 필리핀에서는 학제가 한국과는 차이가 있어서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되어 아이가 필리핀에서 8세 가을에 2학년1학기를 다니다가 9세 3월에는 한국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 2학년 1학기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이



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2학년에 입학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9. 1. [학교선진화과]

- 답변 1.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필리핀 한국국제학교(☎63-2-403-3495~3500)’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다른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는 필리핀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2.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 입학한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로 오면 ‘전입’으로 처리됩니다.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의 학적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 한국학교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3.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설명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므로 귀국 후 거주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3, 4.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로 전입오면, 학생의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배정됩니다.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초등학교장이 학년을 배정합니다.

2014년 내신 절대평가

질의

-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입니다. 제가 내년에 군대에 가서 2014년에 다시 입시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수생은 내신 절대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1. 12. 23. [학교선진화과]

- 이번에 발표한 성취평가제는 2014학년도 고1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이에 따라 이 학생들이 고3이 되는 2017학년도 대입 때부터 성취평가에 의한 내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준비하시려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는 성취평가제와 무관합니다.

고등학교 지필평가 성적 분리 산출

질의

- 학교생활기록부__작성__및__관리지침(교과부훈령제239호)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마.- (5)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 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계열별 구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3. [학교선진화과]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중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에서 마항의 (5)는 ~중략~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일 경우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만 구분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직업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과명과 단위수가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은 수강자수를 분리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제정

질의

- 교육정책의 변환과 학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립형, 자율형,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의 기숙형 고등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불어 농산어촌지역과 중소도시 및 도시 저소득층에는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등의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31.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숙사 입사관리 규정은 학교규칙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해당학교의 장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우리부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나 국내의 국제학력인정 기관에서 국내 학교로의 진학

질의

- 미인가 대안학교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학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는 걸로 압니다)을 다니게 되어 국내 학교에서 정원의 관리대상으로 분류가 된 초·중등학생의 경우 국내학교로 진학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 나이까지 위의 기관을 다니다가 일반 중학교로 바로 입학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 미인가유학이란 상관은 있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8. [학교선진화과]

-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의 학적관리된 초·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한편 미인가 대안학교나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가는 경우 미인정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구학교 보고서 저작권 문의

질의

- 연구학교 보고서에 전년도에 작성한 제 지도안과 유사한 지도안이 동시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 두 개의 지도안이 학습 주제, 학습문제, 발문, 활동명 등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느 정도 같아야 표절이 되는지요?
- 2. 연구학교 보고서는 다른 학교에게 연구 성과 및 연구 주제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화된 자료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일반화된 자료라면 공유된 자료로 여길 수 있나요? 또한 공유된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상대방 지도안 작성자는 연구학교 보고서는 공유된 자료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활용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3. [학교선진화과]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관(지적재산권의 제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선생님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자료를 활용한 분께서는 최소한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규정**질의**

- 초등학교 3학년때 주재원으로 외국으로 이사오면서 1학기를 쉬었는데, 나중에 상급학교 진학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12학기를 이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의무교육 수료의 효용이 있는지요?



- 만일 중학교때 한국으로 편입학 할 경우 한 학년을 낮춰서 보내게 되면 초등 1학년부터 누적해서 학기를 합산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일 학력인정이 안되는 경우 한 학년을 더 다니거나, 중입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국내에서 학교에 적이 없는 경우(외국에서 재학중이라도) 검정고시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9. [학교선진화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①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정유학인 경우 대체로 학제 차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중입검정고시의 경우 외국에 재학 중이라도 응시할 수 있으나 연령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기록부 수상기록

질의

- 학생생기부에 대외상은 기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이사장상이 대외상에 해당되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0. [학교선진화과]

- 교내상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이 수여한 상을 의미합니다. 학교장이외의 상은 모두 교외상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이사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이 수여한 상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방식 변경

질의

- 고등학교와 중학교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1. [학교선진화과]

-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 목표 달성정도 보다는 서열에 의해 누가 잘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인성교육이 구현되는 교실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귀국자녀의 교과내신성적**질의**

-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대학 진학시 귀국자의 교과 내신성적 산출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6. [학교선진화과]

-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6차교육과정 해당자는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이후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며, 제7차교육과정 이수자는 전·편입학한 이후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며, 전,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제 교사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권 유무**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제교사 및 원어민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20. [학부모지원과]

- 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수 없는 점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



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사립중등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진행방식

질의

-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자문을 구하는 주체가 학교장일텐데 학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장은 교원 아닌 자로 규정되어 있어 자문의 본질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
- 2. 자문을 구하는 학교장이 자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극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3. 현재 각 시도에 내려진 업무편람에는 회의진행순서를 의안상정 - 제안 설명 - 질의 응답 - 토론 - 표결의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중 토론과 표결의 절차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최대한 표결의 절차는 없어도 무방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7.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학운위원장을 교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학교 밖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학교장 판단으로 학운위를 미개최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규정에 위반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자문 결과는 개별 학운위원의 의견이 아닌 학운위원 전체의 결집된 의견이며, 학운위 전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론과 표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권한 위임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정상 참여할 수 없을때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위원 또는 사람에게 위임(위임장을 작성)하여 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7. 27. [학부모지원과]

-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과 의결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도 감독권

질의

- 시도교육청은 관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권한이 있는지요? 법률적 근거도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2. 4. 19.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를 근거로 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각 시·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를 근거로 지도·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 상실

질의

- 본교 학교운영위원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자격이 당연 상실됩니다. 졸업의 의미는 졸업일인지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2월말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9. [학부모지원과]

- 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에 따른 졸업의 의미는 졸업식의 날이 아닌 해당학년도 말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자녀 가구 학생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 |

질의

-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강료 무료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2. [방과후학교팀]

- 현재 교과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중입니다. 동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 지원 사업들은 지방이양되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지원 중이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학생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 Ⅱ

질의

-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강료 무료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6. [방과후학교팀]

- 현재 교과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중입니다. 동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 지원 사업들은 지방이양되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지원 중이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과후 수당 지급

질의

- 근무시간에 수업을 하는 건데 방과후 수당을 주는것이 적합한지요? 방학중 방과후 활동도 근무조랑 같이 편성을 해서 방과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5. [방과후학교팀]

- 현재 방과후학교 사업은 2008년 이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 운영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인 참여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현직교사라도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리부는 확일적,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단위학교에서 잘못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각종 회



의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질높은 프로그램과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방과후 지원

질의

- 한 가정에서 같은 학교를 다닐 경우 형제나 자매 2명 모두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8. 25. [방과후학교팀]

- 현재 교과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중입니다. 동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의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동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담임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비 지원 사업들은 지방이양되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지원 중이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5일제로 인한 수업시수 문의

질의

- 주5일제 수업을 함으로써 총수업시간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교육시간이 모자라서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지요.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이런 정책을 시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 [방과후학교팀]

-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수업일수가 감축되더라도 현행 교육과정 운영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량이 줄어들거나 학력이 저하되는 일은 없다고 판단됨.

※ 이미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을 전제로 교육과정 수업 시수를 설정하여 교육과정 개정(2009 개정 교육과정, '09.12) 또한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간 16일의 학교 여유 수업일을 20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함.

※ 학교 여유 수업일 : 16일 ⇒ 20일(4일 증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자체 휴무

질의

-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했는데 다행히 해당 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돌봄교실은 토요일은 물론 재량휴업일에 같이 휴업을 하더군요. 돌봄교실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 사정이야 뻔할 텐데, 매년 이 학교 재량휴업일마다 부모가 직장을 쉴 수도 없지 않습니까해서 이달 초에 학교측에 문의했더니 교장선생님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저 '해당 가정에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가 없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더군요. 제가 돌봄교실 운영지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있다면 무엇인지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2. 6. 5. [방과후학교팀]

-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의 교육일은 연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재량휴업일, 토요일은 학교 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돌봄교실의 재량휴업일 운영여부는 해당학교와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는 돌봄교실 운영이 학교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재 안내하겠습니다.

토요일방과후에 대한 교과부의 방침

질의

- 3월부터 시행된 주5일제 수업으로 토요일휴무일이 되어 3월부터 수익자부담 토요일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프로그램 선생님께서부터 당장 내일부터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교과부에서 토요일프로그램을 모두 무상으로 실시하는



마, 대상자선정이 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토요일프로그램입니까? 단순히 무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0. [방과후학교팀]

-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에 따른 토요일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무료운영은 학부모의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주중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요자(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이외에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교 간·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안내를 거쳐 학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프로그램 무료운영방침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설·폐지 등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이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신고 교습소 처리기준

질의

-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교육지원청에 신고나 등록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보습과목에 대한 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6. [사교육대책팀]

- 학원법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의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한다면 미신고 교습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

질의

-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개인과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조강사를 고용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하고 있을때, 이를 교과부 부조리센타에 신고함에 있어 ① 성문법인 학원법 제2조3호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불문법인 대법원 판례(2004도6717)에 따라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2008년 5월 27일 교과부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와 무등록학원 양쪽으로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다음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범례 : A(주된 교습자), B(보조 교습자), 甲(신고인)] A(수학과목)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했으나, 신고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B(영어과목)를 강사로 고용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다, 신고인 甲의 제보에 의해 관할 교육청이 불법과외현장을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제 적용과 관련하여 ① 주된 교습자인 A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보조 교습자인 B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인 甲의 미신고개인과외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② 개별적으로 분리판단하여, A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가 아니나, B 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에 해당되므로, B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인 甲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0. [학부모지원과]

-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개인 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그리고 법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과 학원을 구별할 경우에 교습장소, 강사유무, 학습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동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 없이 과외교습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포상금제의 유형 중 미신고개인과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신고 장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인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학과라치의 신고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



우,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등학교 학부모동반 현장체험학습 가능일수 문의

질의

- 초등학생의 학부모동반 현장체험학습이 해당 학교에는 연간 7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국외로 가는 경우에도 그런지요? 교육부 규정으로는 1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3. [학생자치과]

- 현장(체험)학습 출결 처리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자료실 - 학교지원국 - 201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봉사활동의 의미

질의

-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기관에 신청하면 잘 받아주지도 않고, 일부 학생들은 점수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봉사활동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학생자치과]

-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 배려와 나눔의 소양을 익히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봉사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상에 실시하는 특별활동으로서의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이 실시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기록하는 봉사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교의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봉사활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 아울러, 봉사활동 기관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내 기관을 종합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산하 자원봉사진흥센터가 전국 270여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학

생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로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방학 중 외부체험활동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 제언

질의

- 방학 중의 외부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로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학교가 계획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안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4. [학생자치과]

-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인정은
 1.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특별활동)의 경우만 인정되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5일수 업제 전면 시행 학교가 휴업일인 토요일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나, 방학중에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단, 학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 4)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은 동아리 활동의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기록합니다.)
 2. 방과후,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방학중 정규교육과정 외 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계획(정규 교육과정 외)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특별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수시간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해당 활동의 특기사항에는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12. 2월말)을 통해 단위학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기록

질의

- 학생의 봉사활동을 기록하려 할 때 중3이 끝날 무렵 2월달에 한 활동내역은 고등학교 1학



년 때 확인서만 있으면 입력을 해 주시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6. [학생자치과]

- 학년말 진급 처리된 후라도 이전학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학년도의 봉사활동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의 실적은 해당학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 봉사활동 인정기준

질의

- 올해부터 해외 봉사활동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봉사활동을 나가기 위한 한국에서의 준비, 오리엔테이션, 책자준비 등의 봉사활동도 같이 인정이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학생자치과]

- 해외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 입력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과부 지침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지침을 따르셔야 하며, 그에 따라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시도에 나간 교과부 지침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 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에듀팟 기록변경

질의

- 2012년 3월 1일자로 변경될 에듀팟 기록기준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아이의 진로와 관련된 학교활동이 전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개인계획에 의해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2011년에 고1이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6. [학생자치과]

- 에듀팟에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적용되는 학년 중심으로 활동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용과 영역 구분이 다르므로 자치, 적응, 행사활동은 자율활동으로, 계발활동은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 재량활동은 진로활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에듀팟의 본래 목적과 운영과는 다른 에듀팟 대행·관리업체 발생, 스펙관리 학원·포트폴리오 제작 컨설팅 과외 등장,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분야의 사교육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2011.7.1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학교생활기록부의 교외체험학습 기록 불가)은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은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훈령 158호의 적용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가능)은 학교장의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개인적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에듀팟에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창의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인정 기준 수립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성 인정기



관에서 실시한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은 기록할 수 있도록 2012.3.1부터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 불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에서도 논의와 검토를 하였으며 교육과정 적용 학년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되었으며, 대입전형에 에듀팟 최종 포트폴리오 제출시 2011.7.1~2012.2.29까지는 개인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은 지침에 의해 기록할 수 없었다는 사항을 명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교협 측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하여 개인 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의 소급적용 불가에 따라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듀팟 자료 등록

질의

- 에듀팟 학생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싸이트가 맞습니까? 학생들 시간 쪼개가며 공부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에듀팟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올리는 게 대학갈 때 유리하다 그래서 올리라 해놓고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27. [학생자치과]

- 에듀팟에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적용되는 학년 중심으로 활동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용과 영역 구분이 다르므로 자치, 적응, 행사활동은 자율활동으로, 계발활동은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 재량활동은 진로활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에듀팟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며,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신장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기록한 에듀팟 기록의 내용을 통해 학생의 진로, 인성, 상담에 관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에듀팟이 특정한 시기(학년말)에 집중적인 수요가 몰려 접속이 접속이 어려웠던 점과 콜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에듀팟 사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학생서비스 영역에 에듀팟을 구축하여 정보 보안의 인증체제를 강화하고, 에듀팟의 기록내용과 승인 관리를 나이스 교무업무서비스와 연계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나이스와 봉사활동 나눔포털과의 실적 연계를 통해 교사가 건별로 입력하던 봉사활동의 업무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에듀팟의 봉사활동 부분도 실적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교사와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교복의 학교장 재량 여부

질의

- 추운날 여고는 바지를 못입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이 학교장 재량 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1. [학생자치과]

- 교복의 착용여부, 착용방법, 규격 등 학생 복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단위학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여학생 바지교복 착용에 관한 사항도 이에 해당됩니다.
- 또한 학칙의 제·개정시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하고, 학운위 심의(자문)가 필요함. 아울러 교복 구매와 관련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5호에 따라 학운위 심의(자문)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교과부 체벌 규정

질의

- 2009년을 전후하여 교과부가 정한 체벌규칙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6. [학생자치과]

- 2009년 전·후 교과부가 정한 체벌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에 의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2009.3.27 기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개정하여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교복공동구매 업무추진주체

질의

- 교복공동구매의 추진주체가 학교장인지 학부모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4. [학생자치과]

- 교복 구매시 단위학교별 특수성, 학부모 수요 등에 따라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가 주관하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추진주체 위임 포함) 등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청 조례·규칙, 학운위 심의(자문)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

질의

- 방과후 학생지도나 멘토링제의 경우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당 12,500원~30,000원까지의 돈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학교에서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26. [학생자치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2항에 의하면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과부 학생 봉사활동 인정기준 지침에 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 일비, 인건비 등의 명목이 아닌 봉사활동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봉사활동주관기관의 최소한의 교통비 및 식비 해결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취지

질의

- 봉사활동의 교과부 취지와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2. [학생자치과]

- 우리부에서는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가족단위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발생·조치 결과 보고

질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및 그 결과보고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한 경우에 당해 법률 제19조에 규정한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 법률에 따라 개별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3.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및 그 결과의 등재는 근거 법령에 따라 목적 및 절차,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조치 기한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의 이행

질의

- 경찰의 조사,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9. 14.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수사·소송 등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학생 교육·선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받은 조치와는 별개로 사법적 조치(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 결정은 교육·선도 목적의 조치를 통하여 학교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법(司法) 절차에 의한 피해자·가해자의 조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이 명확히 일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법 절차에 의해 훈방, 구류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라도 선도·교육 목적의 가해학생 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

질의

- 가·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또는 사건경위서를 공개신청 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9. 14.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항에 의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사건경위서(진술서 등)는 공개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질의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시 반드시 교육장(교육감)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7. 22.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시·도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초·중학생)에게 통보하고 학교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학교폭력 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

- 학교폭력 상황보고서나 자치위원회 사안보고서 등을 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실명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6.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 상황보고서와 사안보고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기관인 학교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실명을 쓰도록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직무를 수행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2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질의

- 폭력피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안과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Wee 센터나, Wee 스쿨 등에 가서 정상적인



상담을 하기도 어렵다고 학부모가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 어떻게 출결처리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9.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 협의체 설치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조례제정 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외에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12. 2. 17. [학교폭력근절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그외의 별도 협의체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 등을 통하여 설치·운영하여도 법상 하자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립대안학교 교사 자격기준

질의

- 공립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4. [인성교육지원팀]

- 공립학교 교사는 시도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산학겸임교사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 교사용 대지

질의

- 대안학교의 교사의 대지 산정법 현재 보유한 건물의 개요 - 대지면적 : 980 미터제곱 - 건축면적 : 182.13 제곱미터 총 3개층(지하포함 4개층) - 연면적 : 829.53 - 용적율 적용 연면적 : 496.53 - 해당지역 용적율 : 70% 위와 같은 건물을 교사로 사용할 경우에 교사용 대지 산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9. [인성교육지원팀]

- 전체적으로 학교급, 정원 규모, 학교 설립 목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대안학교의 설립 및 인가 업무는 시·도 교육청 자치사무로서 구체적인 사안 판단은 해당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 충족뿐만 아니라 교사·교지의 소유주체, 임대 조건, 교육과정 등이 적정하여야만 인가가 가능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안학교 설립주체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라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 시·군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11. [인성교육지원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및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에 의거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교육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의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각종학교 포함 여부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대안학교가 같은법 제2조 제6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 [인성교육지원팀]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5호에 각종학교가 학교의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서 “(전략) 다양한 교육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註 :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후략)”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에 해당됩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교’ 명칭 사용

질의

- 저희 학교는 대안학교로 학교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최근에 학사를 새로 지어 이전을 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1. [인성교육지원팀]

- “학교” 명칭 사용과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내지 제67조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주일학교”, “성경학교”, “마을학교” 등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명사로서의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교’ 명칭 사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단순 보통명사로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규정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제재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은 위법 제6조에 따라 교육청의 관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는 학교와 유사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용해 수업을 하며, 일반 사람에게 ‘대안학교’ 등 학교임을 표명하거나, 교사, 입학, 졸업 등 일반 사람이 명백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요컨대,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친목, 종교 등의 이유로 일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보통명사로서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제도**질의**

- 일반정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부의 지원혜택이 되는데 비인가학교 아이들은 전혀 그러한 지원이 없어서 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9. [인성교육지원팀]

- 「초·중등교육법」제 60조의3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학교에 비해 절반 수준의 시설, 교육과정을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하여 각 시도별로(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인가 확대, 공립 대안학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교육적 타당성,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시험일 변경

질의

- 검정고시를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치루고 시험횟수도 연2회에서 4회로 확대되도록 요청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0. [학생복지과]

- 검정고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검정고시협의회에서 시험일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은 수많은 수험생들의 응시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 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시험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시험을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8월에 실시하는 2차 검정고시는 평일에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2차 시험일을 평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정고시 공고, 시험문제 출제, 시행, 합격자 발표 등에 4개월여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횟수를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부분을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뜻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응시 서류

질의

- 고등학교에 준하는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대입검정고시를 보려고 접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교육청에서 중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증명서가 없으면 고입을 봐야한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졸업증명서가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3. [학생복지과]

- 고졸검정고시(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제도는 중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위 학력인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따르면, 응시자는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제11조), 중학교 졸업자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자가 응시(제10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경위라 할지라도 중졸 학력을 갖춘 자가 고졸 학력(대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는 우선적으로 고입검정고시 합격을 통하여 중졸 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비정규 상업전수학교를 수료하였다 하여 중졸이나 고졸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입 또는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학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정규 상업전수학교 졸업으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된다면 고졸검정고시도 필요 없이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겠지만, 상업전수학교는 규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학교졸업만으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고졸검정고시를 거쳐야만 학력이 인정됩니다.
-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오나, 고입이나 고졸 검정고시는 과목과 내용이 유사한 만큼,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고입검정고시부터 응시하셔서 실력과 경험을 쌓도록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정고시 응시 제한기간

질의

- 검정고시를 보려는 나이 먹은 한사람 입니다. 요즘 장년반 야간과정 등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2년에 마치는 과정이 있는데 이곳을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봐야 할 경우 6개월의 응시제한이 있습니다. 응시제한을 풀어서 나이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3. [학생복지과]

- 검정고시 제도가 성인학습자의 학력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응시생의 60% 정도가 10대 학령기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함이 바람직하나 대학진학의 편법(?)으로 검정고시를 활용하는 사례



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 가능한 이들이 정규학업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자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부로 학교를 중단하고 검정고시로 졸업학력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10대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귀하와 같이 학력인정학교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응시 제한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야간 평생학교에서 짧은 기간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같이, 성인 학습자의 학력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또한 성인 학습자의 학력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귀하는 성인 학습자의 학력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여의 기간으로도 고졸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별도의 검정고시 수험 준비를 하기보다는 재학중인 학교에서의 학업이수로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정고시생들의 처우 개선

질의

- 검정고시 서류(성적 증명서 및 합격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주셨으면 합니다. 합격여부와 성적은 서류에 전부 나오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학 입학 원서 제출 시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생부 성적 제공을 동의하면 따로 서류 제출 하지 않는데, 검정고시생들은 합격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여부, 성적 여부를 온라인 원서 제출시에 본인이 동의하면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6. [학생복지과]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령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정고시 서류 온라인 제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이 대학에 제공하는 학생부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학교장 승인 하에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자료(성적, 합격증명서)를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관련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대입전형자료 전송 절차와 유사한 기능 추가 개발하는 등 나이스(NEIS)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검정고시 합격자 자료요청 절차, 검정고시 담당자의 대입전형자료 생성, 검증, 승인 절차, 자료의 암호화 등 추가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은 법률 정비와 시스템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검정고시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지원 대상

질의

- 교육비원클릭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이 없고 소유재산 또한 없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십년도 넘은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계가 어려워 아이의 교육비 납부조차 현실적으로 힘든 이 상황에서 단지 그런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하단 생각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0. [학생복지과]

-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아울러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으면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임추천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시 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비 지원기준

질의

- 6인 가정(부모님, 처, 고등학생, 초등학생 자녀)의 가장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장애 3급과



4급이며 1년전에 실직하여 아직도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애들 둘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초등학교 쪽은 교육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내는 금액이 대가족 6인으로 11만원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 기준의 제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다면 실직 가장에 소득도 별로 없고 장애 3급과 4급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3. [학생복지과]

- 현재 교육비 지원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다소 상이하나, 부산교육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비 : 최저생계비 기준 130% - 급식비 : 최저생계비 기준 140% - 방과후 수강권 : 최저생계비 기준 120%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긴급한 사정 혹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담임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임교사의 추천 후 학교의 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는 교육비 지원시 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문화 가정 정책문의

질의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8%이며 그러나 중학교로 올라가면 40%대로 뚝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이르면 20%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언어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경제, 언어적 문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7. 27. [학생복지과]

-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하여 각 부처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각급 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전액지원하고 있고, 언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하여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지도사 200명을 배치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지도를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100여개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중언어강사를 양성 배치하여 이중언어(한국어+모국어) 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10명 이상되는 학교의 경우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예와 정원외 관리, 검정고시 응시 자격에 관한 질의

질의

- 질병 또는 무단 결석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유예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인정(불법) 유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유예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 유예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원외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유예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지요? 유예를 한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유예 처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년도 유예처리한 효력이 복학을 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4. [학생복지과]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예된 사람은 당해학교의 학칙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학생이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다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된 자가 다음 학년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유예처리 여부는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복하지 않을 경우, 유예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등입학자격 검정고시 연령제한

질의

- 대안학교에 7세 조기입학 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11.10월 대전지법에서 중등입학검정고시의 만12세 연령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7. [학생복지과]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전지방법원의 중학교 입학자격 응시연령 제한 관련 판결에 대하여 대전시교육청에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중학교 과정 지역별 학교운영비 부과 여부

질의

- 현재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입니다. 국공립 중학교의 경우 작년('11년)까지 수업료는 무상이며, 학교운영지원비만 납부하였습니다. 최근('12년)부터 지역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도 무상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12년 6월)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무상인 지역과 유상인 지역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7. 9. [학생복지과]

- 먼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우리 부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이후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전체 학생 지원을 목표로 각 시·도교육청마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12년 6월 현재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13개 시·도입니다.(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2년 9월 현재 전국 모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중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무상지원

질의

- 행안부 공무원 성과급여포털에 공지 된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교육청 부담일 경우 무상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에서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학부모 부담인 학교가 따로 있는건지 명확한 구분이 없어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3. [학생복지과]

- 중학교 학교운영비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12년 4월 현재 서울, 인천, 충북 지역은 아직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 '12년 9월 현재 전국 모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중

초·중 통합관련 문의

질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 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라 함은 현재 당해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만을 의미하는 의사인지 아니면 학부모를 포함한 동문 및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4. [학생복지과]

- 먼저 학교 통합운영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지역주민이라 함은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문화가정 대학특례정책

질의

- 다문화가정도 똑같이 한국인이고 특별하게 열등하거나 불쌍한 가정이 아닌데 이렇게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개별성만 부각시키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미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2. [학생복지과]

-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정의 대학 특례 등의 사항을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시기에 따라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농어촌특례’, ‘재외국민특례’와 같이 그 전형의 지원자격, 대상, 전형방법 등을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전형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검정고시 응시여부

질의

- 중국 조선족이(국적은 중국) 중학교과정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9. [학생복지과]

- 외국인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올려주셨습니다.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조선족의 경우 6년제 초등학교와 3년제 중학교 졸업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졸업증명서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경유하여 해당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에 검정고시 일정에 맞추어 응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국내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짐을 안내해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지자체 지원

질의

- 저희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이 안되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군이 도서관법 제27조 1항 및 제29조 1항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의 공공도서관 설립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창의인성교육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제1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해당 지자체에서 교부금을 보조하려는 대상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본 건에 있어서는 동 규정의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법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기부 정보 사이트 개설 및 교과서 집필진 신청 방법 개선 요청

질의

- 교육기부자가 기부하는 내용을 교육기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알 수 있도록 교육기부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국가가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과서 집필진을 그룹(20-40명)별로 모집하지 말고, 개별적 신청으로 모집하여야 유능한 개인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7. [창의인성교육과]

- 교육기부 정보 사이트 개설 - 우리부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기부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이트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12년초에 개통할 예정이며, 그 전에는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서 집필진 신청방법 개선(관련부서 답변 : 교육과정과 김형철, 2100-6473)초등 과학, 수학의 경우 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합니다. 그런 이유로 집필진도 개별 공모 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수중학교 등록금 지원

질의

-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특수목적중학교의 등록금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0. [창의인성교육과]

-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교과부내 관계자 두분과 상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각종학교(정규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학생선발 전형시, 등록금 일체를 학부모 자비 부담으로 기안내되어 운영 됩니다. 국공립학교가 아니어서 국고 지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 제안하신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문계 고교 수업료

질의

- 2011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 무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4. [직업교육지원과]

- 특성화고 장학금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마이스터고 재학생, 법정면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법정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차상위계층자녀(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중임), 공무원 학비지원, 직장의 학비지원, 외부장학금 등이 외부에서 지원을 하여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문계특별전형**질의**

- 전문계고 특별전형 폐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5. [직업교육지원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진학률 71%) 최근 중등 직업교육을 취업중심학교로 전환·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및 학교의 선진화, 체제화, 정예화,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요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채용협약을 요청하여 꾸준히 채용협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는 교육기관을 설립목적에 맞게 육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도 주요 기업에 취업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동일계 전형의 폐지는 이와 관련하여, 취업이후 학생의 경력개발 및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조치로서, 우리부는 이런 학생이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과 대학 수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교 계열간 교차 이수**질의**

- 농업계열과 공업계열이 있는 특성화고입니다. 통합형고등학교에서 특정시기에 일정한 비



을내에서 동일한 계열간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타 계열간 교차 이수는 접해 보지 못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재 계열별로 분리된 교육과정에서 계열간 교차이수를 운영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7. [직업교육지원과]

- 민원인의 학교처럼 한 특성화고 내에서 여러 계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한 특성화고가 한 계열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열의 전문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계열에서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가져다 편성하더라도 필수과목은 본 계열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계열간 교차이수는 다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3009-41호)에 근거하는 것이며 교차이수 방법은 특성화고 다른 계열의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3009-41호)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마)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①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 재학생 진학

질의

- 마이스터고 방침은 선취업후에 진학인걸로 아는데 혹시나 부모나 학생이 원할 경우 취업 대신 진학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3. [직업교육지원과]

- 마이스터고교는 취업 100%를 목표로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재 등 모두 취업을 위해 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인적성검사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미성숙된 학생인지라, 진로를 결정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이스터고교는 취업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재설계되어, 일반계고, 타 특성화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교 졸업자 전원을 취업 100%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대학을 전혀 진학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3학년 6학기 내내 취업을 전제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을 학생이 참을 수 있을 런지 그 부분도 학생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부는 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 후 취업경력으로(수능점수 없이) 대학에 입학(정원외) 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도입하였고, 2012학년도 현재 중앙대, 건국대등 23교가 시행하고 2013학년도는 고려대 등 주요사립대 및 국립대학으로 40여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취업하면 대학으로 가는 길이 전면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즉 “후진학” 정책이 많이 있으므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학생들과 약간 달라, 기피할 수 있으나, 저희가 만나보는 현장의 CEO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다른 친구들 보다 10여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봉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취업과 후진학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해당학교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 등과 상의하여 진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 생 건 강 안 전

● 교실의 환기 기준

질의

- 건물내의 커다란 교실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작은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작은방의 환기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9.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쾌적한 교사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기의 주 목적은 교사안에서의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귀 학교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그 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하므로,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질의

- 기 운영중인 학교의 시설 확장으로 부지 증가(10% 이상)가 발생할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5.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학교와 연계하여 추가 용지를 확보할 경우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용지 확장에 따른 정화구역이 변화되는 사항은 사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중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 사전 이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 조건부 적합 판정

질의

- 교육환경평가 결과 기존 유해업소를 없애는 조건으로 “적합”을 받아서, 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을 거의 다 없앴으나, 2년 가까이 경과된 현재 몇개 업소를 아직 없애지 못해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평가 “적합”결정이 계속 유효한 것이지요?
- 교육환경평가 “적합”을 받았고, 2년이 지난 현재는 정화구역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업소(없애지 못한 업소)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교육환경평가 결과에서 기존 유해업소를 없애는 조건으로 “적합”을 받았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없애지 못한 현재의 상태에서, 심의가 가능하다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제”되면 그 기존 업소는 현재 시점에서는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 게 아닌지요?
- 또한, 심의가 가능하다면 이미 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니,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금지”되면 불법업소로 조치해도 되는 게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6. [학생건강총괄과]

-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 선정 후 실시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교육감이 학교용지의 적합여부를 통보할 때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는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용지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학교용지선정자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부적합사유에 대한 대안이나 조건에 대한 반영여부를 교육감에게 제출했을 텐데 이의 준수 여부 또한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교육감이 제시한 정화구역예정지내 금

지행위 및 시설의 이전폐쇄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이는 당초 교육환경평가시적합여부를 통보했던 적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과거 시점과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심의결과 금지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시설을 불법업소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학교용지 선정자가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이전/폐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학교 석면 조사 현황

질의

- 2011년 4월부터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미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16.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석면 전수조사는 ‘학교석면관리종합대책’(’08. 9월)에 따라 ’08. 9월부터 ’09. 12월까지 학교건축물내 석면함유(의심)자재의 위치, 파손부위 등을 조사한 후, 개별학교별 석면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12. 4월 시행 예정인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학교를 석면조사 대상 시설로 규정하면서, 기 조사를 마친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인정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개별학교별 석면정보는 우리부에서는 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확인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지역의 학교석면 정보는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 석면 처리 일정

질의

-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 석면이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보다도 우선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학생건강총괄과]

- 대부분의 학교는 석면사용이 많았던 90년대 이전에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약 85% 정도의 학교가 석면이 함유(의심)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석면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석면관리종합대책』('08. 9)을 수립하고, 전국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 교사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설치현황 및 해당건축자재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보수를 통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학교석면지도를 작성하여 누구든지 해당 학교의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개별학교별 전수조사결과 및 학교석면지도는 학교관계자(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 및 홍보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홍보실적이 미진하여 그간 해당학교별 학교석면 개보수 실적 및 향후 개보수 계획을 포함하여 '11. 10. 14(금)까지 추가 안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는 무석면 건축자재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까지는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설립예정지역 내 화약류 규제

질의

- 학교 설립예정지역으로 부터 100여 미터이내에 군 부대에서 설치한 박격포탄 및 개인 소총탄을 저장하는 탄약고가 있는데 이것을 총포 화약류로 하여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9.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내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내 탄약고의 경우 총포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들에 대한 적용기준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시 군부대 등 해당 시설의 특성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보건교사 업무 지침

질의

- 학교보건법상에 학생의 응급처치와 보건교육을 위해서 보건교사를 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시설 업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교과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학생건강총괄과]

- 우리부에서는 매년 학교보건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교환경분야의 범위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일선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또한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서 기안자 및 담당부서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담당 업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현실적으로 분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문서 기안자 및 담당부서에 따라 담당 업무가 정해지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법 상의 축산물 해석 요청

질의

- 법안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3항에 따라 HACCP기준 적용 작업장 또는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로 한다고 돼 있는데, HACCP 지정작업장(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이 아닌 업체 축산물 판매만 신고가 된 업체가 학교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지요? 학교급식에 축산물 품목에서 가금류(닭, 오리)를 임의 분리해서 축산물 판매만 신고된 업체가 납품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4. [학생건강총괄과]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육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것이 원칙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된 업소를 통해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토토 정화구역내 개설 문의

질의

- “스포츠토토” 투표권 판매업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인 “사행 행위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주변의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동 구역내에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장 또한 금지시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이법에 의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스포츠토토”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발행되는 복권이라면 사행행위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 성교육 등 실시

질의

- 10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 인성교육 등을 지금보다 철저히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4. [학생건강총괄과]

-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에 대비하고자, 우리부에서는 '10년 초등학생용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위학교에 배포하였으며, '11년에는 중학생용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봉사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

질의

- 아이가 학교 점심시간에 평소보다 많은 운동을 하고 수업시작 중 치자마자 급히 교실로 뛰어 올라가 5교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교실 의자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였는데 학교 안전공제 위원회 에서는 학교하고 인과 관계가 없다며 학교안전공제 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보상을 안해준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 결과가 어떻든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5.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치료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고(돌연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최근 학교내 돌연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기왕증 또는 심장마비 등 돌연사를 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신설('12. 2. 27)하였으며, '12. 4.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자녀의 사건은 이법 시행 이전에 발생(2011. 9. 27)한 것으로, 기존 사안에는 적용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질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학생과 선생님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로 시설 설치작업 및 수리중에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귀하가 질의하신 '학교시설 설치작업 및 수리중에 발생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 복무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

질의

- 교육청과 교원 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한 행사(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상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노조 측 비전임 조합원의 복무처리 방법은?

회신

회신일 : 2011. 10. 25. [교원단체협력팀]

-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교원의 공가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라고 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는 교섭관련 협의로 볼 수 없어 공가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출장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장처리 여부는 출장 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특수학교 가산연수 호봉획정 여부

질의

- 교육대학을 졸업한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소지 교사가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호봉획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는 기산호봉을 8호봉으로, 교육대학을 졸업하였으므로 가산연수 2년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 다만,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1993. 2. 3. 이후 1급과 2급이 구분되므로 이전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특수학교 교사자격과 유·초·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의 경우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으로, 그 외에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원의 경우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으로 간주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건

질의

- 이미 표시과목 결정 승인을 받아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라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다시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 경력 인정

질의

- 교원의 대학원 경력 인정이 A교육대학원과 B교육대학원을 임용 전 경력으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대학원경력은 연구경력으로 중복이 되지 않는 한 1곳이든 2, 3곳이든 대학원을 졸업하면 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2. [교원정책과]

- 교원의 경우 임용 전 경력에 대해서는 1개는 100% 다른 1개는 80% 인정이 가능. 다만 임용 후에는 대학원 다닌 경력과 근무경력 중 근무경력이 우선하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 사설학원 강사 경력 관련

질의

-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 시 임용 전 사설학원 강사경력 환산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인 사설학원 및 사설강습소에서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

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제5류 제3호(교육문화단체 경력)에 해당되어5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관할청에 채용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표 제7유를 적용하여 3할의 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분실 재발급

질의

- 제가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유치원 정교사2급을 예전에 받은 사람은 보육교사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7. 26.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 교원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되는 자격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국외여행

질의

- 1. 방학이 아닌 징검다리 휴일 같은 하루나 이들의 평일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된 휴업일에만 국외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 1. 연가 실시 원칙에 따라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경조사)가 아닌 이상 연가(공무원의 국외여행)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평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휴업일이란 하기, 동기 방학 및 학기말 휴업일, 재량휴업일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휴업일인 경우 연가를 허가받고 공무와 국외여행은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교원의 중등정교사 2급 취득

질의

- 저는 올해 4월에 전문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 전문대학 전임강사, 조교수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중등정교사 2급을 신청 취득할 수 있다는데 이에 관해 아래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신청시기와 제출서류 2. 표시과목 : 저는 중국어 관련 학과인데 시수나 강의과목에 상관없이 2년 이상 학교근무 경력실적만 있으면 중국어가 표시과목으로 되는지요? 3. 현재는 신설학과라 강의가 없고 내년부터 학생이 들어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같이 현재 강의가 없는 시기도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3. [교원정책과]

- 1. 신청 시기는 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2년 이상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귀하의 소재지 대학의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합니다. 2. 자격발급 요건은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 3. 강의한 과목 등 해당 서류를 제출 받아 시도교육청의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자격검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근무경력만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자의 수업 범위

질의

-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자가 고1사회 외에 고2,3의 사회 선택과목(이를테면 법과 정치,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가르칠 수 있는지요. 더불어 고등학교에서 2014년도 도덕, 사회과목 폐지 시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3. [교원정책과]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24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통사회 표시과목 교사는 국민 공통기본 교과 '사회(7~10학년)'을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 교육과정 개편으로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서는 공통사회 과목이 없어지므로 국공립 교사는 중학교로 전출을 하거나 다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이동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금부터 교육대학원이나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하여 전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직이수 학생의 복수전공이수 가산점**질의**

- 06학번 대학생 들 중 사범대 및 비사범대 교직이수 학생들은 앞으로 복수전공이수에 대한 가산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4. [교원정책과]

- 예 맞습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10.15. 법률 제7223호) 제2조에 의거하여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적용이 되었고 이제는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치료교육실기교사 자격증 문의**질의**

- 치료교육실기교사 자격증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8. 22. [교원정책과]

- 치료교육실기교사는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치료 교육 실기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실기교사(재활 복지)로 간주하며, 실기교사(재활 복지)를 선발하는 시도교육청에 한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하면 실기교사로 특수학교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2개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기산호봉 관련

질의

-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진로상담부장교사가 중등 1급 정교사 사회자격증과 교도교사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을 때 기산호봉 산출근거가 되는 교사자격증은 무엇인지요, 몇 호봉이 적용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영어과 준교사로 임용되어 영어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중등학교 사회과정교사(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과 교사로 재임용되지 않는 한사회과 정교사(1급)를 기준으로 호봉을 재 확정하다 할 수 없으나, 교도교사 자격을 가지고 교도주임교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어과 준교사 기산호봉인 5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25에 의거 교도교사의 기산호봉인 9호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방형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임용방식

질의

- IT특성화 고등학교이면서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 의거한 신입교장 임용이 자격특례를 적용한 교장자격이 없는지(개방형 교장)를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의 자율학교 교장의 자격기준을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에서 초빙대상 교장의 자격기준을 “① IT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 전산과 상업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지, 또는 ②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사무 직원 중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적 이고, 성실 근면한 자(교장 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음, 학력제한 없음)”로 공모하여, 개방형 학교장으로 임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9.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2에 따른 개방형 교장의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자격기준으로 ① IT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 전산과 상업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지, 또는 ②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사무 직원 중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성실 근면한 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①의 경우 그 자격기준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만 현행 법령상 그 기관의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관련 기관을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 ②의 경우에는 현재 105조의 2에 명시된 교육기관은 학교와는 성격이 다르며, 특히 2와 같은 요건이라면 개방형 교장공모의 취지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공개전형 시험 방법

질의

- 사립학교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한 공개전형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로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9.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 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 ③ 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 ⑤ 임면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되,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6. 23.] 관련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



협 및 면접시험 등에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해져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대학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초과근무

질의

- 1. 비담임은 학생 상담을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2. 고3의 진학을 위한 학습지도를 위해 남아 있는 것이 초과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3. 교재연구나 학습 자료 제작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교사가 개인적인 업무가 수업에 관련되는 자료 발췌, 복사, 인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로 남아 있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4. 비담임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담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14. [교원정책과]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무는 담임, 비담임 구분 없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비담임 일지라도 학습지도를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일과시간 중에 수업 및 행정업무 등으로 부득이 초과근무를 통해 교재연구나 학습자료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비담임이라고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다만, 담임이든 비담임이든 초과근무 사유에 맞게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 담임 또는 비담임이 초과근무 사유에 맞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비담임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가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임 또는 비담임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허가 또는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 총 정원제와 교원 총 정원제

질의

- 공무원 총 정원제도와 교원 총 정원 제도는 전반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시행시기 공무원 총

정원제와 교원 총 정원제를 비교 했을 때 어떠한 점이 다른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3. [교원정책과]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학교 급별(유치원, 초등, 중등 및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별), 직위별(교장, 교감, 교사별) 종정원은 교과부가 관리(국가공무원을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생밀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은 배정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별, 교과별 정원을 배정 관리하고 있으므로 교과별 교원 정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겸직 허가

질의

- 공립학교 교사나 혹은 사립학교 교사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대 표를 하려면 소속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동대 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받던 혹은 사후에 받던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7.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교원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동대 표를 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영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 관련 책임소재 내지는 횡령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 공익근무 중 겸직 경력 인정

질의

- 저는 천식으로 4급 판정 받은 사범대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내년 입대예정인데, 기관장의



허락이 있으면 공익 근무 중 겸직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돈을 꼭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 후인 오후부터 밤에 일할 생각인데, 이때, 만약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법에 의거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경력이 인정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 인정 시, 동일한 기간 내에 두개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공익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학원 강사 근무를 하는 경우 두개의 경력 중 민원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1정 자격연수 점수의 개선

질의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의 반영비율 축소 관련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2. [교원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0.025로 하였으며, 2014. 1. 31기준으로 작성되는 응시대상과 순위명부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제한

질의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대상자 중 한가지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대상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6.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 [별표2] 관련 중등학교 정교사 1급 1호, 2호, 3호 기준의 정교사 자격은 현직교사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서 세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규정은 하위 규정과 지침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하위 지침으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6페이지에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과 45페이지 중간에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의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대한 검정 시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발령을 받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에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1급정교사 자격취득은 현직교원 중 15일 이상 9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에 해당하는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중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 또는 1급정교사 자격취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교사 1급의 자격검정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해당시도교육청 소속의 현직교원 중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에게 교원자격 검정 및 교원자격증을 수여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도 현직교원으로 임용되면 교육경력을 인정받아 해당소속 시도교육감에게 자격검정 신청과 정교사1급 자격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문의**질의**

- 저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사취득 후 유치원 경력 1년이 있으면 일정연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도 일정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지요? 또 신청 시 원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22. [교원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정교사(1급) 2호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1급 정교사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유치원 교사로 교육경력 1년 이상을 채우시고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교과목 인정 여부

질의

- 2002년에 유아교육과 대학을 1년 다니다 올해 다른 2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 편입하였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직과목의 경우 교과목명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 과목 인정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2002년- 교육방법 및 공학 → 현재-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2002년-교육과정 및 평가 → 현재-교육과정/교육평가로 각각 분리
- 3. 2002년-유아교사론(전공) → 현재-유사교사론(교직)번거로우시겠지만 이전 대학 이수과목을 현재 인정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6. [교원정책과]

- 2012년도 교원검정자격실무편람에도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로 학교 승인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여부는 편입한 해당 대학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의 편입여부와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 부여는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 대학장의 권한입니다.

석·박사 교원임용 제도

질의

1. 우선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의 교원(임용고시 출신)과 석박사 출신 교원이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3.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9. [교원정책과]

-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은 교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면 교사가 됩니다. 귀하께서 궁금한 점은 '제2차 과학 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중에 석·박사 출신을 교원에 임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학교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분야의 교과 내용 전문성을 갖춘 자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강사나 산학점임교사 등으로 임용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여 교사양성특별과정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원자격증을 부여 후에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법령 통과 후에 시행이 가능함으로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교권보호기구 운영 및 처리현황**질의**

- 교권보호기구 운영위원, 처리 절차와 현재 교권보호기구 운영에 따른 처리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3. [교원정책과]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육법률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어 소송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학교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교권침해 등 분쟁 시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민선교육감 이후 지방교육자치가 전면 도입되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처리 현황은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문의**질의**

- 현재 일반사회와 공통사회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이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입니다. 전문상담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일반대학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하면 전문상담2급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서울사이버대학이나 대구사이버대학 같은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학할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6. [교원정책과]

- 일반대학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하여 전문상담2급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이나 대구사이버대학같은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학 할 경우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 국외심화연수 파견자 복무관리

질의

- 국외심화연수 파견자가 본인 질병을 이유로 연수기간 중에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진료를 받고 국외연수지로 복귀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0. [교원정책과]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조항에 의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국외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 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목적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연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교사 수업 녹음 후 인터넷 게시의 불법성 여부

질의

- 교사의 수업을 다른 교사나 학생이 본인의 동의나 허가 없이 몰래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교사의 수업권 침해(교육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1. [교원정책과]

-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본사안의 경우 편파적인 수업을 한 것은 교육기본법 위반이며, 징계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감사 등을 통해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만, 본사안의 경우 공식 수업으로서 공개된 장소에 다수의 학생들에게 수업이 진행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교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욕설, 특정 정당 비방, FTA 관련 괴담 등의 편파적인 수업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교권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서 볼 여지가 큼니다.

교사 임용률 통계자료

질의

- 최소 3~5년간 전체 교사의 임용률과 대안학교 혹은 혁신학교 또는 자립형 사립고의 개체수에 대한 통계자료

회신

회신일 : 2011. 12. 8. [교원정책과]

- 1. 전체 교사임용률 ○ 초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유치원, 특수 포함) : ('09학년도) 6,410명, ('10학년도) 4,960, ('11학년도) 5,103명 ○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비교과, 특수 포함) : ('09학년도) 4,266명, ('10학년도) 3,153명, ('11학년도) 2,765명 2. 자율형 사립고 지정추이 : ('09) 25교, ('10) 26교 ('08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자립형 사립고(6개교)는 '09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어 운영) 3. 대안학교 : ('08) 2교, ('10)1교, ('11)6교 ** 혁신학교는 시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우리부에 별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사 호봉

질의

- 사범대를 졸업하고 중등2급 정교사 자격(국어)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정교사 자격 해당 과목과 무관한 전공(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 또는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었을 때 석사 학위가 호봉 승급에 반영이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10. 20. [교원정책과]

- 교원의 대학원 경력은 전공 과목과 무관하게 호봉에 산정됩니다. 다만, 대학원 경력이 타 경력과 중복되는 경우는 둘 중에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교사 호봉관련 문의

질의

- 현재 2012.3.1기준으로 현재의 호봉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998년 3.1 4년제 입학 후 2002년 학사 졸업 2002년 3. 1 입대 후 2004년 2.29 만기 전역(24개월) 2005년 3.1 사범대학 편입학, 2007년 8.24일 졸업(물리, 공통과학 복수전공) 2009년 3.1~2012.2.28 고등학교 교사 재직·동등학력(80%)를 인정하면 편입학기간(2005.3.1~2007.8.24, 5학기 30개월)을 30개월중 8개월 인정하여 24개월(2년)로 보면 8호봉+1호봉(사범대졸)+군복무기간(2년)+동등학력인정(2년)+교사재직(3년) 그러면 2012. 3.1 현재 호봉은 16호봉으로 판단되는데 귀 기관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2.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 의거 영 별표22 및 예규 별표1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영 별표 22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하고 영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호봉을 확정합니다. 단 학력과 학력 또는 경력과 학력 등 인정되는 학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만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4년제 학사취득 대학이 사범계라면 2개 이상의 사범계대학 학사라도 사범계가산연수는 1년만 추가되며, 군 경력은 공무원경력에 해당되어 10할, 동등학력의 경우 8할을 인정하되 기간이 중복되는 학력은 유리한 1개만 선택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등학력은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학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로 산정하되 조기졸업자라도 실제수학연수의 80%를 인정하므로 실제수학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호봉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영리업무 해당 여부

질의

- 첫 번째 : A라는 교사가 1인당 25만원씩 15명에서 수강료라고 명시하고 1박 2일 강의(강의 장소는 개인 연구실을 사용)를 하였고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점심식대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행위가 영리행위 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강료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참가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두 번째 : 교사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로 인한 강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것은 영리행위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강의를 10학기 이상했다던가, 여기저기 개인적인 강의를 하러다니며 강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것이니 영리행위가 아닌지요?
- 세 번째 : 출장비를 부담수령한 것이 밝혀진 후 부담 수령한 출장비를 다시 교육청에 내는 것은 자진반납인가요? 아니면 회수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7. [교원정책과]

-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영리행위의 지속성, 영리추구의 정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함. 질 애내용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1박2일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계속하였다면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교사가 대학가의 등의 공익적인 외부강의는 영리업무로 보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를 받고 강의를 하여야 합니다.
- 출장비를 부담 수령한 것이 밝혀진 후 그 출장비를 교육청에 반환한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회수가 되겠지요.

☎ 교사의 영주권 유지

질의

-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공무원도 신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저를 비롯하여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답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6. [교원정책과]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도 우리 ‘국민’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들은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이들이 국내에 재입국하여 1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 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점 및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사증 포함)을 보유한 공무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담임권의 주체가 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므로,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영주권을 보유한 공무원은 언제든지 국내거주를 포기하고 해외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용권자는 영주권자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회복하도록 인 사상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임. 인사기록카드 관리는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시,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질의

- 교사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만약 겸직이 가능하다면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

다고 나와 있는데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되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영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영리추구의 정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 대규모 임대업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저한 영리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의 주간대학원 수업 출 석시 복무

질의

- 재직 중인 교원이 주간대학원을 다니시는데 근무상황처리를 “출장”으로 하는 게 맞는지? “연가, 조퇴, 외출”로 하는 게 맞는지요?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1. 10. 21. [교원정책과]

-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 범위내에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주간대학원 학위과정이라 하더라도 수강시간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초과근무 명령 절차

질의

- 학교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자기주도학습 감독을 합니다. 이때에 초과근무를 실시하게



되는데 초과 근무 명령 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질의1. 이때에 신청과 관계없이 학교장이 내부 기안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 질의2. 초과근무를 하고 싶은 교사가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학교장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 질의3.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명령 받는 것이 절차라면, 교사가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강제로 초과근무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8.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기관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신청 자체는 수당 관련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위의 규정에 따라 근무를 명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를 명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준교사 자격 연수 대상 포함

질의

- 실기교사에서 준교사로의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육경력 5년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1년 미만의 기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 만약, 육아휴직이 교육경력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연수를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 추가 연수가 열릴 계획인가요?
-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1년까지는 호봉 및 경력 등에 100%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연수에는 포함이 안 된다 하면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9. [교원정책과]

-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중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경력 평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의 요건 중 교육경력에는 해당과목으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으로 시도교육

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 다만, 재활복지 실기교사의 준교사 자격취득 연수의 경우 자격의 특성상 자격연수를 자주 개설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유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년도에 준교사 자격연수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실기교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교사로 전직

질의

- 중등 특수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교대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들어 중등 상담교사 2정 교원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특수교사가 상담교사로 전향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담교사 2정 교원자격증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로 나가는 것이 폐지되고 ○○교대 총장 명의로 발급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4. [교원정책과]

- 교대에서 발급하는 상담교사 자격증은 교과부장관이 발급하는 정교사(2급) 자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교대 연수원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장명의로 발급하는 상담교사 자격증입니다. 상담교사 자격은 초등과정에는 없으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으로 명시되어 교사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그러므로 전직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교과 전직은 교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교육대학원 진학 후 교사자격증 발급

질의

- 일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종교 과목 중등교사2급 교원자격증이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무직인 제가 교육대학원을 국사로 전공하였을 경우 국사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발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4. [교원정책과]

- 현재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교직과목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사를 전공하고 역사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대학원의 특성상 전공을 50학점 이상 취득하기는 힘든 사항이면 입학하기도 어렵습니다.
- 역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역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관련 학과에 편입학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질의

-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을 갖추고 재교육을 받으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7.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수학교에서 현직교원으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은 후에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으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현재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기교사 자격취득 후 임용되어 위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명퇴 후 재취업

질의

- 국립 학교명퇴 후 사립학교 교정직을 수행하시면 명퇴지 받은 명퇴수당을 환급하여야 하는가요? 이 경우 사립학교 교정직을 수행하신(명퇴수당 환급한 걸로 가정)후 근무를 하시다가 또다시 명예 퇴직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재 급여)이 가능한가요? (명퇴 2회) 까지

막으로 현재 국립학교 연금이 사립학교 연금으로 이전되어 불이익이나 차이점은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법령상 명퇴 수당의 환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명예퇴직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부 세부 지침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교원 연가의 범위

질의

- 이번에 2012 여수엑스포 관람을 희망해서 아이 3명과(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5살) 엑스포 관람을 원합니다. 연가를 신청하고 아이들과 함께 엑스포를 관람하기를 신청했지만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연가를 불허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 시책에서는 엑스포를 관람하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데 교원의 경우 연가를 신청하면 관리자(교감, 교장)가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교원의 연가의 허용범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1. [교원정책과]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 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 즉, 학교장은 연가를 허가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모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교원의 엑스포 관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수업 등을 고려한다면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 평일에 자율연수 등을 신청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임용시험 장애구분모집

질의

-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구분모집을 시행하여 장애인들의 교직진출과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증 장애인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장애구분모집을 중증장애인 즉, 뇌병변이나 시각장애 1~3급의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의 임용확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하여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교사 대 입학기회 확대 등 장기적으로 장애인교원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직무, 역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 공무원의 선발방식과는 일정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정책 추진 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원 특별휴가 관련 문의

질의

- 정년 6개월 앞둔 교육공무원(2012.8월퇴직)이 병가 1개월연가1개월 특별휴가3개월-연계해서(5개월) 사용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8. [교원정책과]

- 일반병가의 경우 연60일 범위 안에서 허가는 가능하나 연속 7일 이상과 연가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며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연가를 활용한 이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 잔병병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6년 이상 재직한 경우 21일이며 전년도에 병가 미사용 및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당해 연도에 2일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 교원 호봉인 정시 교육대학원 경력 인정

질의

- 야간대학원은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대학원의 범주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 2학기를 초과하는 경력을 인정해줄 경우, 해당 대학원 경력을 인정해 주기위해 증빙자료로 학칙을 민원서류로 받아 보관하면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경력인정 위한 다른 증빙자료를 받는 방법 개정 공포된 예규의 일부 항목에 대해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9. [교원정책과]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이란 1년 2학기제(1학기 3.1~8.31, 2학기 9.1~익년2.28까지)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야간대학원이 6개월씩 1년 2학기제로 운영되지 않고 방학기간만 단기 수학하는 계절제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에 해당됩니다.
- 대학원 학위취득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호봉확정기관에서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유사경력은 경력증명기관마다 증빙서류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봉확정기관에서 최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교원경력인정범위

질의

- 저는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상담심리 석사과정 지원자입니다. 지원 자격이 교육경력3년 이상이거나 현직교원으로 되어있어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학교장 발행)를 제출하였으나 교육청 발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였습니다.
-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1항에 해당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되어있으며 교원이라 함은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병설유치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단지 교육청발행 경력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이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는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또한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교육경력이 기간제 교원과 같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경우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과 함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노조 실시 연구대회 연구실적 관련

질의

- 교원노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를 교육감이 인정하였을 경우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의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10. 20. [교원정책과]

- 교원노조 주최 연구대회는 교육공무원승진 규정에 의한 연구대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시·도 규모 연구대회 개최기관을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이라고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지방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만이 시·도규모 연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며,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수의 또는 다수의 교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원들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열람

질의

- 교사 개인이 자신이 받은 평가를 해당 교사 혼자만이 열람하여 보고 다음 수업 및 생활지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해당 교사가 모든 교사의 평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의 평가 내용을 학교장이 열람하기를 희망하여 보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사 개인의 개인 평가 내용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가 내용은 교사 개인만 또는 적어도 교과부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는 교사를 선별하기 위하는 목적 정도로 교과부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7. 27. [교원정책과]

- 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일체를 관장하는 평가주체이며, 소속 교원의 연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소속 교원의 인사권자(사립의 경우는 재단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는 학교장(사립의 경우는 재단이사장)과 개별교원에게만 통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대상자 이유 없는 배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

-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되고, 올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평가에서 학생평가 및 동료교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선생님은 분명히 대상자인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교사가 평가 점수 미달로 장기나 단기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경우와 올해 경우(만약 발생될 경우)를 구분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시범운영을 시작한 '0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 전년도까지 컨설팅 등을 통해 일부 선생님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지속적인 시범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연수 홍보 등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면 시행 첫 해인 전년도에는 시도교육규칙을 근거로 시행하였지만, 보다 내실 있는 시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11.2.28)에는 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평가대상 제외 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선생님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선생님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나,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피 평가자 입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참여**질의**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소수의 학생이 참가해도 다수의 학생이 참여한 것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그에 따른 평가 결과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현실에서 보면 “굳이” 참여를 독려할 이유는 없으며 교사 자신과 친분이 있는 몇 명만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평가 결과(점수)를 좋게 조절하여도 별 관계가 없는 이상한 현상을 조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래도 괜찮은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30. [교원정책과]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교원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을 돕고, 이를 통해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구성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의 실제적인 시행을 지원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시도교육청은 실제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단위학교는 상위 규정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성원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통해 취지와 목적을 널리 알리고,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의 시범운영과 전년도 전면시행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한 평가결과를 가져오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각종 연수나 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한 바가 있으며, 또한, 금년전국 학생들의 참여율은 78.9%로서 참여대상자 5,312,152명 중에서 4,191,5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원들의 근무시간 질의

질의

- 1.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현재 점심시간 포함 8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근거는?
2. 급식지도를 안하는 비담임 교사, 영어회화강사,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들의 근무시간은?
3. 같은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대한 점심 근무(점심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 학생관련 업무, 교사들의 협조 업무를 일체 안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8.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라 1985. 2월 당시 문교부의 교원의 근무시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해 총무처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00~17:00로 협의된 것입니다.(총무처 복무 01136-140,1885.2.6)
- 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교장, 교감 포함)에 대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급식지도는 물론 학생지도 및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학생지도 및 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지도 및 관리에 허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회회화 전담강사 교육현장 실습 면제

질의

- 영어회화 전담강사의 교육현장실습 면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4. [교원정책과]

- 영어회화 전담강사의 교육현장실습 면제에 관한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교육현장실습 실시방법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 교육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 전문 강사 포함)로 동일영역의 학교 급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회화전문강사 경력은 중등학교 영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현장실습 면제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중(산전휴직) 출산휴가 시기

질의

- 법적으로 출산일(2012.2.6)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듯 한 것 같은데, 교원의 경우 출산 전 육아휴직 중에 애기 출산이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2. 10. [교원정책과]

- 휴직과 휴가(출산휴가)는 관련 근거법령이 다르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에 따라 임신 중의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할 수 있으므로 휴직중인 경우 출산휴가를 할 수 없으며 복직 사유에 의한 복직 후에 가능합니다.

☎ 교원연수휴직에 대하여 문의

질의

- 청원휴직중 연수휴직에 관련된 교육부 훈령에 야간수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야간대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도 주간 수업이 많다보니 어렵고, 겸직의 우려도 있다고 야간수업은 제외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간에 대학원을 다니고 야간에 겸직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8. 9. [교원정책과]

-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의 수업능력향상 및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대학원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권자인 교육감이 교육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야간대학원이나 계절제 대학원은 휴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계절제나 야간수업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병행이 가능하며 휴직에 따른 정규 교사 부재로 인한 수업결손 및 기간제 교사 등의 고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교원의 경력환산율관련 문의

질의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이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 연 한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연구경력으로 10할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저수업연한이란 것이 해당 대학교 학칙에는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는 5학기로 되어있는데 경력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교육대학원 경력 2009.03.02.~2011.08.26. (2년 5월 25일)대학 조교 경력 2010.09.01.~2012.02.29. (1년 6개월)1안)교육대학원 경력을 2년으로 인정(2009.03.02.~2011.02.28.)학력과 중복되지 않는 조교경력(2011.03.01.~2012.02.29)을 인정2안)교육대학원 경력을 2년5월 25일 모두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조교경력(2011.08.27.~2012.02.29.)로 인정 관할교육청에 문의하니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 연한은 2년으로 본다. 고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8.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경력은 해당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격력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10할 인정합니다.(중복경력은 유리한 경력으로 택일) 학위취득 경력 산정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학기단위(1학기:3.1~8.31/2학기:9.1.~2.28)로 수학기간을 산정하되, 학기제를 달리하는(계절학기제, 1년 3학기제 이상 등)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경력은 2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정규1년2학기제(1학기:3.1~8.31/2학기:9.1.~2.28)인 경우와 기타 학기제인 경우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력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전담조교경력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10할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기단위 경력계산은 학력기간 계산에만 적용되는 방법으로 연구전담조교 경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타 유사경력처럼 전력 조회하여 확인된 기간을 연 열일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교원의 올림픽 출전 복무 처리

질의

-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전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출전 기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은 공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

질의

- 첫째, 교원의 육아휴직이 3월1일과 9월1일, 즉 학기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이렇게 학기제로만 허용하는 것은 “육아”라는 육아휴직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

다. 육아휴직의 필요는 수시로 발생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학기 중이어서 불가하다는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육아휴직을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둘째, 교원이 육아휴직 중 배우자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 면직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규정 또는 지침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 예정에 없던 배우자의 외국 파견시 같이 동반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 면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구요. 잘못된 또는 부당한 규정 또는 지침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관리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도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3. [교원정책과]

-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과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육아휴직의 세부적인 기준 내지 요건을 정하여 휴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기단위 휴·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후 계속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임신을 사유로 긴급히 휴직해야 할 사유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예외적인 지침은 예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중 외국에 나간다고 면직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관리 상 휴직중이더라도 외국에 나갈 경우 관할 학교 및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무와 국외여행에 따른 해당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해외여행 내지 일시적인 해외 체류를 하였다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교원의 임무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1항 내지 5항에 의거하는 교장, 교감의 임무와 교사의 임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6.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임무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의 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제1항에서 교장의 교사에 대한 교무분장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교장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소속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4항의 '법령'은 '모든 법령'을 의미하며, 다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교육 관련법령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장(학교장)이 사무의 능률적 처리, 소속 교직원 간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의 정상근무시간 문의

질의

- 첫째는 우리학교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물론 점심시간에도 전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교원정상 근무시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우리학교에서 소풍을 가서 모든 학생이 귀가지도하고 모든 교사가 같이 오후 1시30분에 모두 헤어졌습니다. 모든 교사가 헤어진 후 에 오후 3시에 세 분의 선생님이 식당에 모여서 오후3시에서 오후 7시까지 식사와 술을 먹었습니다.
- 왜냐하면 소풍 후에 동료교사와 식사와 술을 먹었는데 학교에서는 오후3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원의 법적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소풍 후에 오후 3시부터 오후5시까지 교원의 법적 근무시간인지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8. [교원정책과]

- 교원의 근무시간은 보통 9시~17시까지이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전후더라도 교재준비, 교무회의, 학생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소풍을 갔다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라면 별도의 복무에 대한 상황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

고 음주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에 이의가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대표전화 02-3704-1600)에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 평가

질의

- 금년부터 임용고시가 작년과 달리 3차 면접점수가 당락에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교육청에서 노골적인 지시는 없겠지만 심사위원들의 이심전심의 동일한 심정으로 3차 면접에 객관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관적으로 (남자교사를 선호) 평가가 진행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여성차별의 중대한 정책과오로 변질 될 수 있으니 사전 부처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30. [교원정책과]

- 임용시험의 공정한 운영에 대하여는 이미 교육청에서 충분한 인식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도 면접관 교육이나 선정 시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

질의

-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고등학교의 필수인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2. [교원정책과]

-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고등학교의 필수인 기술, 가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보·컴퓨터 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보통교과 기술 가정 교과(군)의 '정보'과목은 정보 컴퓨터 정교사 자격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 문의

질의

- 학교 여건 상 과목을 변경하여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게 되면 중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4. [교원정책과]

- 방통대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하여 졸업 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통대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하여 졸업 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중국어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중국어 자격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 중국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방통대 중어중문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서 입학하여 중국어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사범대 또는 중국어 학과 중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편입학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교육대학원 중국어 교육전공에 입학하여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의

질의

- 외국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따려고 알아보니 학사와 교육대학원이 일치하거나 연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학사를 communication을 졸업하여 다시 영문학과 학사를 따려하는데, 학사고시(독학사)로 학사를 따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야 하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에 의하면 교육대학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체육전담교사 관련 질의

질의

- 중등학교 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발령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9. [교원정책과]

-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표시과목에 따라 임용되므로 초등교사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 이는 학생의 발달수준, 학교 급별 목표 및 교과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교육대학교에서도 초등체육을 심화과정으로 전공한 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교사 자격

질의

- 보건교사와 양호교사가 같은 의미 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보건교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6. [교원정책과]

-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화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교사의 자격은 먼저 보건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각 교육청의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보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



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연수 성적 평정여부

질의

-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으로 1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시 성적을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과정연수응시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어 자격연수 성적으로 중복 또는 대체하여 평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질의

-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로 인하여 동반휴직 기간 및 증빙서류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13. [교원정책과]

- 휴직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휴직총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발생한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 발령으로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은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따라서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해외근무 확인서 내지는 회사의 발령서 등이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서류는 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 비영리사단법인대표 겸직

질의

-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9. [교원정책과]

- 공무원이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가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의 비상근 무보수 조건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직), 겸직 허가신청서와 법인정관 사본, 임원선출 내용이 들어있는 회의록 사본, 이사취임승락서 사본의 서류를 준비하여 겸직예정일 10일전에 신청합니다.
- 그러나 위에서도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소속된 임용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법인에 대한 판단 및 신청의 요령, 서류준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일**질의**

- 4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을 교육하다가 작년 2010년 8월 말 경기도 ○○시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지급되는 전년도 성과급을 못 받았습니니다.
-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니 20110년 12월 말 현재 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된다는군요. 우리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임은 2월말과 8월말 두 종류인데 2월말에 퇴임하는 하는 사람은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는데 8월말 퇴임 자는 한 푼도 지급 안 된다는 건 참으로 심히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9.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8호)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일(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말 또는 8월말에 퇴직하신 분은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아니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월말 퇴직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 부에서 임의로 지급기준일을 없애거나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2013년부터는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이 2013. 3. 1 ~ 2014. 2. 28로 변경됨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4. 2. 28로 변경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학위취득 인정

질의

- 저는 2001년에 국내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8월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영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진규정에 보면 95년 1학기에 입학한 경우에 석사학위를 2개 인정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저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7. 27. [교원정책과]

- 학위취득실적평정은 승진규정 제36조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함. 따라서 석사학위 2개를 인정하는 종전 지침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신뢰한 교육공무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2개 학위를 모두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대학원 학위과정 또는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2개 학위를 모두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되, '06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적용함.
- * 단 동일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2번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2개의 학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학위만 평정대상으로 함.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학위취득실적 평정)

질의

- 대학원 경력은 군 경력과 중복되어 호봉 추가산입은 되지 않았으며, 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을 근무 했을 때 주어지는 1급정교사 연수성적대체도 하지 않았습니다.(1급정교사 연수 이

수완료) 단순히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에서 이미 2급 정교사를 취득한 이후에 군 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이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경력(의 등급 및 종별)의 교사의 가 경력(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므로 군 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는 학위취득실적 평정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에는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하여 학위 취득실적 평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교사 임용 전에 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에 취득한 석사학위는 학위취득실적 평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연가사용**질의**

- 교육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사례)에 대해서 여쭙어 봅니다.
1. 본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방학 중에 연가를 쓰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회갑이 이라고 자식들이 회사에서 받아온 국내 휴양지 리조트 이용권이 6월말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연가를 3일 썼으면 합니다. 물론 사유는 기념일(회갑) 가족여행입니다. 연가 사용이 불가능한지요?
 2. 본인 학교에 부부교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사립학교 교원인데 모범교원으로 선발되어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부상이 나왔습니다. 시기는 10월 중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학기 중이어서 남편만 출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인 교사가 연가를 사용하여 남편과 함께 출국하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1. [교원정책과]

1.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학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부모생신일, 부모기일, 본인 생일 등)에 학기 중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를 하는 경우에도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의 경우에도 교사들에게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보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



는 상황에서 주3일 연가는 교사들에게 설득력이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교사들의 유사한 연가신청에 대해서도 거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결국, 복무감독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지만, 교원 개인과 학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여부와 실시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사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연가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만, 학기 중 학교 수업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질의

- 질문1. 아프리카 학제와 우리나라 학제가 달라서 첫째아이로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질문2. 첫째아이가 2004년 1월 25일생인데 휴직신청을 2012.03.01~2013.2.28까지 하면, 2013년 2월 달에는 만9세가 되는데, 휴직기간을 2013년 2월 달을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아이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2013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첫째아이로 휴직을 새롭게 신청(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하려는데 가능한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26. [교원정책과]

-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이므로 연령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1월24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만8세 이하의 의미가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로 하여 2월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제가 맞지 않다면 연령으로 따져 그해 2월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질의

- 질의1 <현행> 2.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

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안> 2.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임용은 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여기서 질문>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말이 빠졌는데 그럼 교육부에서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을 정해주신다는 건지요? 그리고 공개경쟁시험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한다는 건지요?

- 질의2 <신설> 3. 제2호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기본소양에 관한 평가와 역량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소양평가는 객관식 필기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기관에 위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럼 위탁하지 않고 해당교육청에서 자체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체 실시한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문직 시험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1.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개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 장학사, 연구사 최초 전직임용 관련 전형기준,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내용이 빠져 교과부가 정해 주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신설된 제3호, 제4호, 제6호에 교과부 차원에서 정한 전형기준, 전형방법, 전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7호에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평가의 일부 및 전부를 소속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 관련 질의에 대해 ⇒ 기본적으로 전문직 시험주관은 시도교육청이며, 기본소양평가, 역량평가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실시할 경우 현재와 차이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객관식 필기시험전형을 실시하는데 비해 개정된 내용은 1차 전형에는 논술형 평가, 정책보고서 등의 소양평가와 2차 전형에서는 역량평가(심층 면접 등)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형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내용 문의

질의

1.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전 직등의 제한) 1항 3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중 징계



처분에 불문(경고)도 해당되는지요?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전 직등의 제한) 1항 5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1. 27.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2제1항 제5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전직 등의 제한)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시행규칙

질의

- 저는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2. [교원정책과]

- 동 시험규칙에서 규정한 가산점의 경우에는 1차 합격자 결정에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가산점은 현행대로 인정됩니다.

● 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시 연구점수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점수

질의

- 교육공무원이 타시도로 전출시 근무하던 시도에서 획득한 연구점수(시도대회)와 시범학교 운영점수는 전출한 타시 도에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 1. 연구대회 규모도 전국대회와 시도 대회가 있는데 같이 적용하는지?
- 2. 전국대회의 예선대회격인 시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도 시도대회로 같이 적용하는지.
- 3. 시범학교 운영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과 시도대회 지정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4. 타시도 파견의 경우 파견지에서 획득한 연구점수 및 가산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7. [교원정책과]

- 연구대회 입상실적평정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시도규모의 연구대회는 시도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말합니다.
-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의 전 입전 해당 시도교육감이 수여한 연구실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1항 2호와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전입한 시도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를 적용하여 연구실적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는 가산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전 시도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으로 시도교육청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지에서 획득한 연구점수와 가산점 적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인사관리)관련 문의

질의

-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임용 후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임용 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한 호봉을 승급시켜주는데 임용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아니라고 합



니다. 문의를 했을 때 규정에 따라 교사경력과 대학원경력이 동시에 인정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투자하여 대학원을 다녔는데 임용전 경력은 인정이 되고 임용 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교사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6. [교원정책과]

- 중복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동규산 별표 22 비고 3에 의거 경력과 경력, 학력과 경력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에 대하여만 호봉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학위취득은 재직기간과 학위취득경력이 중복되어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또한 임용 전 석사학위 취득 시에도 학위취득경력이 타경력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경력만 산입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석사) 문의**질의**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석사는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최저 수업연한'이라는 것은 보통,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수업연한을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기졸업 가능한 연한을 뜻하는 것인가요? 교육대학원 5학기제를 졸업하면 법이 바뀌어서 2년 인정에서 2년 6개월 모두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2.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 정해진 "수업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업연한은 조기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조기졸업자의 경우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대학원이 1년 정규 2학기제(1학기 : 3.1~8.31, 2학기:9.1~익년 2.28)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계절학기제처럼 학기제를 달리하는 경우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되오니, 해당 대학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경력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어느 때 적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휴업일 외에 정기고사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의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기 중 수업 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의 연수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학생들은 협의의 교과수업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상담 등 교사의 인성교육지도가 항상 필요하며, 이 역시 수업의 일환임),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가’ 경력

질의

- 교육전문직 시험전형을 신청했는데 임용전 어린이집교사 경력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경력은 제9조 ‘가’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3.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관련 교사의 가 경력은 교육경력 중에 각 급 학교(유치원 포함) 교장, 교감, 교사 경력 교육전문직 경력 병역법에 의한 징정 경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에 해당은 되나, 승진규정상의 가 경력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교육경력’인정에 따라 교원자격 관련, 승진 관련, 보수지급을 위한 호봉확정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의 ‘교육경력’ 중 ‘가경력’은 각 급 학교(유치원 포함)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포함한 학교는 기관의 공신력 등



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당연 퇴직의 차이점

질의

- <질의 1> 당연 퇴직 사유 발생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에 당연 퇴직을 시킬 경우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당연 퇴직을 시키고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 <질의 2> 징계위원회의 파면, 해임의 중징계 의결과 당연 퇴직은 행정적 업무결과 처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6.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며, 이 경우 퇴직하게 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파면, 해임과 당연 퇴직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업무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질의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회신

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 편·입학하여 동일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산업체 현장실습의 범위

질의

- 산업체 현장실습에서 산업체의 범위는 무엇이며, 대학 입학 이전 전공기술 분야 해당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업계 표시과목의 무시시험검정합격 요건인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대학 입학 이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양성과정에 들어오기 전의 경력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실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교사자격 취득 관련

질의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검정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시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대학원의 경력인정여부

질의

- 일반대학을 나와 교육대학원을 수료하여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등교사에 초임 발령이 교육대학원을 나왔기에 가산 년 수 1년을 더해 호봉을 받았는데, 중등교사 임용 전에 시간강사 경력을 합산받기 위해 호봉 재 확정을 하려고 하니 비사범계를 나와 가산 년 수 1년을 준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가산 년 수 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9. [교원정책과]

- 교원의 호봉에 있어 사범계 가산 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인정됩니다. 이는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직과정의 변동 입학정원 감소 관련

질의

- 2년제로 운영하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가 3년제로 되면서 교직과정의 변동이 있고 입학정원이 감소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입학정원 변경에 대하여 재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 때 학제 변경을 함께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의 결원 발생 관련

질의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이 완료된 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선발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교원정책과]

- 재적에 의한 결원발생시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완료 전까지는 추가 선발이 가능하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최초 선발이 승인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추가 선발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직 복수전공 자격기준

질의

-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졸업하였고 영어교육 부전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어교육 부전공 자격기준으로는 영어교과로 기간제 교사 자리에 임용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4. [교원정책과]

- 교직 복수전공 자격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부전공 자격기준으로는 영어교과 기간제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결정사항입니다.
- 또한, 영어 부전공 자격을 가지고 현직교원에 영어교과로 임용되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직경력인정에 관련하여

질의

-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의 교직경력을 무자격으로 본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무자격교사에게 교육받는 꼴이 됩니다. 이점도 남득이 안 되지만 이 지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초등영어강사 및 초등스포츠강사가 활동 중입니다. 이강사들 또한 대부분 중등교사자격증으로 초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 강사들의 교직경력에 중등임용 합격 시 100%로 인정한다고 강사 모집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 한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속히 회의를 거쳐 시도 교육청에 새로운 교직경력인정지침을 내려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5. [교원정책과]

-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해당 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의 경력을 인정하는 교원의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호봉 업무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민원인의 의견처럼 인정해야 한다



는 의견과 자격이 맞지 않는 경력까지 인정해주면 실제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관련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초중등 교육 및 호봉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중등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력은 무자격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중등교원임용 가산점

질의

- 금번 2012년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본인의 부친께서 2011년 10월 1일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셨는데 금번 임용고사에서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2. [교원정책과]

- 해당 시험의 공고에 따라 가산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인정범위가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문에서 지정한 기간 이후에 등록이 되었다면 이번 시험의 가산점 부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를 제출하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충실한 안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교과목 교원양성 문의

질의

- 국공립중등학교에서 신규 교과목을 지정하여 2013년부터 운영된다고 가정을 했을 시, 신규 교과목은 사범대와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상황일 때 교원 수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7. [교원정책과]

-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 상에 기존의 지도할 수 있는 표시과목 교사가 없을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 중등교원 재교육(복수전공, 부전공 자격)을 통해 신규 교과목 교원으로 전환하면서 사범대학,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의 양성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표시과목 개설을 통하여 대상 교사자격을 배출하게 될 것을 예상됩니다.

1급 정교사 자격점수 대체방법

질의

- 초등교사로 1급 정교사 자격점수가 80점대로 좋지 않아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내년 2월에 취득합니다.
- 이 경우 A학점 이상일 경우 1정 자격 점수를 90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 성적은 A학점 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B학점 이상 = 만점의 85퍼센트 C학점 이상 = 만점의 80퍼센트로 평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A학점 이상이면 자격연수 성적은 90점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대학원석사학위로 1정 자격점수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시 학점이 A학점 이상일 경우 90점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질의

- 저는 올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예정중인 학생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여 상담교육 2급 자격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위는 주어지지만 자격증취득은 안 된다 해서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만학의 꿈을 접기가 아쉬워서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1.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현직교원의 경우와 비현직 교원으로 나누워집니다.



- 비현직 교원들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을 통하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본인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수학교 교사 비교과 해당 이유

질의

- 특수학교 교사 주당 수업을 17시간 이상 하고 있는데 왜 특수교사가 수업도 안하는 사서교사와 영양교사와 같은 비교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교사는 정교사로 교과교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가에 따라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사인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는 교과교사입니다.

● 자격연수 개설 기관 등

질의

- 사서교사 1급 자격연수가 있는데, 현재 초등교사의 별도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급 자격연수를 갈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관에 개설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본인이 신청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 이 경우 대학원 졸업을 통해 자격을 받았으나(2급이겠지요?) 현장에서 별도의 상담교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연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 [교원정책과]

- 사서교사 1급자격연수의 경우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1급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참고)
- 1급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과정은 2010년 이후로 개설되고 있지 않으며, 개설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학원에서의 자격연수과정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외여행 NEIL 기재

질의

- 교육공무원이 방학 때 해외연수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NEIL 상에는 어떠한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9. [교원정책과]

- 교원의 공무와 국외여행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을 말함)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학 중의 교원의 연가를 활용한 공무외국외 여행은 연가에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이 경우 본인의 휴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국외자율 연수를 위한 공무외국외 여행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란에 기재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간 연금 산정기간 인정

질의

- 저는 한-독 국가 간 계약으로 파독 광부로 3년간 근무했고 그 후 공장에서 3년 근무한 후 대학에서 기계공학 Dr.학위를 마치고 1997년부터 국내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로 근무한 기간 3년을 사학연금 기간에 산정이 안 된다고 사학연금 공단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 광부로 일한 3년은 국가 간의 계약이었던 만큼 공무원 연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고, 이에 준



하는 사학연금에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7. 3. [교원정책과]

- 사학연금의 재직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의거 교직원(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명 보고된 교원 및 동법 제70조의2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에 의거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은 동 재직기간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국가 간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또는 군인연금)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의 근무연한

질의

- 기간제 교원의 한 직장에서의 근무연한에 대해 지금 현재 일 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총 4년 범위 안에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근무연한이 폐지된 곳도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3. [교원정책과]

- 법제처 법령해석(10-0490)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으로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의 이유를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일부사항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임용기간은 1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동법에서 규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 무기전환직 채용

질의

- 현재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 인맥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채용되는 게 태반입니다.
- 또한, 아무런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아는 사람의 인맥으로 기간제 교사 한다면, 그 사람이 무기 계약직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30. [교원정책과]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 중 제6호는 기간제 교원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용기간은 1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중등교사 임용 절차

질의

- 중등교원임용이 되기 위한 절차?

회신

회신일 : 2011. 11. 8. [교원정책과]

-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졸업 후 사범대학에 편입학하는 방법과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중등학교 임용시험 경쟁률은 현재 20:1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교육대학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임용된 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한 중등학교 자격을 가지고 현직에서 중등학교 임용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대학원 수료 후 육아휴직중 논문발표

질의

- 교원대 교육과전을 올 2월에 마치고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파견기간에 논문 준비가 미숙하여 발표하지 못하였는데 가을학기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인 2013년 2월에 졸업이 되는데요, 대학원 졸업 후 연구점수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또 하나는 육아휴직 중 대학원 졸업을 하면 호봉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5. [교원정책과]

- 휴직기간에는 휴직사유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휴직사유에 맞으면서 적법하게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평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연구실적 평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 교원정책과 이상훈 사무관, 02-2100-6483)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육아휴직중 대학원 졸업과 호봉 관련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근무경력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직처분 취소시 보수지급 관련

질의

-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취소 처분되어 복직하였으나 당시 학교가 폐교되어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된 경우 보수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 교사의 보수는 재단의 정관에 따라 지급하므로 국가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예퇴직 취소방법

질의

-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인데 아직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또한 퇴직 후 학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안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위에 부서에 전달되기 전에 미리 취소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 이 서류는 퇴직과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임의대로 상위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취소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이것을 임의대로 상위 부서에 전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에 대한 서류가 효력이 없다면 명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 이 경우에 명예퇴직 신청을 취소할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명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8. 21. [교원정책과]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대상자의 사유(징계, 기소, 수사, 퇴직예정 등)가 발생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는 위 규정과는 약간 다르나 본인이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 경우 명예퇴직일까지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 하는 소속기관에 명예퇴직일전까지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보안각서는 퇴직 후에 공무원 재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안각서 제출과 명예퇴직대상자 확정과는 별개입니다.

중등 사립과원 복수전공 자격연수

질의

-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따른 중등 사립과원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8340(2011. 9. 27.)]그래서 자격전환 희망과목을 학교 실정에 맞게 신청하였으나 일부 과목이 희망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과목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 희망자가 적어도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일 경우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11. 11. [교원정책과]

- 현재 부전공 자격연수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요자의 요구로 복수전공 자격연수로 전환하여 매년 실시될 예정입니다. 매년 시도별로 연수대상자를 조사해서 복수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올해 개설이 안 되지만 내년에 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점을 참고하시어 선생님의 적성에 맞는 교과와 자격연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수전공자격 연수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방통대나 사이버대의 교원 경력 인정

질의

- 갑이라는 사람이 사범대를 졸업한 후에 4년제 대학에 3학년 편입해서 졸업한 경우에 2년의 8할이 교원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 대에 편입을 해서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하게 경력이 인정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교원의 호봉에 있어 같은 수준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편입으로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편입으로 근무한 경력 2년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동등한 학위라는 점에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도 예외라 할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80%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0%인정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방통대나 사이버대학 수학 기간 중 다른 경력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사로 근무하며 사이버대학을 수학한 경우)에는 경력의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질의

1. 교원이 평일 08:30~16:30 근무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인정하여 월간 출근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정액분 계산이 반영이 가능한지?
 - 1-1. 교원이 평일 08:30~16:30까지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 명령에 의해 16:30~20:3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초과분 지급시간수의 계산 방법으로 1시간을 공제하여 3시간 인정하는 게 맞는지?
휴일근무로 적용하여 1시간 공제 없이 4시간 인정하는 게 맞는지?
2. 근무지외 연수(자율연수) 중인 교원이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정상 근무시간 이후 16:30에 출근하여 20:30에 퇴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미충족)
 - 2-1. 근무지외 연수(자율연수) 중인 교원이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하여 13:00에 출근하여



16:30에 퇴근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지급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미충족)

3. 2번의 초과분 지급이 가능하다면 초과분 지급시간수의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1시간 공제)와 휴무토요일 또는 휴일근무(1시간 공제 없음) 중 어떤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4. 17. [교원정책과]

-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2호)에 의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정상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방학 중 출근하여 정상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실적분 지급이 가능하며, 정상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뿐 10시간분의 지급이 가능합니다.(15일미만은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함)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시간은 1일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질의

- 학부 전공과 관련 없는 타전 공으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 교원대학원을 자퇴하였습니다. 자퇴 중에 위의 자퇴 교육대학원 전공과 관련한 학과를 사이버대학 편입을 통해 졸업하였고 이제 대학원에 대한 여유가 생겨 자퇴한 교육대학원에 재입학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저와 같이 교육대학원 입학 시에는 교원자격증 취득대상자가 아니다가 교육대학원 자퇴 중에 자퇴한 교육대학원과 관련한 전공을 사이버대학에서 졸업(해당 전공학점 38학점 넘음)하게 된 경우 교육대학원에 재입학 후 모든 과정을 마친다면 교원자격증취득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6. [교원정책과]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고시)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 재학 중 동 대학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학점(28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교육대학원 자퇴를 한 후에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재입학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재입학을 통해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신 입학 을 통해서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절학기 교육대학원 수료지 자격증 발급

질의

- 현재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산하 계절학기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지 특수교사 교원 2급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과연 어떻게 일반대학원도 아니고 계절학기 교육대학원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를 전공한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특수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4. [교원정책과]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과부 고시)”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 ② 대학 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 등의 무시험 검정요건을 갖추면 특수학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본인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2급) 국어 →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에 입학할 때 표시과목 국어 38학점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에서 국어전공관련 12학점 이상 취득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위 예시의 경우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을 취득할 때 표시과목 국어 38학점



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초등교사자격증 발급 여부

질의

- 저는 중등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합니다. 초등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교대 교육대학원에 문의하니 지원 가능하지만 석사 이후 초등교사자격증은 발급 안 된다고 하더군요.
- 향후 초등교사자격증(영어)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세부 화시켜서 발급은 안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8. [교원정책과]

- 교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자격증 취득이 안 됩니다. 교대 교육대학원은 재교육기관으로 초등교사자격은 발급되지 않으며, 초등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대학을 졸업해야만 합니다.
- 귀하의 의견과 같이 초등교육도 교과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교육대학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과목별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재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정교사2급 자격증

질의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를 수료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병설유치원 종일반 기간제 교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종일반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종일반 보조원으로 지칭되어 있습니다)유아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 [교원정책과]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 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유치원 정교사 자격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실습기간

질의

- 유치원 교육 실습할 때 토요일도 근무를 하나요?
- 4주간이라고 하는데, 실습해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 [교원정책과]

○ 교육실습

- 1)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 (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만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교육실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실기교사 자격증

질의

- 저는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등특수교육의 경우 표시과목을 하나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체육을 표시과목으로 선택하여 사회체육학부의 전공 43학점과 체육교직 4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물론 8월 졸업과 동시에 중등특수2급정 교사(체육)자격증은 나왔고요)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회체육학부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체육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8. [교원정책과]

- 체육실기교사 취득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승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기교사 자격취득은 현재 전문대학 및 일부 4년제 대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체육실기교사 양성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사범계열 미 이수한 교직과목 이수 후 교사자격증 취득 방법

질의

- 비사범계열 미 이수한 교직과목을 다시 신청한 후 교사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5.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거하여 졸업 후에 미이수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졸업 유예를 통해서 또는 계절학기 지구과학과목 개설 요청을 통해서 졸업하기 전에 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 교원자격 취득 방법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귀하께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교육

실습 포함)은 인정받고 나머지 과목 이수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교육경력 인정

질의

- 사립유치원 원장 교원자격증을 받을 때 교육경력에 따라 부관이 설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 자격 신청을 하고 나서 취소가 됐을 때 그 근무기간이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부관설정 후,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부관을 이행하지 못하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유치원 원장 인정 자격으로 유치원에서 근무한 2년 7개월의 근무 경력을 이후 부관 설정 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원장 인정 자격으로 유치원에서 근무한 2년 7개월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경력 인정문제

질의

- 저는 1982. 3. 17. ~ 2002. 2. 28.까지 사립학교.(현)○○고등학교(경남 진주시 소재)에 근무하다가 2002. 3. 1.일자로 공립학교. ○○고로 발령을 받아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직 시 12년간 부장교사(1987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와 경남 교육감표창(1994년 5월 15일)을 수상했습니다.
- 하지만 사립재단에서 경남도 교육청에 교사 채용보고를 하지 않아 그동안 사립학교 경력 19년이 호봉은 인정되지만 경력에는 인정되지 않아 원로교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도교육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 정식교사로 근무한 본인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



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22의 교원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유아교육법 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관할청에 임용보고 되어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받으셨다면 교원경력이 아닌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22 제5유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5할을 적용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관할청에 미 보고된 사립학교 근무경력은 해당 관할청에서 사립학교교원 임용대장에 추가 등재하여 주지 않는 한 교원경력이나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에 대한 질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 등의 법령과 관계없이 사립 대학교 교수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임기2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1회당 출석수당 5만원씩을 수령하고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8. 4.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64조에 의형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이사장 또는 위임받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질의

1.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에 반하여 중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재직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지?

2. 위와 같이 재직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평생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은?

회신

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1.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이란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은 사립 자율학교에 공모로 하는 경우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제1항을 준용하라는 것이지, 공립 공모교장처럼 재직횟수를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1회 한하여 중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에서 계속 교장을 할 순 없습니다.

공통사회 자격소지자

질의

- 요즈음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사람입니다.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질문1) 저는 부전공으로 공통사회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사립고교에서 1학년 공통사회(한국지리와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2014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2) 공통사회 자격으로 2학년이나 3학년 한국지리 또는 일반사회 파트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요?

3) 공통사회 자격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어 공통사회 자격을 일반사회나 한국지리로 갱신가능한지요?)

4) 만일 상급 학년을 가르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2. [교원정책과]

- 2009 개정 교육과 정은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저는 부전공으로 공통사회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사립고교에서 1학년 공통사회(한국지리와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2014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다른 과목으로 자격전환을 하지 않으면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상치교사)가 됩니다.

2) 공통사회 자격으로 2학년이나 3학년 한국지리 또는 일반사회 파트를 가르칠 수 있는 것 인지요?

답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의거하여 귀하는 공통사회 과목 담당교사이므로 한국지리 또는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칠 경우에는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상치교사)가 됩니다.

3) 공통사회 자격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어 공통사회 자격을 일반사회나 한국지리로 갱신가능한지요?)

답변) 현재 우리부에서는 귀하와 같은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상치교사)를 대상으로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통하여 복수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복수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하여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만일 상급 학년을 가르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로 남게 됨으로 귀하께서도 해당 교육청에 복수자격 취득 과정을 신청하시어 복수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문의

질의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2. 29, 2011. 7. 21>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위 본문 중에서,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그

결정이나 판결의 효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고 3개월이 더 지나야만 제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어서 그 3개월 전에는 다시 같은 징계사안에 대해서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7. [교원정책과]

-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 본래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하면, 청구인의 소제기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겠지만,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 취소결정을 내립니다.
- 문제는 법원에서 본래의 징계처분을 갈음하는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징계처분의 취소를 결정하는데 있습니다.(가령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법원에서 견책 처분을 내리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권자는 다시금 판결의 취지에 따른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본 조문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대학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설치**질의**

- 대학원대학교에 석사 또는 박사과정으로 유아교육학과를 설치하였을 경우 유치원정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5. [교원정책과]

- 대학원대학교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는 유아교육학과를 설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교원 양성 정원은 교과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유치원교사가 15,000여명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수요대비 양성과다로 정책적으로 추가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사범대 재학생의 교육봉사 문의**질의**

- 졸업을 위해서 ‘교육봉사’라는 것을 60시간 채워야 된다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교육기



관에서도 그렇고 전혀 아무런 홍보도 안되 있어서 그런지 도통 감을 못 잡게네요. 국가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하면 된다고 제 모교를 알아보았더니 안 된다 하고 멘토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멘토링은 어디서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4. [교원정책과]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5항에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학습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만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 이수학점 4학점 중에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하며,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해외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로 하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합니다.
- 또한, 초기시행 단계이므로 교육봉사활동의 범위는 논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종료되었다는 답변을 교육청으로 부터 전달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질의는 02)6222-60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에서 가정교사로 전과

질의

- 정교사로 전과를 하려고 교육청에 알아보았더니 교사 자격종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과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양교사에서 가정교사로 전과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교원의 표시과목별 임용과 전과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결정사항입니다.
- 귀하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가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교육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과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원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가능여부는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후 공무상 재해 판정**질의**

- 교원(교육공무원) 한 분이 골절의 재해를 당하여 2011. 3. 21.~5. 21.까지 병가, 5. 23.~6. 10.까지 연가, 6. 13.~7. 21.까지 질병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9. 5.자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2011. 3. 20.~6. 27.까지 161일간의 기간을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복무담당관계서 일반병가와 연가는 공무상 병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 그렇다면 일반질병휴직 부분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 등재했던 발령대상 정리나 인사시스템 전산상의 처리, 급여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0. [교원정책과]

-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해 일반병가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시까지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휴직기간 중 공무상요양승인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 경과한 휴직기간을 공무상 병가기간으로 대체하되 공무상 요양승인이 공무상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및 개인의 법정연가일수(최대23일)를 경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및 법정연가를 합산한 날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교생실습

질의

- 내년에 교생실습을 해야 하는데,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교육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전공하고 있는 중등학교 급 및 전공이 일치해야 합
니다.
-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교육과정으로 교육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귀하
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으로 한 달간의 교육현장실습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박탈 관련

질의

- 2011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정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경력 2년
이 있어 2011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에서 박탈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대
상자로 선정되어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내년학기의 계획과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저
로써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됨을 올해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박탈이 아니고 유치원 정교사(1급)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지
명 취소임을 말씀드립니다.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지침)에서 1급 정교사 상위자격 취득요건은 해당 학교 급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원
정교사(2급)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은 보육시설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보육시설에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교사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에 대하여 경력인정범위 재논의 과정을 통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는 있
습니다.

성범죄 관련 교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퇴직 관련 문의

질의

- 성범죄 관련하여 교원의 임용결격 사유 및 해임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예를 들어서
 1. 성범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원은 해임 및 파면이 가능합니까?
 2. 성범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있다면 교원 임용에 아무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 (제한이 없는지 / 10년간 제한인지/ 불가능인지)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교
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
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의거 학교 등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
단할 사항입니다.



● 세종이 근무를 위한 교원 전입 예정 절차

질의

1. 교원 세종이 전입 절차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예상 전입 교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2. 부부 동반 전입 희망이 가산점은 있는지?
3. 주거를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해 준비한 아파트가 있는지?
4. 교원전입 우선순위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8. 11. [교원정책과]

- 시도 교원인사교류 권한을 가진 교육감('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 세종이 건설에 따른 시도교인 교류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지침금년 하반기에(10~11월경) 대구시교육청 주관으로 시도교인 교원인사교류 담당자 회의를 거쳐 세종이 등을 포함한 시도교인 교원 인사교류를 신청 받아 시도교인 교류업무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주거를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위해 준비한 아파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 또는 LH 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가산점 부여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4년 동안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제1기 수석교사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올해까지 4년 동안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반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시범학교에 근무하면 연0.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그런데 같은 시범 운영인데도 4년 동안 가산점이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년도 정식 법제화된 수석교사제에서는 교감, 교장, 전문직이 되려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 그동안 시범 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가 전문직이나 교감이 되려고 한다면 가산점을 주어

그동안의 노고를 보답해 주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6. [교원정책과]

- 수석교사제의 도입 목적은 교원의 자격 경로를 행정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여 ‘수업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수석교사 시범운영의 가산점 활용은 수석교사제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반영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정교사2급 요건

질의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요건을 보니 전문대 유아교육학과 졸업자로 유아교육법 22조에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 교직과정과 전공과목 학점(졸업기준)을 이수하면 졸업이 성적에 관계없이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 되어야 자격증이 주어지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요건은 유아교육법(법률 제8676호, '07. 12. 14.)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 산업대학 포함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 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구분됩니다.



실기교사자격증 신청 방법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다 해서 와봤는데 실기교사 자격증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6. [교원정책과]

- 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승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기교사 자격취득은 현재 전문대학 및 일부 4년제 대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실기교사 양성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에 양성과정이 승인되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중개정령 관련

질의

- 2007년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령관련입니다. 본인은 2007년 교육대학원 입학자입니다. 3학기 수료 후 일신상의 사유로 자퇴처리 했다가 2012년 1학기에 재입학을 허가되어 나머지 2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 저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령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008년 3월 1일자 이전 입학자이므로 예전법령에 의거하여 자격검정을 받아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2. [교원정책과]

- 귀하는 재입학에 해당되므로 '고시'에 의거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번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009학번과 동일하게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짐으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수하시길 바랍니다.[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부칙 제2조(전공 교직과목 및 성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

● 사이버대학교 특수학과 교원자격증 문의

질의

-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8월 전까지 자격증이 이수되지 않을 시에는 자격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특수교사라는 자격인정에 대해서 숙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미리 공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8월 까지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특수교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사이버대학교 특수학과는 교원양성과정인 없는 대학교로 졸업 후에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에서 관할하는 법률로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등정교사 자격증 활용 관련

질의

- 질문 1. 특수교육관련기관에서 8년차로 근무하고 있고(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전공도 심리학이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원자체가 가능한가요? 심리학 정교사 자격은 왜 활용이 안되나요?
- 질문 2. 도대체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 중등정교사 2급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특수교육관련기관에서 8년차로 근무하고 있고(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전공도 심리학이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원자체가 가능한가요? 심리학 정교사 자격은 왜 활용이 안 되나요?

[답변 1]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은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1항내용처럼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에서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비현 직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1. 1996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제2의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하도록 하고, 각각 해당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2.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1997년 이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과 2000년 이후에 설치인가를 받은 모든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반드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현직 교직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대학원에는 현직 교직원이 아닐 경우 입학이 불가합니다.

※ 현직 교직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 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을 의미함.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질문 2]도 대체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 중등정교사 2급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인가요? [답변 2]심리학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에 ‘생활·교양’ 교과영역에서 개설된 ‘심리학’ 관련 교과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목 개설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2006년 2월에 치료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자격제도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직교사는 이번 8월경에 보수교육을 듣고 실기교사자격을 자격전환 기능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러면 저처럼 근무를 하지 않는 비현직 교사는 자격전환이 어려운건가요?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치료교육)의 자격을 재활복지로 전환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연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한편 자격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귀하가 소지한 실기교사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 어린이집 교육경력이 자격연수 대상 선정 시 포함 여부

질의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12년에서 만 5세를 2013년부터는 3, 4세 모두를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자격연수 및 승진이 모두 포함이 되었던 어린이집 교육경력이 모두 포함이 되지 않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2. 6.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1에서 교사의 승진이 교육경력 인정범위는 경력등급 경력종별을 살펴보면 학교 급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지침)에서 1급 정교사 상위자격 취득요건은 해당 학교 급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은 보육시설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유치원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력은 호봉산정, 교장인정자격 요건 등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원감과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 취득 관련 전 학교 전공과목 인정 여부

질의

- 아동학전공으로 학사 졸업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유치원정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타 대학 유아교육과에 신 입학하였습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전 학교에서 취득한 전공과목이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20. [교원정책과]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교직과정이 승인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출신대학에서 해당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부해 주어야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신 입학한 대학에 문의하심이 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요건

질의

-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진로진학상담교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9. [교원정책과]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독립된 교사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중등교사 중에서 전문성과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약 600시간의 부전공자격연수를 받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대회의 종류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반영되는 연구대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6. [교원정책과]

- 연구대회로 인정하는 대회는 전국규모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가 있습니다. 전국규모 연구대회는 국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이고, 시도규모 연구대회는 시도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주체하는 교육에 관한 대회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입니다.

연구대회의 종류 및 지정 운영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반영되는 연구대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러한 연구대회는 누가 어떤 절차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8. [교원정책과]

- 연구대회로 인정하는 대회는 전국규모연구대회와 시도규모 연구대회가 있습니다. 전국규모 연구대회는 국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이고, 시도규모 연구대회는 시도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주체하는 교육에 관한 대회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입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중 교직과목 면제

질의

- 교원대학원에 입학예정인 학생입니다. 영양교사(2급)자격증 소지자인데요. 방송통신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에 입학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교직과목 전체가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교직이론과 교직소양만 면제되나요? 실습, 교육봉사도 면제가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10. [교원정책과]

- 교직과목의 면제는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가 가능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교원자격증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교직학점 인정에 있어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해당학교에서 판단하며, 또한 개설된 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또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기준이 있으므로 교원양성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육실습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습 면제 여부는 양성기관인 대학의 자율선택이므로 해당 대학에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교사에 대해

질의

- ○ ○대학교 가정학과에서 식품영양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연히 실기교사자격증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실기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현재 자격증은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복어, 제빵을 가지고 있고 노동부에서 주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7.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난에서 같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교사 자격증

질의

- 대학교 미용예술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실기교사자격증이 발급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17. [교원정책과]

- 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승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기교사 자격취득은 현재 전문대학 및 일부 4년제 대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실기교사 양성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에 양성과정이 승인되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상담교사 시험 자격기준

질의

- 전문상담교사 시험자격 기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2. [교원정책과]

- 현재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이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 모두에 해당합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퇴직급여 정정 질의

질의

- 예상퇴직급여 정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 [교원정책과]

- 사학연금의 급여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2009년도 말에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개정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고,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 종전기간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의 변동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비교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 연금을 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예상퇴직급여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관계로 향후 기준소득월액 등이 변동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과목 면제 대상

질의

- 학부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산학인턴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교직과목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1.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 무시협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으나, 2013년 입학자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은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의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교직과목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 응시 자격

질의

- 전문상담교사 특별 임용 시험 응시자격자가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2.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교직과정 이수 지침

질의

- ○○대학교 2학년에 복학하려는데 학과가 폐지되어 교직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직과



정 이수에 관한 교과부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3. [교원정책과]

- 민원인이 말씀하신 교과부의 지침은 대학마다 매년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정원조정 및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교직과정대상자를 2학년 말에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대상자는 과 교직과정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대학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자녀분 경우에는 이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과교 직과정폐지 문의는 해당학교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대에 특수교육 심화과정

질의

- 초등특수교육 전공자입니다. 정규교사는 T.O만큼 뽑아주지 않는 이 현실에서 교대에 심화 과정을 둔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 심화과정을 두게 되면 특수교육에 대한 자격증도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교대에 심화과정을 두고 자격증까지 두게 된다면 특수교육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시켜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2. 3. 6. [교원정책과]

- 교대에 개설될 특수교육과는 심화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수해도 초등특수교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기교사 자격증에 대한 건의

질의

- 일반 대학이나 국립 전문대학인 ○○대학은 무시험실기교사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무자격 실기교사 자격증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6.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후, 교사로의 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실기교사 자격 신규 허가를 더 이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기존의 허가된 인원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내용을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육대학원 교생실습 문의

질의

- 영양교육대학원 재학생입니다. 5학기차인 저는 이번학기 교생실습을 나가야되는데 교육대학원 영양교사 실습부분에 있어서 학교, 또는 전공과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및 청소년 상담 센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 보건소에서 영양사로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면제 대상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6. [교원정책과]

- 교육실습 면제와 관련하여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교육기관(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경우 실습면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에는 실습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교사경력인정

질의

1. 2009. 3. - 2010. 6. :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대학조교 2010.6 - 현재 유치원 근무 2011. 2월 일반대학원졸업 이 경우 유치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학원이나 조교에 대한 경력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봉인정시점에 대한 부분도 확인바랍니다.
2. 2008. 3. - 2009. 2. 유치원근무 2008. 9. - 2011. 2. 일반대학원다님 (졸업) 2010. 3. - 현재 유치원 근무 이 경우 유치원근무의 공백(1년)에 대한 부분을 학력인정으로 호봉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시점은 졸업시점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3. [교원정책과]

1.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 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확정 사유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동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정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확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석사학위 취득경력은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기간(휴학기간 제외)이며, 동기간과 타경력 또는 학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1개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
2. 또한 휴직중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를 취득하셨다면 타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경력에 대하여 연구경력으로 10할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수학기간이 해당대학원의 학칙에서 정한 최저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 최초 입학일 기준으로 최저수학연한만을 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장임용(부관설정)방법****질의**

- 사립유치원 대표자가 원장을 채용하려 할 때 유아교육과를 1995년도에 졸업하고 어린이집에서 2002년부터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어린이집 원장근무경력이 9년 된 사람)을 원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인 전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원장자격 중 제2호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영 [별표]의 유치원 원장에 해당하는 ‘교육경력’에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원장 자격인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기 때문에 자격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등정교사 자격증

질의

- 최근 개명을 하여 교직이수로 발급받은 중등정교사 자격증상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개명 후의 이름으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7.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서 사범계학과로 부전공 가능여부

질의

-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서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로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지요? 물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부전공으로 교원자격 발급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음)
- 다만, 학위 취득할 때 학위기에 부전공으로 유아교육을 이수했다는 게 표시되고 싶어서요. 학교규정에는 복수전공 관련내용만 있고 사범계학과로의 부전공 관련 내용은 없네요.

회신

회신일 : 2012. 3. 8. [교원정책과]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부전공을 인정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턴연구원 경력 호봉 인정 여부

질의

- 한국과학재단에서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든 경력을 호봉확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연구경력인정은 정원 내의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인턴사원(연구원)경력은 동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여부

질의

- 평정대상자가 교사인 경우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9.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경력은, 승진규정상 경력평정의 기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교사의 경우 각 급 학교 교원으로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력평정의 종별인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질의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그 구성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11.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5급 이상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다만,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징계위원 구성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인원이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용전 수료 한 대학원 졸업 후 호봉 인정 가능여부**질의**

- 저는 2008년도에 초등교사로 임용되었으며, 임용 전(2000년~2002년)에 일반 대학원에서 4학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수료만 하였을 뿐 논문을 쓰지 않아 임용 시에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하반기에 재직 중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임용 전에 다녔던 대학원 4학기를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 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확정 사유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동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력인정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석사학위취득경력에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기간(휴학기간 제외)이며, 동 기간과 타경력 또는 학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1개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



☎ 자격변동 호봉재확정 관련

질의

-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 확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징계로 인하여 호봉승급을 제한 받고 있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자격변동이 발생하여 호봉을 재 확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자격변동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 확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 재직한 잔여기간은 호봉재확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사서교사자격증

질의

- 국어와 교육학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학기를 마치면 문헌정보학사 취득과 정사서 2급이 나오는데요.
- 그럴 경우 사서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3. 28. [교원정책과]

- 사서 2급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는 자격증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4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됩니다.
- 따라서, 위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사서교사 발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교육 대학원생의 교육봉사활동

질의

- 체육 교육대학원 생입니다. 교육봉사란 이름하에 60~61시간 스포츠클럽 활동 보조교사로

나가서 해당 시간을 다 채워야 2학점을 이수하는데, 교생실습도 4주 나가는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28. [교원정책과]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 3. 2.) [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19(2008. 8. 1.)] 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 해당 고시의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로 되어 있으며,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 입자 포함) 부터는 교대, 사대, 일 반대 교육과, 일 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처럼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직이론(14학점), 교직소양(4학점), 교육실습(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을 포함하는 교직과목(총 22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대상

질의

- 자녀가 2011년도 ○○고등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30. [교원정책과]

-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학비감면과는 성격이 다른 개인의 능력에 의해 받은 장학금이니 만큼 선생님께서는 이와 관련 없이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학관의 급수체계에 대하여

질의

- 교육전문직중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6급의 대우와 그 해당 보직을 맡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학관은 1급~5급까지의 광범위한 보직을 자유로이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인사권자가 자신의 자의로 초임 장학관을 고위직에 앉힐 수도 있고, 어느 조직이든 그 체계가 명확해야 하는 법인데, 장학관이란 직책은 너무 광범위하고 대우도 모호하여 조직을 흐트러트리는 제도로 보입니다.
- 어떻게 이런 제도와 직책이 공무원 사회에 있는지 의아 합니다. 적어도 1급장학관 (고위공무원단) 2급장학관(4급 보직) 3급장학관(5급 보직) 등으로 장학관 직책을 정확히 나누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평생을 노력하여도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장학관 제도는 그저 인사권자와 가까이만 하면, 갓 장학관이 된 사람도 고위직에 올라 갈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이상한 제도로 보일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6. [교원정책과]

- 장학관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급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관의 임용은 보직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유능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교육전문직의 특성상 현재와 같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대 교원자격증 문의

질의

-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특수학교(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교직을 당연히 이수하였고요. 이 경우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학과를 편입하여 전공을 50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28. [교원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에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에서는 전공 50학점을 취득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교사의 상담심리대학원 진학

질의

-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지금 4년제 대학을 편입해서 현재 4학년입니다. 내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알아보니 상담심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교직원이나 유치원교사 3년 경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 왜 어린이집경력은 안되는지 물어보니 1급 자격증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나 올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영,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에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의 경우 어린이집 경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 건의를 하셨지만, 현재 적용되는 지침선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치원에서의 경력(3년 이상)만 인정되며, 어린이집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자격증 취득과는 별개로 학위 취득만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전문상담 순회교사 복무규정

질의

- 똑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인데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순회교사는 교원 41조 연수를 당당히 쓰고 방학 때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아니면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에 관한 복무 지도감독은 교육장에게 있으니 교육장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장이 허락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상담 순회교사



도 교육장 허락을 받아 교원 41조 연수를 써도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5. 17. [교원정책과]

- 순회교사(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교과교사 포함)가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적용받습니다.
- 다만,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순회하는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을 한다는 의미가 '복무지도 감독'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사(순회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파견교사 포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 따라 통상 '방학'에만 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와는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학'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일수'에 따라 '학기'와 '학기' 사이에 '휴업일'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은 법상 '학교'가 아니며, '학기'도 없으며 '수업일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의 '휴업일'도 없으므로 교육지원청에 속하고 복무지도감독을 받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직 이수 시 교육봉사활동

질의

- 교직이수학생입니다. 교육봉사로 60시간을 활동해야 하는데요, 교육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4. [교원정책과]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 3. 2.) [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119(2008. 8. 1.)] 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 해당 고시의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학 중인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생실습비

질의

- 사범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5월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교생실습비를 10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교생실습이 필수 과정이고 사범대는 교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실습을 위한 추가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에서 교생을 나가야 할 학교로 연결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 개인적으로 학교를 찾아봐야 하는 사범대 학생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범대가 교원양성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9.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학생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의 교원자격검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학교현장 실습비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실습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 교원자격검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교사 학교현장실습 면제 여부

질의

- 저는 현재 영양사로 국공립 어린이집 영양사로 1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영양사로 일한 지 경력이 6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근무하는 영양사만 영양교사 학교 현장실습이 면제되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은 면제 대상이 안 되어 학교 현장실습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같은 영양사 일을 하면서 초·중·고에 한하여 학교 현장 실습 면제를 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함) 또는 청소년상담기관(상담-민간기관을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는 실습 대체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나이 제한

질의

- 일만 있으면 열심히 할 각오가 있는데도 전문상담교사 응시 연령을 62세 이하로 한 것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29. [교원정책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2세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공립 교사는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도 임용이 정규교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 받으므로 62세 범위에서 채용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경력과 상담치료대학원 진학가능 여부

질의

- 유치원 교원자증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치료는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 유아를 교육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 보니 상담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려하니 유치원교사 경력 3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교육진흥청에 똑같이 의료를 했으나 어린이집경력도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원진학자격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어린이집교사들도 상담치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4. 9.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영, 보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에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의 경우 어린이집 경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 건의를 하셨지만, 현재 적용되는 지침선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치원에서의 경력(3년 이상)만 인정되며, 어린이집에서의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자격증 취득과는 별개로 학위 취득만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이 가능합니다.



전문상담교사 연수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교사는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에서 의미하는 교원은 수업을 하는 교원만을 교원으로 본다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교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 교과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만 교원이고 비교과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는 의미와 무엇이 다른지요? 전문상담교사인 저희는 교육공무원이고 교사로서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상담활동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지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상담도 교육적 활동이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교과교사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라고 적용된다면 상담교사는 '상담에 지장이 없는 한' 보건교사는 '보건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고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6. [교원정책과]



-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뿐만 아니라 상담 등도 포함)을 포괄한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41조”를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또는 교육훈련법”상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 1. 학교와 달리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교육(지원)청의 장(또는 위임전결권자)이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2항은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학교장에게 받습니다. 순회교사가 순회하는 학교의 장이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2.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때 교사가 연수를 받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은 41조에 근거한 승인이 아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 교육훈련법상 교육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계엘 정교사자격증 취득

질의

- 제가 교직이수를 해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동일계열이 아닌 타계엘인)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역사교육과 편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원래 편입하면 교직이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교직 승인이 가능하다면 교직 이수 가능한 사학과로 편입해도 된다는 건데요. 역사교육과는 거의 편입을 뽑질 않더군요.
- 만약 사학과로 편입을 해도 교직이수가 가능하다면 제 역사 선생님의 꿈이 더욱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9.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7호 기준 대상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7호 규정은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 기준에 의한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1.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2. 7호기 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하여 검정을 실시합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관련 문의

질의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원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 이런 경우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 원장 자격기준 2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별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관내용을 표시한 후 원장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 원장자격인정을 위해서는 귀하를 원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유치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이사회 의사결을 거쳐 유치원 소재 시도 교육감에게 원장자격 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2급자격

질의

- 저는 학부에서 상담관련학과인 청소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교직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문상담교사 2급자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0. [교원정책과]

1.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

-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합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해줄 것인가는 사전에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 기본이수과목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4-5호, 제2008-119호 등)의 관련학과는 예시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관련학과의 인정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에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대학원에 입학 시에 자격증 취득 가능여부를 이미 판단을 받는 것이 맞고, 또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직담당자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전공 교원자격

질의

- 저는 ○○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부전공연수를 2년 반에 걸쳐 수업을 들었습니다. 입학당시에는 제가 사립학교 정교사로 있었는데 졸업할 당시에는 인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제학교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그 때 인가가 되지 않은 학교라며 부전공표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가정인지라 가정과 티오가 너무 적습니다. 국어과로 일하고 싶어요. 교사자격증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안 되고, 너무나 맘이 아픕니다. 지금은 가정과 기간 제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어과 교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6.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무시험검정 시·현직교사의 시점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처럼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국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상담순회교사 처우**질의**

- 법에 의해 순회상담을 위해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지원적 소속의 이유로, 센터 실 장 직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순회상담을 위해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교원으로서의 보장된 법적인 권리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지 법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0. [교원정책과]

- 법률의 해석은 문언, 법률문구 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2006년부터 교원이 수업이 없는 경우 어디서나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순히 해석하지 아니하고, 단위학교가 휴업일(재량휴업일 또는 방학일 경우)이어서 교원의 본래 역할(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각종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외의 곳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 단위학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직원 등은 이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 그러나 교육행정기관에 속한 교원은 위와 같은 휴업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기관에 속한 교원은 단위학교와 달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원성과급의 기준도 단위학교의 그것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일부 교육청(예를 들어 전북) 또는 교원노조에서 교육공무원법 41조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이는 법적 해석을 잘못된 경우이며, 향후 이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사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41조의 정확한 해석을 알리고 제대로 된 규정 적용을 하겠습니다.
- 이와 별도로 전문상담 연수과정을 많이 개설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실제 상담기능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였으며, Wee센터 등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당 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수 재활복지 과목 소지자의 1정 자격연수 및 부전공 연수 문의

질의

- 특수재활복지(2정) 과목을 소지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해 전 치료 과목이 없어지면서 치료교과를 가진 사람들을 재활복지라는 과목으로 변경시켜줬는데, 이 재활복지 과목은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희소교과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재활복지 1정 자격연수는 거의 열리지 않고, 또한 복수 과목을 얻어 1정을 따려고 해도 그 기회조차 거의 열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선생님들은 다른 교과가 3년 만에 1정을 따는 동안, 재활복지 과목 소지자는 1정을 따는데 거의 10년이 소요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특수-재활복지도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매년 1정 자격연수가 열리도록 해주시거나, 복수과목을 획득할 수 있는 연수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3. [교원정책과]

- 1정 자격 연수는 2008년 4.15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시도교육청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1정 자격연수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소 교과와 경우에는 대상자 수가 적어 연수과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근 시도끼리 권역을 묶어 회소교과 1정자격연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소교과 교사 분들에게도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비록 업무 진행상 늦어지는 점도 있고, 위낙에 회소교과여서 여러 지역을 묶더라도 연수 대상자 수가 나오지 않아 개설이 많이 늦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 분들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 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특수대학원 졸업 후 자격증 수령가능 여부

질의

- 현직 보육 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특수대학원이 현직 보육교사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입학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4. [교원정책과]

-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 한편, 교육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직 중인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의 일종입니다.
- 따라서, 보육교사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검정 중 무시험검정

질의

- 저는 전문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실기교사 자격증(미용)을 취득한 후 미용고등학교에서 만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후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원자격검정령 3장 무시험검정 제18조(무시험 검정대상)3.에 자격에 준해 준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였으나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는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재직여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교사 신청을 거부당한 것은 근거가 불충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4. [교원정책과]

- 「2012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53쪽에 따르면, 중등학교 준교사 제3호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교원(기간제 교원은 전문상담교사1급만 해당)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니라면, 무시험검정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모집 요강

질의

- 초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1년 미만 근무했습니다. 최근 교육대학원에 관심이 있어 모집요강을 살펴보던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초등정교사 자격증 2급 소지자로 ‘초등학교상담’을 전공하려면 지원 자격으로 ‘현직교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간제, 시간강사 포함인가요?
- (석사학위 후 특전)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초등 1급 정교사’ = 교육공무원 인가요? 아니면 다른 성격인가요?
- 시간강사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초등 정교사 2급 소지자 + 3년 이상 교육 경력인자 + ‘초등학교 상담’ 석사학위 = 전문상담교사 1급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3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문상담교사 2급이 발급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17. [교원정책과]

- 답변 1. '현직교사'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기간제 교원제외), 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 교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변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초등학교 정교사(1급) 3호에 따라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소지 교원이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정교사(1급)가 상위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답변 3. 시간 강사로 근무한 학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 4. 2급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등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현직교원이 아닌 자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때 3년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 경력을 합산하게 되는데, 대학원 진학 시점에 3년의 교육경력에 미달된다면, 졸업 후 교육경력을 추가한 다음 해당 시도교육청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3년의 교육경력이 안 된다고,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

질의

- 2004, 2005학년도 입학생 중 남학생(군대 갔다 온 학생)만 지역사범대 가산점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복수전공이랑 부전공 가산점도 이들만 적용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0. [교원정책과]

- 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은 각 교육청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원하고 싶은 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등교사 호봉재획정 여부

질의



-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과원 또는 본인희망 등의 사유로 당초 담당과목은 강의하지 않고 다른 표시 과목의 2급 정교사의 자격에 맞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 호봉제 확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중등학교 1급 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제 확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초등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호봉을 확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육실습관련

질의

- 교육대학원생입니다. 운전해서 1시간 넘는 곳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교생실습을 하려고 집 인근 학교에 알아보니 모교 출신 아니라고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모교에 전화해 보니 교생실습이 아예 없어진지 오래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 제 대학원에 의뢰하면 그 근처 학교를 소개해 줄 텐데 운전해서 1시간 넘는 곳으로 신청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모교 출신 아니면 왜 받아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인 수 없네요. 임용고시후 모교 출신이 그 모교로 발령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교 아니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3. [교원정책과]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의 선정은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대학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대학은 실습이 가능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은 가능합니다. 해당 양성기관(대학)의 협력 학교가 아닐 경우에 학교에서는 교육실습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실습생을 받을 지 여부는 학교의 제반 사항을 판단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원자격증 검색

질의

- 국립 대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2급을 가지고 있는데, 졸업때 받은 자격증을 분실해서, 인터넷으로 일자나, 발급기관등 정보를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할지 몰라서 민원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 최초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격증 재발급은 신분증 지참 후 교육청에 방문하시거나,(시도교육청에 문의)
 - 출신 대학 민원서류 접수하시어 재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원임용시험 후 병역

질의

- 중등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때, 임용시험 합격 직후 학교 배정/근무를 하지 않고 입영한다면 병역이행 이후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될 때 학교 배정/근무를 한 다음에 입영하는 것과 경력과 호봉 인정상 차이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4. 10. [교원정책과]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확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임용전 군 경력은 10할 호봉에 반영됩니다.
- 다만, 임용전군경력은 “교육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경력과 관련된 수당인 교직수당 가산금 1)(만 55세 이상 이며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교육경력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중등임용시험에도 교육학 폐지

질의

- 교육학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다렸는데, 초등임용만 폐지하고 중등은 논술로 전환,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이군요?

회신

회신일 : 2012. 2. 17. [교원정책과]

- 이번 임용시험 개편안은 교직적성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양성단계부터 선발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방안입니다. 교육학적 소양은 교직수행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객관식 교육학을 폐지한 것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와 더불어 교육학적 소양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초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직논술이 교육학적 소양을 측정하도록 출제되고 있으나 중등의 경우에는 객관식 교육학이 폐지될 경우, 이를 측정할 과목이 없어 신설한 것으로 새로운 과목 도입에 따라 유예기간을 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실기교사자격증

질의

- ○○○○기술학교(2년제 전 공부) 유아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 학교를 다니려고 했던 이유는 유치원교사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몇몇 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들어갔습니다.
-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실습도 나가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받은 자격증은 '보육실기교사자격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부터 발급된 실기교사자격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격증으로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무 곳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왜 자격이 인정되지도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고는 피해는 실컷 공부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야 하는지 거짓된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교육부가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을 발급해서 피해를 보게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증과 관련한 기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실기교사 자격증의 최초 발급 당시에는 학교의 실기를 지도할 교사가 필요하여 만든 자격증이나, 현재는 실기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양성·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실기교사의 신규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민원인께서 실기교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심정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기교사 자격 중 일부 표시과목은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향후, 교원자격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때에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기교사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특수(직업) 교사 임용 자격 조건

질의

-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초등특수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4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 후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직업재활) 자격증을 발급(2011. 5.) 받은 상태입니다.
- 제가 중등 특수(직업) 임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특수학교 정교사(초등)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중등학교 정교사 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즉,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직업재활)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자격과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직무대리발령에 따른 겸임수당지급 여부

질의

-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의 사고로 교감선생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2011. 9. 22자로 직무대리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해당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교감선생님은 직무대리 발령은 난 상태이지만 유치원 겸임에 대한 발령사항은 없습니다.
- 직무대리의 범위에 “직무대리 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라는 사항으로 겸임의 여부가 포함되어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2. 2. [교원정책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의 교직수당가산금 7)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겸임 교장 또는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병설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 병설유치원의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감 또는 통합운영학교에서 둘 이상의 학교장을 겸임하는 교장이 지급 대상자입니다.
- 교감이 교장의 직무대리로 지정되어 사실상 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대리에 불과하므로 교장직위에 따른 수당 중 하나인 교직수당가산금 7)의 수당을 직무대리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중등교원으로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경우

질의

- 중등교원(전자계산) 1정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산 과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고민하면서 작년(2011년) 3월, 사이버 대 실용외국어학부(영어전공)에 3학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 이 경우, 전공을 인정받아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 [교원정책과]

- 교사자격증을 발급을 위한 양성기관 승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 현재 사이버대학에는 교직과정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학점 이수를 통해서 교사자격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 또 다른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징계 받은 교원 근무평정 조정(감점) 기준

질의

- 현직 교감입니다. 지난 9월 징계(감봉)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근무평정 점을 조정(감점)함에 있어 평정 자와 확인자중 근무평정 점을 누가 조정(감점)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7조, 및 제24조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 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교육감)가 평정대상자가 징계를 받아 평정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평정 점을 조정합니다.

● 징계시효 도과한 직원 유죄판결(벌금형)

질의

- 징계시효가 지난 자가 동일 사건으로 배임수죄의 형사처벌(벌금형)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품위손상과 관련된 징계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2. [교원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원인행위에 대한 시효가 도과한 경우에는 사후에 별도의 형사 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를 이유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도과한 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계의 감경사유 및 학교장의 임명

질의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의 징계의 감경 사유 중 [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서 이야기 하는 ‘차관급 상당 기관장’의 범위에 사립 대학교 총장의 표창(연수 우수교사)이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 학교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각 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중략)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략)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학교법인이 2 이상의 초중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경우 학교장의 임명에 있어 한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임한 후 다른 학교의 학교장에 또다시 임명이 가능한지의 여부(예 : A학교 2007년 3월~2011년 2월, 2011년 3월~2015년 2월까지 학교장 1회 중임한 ‘갑’을 다시 2015년 3월에 B학교 학교장으로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10. 30. [교원정책과]

- 1)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의 징계의 감경 사유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서 이야기 하는 ‘차관급 상당 기관장’의 범위에 사립 대학교 총장의 표창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규정에서는 정부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임용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거칠 경우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징계처분으로 인한 명예퇴직 가능여부

질의

- 교육공무원이 4대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

더라도 명예퇴대상자 심사결정에서 제외되는지요?

- 아니면 명예퇴직을 아예 신청할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 [교원정책과]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규정 등에 의거 선생님께서 명예퇴직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해서는 시도 자체적으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의 수당지급 예외 사유 외에 별도 요건을 부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 전문상담사 모집 시 교도교사 자격증 인정 여부

질의

- 상담교사 25년을 근무하고 2011년 2월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도교육청(지역학교)에서 상담사(강사, 계약직)모집에서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모집하는데 저의 경우 1988년 3월 10일 문교부장관발행으로 교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바 상담사 모집에서 상담관련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 [교원정책과]

- 1997년 이전에 취득한 교도교사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1급)로 인정됩니다.
-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47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정년과 같은 나이 내에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상담사(강사, 계약직)의 경우해당 시도교육감이 임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발급

질의

- 교육대학원 교육상담 졸업예정자입니다. 저는 교직 경력 3년 이상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으므로 올해 8월 20일 졸업을 하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5일 공고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임용에 졸업예정자인 저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시험을 응시하려면 졸업예정자인 경우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표기된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탁 1)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대학원도 도교육청도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므로 어디에서도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저는 졸업예정자로 8월 자격 취득 가능자인데 왜 시험을 칠 수 없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4학년 8월 졸업예정자는 2급 자격을 받기 때문에 시험 서류를 낼 수 있고 시험도 칠 수 있는 것이고 1급을 받는 대학원생은 8월 졸업예정자여도 서류를 낼 수 없고 시험을 칠 수 없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6. 5.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은 다른 교사자격증들과 달리 1급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교육대학원의 상담교육 과정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석사 학위기와 이수학점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원 소재 시도교육청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즉, 교육을 시키는 기관과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입니다.
- 참고로, 일반적인 교사자격증은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바로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민원인처럼 8월말에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교육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로 교사자격취득예정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 학위취득예정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 3. 교육경력증명서(3년의 교육경력 증명)



해외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질의

- 교직이수중인 대학생입니다. 교육봉사시간 60시간을 채워야하는데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5개월 동안 교민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엠립 한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6. 5. [교원정책과]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가능 학교 중애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 위 사항에 따라 한글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바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초등 관내 전보 가산점

질의

- ○ ○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이며, 초등 관내 전보 가산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2. [교원정책과]

- 교원의 전보는 잘 알고 계시듯이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시도의 전보규정을 개정하여야 반영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육아휴직 규정은 직접 전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전보규칙 등의 개정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다자녀 교사를 전보우대 또는 유예가능토록 함으로써 다른 교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보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규정개정에는 의견수렴 및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즉시개정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겸임 가능 여부

질의

-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병설 유치원 교사를 겸임한 경우, 동 겸임기간 중 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 실적을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연구실적으로 평정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승진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인 바 동 연구실적은 유치원 겸임교사로서 취득한 것이긴 하나 본직은 초등학교 교사이므로 평정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급 정교사 대체가 가능 여부

질의

- 저는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나서 현재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령 나기 전에는 사범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곧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대학원 졸업으로 1정 연수를 대체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현재 초등교사인데 대학원을 중등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초등교육'이 아니어서 대체가 안 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중등교육대학원 졸업으로 1정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1. [교원정책과]

- 초등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3호에 대한 검토 시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의 재학 기간을 제외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만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 다만, 초등학교는 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의 중등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를 1급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박형 교장 공모학교 취소에 관한 조건

질의

-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초박형 교장 공모학교를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취소요청 등)도 듣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공모학교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0. [교원정책과]

-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셨습니다.
- 현재 초빙교장 관련 지침(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임용권자에게 직을 면하는 인 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초빙교장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직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객관적으로 명백한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보건교사(2급) 자격증

질의

- 2011년도에 간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저희학교가 의과대만 따로 떨어져있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교직 자격증에 매우 관심이 없는 학교였습니다. 졸업 시 자격증 받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 그런데 타 학교 다니는 사대 다니는 친구에게 들어보니, 졸업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내년에 임용고사를 보려고 준비 중에 있어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1. [교원정책과]

- 우리나라에서 보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 대학, 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4년제) 또는 간호과(전문대) 과정을 이수하고, 교직이수 예정자(입학정원의 10%)로 선발되어 교직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원자격증은 교원양성기관(대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는 교직학점 취득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졸업한 대학의 교직담당 직원에게 문



의하시면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기 교사 자격증 과목 변경건

질의

- 실기 교사 자격증 과목을 변경 하고 싶습니다. 활용도 높은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part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 고등학교 때 워드 취득 완료 했었으며 실기교사 자격증 통신을 취득하면서 교육과정도 이수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9. [교원정책과]

-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의 과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기교사 자격증과 관련한 기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실기교사 자격증의 최초 발급 당시에는 학교의 실기를 지도할 교사가 필요하여 만든 자격증이나, 현재는 실기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양성·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실기교사의 신규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고등기술학교의 전공 때 취득한 실기교사 문의는 가까운 시. 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민원인께서 실기교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심정은 이해하고 있으며, 실기교사 자격 중 일부 표시과목은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므로 향후, 교원자격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생실습 출석

질의

- 교생실습이 출석은 얼마나 해야 인정되며,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습을 마쳐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8. [교원정책과]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초등학교 교사 혹은 중등교사 양성교육을 받는 학생 그리고 일반 대학 학생으로서 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들에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교육실습을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주의 4학점 내지는 4주간의 실습으로 2학점 등으로 편성되며, 학교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교육실습을 완료하지 못하면 학점을 이수 할 수 없습니다.

 관광 중등교사 자격증**질의**

- 관광중등정교사 2급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관광과목의 경우, 몇몇 학교 빼고는 과목자리가 없을 뿐더러, 그 자리 또한 상업이나 일반 사회계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 관광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립학교 중등사회나 실업계 고교의 일반사회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3.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 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지도 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교사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수교사 법정인원**질의**

- 현재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법정정원: 19,701명, 현재



특수교사 수: 13,447명)에 불과하고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일반 유치원 교사: 73.2%, 일반 초등 교사: 89.1%, 일반 중등 교사: 80.4%)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1. [교원정책과]

- 특수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총정원제 틀 안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경우에도 매년 일정부분 정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우리 부는 유관기관(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하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사 시간강사의 시급 기준

질의

- 특수교사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법기 준을 알고 싶어서요. 시간당 얼마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 지역마다 다르고 교과마다 달라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9. [교원정책과]

- 현재 규정된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으며, 시간 강사를 학교 단위로 채용하고 있어 지역별 채용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시간 강사의 수당 및 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직 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전직

질의

- 중학교 현직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상담교사로 전과가 가능한지요?

- 제 교과로 수업하고, 업무로 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9.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는 보건, 사서, 영양교사처럼 고유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에 임용되는 교사로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학생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 전문상담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도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올해 시행 중인 전문상담교사 전직임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원 : 총 250명(16개 시도 전체)— 자격기준 : 전문상담교사(1, 2급),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중등 교과교사로 중·고등학교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전직임용 후 7년 이상 근무 가능한자- 선발방법 : (1차) 서면심사, (2차) 심층면접전직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질의

-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교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인턴교사 전문상담 인턴교사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과학실험 인턴교사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인턴교사... 작년까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채용되었던 계약직 인턴교사들의 명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째서 이런 사람들의 설자리가 없는 것일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1. [교원정책과]

-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사업은 당초 청년층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실시된 한시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 그러나, 정책수요 및 지원 필요여부 등을 고려하여 올해 4개 분야(기초학력미달학생지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학교보건, 전문상담) 총 4,400명 규모의 인턴교사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기 분야별 인턴교사 채용을 실시 중이며, 전문상담 인턴교사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채용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학습연구년제 규정 신설 문의

질의

- 올해 지원을 하려고 보았더니 규정이 하나 더 생겼더군요. 교원연수 최근 5년간 300시간 이상 연수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규정이었습시다. 작년에 없던 규정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12. 25. [교원정책과]

- 2012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연수실적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방법 및 기준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시도마다 반영 기간 및 기준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 이에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300시간의 연수 실적을 지원 자격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선생님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동안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시며 전문성신장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인정되나 현재 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연수를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원 학위 과정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공고를 “연수시간은 학위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여 재공고하는 것인데, 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거듭 현재로는 박사과정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하지만 차기년도에 학습연구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담당자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위과정 이수를 연수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 재외동포외국인의 유아원/사립유치원 운영

질의

- 영국국적이 있는데, 재외동포체류 비자를 통해 귀국을 하여 유아원/사립유치원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 유아교육관련 자격을 통해 유치원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는데 는 국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방송통신대학으로 부터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경력을 쌓아 교과로 부터 원장 자격증을 (재외동포)외국국적자가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유아원/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외동포)외국국적자가 생각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5.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의 경우, 외국인도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치원 정교사(1급), 원감, 원장의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감이 검정을 하는데,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각 자격 단계별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나, 3년의 교육경력을 충족하였다고 해도,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기존에 외국인이 취득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 해외학교 근무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질의**

- 적은 서울○○중학교이며 현재 고용휴직상태로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에 근무 중입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이곳에서의 경력이 군 경력처럼 호봉에는 산정되나 교육실경력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만약 교육실경력에 반영이 안 된다면 승진도 늦어지게 되니 거점을 고려해서 근무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2.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는 재외교육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하고,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상근이라 함은 1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비상근은 6~14시간 이하의 근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해임 후 복직된 선생님 시간외 수당

질의

- 저희 기관에 전교조 노조 전임휴직을 하셨다가 2009년 11월에 해임되시고, 다시 2011. 12월에 법원무효판결을 받으셔서 복직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해임된 후 복직되셔서 해임된 기간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했지만, 시간외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상 15일 이하 근무한사람에게는 나가지 않을게 원칙이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왜 지급이 안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2. 1.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이 경우 동 규정 제19조 제7항에 의거 연가보상비는 미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기본이수과목 문의

질의

- 교과부 고시내용에 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이수과목 분야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제시된 기본이수과목에서 필수과목이 정해져 있는지요?
- 아니면, 기본이수과목에 포함된 내용 중에 최소 7과목(21학점) 이상만 들어도 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2. [교원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2011.3.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양성과정을 승인 받은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에서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고시에 제시된 기본이수과목(17과목) 중에 해당 학교에서는 7과목(21학점)이상을 편성하

게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 개개인이 기본이수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편성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교직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호봉획정시 임용전경력 요율

질의

- 저는 1975년 2월에 교육대학(2년제)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발령을 받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 기간제교사 : 1975. 4. 11.~1975. 5. 11.(1개월 1일간)피아노교습학원 강사 : 1982. 1. 23.~2002. 12. 10.(20년 10월 18일간) 파이누 교습 학원 강사를 하면서 2개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 국제예술대학 : 1993. 3. 1.~1995. 2. 28.(2년간) - 방송통신대학 : 1995. 3. 1.~2000. 2. 29.(5년간)그리고 2002. 12. 11자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적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 - 2개의 대학(국제, 방통)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면 대학 수학 기간은 얼마를 적용하는지요?
- - 각각 대학의 경력적용 비율은 각각 얼마인지요?
- * 붙임 호봉획정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용전 경력을 산출에 의문이 있어 산출내역을 정확히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0. [교원정책과]

- 대학경력 중우선 국제예술대학 경력은 2년제로 보이는 바, 이는 기존 민원인이 가지고 있던 2년제 교육대학 경력과 동등한 정도의 학력으로 인정되므로 기간의 80%의 비율로 경력이 인정됩니다.(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교2 참조)
- 다음으로 방통대는 4년제 대학 학위이므로 이는 기존 2년제 대학 경력과 동등한 정도의 학력이 아니고 상위 학위이므로 민원인의 학령 계산에 있어 2년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



입니다.

- 다만, 두개의 대학 수학 기간이 피아노 교습 강사 기간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을 하나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상담사3급자격자의 전문상담교사 응시 절차

질의

-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취득자가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청소년상담사3급 자격취득자가 일반대학 교육학과에 편입한 후 졸업하면 응시자격이 되는 게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2. [교원정책과]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산업대학의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자(신설 2004. 1. 20.)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신설 2004. 1. 20.)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신설 2005. 12. 7. 개정 '07. 8. 3.)
- ※ 2006~7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현재는 1, 2호에 의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대학의 상담·심리교육과 중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직과정 운영을 승인 받은 학과에 입학한 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 두 번째로 학부의 상담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교육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취득자가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응시를 하려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취득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판단됩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 2009 개정(2012 운영) 교육과정 중 예술 교과 문의

질의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술(음악/미술)교과에서 음악이나 미술을 반드시 136시간씩 운영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8. 10.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4호, '12.7.9) 내용에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수업시 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에중학교의 경우 기준시수에 맞추어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09교육과정 중 체육과 교육과정 문의

질의

- 이번에 개정된 2009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 개정된 내용 28페이지를 보면 <표4> 중학교 1~3학년군 신체활동 활용로 대영역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가활동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7. [교육과정과]

- 신체활동활용 예시는 5개의 대영역과 15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3개 학년 동안 모든 중영역에 관한 신체활동을 최소 1개 이상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유형의 신체활동의 순서와 범위는 단위학교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각 중영역별 활동 예시도(예)사회와 여가 : 마라톤, 자전거 타기,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부메랑, 저글링, 스쿠시, 라켓볼, 아이스하키 등으로 표기되어 있기에 문의하신 내용인 마라톤을 도전 활동에서, 아이스하키를 경쟁활동에서 지도 가능하며 또다른 신체활동도 여가활동에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차 교육과정 자료

질의

-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4. [교육과정과]

-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된 문서입니다. 교육과정은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28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용이 방대하여 모두 안내해 드릴 수 없으므로 요약된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서 고시된 문서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등 중국어 교과 관련 몇가지 문의

질의

- 1. 고등 중국어 교과서 집필 지침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2. 현재 중국어 II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2011년 3월부터), 중국어 I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맞는 정보인가요? 3. 미국과 일본의 고등 중국어 교과서 목록이 혹시 있는지요?
- 또 그 나라의 중국어 교과서에는 중국 문학작품(특히 현, 당대 문학작품)이 포함돼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4. 3번 답이 긍정이라면 미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와 출판사 목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8. [교육과정과]

- 1.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집필 지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 홈페이지(tba.kice.re.kr) 공지사항에서 2011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정보가 맞습니다. 3, 4. 교과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입니다.

● 교과 과정 개편안

질의

- 초 3, 4학년 교과서 개정이 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교과과정이 개편 된다고 하더라고요.
-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0. [교육과정과]

- 2012학년도 초등학교 3, 4학년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 4학년 교과서는 2014년에 바뀌어서 보급될 예정입니다.
- 예전에는 평균 10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수시 개정 체제로 변화되어 예전보다는 개정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된 배경에는 주5일제 수업과 관련이 많습니다. 주5일제에 따른 학습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년간 학습 내용의 난이도 조정도 하나의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 교과서의 저작권

질의

- 초등학교 국어 2학년 2학기 88쪽 “딱지따먹기”라는 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게재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교과서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 시의 저자는 당시 사북초등학교 4학년 강원식으로, 보리출판사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이 되기도 하였으며 동요로도 제작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게재가 사실이라면 교과서 제작 담당 부서에서는 이 동시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정의 저작권료도 지불을 하실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9. [교육과정과]

-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읽기 교과서 88쪽에 강원식님이 지은 「딱지따먹기」라는 동시가 실



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교과서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25조 4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용도서의 보상금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상의 수업일수

질의

-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수업일수에 있어서, 190일 = 170일 (34주 * 5일) + 20일 (학교장 재량 수업일) 까지는 이해했습니다.
- 1. 20일 학교장 재량 수업일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는 날인지요?
- 2. 20일 동안에 교과 수업을 나가면 안되는가요?
- 3. 연간 34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과 진도를 끝내기 위한 최소 기준인가요? 최대 기준인가요?
- 4.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34주 이상의 기간이 아닌 더 긴 기간 동안 수업을 하여도 되는가요? 단, 총 수업시간 수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 [교육과정과]

1.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교육과정상의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단위학교에서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용어 그대로 수업일수에 포함되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날입니다.
2. 물론 교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여러 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34주의 의미 : 초중등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군)별 기준수업시수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수 대신 단위를 사용하며,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총 수업시간 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190일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준수해야 하므로 34주(170일)보다 20일 이상의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업일수와 총 수업시간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20일 이상은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 리스트

질의

- 국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바뀐 교과서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가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1. 6. [교육과정과]

- 국정도서 리스트는 <http://cutis.mest.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과서-공지사항”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콘텐츠 사용 가능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한 1종 교과서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가져다 콘텐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3. 7. [교육과정과]

-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는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편찬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고 합니다.
-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통해 검정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를 각각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라고 합니다.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큐티스 CUTIS’ 홈페이지 교과서 자료실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utis.mest.go.kr/>) 문의하신 국정도서의 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현재 공익이나 비수익 사업으로 사용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교과서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여고 이과반 물리교육 과정 필수개설 요청

질의

- 수능 과학탐구영역 시험에서 여자고교 학생들은 선택을 해도점수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리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리(Physics)란 우리 기계문명은 물론 정보문명, 앞으로 주가 될 생물과학문명(Biotechnology)까지 연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 과목입니다.
- 앞으로 과학자가 되거나 이 나라의 동량 엔지니어가 될 청소년의 물리교육이 이렇게 원천적으로 여학교에서는 봉쇄되어 있다니 거저 현실이 아니기만 바랄 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5. [교육과정과]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학교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생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편재에 있는 특정 선택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학교에서 개설하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규교과과정의 정의

질의

- 근무시간외에 학생인솔 출장시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이중지급하려면 이출장이 정규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업인지 여부가 꼭 필요 합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학생인솔하여 여행가거나 공연 관람차가는 것이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나요?
- 그 여부에 의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동시에 지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규교과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하여 근거를 삼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4. [교육과정과]

- ‘정규 교과과정’이란 용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3조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합니다.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의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성된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정규 교과과정’이란 용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 집중이수제 시행 이유

질의

- 집중이수제를 시행한 이유와 그로 인한 장점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2. [교육과정과]

- 집중이수제는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과목 이내로 제한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1~2시간 가량을 3년동안 운영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4시간씩 1~2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있고, 1시간씩이라도 3년 내내 운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집중이수 과목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제한하여 학교에서 대상과목과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여 자율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집중이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집중이수제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합니다.



☎ 초등학교 2009개정 교육과정 적용 문의

질의

- 초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1-4학년)-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서 및 교과서를 보니 2007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 초등 2년) 2009개정교육과정 2학년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 생활(바슬즐) 해설서 내용과 다릅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3. [교육과정과]

-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은 2011년에 초등학교 1-2학년, 2012년에 3-4학년, 2012년에 5-6학년이 적용됩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2013년에 초등학교 1-2학년, 2014년에 3-4학년, 2015년에 5-6학년이 적용됩니다. 총론 부분과 교과 교육과정(교과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적용 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 초등학교 교과서 문의

질의

- 저희들이 2학년 때인가 초등도의라는 교과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초등도의회가 도의, 도덕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초등도의회가 도의 도덕으로 바뀐 것은 몇 년도에 바뀌어서 몇 년도까지 사용되었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그리고 처음 발간됐던 초등도의회, 도의, 도덕교과서 소장된 교과서 있으면 사진으로 메일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31. [교육과정과]

- 도의 교과서는 도덕과에 해당하는 교과서로 1958년도까지 3학년, 5학년에 적용되어 사용되었고, 그 이후 도덕 교과서로 교과서명이 바뀌었습니다. 도의 교과서 의 샘플 및 표지는 지금 우리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으며, 교과서 박물관,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인터넷으로 확인 검색 가능하십니다.

대 학 입 시

● 해외고에서 한국대학입학

질의

-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영국식 11년제)까지 학교를 다녔구요. 지금은 a레벨준비 하고 있습니다. a레벨시험 봐서 한국대학 수시에 넣어 볼려는 데 초등학교 5·6학년 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은 1등급이구요.
-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5. [대입제도과]

-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학력이 인정되어야 함.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첫번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전부를 수료한 자란 외국에서 그 외국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총 23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22학기-23학기)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합니다. 또한, 동일학년(학기)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합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기관(시·도교육청 및 각 대학)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두번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통상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2-3년 또는 비연속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3-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지원자격은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해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질의

-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인도에서 11학년으로 입학하여 인도 교육과정인



CBSE(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시험을 통과하여 12학년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주인도한국대사관에서 공증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수능응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7. 29. [대입제도과]

- 현재 국내에서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라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외국에서 12학년까지 무사히 끝내셨다면 국내 대입의 자격을 갖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정고시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대입시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치루는 것이며, 수능 응시는 졸업장, 이수증 등 학력인정 서류 사본(원본 동시 지참) 1통, 혹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번역문 1통 첨부하셔서 현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수능 일정 및 공통 추가 구비서류 등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음). 또한 학생 선발권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 참고 하여 본인의 자격기준에 맞는 대학의 특례전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대학 특례입학 조건

질의

-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중 1에 시작하여 현재 중3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정까지 유학을 마치고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입학 조건에 적합한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9. [대입제도과]

-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국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국내 고교 졸업학력과 동등학력이 인정되어야 함. 둘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귀하의 경우는 두번째, 각 대학이 정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통상 고등학교과

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 2-3년 또는 비연속으로 중고등학교 과정 3-5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기준에 맞는 대학의 특례전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여부

질의

-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수능을 보려고 할 경우, 졸업장 인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문의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 가보아도 대학의 학위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경우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5. [대입제도과]

-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수능응시에 대해서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 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상기의 경우 지원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내(2011. 8. 22. 이후)발급분에 한함
- 또한,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 받아야 하며,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으로 해당교육청에 꼭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학년도 수능 제2외국어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의

- 수능때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학교에선 2013학년도 수능(올해(2012년)에 치러지는 수능)에 아랍어가 제2외국어가 제외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사실인지를 문의했고 여전히 포함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 이번에는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을 정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이지 평가원이 아니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첫째로 2013학년도 수능(올해 치러지는 수능) 제2 외국어영역에서 아랍어가 계속 유지되나요?
- 둘째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을 정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1. [대입제도과]

- 2013학년도 제2 외국어영역(독일어1, 프랑스어 1, 스페인어 1, 중국어 1, 일본어 1, 러시아어 1, 아랍어 1, 한문 등 8과목 중 택1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는 고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능 출제과목 여부를 결정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에는 A형과 B형을 선택

질의

- 2014년도부터 수능시험을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9. 15. [대입제도과]

- 2014수능은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부담을 줄여 별도의 사교육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를 강화할 계획이고 국어, 수학, 영어는 A형, B형 수준별 시험을 제공하며 A형은 3과목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인문계열, 자연계열 선택방법에서 B형의 경우 최대 2과목까지 응시가능하며,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또한,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선택과목 수를 축소하여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직업탐구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게 현행 17개과목을 5개과목으로 통합(1과목 선택)하고, 올해부터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 과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공익요원 수능 응시가능 여부

질의

- 소집해제일은 2014년 2월 16일 입니다. 근무기간중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능 원서 접수시에 추가 서류등이 필요합니까?
- 그리고 대학별로 가 나 다 군 지원할때 공익이라고 해서 제한 받는 것이 있나요?
- 마지막으로 수능을 치루고 지원을 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등록기간 당시에는 공익 신분일텐데 무슨 제한이 있거나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

회신

회신일 : 2012. 7. 3. [대입제도과]

- 수능접수는 졸업자의 경우 출신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대학지원시 공익신분여부와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대학 입학일 이전에 소집해제가 된다면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군복무자의 수능대리지원

질의

- 현재 제 동생은 강원도 홍천에서 군복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하여



친형인 제가 대리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화하여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만약 동생의군북무지역인 강원도에서 수능을 볼꺼면, 형이 직접 강원도교육청까지 가서 서류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합리적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6. [대입제도과]

- 졸업생의 입장에서 여러 편의를 고려할 때 수능 응시원서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수 가능하도록 조치 해달라는 귀하에 요청에 대해 심분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매년 전국 1,200여개 시험장에서 68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대규모로 응시하고, 수능시험의 결과가 여전히 대학진학을 위한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수능시험을 시행,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응시편의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원서접수 방식을 변경하여 전국 어디서나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점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응시원서를 출신교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하여 관리하는 것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불편함과 애로가 있을 수 있으나 대리응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의 철저, 출신교에서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 점검으로 원서기재 오류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 예방, 수능시험 응시자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정, 전국단위 대규모 수험생의 응시에 따른 시험장 확보 및 안정적인 수험 여건의 조성 등 수능 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십시오.
- 다만, 올해부터 졸업생의 경우는 수능성적표를 받으러 출신고나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개인 전자메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험생의 편의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논술 미응시자 논술비 반환 요청

질의

- 수능 시험 가채점 결과 점수가 낮게 나와서 논술응시자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논술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술비 반환을 문의한 바 반환이 전혀 불가하다고 합니다. 반환방법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6. [대입제도과]

-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 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다르고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시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기본적으로 책정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 자격시험이라면 원서접수취소와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대입 원서접수의 경우는 원서접수기간동안 매일 공시되는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학교 및 모집단위 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한번 접수한 원서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즉, 한 수험생의 특정모집단위 지원과 취소는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경쟁률의 변동이 심하게 되고 경쟁률 자체에 허수가 생기는 등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입시업무는 물론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도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있으며, 현재 전형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입법계류중에 있으며 통과되면 각 대학이 반환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준

질의

- 농어촌특별전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대입제도과]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서는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입시전형 요강을 참고하여 대학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전형

질의

-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대교협 들어가서 상담 해보려고해도 전혀 상관없는 학생부 입력하라고 하면서 글도 못쓰게 합니다.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 [대입제도과]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중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 기준을 각 대학마다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혜택의 적용 분류기준도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수혜 및 사회복지체제가 미비하여 어려운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와 또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입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지 고교 3년의 재학(부모거주 포함) 또는 소재지에서 초·중·고 12년간의 교육과정 이수(부모거주 무관)를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동 사항을 정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농어촌 전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서 그 대상여부를 정하는 사항으로 진학하고픈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입시전형을 살펴보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의 전형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적인 입시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대학 내의 입학상담처 혹은 자세한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http://univ.kcue.or.kr> : 1600-1615)에 상담하심이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문화 전형의 불합리성

질의

- 수험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가기 힘든 학교를 왜 혼혈이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 어떤 사이트에 다문화 전형 관련해서 글이 올라 왔는데 내신3, 4로 서강대, 중앙대 들어갈 수 있는게 말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회적 배려자 차원으로 대학에서 입시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우리부에서는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예치금

질의

- 고 3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예치금을 넣으라는 말에 수시1차 합격된 3군데 모두 예치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달에 가고 싶은 학교에 나머지 등록금을 넣고 포기하는 학교는 예치금을 반환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복등록이라고 다 불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명 부



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대입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대학지원방법 등)에 의거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관련법령 및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의 수시합격자는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을 선택하여 등록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을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 수시등록 포기 후 정시모집 응시 가능여부

질의

- 4년제 수시에 합격하였다가 수시등록을 포기하고 전문대 수시나 전문대 정시로 입학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29. [대입제도과]

- 수시합격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하여 합니다. 대학지원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수시 원서 접수비 환불

질의

- 원서 접수를 착오로 잘못 접수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환불 사유가 안된다고 하면서 7만

원이라는 돈을 한푼도 못 돌려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대학 정책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2. [대입제도과]

- 전형료는 대학이 어떤 방식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 유형의 전형이라도 대학마다 다르고 면접, 논술시험, 실기시험 등의 유무나 실시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며, 기본적으로 책정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따라 대학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도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전형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국회에 입법계류중에 있으며 통과되면 각 대학이 반환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학기회균형전형

질의

- 대학균형전형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고 3인데 같은 성적으로 어떤 아이는 기회균형전형으로 높은 대학에 지원합니다.
- 어떤 기준인지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4.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권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부여 하고 있는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대학의 인재상,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특별전형의 경우는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각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이 또한 사회통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대학의 대입전형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 지원자격

질의

- 입시과정 중에 기회균형선발이라는 제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위한 것이지요.
-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여 실제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여 일정금액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13학년도 입시요강에는 건강보험료납부기준 항목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이 기준을 왜 제외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1. [대입제도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2008년 신설된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지칭합니다. 2012학년도 대입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원 자격을 허용하였으나, 2013학년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은 이 부분을 유념하여야 하며,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습니다.

- 또한, 이 전형도 각 대학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시는 수시 이월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최종 모집요강 확인이 필요하여, 2014학년도부터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도 특별전형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대학입시 면접

질의

- 대학입시에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9. [대입제도과]

- 대학이 입학업무만 담당하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에 입학사정관은 학생부등 계량적인 성적 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면접관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입학 비교내신 적용 기준일

질의

- 대학입학전형 중 학생부 적용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각 대학별 전형요강을 보면 내신성적 반영시 학생부적용 대상자와 비교산출 대상자가 있습니다. 2012학년도 각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비교산출 대상자를 2010년 2월 이



전 졸업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에 의하여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6. [대입제도과]

- 비교내신은 학생부 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합격자, 졸업 후 대학이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 등의 수능성적이나 검정고시 성적 등으로 학생부의 점수를 환산하는 것으로 각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내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교내신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과 지침은 없으며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특례입학

질의

-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8. [대입제도과]

- 기본 학력요건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12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학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별대학 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정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고 졸업자의 대입 전형

질의

-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때 직업학교 1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

입니다. 이번에 대학을 가려하는데 대학 측에 문의한 결과 저는 일반전형에 해당된다하는데 예전에 직업학교 다닐 때에는 특별전형이 된다고 하여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응시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특별전형으로 응시를 해야 합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산업체특별전형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을 살펴보고,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대학입학상담처를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체 재직자 특별 전형

질의

- 전문계고 졸업해서 3년간 산업체에 일하면 무시험으로 대학 진학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문계고 나와서 대학 자퇴 하고 병역특례 받아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체에서 일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입제도과]

- 취업자 특별전형은 전문계고교를 졸업한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 대상,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은 당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장기취업자를 우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업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최저경력연수는 대학에 따라 1~5년이며, 단기 및 장기취업자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취업자 특별전형의 전형요소는 주로 학생부, 수능, 면접, 서류심사(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근무경력 등의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전형요소의 활용과 반영 정도, 자격기준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력 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므로 전문계고 졸업자 후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에 지원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색각이상자 대입지원시 차별

질의

- 색맹이나 색약같이 색각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의·약대 지원이나 경찰대, 사관학교 지원이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3. 5.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라며,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관련부처(경찰청-경찰대학), (국방부-사관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기회균등선발전형 자격

질의

- 서울대기회균등선발전형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6.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 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회균등선발전형은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모집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질의

- ○ ○ 예술대학교는 타 대학과 달리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예비등록을 하여도 정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대입제도과]

- 수시모집에서 2012년 대입까지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이 정시 지원에 금지대상이며, 수시 추가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 통보시 등록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정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3학년도부터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대학지원방법 등)에 의거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관련법령 및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되어 있어 확정된 학생들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누구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및 전문대학 등에 정시로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8월에 대학입학전형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 외의 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예 :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폴리텍 대학 등) 대학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시 및 정시 입학원서 전형료 환불

질의

- 수시와 정시를 합하여 특별전형(국가유공자 자녀)으로 서울시내 6개 대학에 입시 원서를 냈습니다. 그중 한개의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하였습니다.
- 그 후 메스컴에서 금년부터는 입시전형료를 환불해 준다고 하여서 통장을 확인 해 봤더니 6개 대학 중에 1개 대학만 전액 환불 해 주고는 나머지 5개 대학은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전화를 걸어 환불 요청을 했더니 각 해당 대학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5. [대입제도과]

- 우리부에서는 대입이 실비로 책정되고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정보공시를 통해 개별 대학의 대입 수입 총액과 지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불합격한 학생에 대해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는 환불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 귀책이 없는 사유)로 지원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불되지 않은 대학은 1단계 전형료만 우선적으로 받지 않았나 생각되며, 현재 전형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입법 계류중에 있으며 통과되면 각 대학이 반환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외국 10년제 교육과정을 마친 유학생의 대입 문제

질의

- 외국에서 약 8년간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대학진학은 한국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10년제 교육과정은 인정을 안해 준다고 그러네요.
- 만약 한국대학교를 정말 다니고 싶다면 2년을 더 채워야 한답니다. 10년제 졸업 유학생들도 12년제 졸업자들과 동등한 대학 지원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4. [대입제도과]

-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동등한 학력이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학생의 학업능력과 함께 국내 고교 학생과의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10학년제 국가에서 졸업한 경우 국내 고교 1학년 수료와 동일한 학령을 의미하며 이를 고교 3년 과정을 졸업한 국내 학생과 동등학력을 갖는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례에 따라 국내에서 고교 3년을 졸업한 학생과 비교하여 학업능력이 더 우수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제도적으로 동등학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따라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되나, 귀하께서는 2개국 이상의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10학년 이하는 미인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등학교 편입 및 검정고시 등을 통과후 대학에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특례입학

질의

- 장애인이나 질환 있는 경우 대입 특례입학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8. 1. [대입제도과]

- 장애인등대상자 특별전형은 작년까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었습니다. 이 전형의 일반적인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지체부자유의 장애가 있는 자이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이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원서 접수 전에 심사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3급이 아닌 1-2급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형도 정시는 수시 이월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최종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전형요건

질의

- 대학입시 재외국민 전형관련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3. [대입제도과]

- 대학입학 전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는 부모의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한 경우 대입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 교육과정(12년)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집 가능하며 그 밖의 재외국민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입학정원의 2%이내에서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전형요소, 전형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며, 통상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 고등학교과정을 연속해서 2년 내지는 3년을 또는 더 이상의 재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많은 대학이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편입학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학력을 취득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재학경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여 대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계 학생의 대학진학

질의

- 전문계 학생들도 인문계생처럼 좀 더 길이 활짝 열려 있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7. [대입제도과]

- 전문계 특별전형이란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자격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으로 인문계는 지원할 수 없으며, 귀하의 경우 전문계

특별전형도 가능하고 일반전형은 인문계, 전문계 등 누구나 대학입시에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과 관련 용어 정의

질의

- 입학정원, 모집정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대입제도과]

- 입학정원이라 함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말합니다. 또한 모집인원은 모집 가능 인원입니다.(이월 승인된 인원은 포함되고,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된 인원은 제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학정원+이월승인 인원-모집정지인원)이 포함됨을 알려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집정원이라 하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며, 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도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특례입학 시 체험학습 인정 여부

질의

- 우리아이는 지금 8학년이고, 외국에서 입학해서 지금도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초등 2학년때 고국 체험삼아 체험학습을 학기중, 방학을 이용해서 60일가량 다녀왔습니다.
- 당연히 출석일수 양쪽학교에서 인정해주었고, 문제가 되는게 입시 설명회를 가면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12년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0. [대입제도과]

- 전교육과정(12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하나 각 대학이 특례입학의 경우 전형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별대학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 인정여부, 학생의 체류 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셔서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에 진학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방법, 일정, 전형요소 등을 대학의 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간 협의를 통해 공포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여 우리부에서 개별대학의 전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e.or.kr, 1600-1615)의 입학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입학 자격요건

질의

-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3. [대입제도과]

- 기본 학력요건은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12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된 학교에 재학하여야 하며, 특례입학의 경우 해당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학부모 체류기간 등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개별대학 별로 다르므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정여부, 학생 및 학부모의 체류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먼저 문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 1.5% 반대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보냅니다. 교육의 다양화를 믿고 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믿고 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에게 일찍 자신의 꿈을 발견한 아이들에게 특별전형 3% 유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별전형 1.5%라면 특성화고에 입학하려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 기득권층이 아닌 자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제공하되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6. [대입제도과]

- 정부는 현행 대학입시는 내신반영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학생유치를 위해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아 상대적으로 일반계고 출신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 특성화고 졸업자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특성화고 졸업자 동일계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 외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반전형을 통해 일반계 고교 출신자와 경쟁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및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을 포함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리 부는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제외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정원 외 선발 상한을 입학정원의 1.5퍼센트로 축소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취업 후 후진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귀하께서 염려하신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제도

질의

-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학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내외활동,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창의적인 인재로의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에의 봉사, 학업능력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학 수시입시 결과를 돌아보면 위 전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고, 내신이 좀 떨어져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잘 맞는 학생이 합격한 예를 주위에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입학사정관제도 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2. 24. [대입제도과]

- 입학사정관제는 아래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성적, 잠재력,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각 대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선진형 대입전형이다.
- 하지만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들의 잠재력,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전형이지만 학생부 교육과정은 학생의 기본학습능력이나 학습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평가지표로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평가에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전형방법이 단계별 심사이며, 1단계는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방법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 및 대교협에서 일괄적으로 전형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귀하께서 주신 의견처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 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어 교 육 관 련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책 - 영어회화전문강사

질의

- 공공부분 비정규직 개선법근무기간 6개월 이상 복지포인트=공공 부문(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8만6000여명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1인당 30만원 정도가 일률 지급된다. 또 이들에게는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
- 위의 내용은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물론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을 해당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영어회화 전문강사 보수는 연봉으로 정하고, 연봉에는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 금액으로 정하여졌으므로 금번 발표된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상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여금은 이해가 되지만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정할 당시 복지포인트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 이번 정책발표 때 처음 언급된 항목입니다. 있지도 않았던 항목을 이미 연봉에 넣었으므로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이번 복지포인트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없었던 복지항목이 새로이 생겼으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복지포인트의 혜택을 볼 당연한 명분이 있으니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8. [영어교육정책과]

-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봉액(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연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때 교육감이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교원의 보수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연봉기준액을 조정하며(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교육과학기술부, '11.3), 시·도교육청별로 연봉기준액 조정 여부 및 규모, 적용 시기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채용 여건에 따라 복지포인트 적용 직종, 범위 및 금액 등이 상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12.1.16)한 관계부처 합동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복지포인트를 기본 포인트로 1인당 年 30만원 수준으로 일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명시 하였고 이는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국공립 교사 차별

질의

- 서울시 교육연수원 파견 기간 중 대체 인건비 지원을 국립학교에는 불가능하여 연수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학교에서 인건비를 대야하는 데 이런 연수를 위해 미리 돈을 책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수 없어서 본인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제가 지금은 국립에 있지만 임용은 엄연히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았고 잠시 국립에 전보된 상황이고 또 몇 년 후면 반드시 공립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인지 일반 사립교원에게도 지원하는 인건비를 엄연히 공립교사와 같은 국립 교사에게는 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4. [영어교육정책과]

- 국립학교의 경우 영어 교원이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파견 될 경우 파견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영어교원의 연수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파견 조치 후 기간제 교사 등 대체 인건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립학교의 경우 내부 사정에 의한 일체 경비는 기본 운영비 내에서 국립학교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사안임을 양해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 지속여부 문의

질의

- 선발 공고시에 한학교에 4년 근무할 수 있다고 공지해 놓고선 4년도 안되서 제도를 폐지한

다는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취업사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군요.

- 이런 제도란걸 미리 공지 했었다면 전 애초에 응시조차 안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전국의 6300여 영어회화전문강사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담당부서에 민원을 통해 정중히 여쭙니다. 앞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0. [영어교육정책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영어 수업에 필요한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한 내용 중에 특별교부금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말씀드립니다. 교부금을 교육청과 교과부가 5:5에서 6:4로, 그리고 올해는 7:3으로 줄였다는 것에 대해 올해에도 여전히 교육청과 교과부는 6:4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해서 한 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 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폐지 여부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며, 우수 영어교원 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 정책 연구 및 법률 자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성과 분석을 진행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복무

질의

- 교과부에서 내려보낸 영어회화전문강사 복무관련 업무편람 30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서 보면 기존 교사(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와 비슷한 근무지의 연수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 영어 연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수 이수물이나 증빙자료 없이 복무를 연수처리하고 연수 장소를 근처 도서관이나 기타 장소로 지정해놓고 별다른 연수 없이 쉬는 것이 태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사들은 제41조연수를 사용함으로 인해 연가보상비가 지급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도 교사



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는 영어회화강사는 복무는 복무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기존 비정규직과 교사의 장점만을 추려내어, 쓸데없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걸로 보이는데, 영어회화강사의 복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업무편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8. [영어교육정책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복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항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교육과학기술부, '11.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수업 등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방학 중 근무와 관련하여 교원의 경우에도 휴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 연수가 활용되고 있으며,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외국인 강사 시급

질의

-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특히 초중고 가르칠때 너무 쉽고, 시급이 높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시간도 적고, 가르치는 방향도 모두 각기 다릅니다. 능력있는 교사는 한국에서 계속 가르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6. [영어교육정책과]

- 현재 원어민에 대한 연수 체계는 한국 입국 전 한국의 문화와 교육체계 등에 관한 온라인 사전 연수와 한국 입국 이후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수법, 수업관리법, 교사로서의 태도 등에 관한 집합 연수, 학교 근무 중 한국인 교사와의 협력수업 방법 등에 관한 직무연수 등 총

60시간 이상의 연수 의무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원어민이 한국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또는 근무경력에 따라 월 10-20만원 가량 보수가 인상되도록 보수등급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적인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원어민의 수업시수는 주 22시간 내외이며, 근무시간은 한국인 교원과 동일합니다.
- 때문에 각종 학교 행사 참여, 영어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한국인 교사 연수 등은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원어민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도 교사로서 성장하고 양질의 영어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어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

질의

- 공립학교 취업하는 원어민 교사의 경우 일반전공자(비교육 비 영문)의 경우 테솔자격증이 나 유사한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등 강화된 자격요건이 올해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를 최소 1년 준비기간도 두지 않고 바로 2012년부터 당장 적용하면 (실제 지난해 이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음) 당장 재계약해야하는 강사들이 곤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 2011년에 자격증 없이도 성실히 근무하시며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2012년 재계약을 하지도 못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3. [영어교육정책과]

- 선생님께서는 사전 예고기간 없이 원어민 채용과 관련하여 TESOL 자격증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 먼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자격증 소지 유무로 원어민의 영어 교수 능력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부 과정은 그 내용이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TESOL 자격증 소지 유무는 채용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학력과 경력 사항, 교육에의 열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채용 자격요건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원어민을 직접 채용하는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는 고용주로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학교별 교육환경과 중점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채용하고자 하는 원어민에 대한 자격요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원어민의 최소 자격요건인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고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부가적인 자격요건은 시도별,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로서 역량 있는 원어민을 채용하기 위한 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거주 원어민 강사

질의

1. 현재 한국에 있는 원어민 강사는 몇명 인가요?
2. 원어민 강사들이 대략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학원, 대학교, 공립학교 등.
3. 몇 퍼센트의 강사들이 현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나요?
4. 강사들이 평균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5. 몇 퍼센트의 강사들이 교육학을 전공 하였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3. 5. [영어교육정책과]

- ‘원어민 영어 강사’는 학원에서 영어 교과 관련 단독수업을 하는 원어민 강사이며,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은 한국인 선생님과 협동수업을 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 1. 학교 근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9,320명(2011년 4월 기준)이며, 학원 근무 원어민 영어 강사는 15,563명(2010년 12월 기준)입니다.
- 2. 원어민 강사, 보조교사의 체류기간은 고용계약서와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근무를 한 후, 해당 기관과 재계약 또는 본국 귀국, 다른 채용 기관 이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 3. 학원 근무 원어민 강사는 15,563명입니다.
- 4.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이들의 체류자격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용계약이 마무리되면 바로 귀국해야만 합니다.
- 5. 민간 사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통계는 따로 없으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경우 교육학 전공 883명(9.5%), 영어교과 전공 1,155명(12.4%)입니다.

NEAT시험이란?

질의

- 올해말에 수능 영어 시험을 NEAT로 대체하는 안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를 SBS8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NEAT는 듣기, 읽기만을 테스트하는 현재의 수능방식이 아니라, 말하기 쓰기까지 테스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EAT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6. [영어교육정책과]

- 우리 부에서 개발 중인 국가영어능력시험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급 시험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급, 3급 시험이 있습니다. 1급 시험은 대학 졸업, 취업, 승진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2급/3급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생이 익혀야 할 영어 능력을 평가하여 대학 입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2급/3급)의 말하기, 쓰기 영역 평가 수준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도의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2급, 3급)의 샘플 문항 세트를 EBS 영어교육방송 웹사이트(www.ebse.go.kr) >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 > 실전체험 '2급 문항 다운로드', '3급 문항 다운로드'에 게시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말하기, 쓰기 문항의 수준을 직접 살펴 보시기 바라며, 동 웹사이트의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 > 대비하기 > 04 효과적인 학습 방법 알아보기'에 게시된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 이렇게 준비하세요'의 내용과 학생 답안 예시 등을 살펴보면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특히, 현재의 수능 영어는 상대평가로서 다른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자신의 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시험이지만,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 2급/3급 시험은 절대평가로서 일정 정도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처럼 학생간의 비교순위가 중요한 시험이라면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절대평가인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에서는 고등학교 수준 정도의 말하기, 쓰기 능력을 지닌 학생이나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을 지닌 학생들이 모두 A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시험은 아닙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외에도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학습에 필요



한 사항들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포털사이트 (www.neat.re.kr)와 EBS 영어교육방송 웹사이트 (www.ebse.c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의 추진 배경이나 방향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NEAT시험 장소안내 및 응시료 등

질의

- 올해 니트 시험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시험장소를 3일전에 알려주도록 되어있어 일정상 불편한 점이 많으며, 거기다 모의평가의 점수가 1차 니트 접수 끝난 후에 발표된다는데 점수를 알아야 다음 니트시험에 무슨 급을 칠지 결정 할 수 있는데 점수를 모르는 상태로는 그저 무작위로 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개선될 수는 없는 건지요?
- 아울러 응시비가 27000원인가요? 무료로는 안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6. 5. [영어교육정책과]

- 첫째 시험 실시 3일전 시험 장소를 알려드리는 부분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IBT 방식으로 치뤄지는 시험인 관계로 시험장이 선정되면 컴퓨터실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컴퓨터실을 점검하고 준비하다보니 시험장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시험 실시 날로부터 1주일 전 쯤 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수험표 출력일을 3일전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시험 장소가 안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2012년도의 경우 수시 접수 일정이 촉박하여 1차 본시험 접수 후에 점수 발표가 이루어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1차 시험 결과 발표 후에 2차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비용은 현재 수능의 경우에도 원서접수비가 영역에 따라 일정부분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수능영어의 경우 말하기, 쓰기가 없기 때문에 자동채점이 이루어지는 반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경우는 현직 선생님들께서 직접 채점을 하는 수동채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응시료 부과는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련

고등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하여

질의

- 고등학교 운동장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8. 22.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개방의 경우 최근 학부형의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 및 학교 시설물 파손, 야간까지 학교에서 나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학교장에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바 있어, 현재 초·중·고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사확보율 산정시 주차장 포함 여부

질의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교사는 별표2의 구분의 의하며, 동조 3항에 따르면 별표 2의 교사시설 중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에는 각 건축물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 (1) 위 별표 2에서 부대시설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 (2) 만약 강의동건물을 건축하면서 지하1층에 주차장(예로 지상4층 지하2층 건물인 경우)을 건축한다면 그 주차장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것 인지요?
- (3) 만약 위(2)의 건물 지하 4층에 전기실을 건축한다면 그 전기실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최근에 건축하는 건축물일수록 주차장, 전기실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학내에 건축



하는 강의동, 전자계산소 등의 건물에 부대적으로 건축되는 주차장이나 전기실 등은 반드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10.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부대시설’이란, 각 시설의 주용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데에 필수적인 보조 기능을 하는 시설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교육기본, 지원, 연구시설로 사용되는 각 건물에 포함되어 건물 주용도의 활용에 필수적인 보조 기능을 하는 시설은 부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육기본, 지원, 연구시설 건물에 포함된 주차장의 경우, 당해 건물 규모에 맞는 법정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만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이 별도의 독립건물을 이룰 경우에는 기타시설로서 교사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 임대사업 운영 가능여부

질의

- 교비회계로 신축한 교육연구시설에 임대사업으로 운영되는 복지용구 및 건강용품 판매 시설을 학생 및 교직원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로 설치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1. [교육시설담당관]

- 교육연구시설 내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의 토지매입

질의

- 본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토지를 매입하여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부지에는 강의/실습동, 연구동(교수연구실등)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현재 매입 검토중인 토지(지목-임야)는 본교 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있지 않고 약 30m의 왕복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토지입니다. 본교 부지경계선과 인접하여 있지 않은 해당토지를 구입하여도 도시계획상 교육연구시설관련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9. [교육시설담당관]

- 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제2조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하며 학교구내만 인정하고 구외는 불인정합니다. 학교구내란 학교기능을 하는(학교용도로 사용되는) 일단의 구역을 말하며, 분리된 캠퍼스별로 학교기능을 하면 각각의 학교구내로 봅니다. 분리된 토지가 학교기능이 없는 단순한 법인 소유라면 학교구내로 볼 수 없습니다. 교지로서 충족요건은 학교(법인) 소유 이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고시를 받고 학교구내에 속해야 교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도시계획결정 여부는 교과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해당지자체와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학교시설사업 허가

질의

1.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행정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실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준공 된 학교로서 사업 변경승인 및 준공처리시 적용해야 할 법률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아니면 최초로 승인받은 도시계획법(현 국토법) 인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미준공 시설임에도 교육청으로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수업을 하고 있음.
2. 상기사항과 유사한 질문으로서 학교시설사업이 미준공 된 경우로, 학교의 일부 부지(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제척할 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최초사업시행허가 :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미준공사유 :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 내 사유지 미 해결
 ※ 학교시설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중이며, 도시계획선 변경 일 경우임.
3. 학교시설사업 변경(사업기간)시 감독청에 변경승인을 사업기간내 득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 했을 경우 벌칙 사항과 기존 사업승인내용 유효 여부? - 기간내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



했으므로 자동 승인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소급적용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한 지

회신

회신일 : 2011. 12. 29. [교육시설담당관]

1.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실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미준공 된 학교의 사업변경 승인 및 준공처리 관련 → 도시계획변경관련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며, 학교의 사업변경승인 및 준공처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해당교육청과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시설사업이 미준공 된 경우로, 학교의 일부 부지(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제척할 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변경가능여부 → 도시계획변경관련은 해당 지자체에 협의가 필요하며, 당초 사유지를 포함하여 학교설립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별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시설사업 변경(사업기간)시 감독청에 변경승인을 사업기간내 득하지 못한 경우 → 기간내 변경승인 득하여 변경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재 라로 사업취소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승인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교육청에 변경승인 등의 별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내 위탁운영 편의시설의 교사시설 여부

질의

-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안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위탁운영하는 편의시설(커피전문점, 북카페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일부면적에 대하여 “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부대시설 카페테리아”로 용도표시 변경시 변경되는 부분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의 ①항 관련 교사의 구분중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의 교사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설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로 구분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학 내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편의시설의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건물 주용도의 부대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학교 교사기준면적 및 교지기준면적

질의

- 동일 학교법인의 2개의 캠퍼스에 대하여 각각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을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개의 캠퍼스를 하나로 보고 교사, 교지면적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 만약 학과 및 학생이 없더라도 교지 및 교사면적만 확보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7. 3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의 교사 및 교지에 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교사)에 학생정원에 따른 일정기준의 면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교지)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이 없는 교지 및 교사는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에 따른 객체가 없는 경우로써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교 내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여부

질의

- 대학교 내 휴게음식영업신고를 하고 싶은데 해당 인허가 관련부서에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 내 신고 가능한 휴게음식영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일지라도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



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학교내 음식점 영업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 해당부서(식품위생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내의 교회 및 불당 등 교육연구시설 여부

질의

- 기독교대학의 경우 학내에 교회, 성당 등이 있고 불교대학의 경우 학내에 법당이 있는데 이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시설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종교시설로 봐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7. 3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내 교회, 성당, 사찰 등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별표2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교 부속시설관련 문의

질의

- 대학교 부속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연수원,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골프연습장(6홀)을 대학교 부속시설로 볼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2.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 부속시설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학교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또는 국가·지자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항은 사립대학의 교육연구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학 설립주체 외의 자도 대학의 교

지 안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외부의 민간자본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는 어려우며, 또한 동 규정 별표2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대학의 실습 또는 부속시설로 볼 수 없으나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연수원, 유치원 및 관련학과가 있는 골프연습장 등은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교 시설내 1,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유무

질의

- ○ ○ 대학교내에 커피전문점을 오픈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중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현관 로비와 광장에 야외 매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커피전문점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4.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교 시설내 1,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유무 관련”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 먼저 대지조건의 용도지구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기존 용도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등)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절차를 받으시기 바라며, 신규 건물의 경우는 건축허가 용도 신청을 휴게음식점(식당) 등으로 직접 명시하여야 관련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학교내 음식점 영업인 * 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 * 군 * 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 해당부서(식품위생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내 주유소 설치 가능여부

질의

- 대학교 내 또는 학교구역 경계 지점에서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2.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의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주유소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속하는 시설로서 학생 안전 및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로부터 적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학교시설 감리업무

질의

- 복합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단지외부에 위치한 학교시설을 증축 후 기부채납하게 된 경우 질문입니다.
 1. 학교시설 감리자 선정주체? : (시행사 또는 교육청, 당초 본공사 감리자 선정시 단지내 시설만 감리계약되어, 시행사가 별도로 단지외부 학교시설 감리자 를 선정 공사 진행 가능 여부)
 2. 감리업무 관련 법적용 : 학교건물 감리에 대하여 주택법적용 또는 건축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요.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단지외에 지하철도공사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시설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각각 약65억 공사비) 기존학교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3개교 증축입니다(3개교 총공사 예상비 190억)* 지하철도공사 예상공사비 약 240억

회신

회신일 : 2011. 8. 26. [교육시설담당관]

- 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감리는 시행사에서 추진하고, 감리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 학교가 완성되면 교육청에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추진하시면 되고, 지하철도 등 학교부지 외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시면 됩니다. 학교관련 업무 협의는 해당교육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의 교사확보를 산정시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문의

질의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7항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자도 대학의 교지 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지어진 건축물이 대학설립주체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되지 않은 채로 대학설립주체가 아닌 자가 소유자로 될 수도 있음)
2. 그리고 동규정 제4조 7항에 따르면, 제2조7항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든지 간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문의>그렇다면 (1) 기업이 교지안에 대학의 토지를 빌려 연구소등을 건축하고, 그 건축물이 기업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 및 연구활동에 겸하여 사용한다면 그 면적을 교사로 간주하여, 교사확보를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교지내에 건축한 타인소유 건축물이 교사확보율에 산정된다면 대학은 여유의 토지를 기업등에게 제공하고, 기업등의 자금으로 연구소 등을 건축한 후, 대학은 일정면적을 교사로 인정받아 교사확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학의 정원증원시 필요한 교사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등의 용도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하여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설립주체가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지 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설립주체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교지 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사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고시에 따른 BTL사업 운영비 산출

질의

- 운영비 지급은 2011년 4분기 산출일 경우입니다. 예시)변동전 ⇒ 기준물가지수(2005.9월):100.8%, 변동전 ⇒ 지급 직전분기말 물가지수(2011.09월):122.6%로 적용하여 산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변동후 ⇒ 기준물가지수(2005.9월):86.828%, 변동후 ⇒ 지급 직전분기말 물가지수(2011.09월):104.9%로 적용하여 산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변동전 ⇒ 기준물가지수(2005.9월):100.8%, 변동후 ⇒ 지급 직전분기말 물가지수(2011.09월):104.9%로 적용하여 산출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2. [교육시설담당관]

- 2011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비 및 건설보조금 지급 시점에 따라 적용 지수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12월 전(통계청 변동 고시전)에 지급 시 신지수(2011.9월/104.9)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구지수(2011.9월/122.6)의 적용
 2. 12월 이후(통계청 변동 고시후)에 지급 시 신지수(2011.9월/104.9)를 적용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에 관하여 정산 등 처리방안 및 지침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오니 추후 기재부로 부터 방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설립 시 필요면적 유무

질의

- 국립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시 학교 시설 규정에 의거 필요 면적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면적기준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②항에 교사의 기준면적(별표1), 제5조 제②항에 체육장의 기준면적(별표2)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체육관 사용

질의

- 학교시설은 학교장 재량이고 또한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관인 만큼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6. [교육시설담당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2조(개방원칙) 제1항에서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이나 여가활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 등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민원인이 제기한대로 특정목적(학원 등)을 가지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학교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교육청마다 조례 내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교육청 담당부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내 수익용자산 설치 가능

질의

- 중·고등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시설내에 수익용재산인 골프연습장이 설치 가능한지요?
- 아니면 학교결정지 외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5. [교육시설담당관]



- 귀하께서 제기하신 중·고등학교 시설(도시계획)로 결정된 학교 시설내에 수익용재산인 골프연습장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로 분류되므로 교육시설내에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에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시설(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대상여부 질의

질의

-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특수학교에서 추진 예정인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과 관련하여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공장인허가(등록)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공장”의 표기가 있어야 공장인허가(등록)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 따라 500㎡ 미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공장으로 용도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용도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학교시설 정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현재 학교에서 등재를 요청하는 “공장”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교시설로 인정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규정을 적용을 받아 공장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라면 학교시설사업 결정지 내라도 해당 지자체와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득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5. 11.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교육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와 다르며,
- 교육연구시설 도시계획결정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며, 다만, 교육연구시설로 실험·실습실은 교육연구시설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실험·실습실을 설치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순 제기한 민원내용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도서를 준

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관련 문의

질의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 동법 제5조 1항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되는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시행중인 고등학교부지를 일부 제척하고자 할때, 최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된 사업이, 금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4. 22.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5조)에 따르면 동법 제4조에 학교시설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의제처리 협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소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시행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고등학교 부지를 일부 제척하는 문제는 학교시설사업 계획당시 제출한 설립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교지의 제척은 교지 확보율 등의 검토와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순 제기한 민원내용을 관련도서 없이 임의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도서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문의 후 별도 협의를 거쳐시기 바랍니다.

● 학교시설촉진법상 경미한 시행범위

질의

- 학교시설촉진법시행령상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①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합병·등록전환·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②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1. 건축법상 건축면적과 건축연면적은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 1항3호에 의거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명시한 건축연면적에 건축면적 1,200제곱미터 내 증가도 포함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9.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 1항 3에 항에 따르면 건축물 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경미한 시행계획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건축면적(건축 바닥면적)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바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증감에 따른 건축법상 용적을 및 건폐율 등에 따라 교사용 대지 적정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순 제기한 민원내용을 관련도서 없이 임의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관련 도서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문의 후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촉진법제5조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 학교시설촉진법 제5조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교를 신설하고자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를 일괄의제처리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1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대상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1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9.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신설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수학교, 유치원, 대안학교 등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학교는 도시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학교 신설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설립위치나 주변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 등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방문하여 도면 등 참고자료를 제시한 후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이용 주차장설치

질의

-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으로써 시내권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노상주차장시설의 비용이 많아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내의 초등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국비지원은 가능한지요?
- 우리나라의 학교운동장이용 지하주차장설치 학교 현황 및 학교명, 투자사업비 등 자료를 줄 수 있는지요? 2011년도에 국비등 지원받아 우수주차장을 설치한 학교는?

회신

회신일 : 2011. 11. 1.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 복합화(주차장 등) 설치 사업은 해당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사업비 투자 비율, 관리주체 등)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서울, 부산 등 여러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 지원이 있으나, 지방재정 상태를 확인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학원, 평생교육 등

4년제 대학교 부설 기관 설립

질의

-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설 기관으로 어학원이나 연구소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설 기관을 대학교에서 설립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립할 수 있는지요?
- 부설 기관 설립에 별다른 인가 사항이 없다면 이러한 대학교의 부설 기관들을 국내에 말고 외국에도 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 대학교의 부설 기관들(어학원이나, 연구소)의 운영에 대해 지원이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다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11. 4. [평생학습정책과]

- 먼저 각 대학에 국제어학원 및 연구소 등 많은 부설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설기관은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대학 자체에서 설립 신청하거나 평생교육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학 자체에서 설립하는 어학원 및 연구소 등은 교과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부설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설치된다면, 평생교육법(제30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제24조)과 규칙(제9조)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 입학 대상

질의

- 간호조무사 학원 입학시 고3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이상의 학력소유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만이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나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학생은 입학이 불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평생학습정책과]

- 지난 '11. 7. 25.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



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기술분야에 속하는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하여 학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개인과외교습 중지 명령

질의

-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생의 신분으로 되면 개인과외교습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대학교의 재학생의 과외교습행위는 동법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 개인과외교습소 보조요원 대상 등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교습소에서는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의제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요원의 역할과 교습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도 보조요원으로서 같이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라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지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습소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교습자)만이 교습을 할 수 있으며, 보조요원은 교습을 할 수 없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편의제공’이란 교습 이외에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지역교육청에 보조요원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 등) 대상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동문 장학회를 민법32조에 의한 장학재단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까?

질의

-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코자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 한 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은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공공의 이익과는 조금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할 장학재단을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코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담보

질의



- 공익법인 담당자입니다. 관내 법인이 2007년 주식교환매도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2011년 부과받았습니다. (6억상당)기본재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담보대출)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1. 이런사유로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대출)를 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법인측은 2007년 주식의 저가 매입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주장
- 2. 상환계획상에 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는지요?(5년간 상환? 10년간 상환?) - 5년 상환시 법인의 운영소득에서 상환금액이 높아 목적사업을 70% 이상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기간을 더 길게 하여 상환을 하면 목적사업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0.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이하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함을 전제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는 동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의 허가는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자산증가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 : 임대수입이 없는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 확보 등)
- 따라서,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고, 목적사업의 확대 운영이 아닌 세금 납부를 위한 법인의 장기차입 허가 신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제4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소모성 행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기타 불필요한 운영비 사업축소 및 절감 등) 등의 법인자체 자구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임 우리 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여주시길 바라오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사용여부

질의

- 금년부터 재단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20억원(현금) 조성되어 정관의 목적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재산의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기본재산은 어떤 경우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2·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곧바로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비용과 운영경비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수익,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에 운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우리 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하여주시길 바라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관련 법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 ② 삭제 ③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해당여부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인재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해당지역 각급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러 가지 보조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사업은 예산만 투입될 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시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및 보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를 장학재단내에 두어 운영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이 위 공익재단인 지자체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에 해당되어 해당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정관상 각종 교육지원사업 운영을 근거로 센터 등 운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설립허가 및 정관의 변경 등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업무처리 및 정관의 변경 사항은 관할 주소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공익법인의 지도감독은 권한은 시도교육감, 지자체 출현금의 관리 권한은 해당 지자체에서 있으며, 법인의 발전 및 보완 방안은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사업목적이 아닌 “성과 점검 등을 위한 센터 운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출 사항”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습비등 조정기준의 소급 적용

질의

- 학원법이 개정되어 관할 교육청에서 2012년도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 초등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변경전에는 일괄적으로 보습학원 고등부 단가를 적용받아 월 115,000원(월 1000분 기준)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변경된 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 월 107,000원을 받게 되어 새로운 조정기준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경우 오히려 금액이 인하되는 상황입니다.

※ 교습비 조정기준 - 변경전 : 일괄 보습학원 고등부 단가 적용, 월 115,000원[월 1000분기준] - 변경후 : 보습학원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초등 월 107,000원[월 1000분기준] 중등 월 121,000원[월 1000분기준] 고등 월 183,000원[월 1000분기준] 법이 바뀌면 무조건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변경등록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에 교육청에 통보한 금액대로 교습비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4. 12.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15조(교습비 등) 제4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교습비 등 관련 규정의 적용례)에 의하면 “제1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교습비 등을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에서 정한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지역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징수할 교습비 등을 교육감(교육장)에게 변경등록 신청하여 주시고, 제반 관계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습시간 제한 대상

질의

- 성인만 남아서 수업을 할 경우에도 심야교습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9.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

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제한을 정한 시·도에서는 교습시간 제한 이후에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습행위의 정의

질의

- 학교 교과과목이 아닌 교습행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일대일 인생상담, 정치강연, 비교과 활동, 리더쉽, 모의유엔, 과학캠프, 비교과 수업, 법률캠프, 스피시대회 등은 교습행위인가요?
- 캠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숙박을 하는 캠프에 비교과부분 모의유엔, 인문학 법률, 과학, 자원봉사, 리더쉽, 정치강연, 저널리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사인이 10명 이상(9명 이하는 교습소)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의 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위치와 시설·설비를 갖추어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재지 지역교육청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질의

- 방송통신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등록을 한 후에 학점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외에도 필수로 전공과목을 배워야 한다는데요. 전공과목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2. [평생학습정책과]

- 방송통신대와 학점은행제는 동시에 등록은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통신대 이수 학점은 해당 대학을 제적시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학점은행제는 1학기 최대 24학점, 1년 42학점 이내에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의 인정 학점 제한은, 학점은행운영기관 평가인정과목 이수 및 정규대학(방송통신대 포함) 학점 이수를 모두 포함한 학점으로, 예를 들어 방송통신대에서 1학기에 18학점을 이수하셨다면 학점은행제에서는 1학기 6학점만 인정가능하며, 2학기 중에는 18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에서는 현재 218개의 전공을 운영중에 있고, 각 전공별로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교양 등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 전공별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습자 콜센터 1600-0400)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교육훈련기관 검색”메뉴에서 검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 기간제한 예외 적용 해당 여부 질의

질의

-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평생교육과정)의 시간강사와 한국어학당의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입법취지에 의하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해설자료(2008)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본 대학 소속 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원 강의시수를 책임시수에 산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부 전문능력을 지닌 자들을 겸임, 객원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평생교육법 해설자료를 참고할 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시간강사와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강사 채용 시 계약 조건 등을 살펴보면, 본 대학의 시간강사와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입 수시 논술 캠프 개최

질의

- 고3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측의 협조로 학교 시설(강의실)을 이용하여 4일간 (09:00~18:00) 대입수시논술 특강을 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에 의거 민원의 조치 및 제재(단속이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6.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된 학원의 위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조직적인 교습활동을 하는 것은 학원의 위치와 시설·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개설 소재지

질의

-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이 대학 소재지를 떠나서 개설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12. 3. 27.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열린 교육사회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 또는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학 소재지 내의 공공시설 및 임차시설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평생교육법 해설자료(2008년)”에 따르면 대학을 벗어나서 평생교육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 임차시설에만 허용하며,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소재 대학만 가능하며, 광역시 등은 권역별 구역 내에서 허용 :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기타 도 지역 소재 대학은 해당 도 지역내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질의

- 현재 대학에서 부설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에서 평생교육원을 하나 더 설치하려하는데 타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설치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설치는 불가합니다. 학교법인에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설치할 수 없으며 법인 수익사업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시어, 교과부 관할 부서(사립대학제도과 혹은 대학원제도과)에서 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신 후 주소지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외부업체 이용 수익사업

질의

- 각 대학별로 동계나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한 기숙형 또는 통학형으로 해당 지역내 초등 및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및 과학캠프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설 평생교육센터가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 학교의 이름을 이용하여 모객을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평생교육법상 대학 부설 평생교육센터가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캠프를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4.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더라도 학원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은 사인이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학을 포함한 학교는 사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때는 평생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외부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얼마전 우리부에서는 대학측에 방학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운영되는 영어캠프에 시설을 임대해주지 말아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영어캠프가 학원법 등 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교외장소 이전

질의

- 현재 저희 교육원은 본교 캠퍼스내에서 학점은행 과정 및 일반 교양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법인소유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지, 또는 학점은행이나 일부교과목만 외부 건물에서 운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교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치 보고된 장소 외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소유 수익용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임차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학점은행과목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외부 임차시설로 이전하실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평가심사를 다시 받으셔야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학사 서적 구입

질의

- 독학사 2단계 가정학과 공부를 준비하는 중에 가정학 책을 구할 수가 없네요. 교보문고는 아예 서적도 없고요. 동네 서점은 더더욱 구할 수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3. [평생학습정책과]

- 독학학위제 운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 홈페이지(bdes.nile.or.kr)의 학습정보에서 고시된 전공별 평가영역 등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가시험으로 별도 지정된 교재가 없으므로 각 과목의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대학교재를 선택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가영역에 대해서도 교재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여러 책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가정학 전공 2단계의 평가영역은 가정학원론, 가정관리론, 복식디자인, 의복재료, 주거학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관련 전공서적을 확인하시어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법령 및 설치 시기

질의

-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관련 법령 및 언제부터 설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0. [평생학습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12.1.26. 공포·시행)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과 동 시행규칙을 개정('12.11.6.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설로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학생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13년부터 방송중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 사이버 학점은행제 기관 확인

질의

- ○○○○○.com 이라는 곳이 사이버교육센터로서 인정되어 학점인정이 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5.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은 학습과목단위로 평가인정하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검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 교육훈련기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학점은행제 운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를 통하여 학습설계를 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의 전환발급

질의

- 저는 1994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자격증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가지고만 있다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이 자격증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으로 전환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졸업한 대학의 행정실에 가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가져간 사회교육요원 자격증도 돌려주지 않으시고, 새로 발급된 자격증엔 단지 새로 발급한 날짜만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원래 취득한 기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 학교의 경우를 알아보니 거긴 예전 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게 하면서 새로 발급된 자격증에는 사회교육요원자격증 취득일과 함께 전환발급한 담당자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격증을 제출하려고 해도 자격이 취득 후 3년이 된 자나 5년 이상이 된 자를 찾는다면 저는 그 자격에 미달이 되버리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정확한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5. 4. [평생학습정책과]

-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의 전환 신청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발급 신청기관 : 최초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았던 해당 대학
 2. 구비 서류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원본, 개인 신분증
 3. 자격증 전환 발급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년/월/일은 전환발급 시점으로 기재하되, 자격증 하단 부에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일자와 전환발급 담당자의 성명(날인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학교에 위 사항을 안내하여 전환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내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일자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양해를 구하며, 전환받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지참하고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동 사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단, 기존에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 원본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발급 시 반드시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대체 발급

질의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받았는데, 요즘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자격증은 없는 것 같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과목이 당시 사회교육전문요원 과목과 일치하는 것이 많은데 그 자격증으로 대체하여 발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0.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부칙 제13조(1999.8.31)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5조(2000.3.13)에 근거하여, 「사회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2급,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3급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았던 대학측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원본과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의 전환발급을 신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생 모집횟수

질의

-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이며, 학칙에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칙에 수업일수를 4주로 정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13. [평생학습정책과]

- 별도반의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를 통합반과 달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주말반 등 재직자의 학습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통합반과 별도반 모두 학기를 단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반이라 해서 4주씩 여러 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의 학기는 2학기 혹은 4학기 중에서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별도반 시간제등록제도 1학기를 기준으로 총 입학정원의 10%를 학기별로 1회를 선발하는 것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과다한 시간제등록인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반의 경우도 시간제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별도반을 4주씩 수업하며 1학기에 여러 회수를 모집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

질의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조에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정확한 의미와 요건, 시민사회단체 예시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9. [평생학습정책과]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를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하는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조의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예로 서울YMCA, 대한상공회의소 청주,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통합검색에 '평생교육 해설자료'로 검색하시면 정보마당란에 PDF파일로 탑재되어 있는 해설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국대학 학점 인정

질의

- 현재 학점은 미국의 Santa fe community college 에서 72학점(그 중 ESL과정 38학점), 국내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9학점(전공 6학점, 교양 3학점), 배재대학교에서 20학점(전공 6학점, 교양 14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80학점 이수 → 전공과목 45학점, 교양과목 15학점[학점은행제 관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anta fe community college에서는 ESL과정(38학점)을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3.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은행제도는 외국의 학점인정에 대해서는 현재 졸업을 한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께서 미국의 Santa fe community college에서 졸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학력인정이 되지 않으며, 국내의 서울디지털대학교나 배재대학교에서 이수하신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민원인께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시 신청하신 선택 학위나 전공에 따라 학점인정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및 학위 수여 요건에 대하여는 학점은행제 전문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 1600-04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 강사 제출 서류

질의

- 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본국에서 검증을 받은 학위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외국인 강사들이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외국인강사가 한명인 소규모의 영어학원에서는 그 강사가 본국에 돌아가 관련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강사를 뽑아야 합니다. 외국인 강사가 많은 큰 학원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와 같은 작은 학원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학원에 재직중인 강사들의 서류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7.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외국인강사수가 급증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1. 7. 25. 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채용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검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 시 검증할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검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대상 또한, 학원법 부칙 제6조(외국인강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규정 시행('11. 10. 26)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 다만, 범죄경력조회서의 통상 발급 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지난 '11. 10. 25. 개정 안내문을 통하여 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12. 1. 25)에 기존강사에 대하여 검증으로 완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취지를 이해하시어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서류를 발급을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인 경우에는 본인이 자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서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강사 학력인증 방법

질의

- 외국인 강사 학력 인증이 졸업증명서나 졸업증명서로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항 제3호에서는 “학력증명서”는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졸업증명서도 학원법상 학력증명의 인정서류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외국인이 검정고시 응시가능 여부

질의

- H-2 비자로 있는 중국교포입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학위도 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귀화신청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은 외국인 신분이라서요 외국인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7. [평생학습정책과]

- 외국인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련 사실 증명서와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과 중국에서의 최종학력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최종학력증명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공증을 받으셔야 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교육청에 가셔서 신청 및 지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국적취득 중이시거나 근시일내에 국적 취득예정이라면, 국적을 취득하신 후에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준비서류 등에서 번잡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격교습(온라인 수업) 인가 대상

질의

- 인터넷 상으로 ○○○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교습도 학원처럼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3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에 의하면, 학원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교습을 한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격교습에 필요한 서버 등 관련장비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법령(학원법, 건축법 등)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학습자에게 상담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 등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격평생교육기관 설립 방법

질의

- 영리법인입니다. 새로운 사업진출기회를 보다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기반 온라인교육과정을 개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 정식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4. [평생학습정책과]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개인과 법인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수리는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호 서식인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고 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 등은 제14호 서식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설치자

질의

- 본교에서는 부설기관으로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관련 교육청에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신청당시 신고인을 대학교총장 명의로 하고 대학주체가 학교법인이므로 법인 관련서류도 함께 보냈습니다.
- 그런데 신고증에 설치자가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 명의로 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설치자가 대학교가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학교법인이 맞다고 합니다. 설치자가 법인이 맞는지, 대학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6. 4. [평생학습정책과]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장은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 신고를 하시면 되고,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법인 정관 대신 학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법인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되며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는 경우는 대학부설로서 대학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정식 인정 기관 여부

질의

-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원격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교육

과학기술부가 인정한 기관이라고 적어놨는데 확실한 건지

회신

회신일 : 2012. 2. 22.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운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교육훈련기관 검색”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습자 콜센터 1600-0400)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격평생교육원 회계

질의

- 사립전문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다가 요즘은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이나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받으므로 회계는 모두 교비회계로 통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원격평생교육원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하는 대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교육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남기려는 장사치로 오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8. 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회계는 교비특별회계로 처리됩니다. 단지, 대학부설이 아니라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 회계로 처리됩니다. 특히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부설로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작년까지는 학교법인에서만 설립이 가능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습의 교습행위 해당여부

질의

- 교실에서 강사 없이 학생만 자습하는 것은 학원법상 교습행위로 분류되어 교습비 징수 가



능한가?

- (교습행위 아니라서 교습비 징수 불가능 하다면) 교습행위가 아니면 10시 넘어서 자습만 하는 것은 합법인가?

회신

회신일 : 2012. 5. 2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학원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르면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 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혼자 자습하는 것은 교습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교습비등을 징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자습실 등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학원법 제2조의 학원 정의 및 같은 법 제16조의 교습시간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설립 기준

질의

-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코자합니다. 저희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은 장학금 지급이며 그 대상은
1. 고교재학중인 후배

2. 고교를 졸업한 동문

3. 고교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등입니다.

- 위의 목적과 수혜대상으로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학재단의 장학통장개설

질의

-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예금식 통장을 만들어주어 매 학년도 적립식 장학금을 통장에 예치해 두었다가 졸업 시에 5백만원을 찾게 만드는 게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7. [평생학습정책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됐으며, 아울러, 우리부 소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므로, 목적사업의 세부적 운영 방식은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위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하여주시길 바라오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장학회 감사 겸직 허가

질의

-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동창들이 모금 운동을 하여 장학회를 구성하며 저에게 감사(비상근)라는 직책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도 교육청에 장학회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의 신분이 사립학교 교수인데 교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장학회 서류에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서류에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아 질의 합니다. 저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고 교원도 아닌 신분으로 그저 모교 후배들을 위한 좋은 일로 작은 정성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을 유추해석(국가공무원법)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2. [평생학습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공무원, 공·사립학교의 교사·교수 등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겸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7.27] 제55조

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의 법적 최소기준

질의

- 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의 법적 최소기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30. [평생학습정책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규정 근거는 민법 제32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①, 같은법 시행령 제5조①입니다. 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 필요),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 우리 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위임되었으며 설립허가를 판단할 세부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립 허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관할 주소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전문학사 학위

질의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 전문대졸업과 동등한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30.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 취득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은행제의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위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1600-0400(학점은행제 콜센터)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교육비지원대상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평생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여성, 특성화(구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베이비부머(1955. 1. 1~1963. 12. 31 출생자) 등 교육비가 전액지원되는 1순위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더군요.
- 대상자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도 1순위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비해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리고 1955. 1. 1~1963. 12. 31 출생자로 되어있는 베이부머는 내년에는 1956년에서 1964년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 [평생학습정책과]

- 동 사업은 '08년, '09년에는 지원대학의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주로 운영되다가 '10년부터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올해 교과부 기본계획에는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한 지침에 학습비 지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서는 학습비 지원 대상을 민원인께서 열거하신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습비 지원은 국가 재정이 아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액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학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지원 대상, 지원액 등)은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증액 신청한 동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질의

-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평생교육사가 타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7. [평생학습정책과]

-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 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 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시 정규 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과 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임, 비전 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리스트

질의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리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기관이 학교장이 아닌 교과부장관명으로 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될 계획은 없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2. 21.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정규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운영현황



(2011.5 기준)과 현재까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의 목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nile.or.kr>) 홈페이지 정보마당-기타자료 내 탑재된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법 상 대학(원) 형태의 양성체제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권한은 각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사 승급과정과 지정양성기관(2010.8월 종료),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일정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연 6~7천명에 이르는 자격증 발급자의 심사와 발급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처리하여 교과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 또한, 대학의 역할 확대와 자율성 제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동 사안과 관련 자격증 발급을 진흥원을 통해 교과부장관 명의로 통일하려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교과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법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격증 발급이 진흥원을 통한 교과부장관 명의로 일원화 되게 됩니다.(그러나, 동 사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과 진흥원의 실적인 업무적인 처리 능력, 일부 자격증 취득자의 대학장 명의 자격증 선호 등 고려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

질의

- 평생교육사 자격이 필요하여 2011년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 편입학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3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방송대 담당자(2012년 4월초)가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그럼 방송대 졸업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니 대졸자이기 때문에 졸업은 안 해도 되고 실습과목 성적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 원격평생교육원에 문의하였는데 실습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관련과목 4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실습과목 단독이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7. [평생학습정책과]

- 민원인께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고자 학점은행 기관을 찾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특정 과목 이수를 위해 타 과목 추가 이수 등의 운영 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평생교육실습 등 자격 취득관련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설정됨에 따라 현장실습과목(보육실습 등)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민원(패키지 단위로 등록 허용)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학점은행기관에 현장실습과목 수강을 요청할 경우,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별 학습과목단위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실습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후관리컨설팅실-70(2012.2.29)).
-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상 자격증 취득은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이 충족될 경우 가능하므로,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을 위해 종전 이수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평생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된 양성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하신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 대학의 장 명의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II

질의

- 문의 1 : 평생교육사 자격을 위한 수업과 학부, 석사과정 중 이수했던 과목이 동일하다면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상,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학점이 서로 다르게 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문의 2 : 고용노동부에서 재직자 또는 실업자 환급과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설치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 3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기관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나 실적 평가(강의의 질, 수업 운영 방법, 수강료 등) 등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5.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법령 상 인정이 가능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에 종전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 자격증 취득 과목으로 인정이 일부 가능하며,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의 전환(1999),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2007) 등으로 인해 해당 시기 별 인정되는 과목이 상이하므로 인정 가능한 과목 명칭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재직자 환급과정 운영 현황은 별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양성기관 측에 직접적인 문의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대학(시간제등록 포함)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자체적으로 과목 개설이 가능하며,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과목 개설 이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의 평가에 의해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정받은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해당 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기관에서의 개설 과목은 강의의 수준 등을 보장받은 과목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길라잡이」,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 학점은행기관 목록」 등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자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정보마당-기타자료에 탑재하여 안내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사 자격관련 업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02-3780-9757, 9955)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민원인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질의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대학의 기관장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에도 대학의 기관장이 교원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교원자격증 교부규정을 대학에 주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사에 대한 교부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24조 제4항에는 교부절차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서 교부절차를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도,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사를 교부하도록 되어

어 있습니다. 대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학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법적 위탁규정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을 무시하고, 교부절차만을 규정하라고 하였는데 자격증 교부까지 위임하는 게 맞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5. [평생학습정책과]

- 문의자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권한위임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상의 권한위임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부분이 대학에서 발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동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의 편의와 대학의 역할 확대,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학형태가 아닌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이들에 한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여부

질의

- 폐교시설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3.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원으로는 “학원법”에 따른 ‘기숙학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

질의

-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건축물용도를 갖추라는 언급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만 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



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1. 9. 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 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 용도 지정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면세 조건

질의

-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인터넷원격교육(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과정은 단일과정이 보통 16시간과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에서 ‘불특정 학습자 대상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이라는 규정에서의 30시간보다 적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30시간이상’의 법적의미를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27.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6조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2008년에 발행한 “평생교육법 등 해설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란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시간의 교육과정이 연12회 반복된다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이전

질의

- 타 도에서 서울로 평생교육시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서식이 없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다르면 이전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와 폐쇄,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 이전 등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을 달리하여 위치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통보하고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과태료 부과**질의**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와 관련된 별표 9 과태료 개별기준 중 ‘다.’ 항목에서는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고 위반사항을 제시하고 1, 3, 6개월 기간 경과별로 액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면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것이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 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변경, 설치자변경이나 과목변경 등과 같은 변경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도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때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 제33조 제2항(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폐쇄신고) - 제33조 제3항(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폐쇄신고) - 제35조 제2항(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 제36조 제3항(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 제37조 제3항(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 제38조 제3항(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변경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변경신고 대신 폐쇄 - 신규 설치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태만히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이용 연령 제한

질의

- 평생교육시설인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의 제1항 1의 다항목을 적용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연령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에게 특별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듯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1.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3.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
 4.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 설비기준, 강사기준, 교습비 기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학원이 적절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 편법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적용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구분

질의

-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된 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 과목을 운영 중입니다. 법인과는 별도로 운영중인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습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계가 법인의 일반회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강료를 받으며 운영 중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일반회계

가 교비회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0. [평생학습정책과]

- ○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 시설의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평생교육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혹은 법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법인의 정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원 설치절차

질의

- 평생교육원 설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안내서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5.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부설로 설치하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시도교육청(실업무는 주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에서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등록을 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설치 요건은 시도교육청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설치하시고자 하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 교육정보 > 평생학습 > 평생교육시설” 메뉴를 방문하시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절차가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교수 전임교원 통계 포함 여부

질의

- 사립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 소속할 교수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통계 상 전임교원 현황에 평생교육원 교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과목 담당하기 위한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고등교육통계상 전임교원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9. [평생학습정책과]

- 소관부서인 “대학선진화과”에 확인한 결과평생교육원 전임교원은 학점은행제 담당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통계를 위한 전임교원 현황 조사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선진화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 통계를 위한 전임교원 현황 조사 시,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자는 제외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별 학생정원을 교원산출기준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평생교육법 상의 학점은행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채용한 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원 지역별 개설가능 여부

질의

- A도시에서평생교육신문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취지가 너무 소중하여서, B도시에 평생교육신문지점을 개설하고, B지역에서도 A지역과 같은 상호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8. [평생학습정책과]

-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기관당 1시설을 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목적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별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언론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가능여부

질의

- 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초·중·고)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체험활동 중심의 청소년프로그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7.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조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범위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원법에 의한 교습과정을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습과정과 교육대상은 관할교육청에서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 초·중·고 교과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 유아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

질의

- 독학사와 학점은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0. [평생학습정책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진흥원의 주요업무는 동법 제19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 기타공공기



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www.alio.go.kr(알리오)를 통하여 경영정보가 공시되고 있습니다.

학위연계 미신청 학점 인정

질의

- 전문학사 취득 이전의 학점은 평생교육진흥법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올해 학사 편입으로 원서를 다 접수 넣었습니다. 하지만 학점인정이 되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9.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취득 제도로, 각종 학점인정의 기준 등은 고등교육에 부합하는 학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인정받지 않은 과목이 있다 할지라도 학위연계 후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범위 내의 학점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입니다. 이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할 때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기준과 같습니다.
- 이에 대한 사항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및 학위를 신청하기 위한 화면절차에서도 ‘학위신청 주의사항’ 부분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최종 학위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학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계획에 따라 학위수여시기의 결정권이 있는 학습자 본인께서 선택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해 현재로서는 학위취득 이전의 이수학점은 학점인정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수강료 기준

질의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이 겹칠 경우(컴퓨터, 웅변, 부기, 속독 등)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학교교

과교습과정에서만 수강료 기준이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수강료 기준 없이 관할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되는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을 받을 경우 수강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 현재 법률 개정에 따라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며, '11. 10. 26. 개정·공포될 학원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과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종류에 적합한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로 분류하도록 개정 추진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평생학습 질문

질의

- 평생교육업무가 지방위임사무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24.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취지에서 일률적으로 지방위임사무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 「평생교육법」을 2007년 개정하여 그동안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수행되어 온 평생교육을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종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 단체장에게도 그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 사업 수행에 큰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학원 교재비 징수

질의



- 학원사업을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어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차량비, 급식비, 피복비, 기숙사비, 재료비)만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비는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교재(가맹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교재)이므로 일반 시중서점 등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여, 우리학원에 프랜차이즈본사의 카드단말기(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9. [평생학습정책과]

- '11.10.25.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인터넷 또는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출판업체와 학원설립·운영자와의 계약관계에서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는 교재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출판업체에서 제공한 카드단말기를 학원 내에 설치하여 교재 판매 대행행위(영수증 발급)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교재판매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대상 성인 포함 여부

질의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대상에 성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의 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고자 한다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성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사학위 인증

질의

-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이 세 곳에서 학사학위와 졸업증명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곳에서 받은 학사학위와 졸업증명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4년제 대학교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0. [평생학습정책과]

-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은 현행 고등교육법상에 속한 정규과정의 학위수여기관이며, 사이버대학 역시 원격대학으로 구분되나, 일반 대학과 같이 2년제, 4년제, 석사학위 등 취득 기간에 따라 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 학점은행제도는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 제도로 다양한 비정규 학습 결과를 학점(credit)으로 인정하고 그 누적에 따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안적 고등교육 제도입니다.
- 일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 등의 방송통신 원격대학은 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을 수여받게 되나, 학점은행제는 학점 인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게 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명의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학원 공제보험 가입

질의

- 유치원과 학원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상해포함)을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교과부에서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4.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3조(과태료)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5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경과일수(10일 이하, 11~20일 이하, 21~30일 이하, 31~60일 이하, 61~90일 이하, 91일 이상)에 따라서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원 교과과목의 범위

질의

- 국어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논술을 추가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에 따르면 학원에서 ‘논술’ 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교습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설비(강의실 등) 또는 교습비 등 변경등록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논술 교습과정의 경우, 대학진학에 따른 논술을 대비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에 추가한 것으로서 교습방법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대상 범위

질의

- 학원법(시행령 별표 2)을 보면 외국어, 독서실 계열의 교습대상에 ‘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데, 몇 세를 말하는 건가요? 또한 예능과 기타계열, 특수교육의 경우 교습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상 유아의 범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표에서 예능, 기타는 교습대상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 않았으나, 학원법 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초·중등학생 모두가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학원 등록 대상자

질의

- 학원법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인 유아, 초·중등학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하고자 한다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 보충수업비 징수

질의

- 학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충수업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입시미술학원들은 보충비를 징수해도 되는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 [평생학습정책과]

- '11.10.25.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외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참사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 수익자 부담금 문의

질의

- 개정 학원법에는기타비 항목에서 교재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내 서점 사업자 신고등록 후 교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차량비를 징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 [평생학습정책과]

-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원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으로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의 보조자료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참삭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차량비는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써 실비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경비 인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관리법」상 지입차량 및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원 지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질의

- 학원에 지로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원은 지로용지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일부 학원은 신용카드 결제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4.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 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에 의한 별지 24호 서식에 의하여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개로, 학습자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용카드영수증, 현금발급영수증, 지로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차량비

질의

- 학원에서 차량비를 받아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7. [평생학습정책과]

-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에서는 학원에서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이외의 차량비를 포함한 6종의 기타경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정부기관, 회사, 학교, 어린이집에서 그 소속원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 내 유상운송을 하려면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강사 등록 조건

질의

- 4년제 대학 2학년을 수료 학원강사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 사례집에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3학년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적 당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전부 이수하였다면 강사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과정 이수 여부는 개별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 학원강사 채용 가능 여부

질의

- ○ ○ 신학교(대학교가아님) 유아교육과 졸업자로서,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로서 2년~3년의 경력사항이 증명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유아, 초등대상)의 학원강사로 채용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강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4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바, - 동 조항에서 ‘실무경력’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강사를 등록하고자하는 시점에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였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 인정이 된다면 학원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적 당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전부 이수하였다면 강사자격이 있습니다.

- 다만, 과정 이수 여부는 개별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 학칙을 확인하시어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학원명 및 학원시설 문의

질의

- 학원이름을 정할 때 ○○○○교실학원이라고 하고 싶는데 “교실”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인지 학원이름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로 학원 설립을 하려면 강의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강의실만 있어도 되는지요?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무실도 꼭 있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5. 4.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습자등으로 하여금 학원 이외의 시설로 오인하게 함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법규 위배여부 및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하실 사례를 가지고 소관 교육지원청으로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원 시설기준은 학원법 제8조에 의하여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관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법상 교습행위

질의

-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서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대로 남편은 수학과목을 아내는 영어과목을 각각 교습할 경우 이들 각각 개인과외신고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 개인과외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한분도 학원법상의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1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인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교육청의 신고를 필하고 교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 과외교습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하는 경우 등은 학원·교습소의 편법·불법 운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위 편법·불법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교육청에서 교습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상호 표기

질의

- 학원이나 교습소 상호를 영어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0.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부 소관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에 의하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학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발급

질의

-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들어가니 학점인정신청서류도착분에 한해서 일차, 이차, 삼차로 나누

어서 학점인정신청처리를 해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나누었음 학위증명서를 일찍 발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심 안될까요? 학위증은 8월 후반에 받을 수 있게 하시더라두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5.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취득 제도이며, 일년에 두 번 2월과 8월에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이수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이외에도 학습자의 학위신청 이후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 등 학위수여를 위한 심사 및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이에, 학위증명서 발급은 학위수여 이후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에서도 졸업 후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과 동일합니다. 학위취득 이전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가 있으며,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거나 충족가능 할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발급해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기관과 외국대학의 공동학위제

질의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영국의 치체스터대학과 공동학위제를 통해 영국의 학위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학위취득을 위한 운영방법은 우리 기관에서 학점은행제의 전문학사학위(80학점), 학사학위(140학점)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며, 치체스터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교육(영어교육, 영어로 강의진행, 영국방문교육 등을 협의중)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학위취득 요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교과부장관명의로 학위’와 영국 ‘치체스터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영국 치체스터대학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춘다면,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기관과는 공동학위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9.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



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EU FTA 체결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 부속서 7-가-4에 의거하여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성인교육서비스를 시장접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와 영국 치체스터대학 간의 MOU는 가능하나,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영국 치체스터대학 간의 MOU는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인가

질의

- 공연 및 연극과정 학점은행제를 만들고 싶은데, 인가 받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8.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대상기관은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으며, 신청자격 및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공지사항 >기관공지에서 평가인정 평가편람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학점은행제의 인증기관 확인은 어디서?

질의

-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원할 때 여러 업체 중 어느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업체인지 학생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생교육시설에서 받으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2.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에 의거 교육청에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생교육시설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은 아닙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은 학습과목단위로 평가인정이 이루어지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검색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www.cb.or.kr>) “교육훈련기관 검색” 메뉴에서 지역별, 전공별, 기관별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IT분야의 비영리단체의 설립

질의

- IT분야의 비영리단체 주무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맞는지 여부
-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 기타 단체설립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회신

회신일 : 2012. 4. 2. [평생학습정책과]

- 관련 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정의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설립절차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SAT의 실용외국어 해당 여부

질의

- 현재 교과부에서 정한 실용외국어 항목에 일선 교육청에서 SAT를 포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또한 교과부에서 SAT를 실용외국어로 정의하는 근거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8.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상 실용외국어의 범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및 별표 2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 국제화(분야) - 외국어계열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 등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습과정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상 교습과정의 범위, 위반, 규정 등 관련 :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 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인(개인 또는 사법인 포함)이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한다면 비 교과활동이라 하더라도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설립·운영등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등록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종류는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하였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단체 등록문의

질의

- 아이들에게 언어와 동화를 통한 교육을 하여서 언어표현 및 발표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1. 언어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무엇이며
 2. 중앙부처로 등록하려면 지회나 지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사무실이 설립이 되어있어야 하는 건지
 3. 등록 절차 등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 [평생학습정책과]

- 관련 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 정의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설립절차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중앙행정기관)에게, ※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었는바,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허가 신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질의

- 설립목적이 자선, 장학이 아닌 기술진흥인 비영리사단법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장학재단 설립이 비영리법인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인지)

회신

회신일 : 2012. 6. 12.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며, 공익법인은 동 법률과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이 됩니다.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으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기본재산 출연 등이 설립주체인 해당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여부 등을 주무관청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 교육과학기술부 비영리법인 업무(교육분야)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위임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 및 지방교육공무원

강임후 승진시 전 경력 인정

질의

-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강임(6급에서 7급으로)하여 전입하였습니다.
- 질문1. 승진소요연수(4년-개정 3년 6월)에 전 6급 경력이 포함되는지?
- 질문2. 대우공무원 선발시(5년)에 전 6급 경력이 포함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5. 31. [지방교육자치과]

-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에 따르면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이전 6급 경력(2004.4~2007.6)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대우공무원 선발시에도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권

질의

- 지방자치법 제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교육감(지자체 장)의 권한인 바, 법령이 아닌 단순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또는 예규)에 의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7.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며, 임용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합니다.
- 질의하신 교과부의 부령(예규, 지침 등) 등은 해당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의 권한

질의

- 교육위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이 아닌 것을 질문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0. [지방교육자치과]

- 교육위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위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일반 시도의회위원으로서의 권한을 같이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질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포함)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 그리고 같은 규정 제2조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점심시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9.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이며,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제외)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1시간의 점심시간은 유지하되 점심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시간의 범위라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공무원복무제도 해설(2006.5)참고)

방위산업체경력 민간경력인정여부

질의

- 공무원 호봉재확정시 방위산업체 경력을 민간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2. [지방교육자치과]

- 병역법에 따라 일정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자는 병무청장에게 지정받은 방위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확정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93호)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보면, 군복무경력 인정 기준에서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체에서 3년간 복무한 경력은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의 직렬 및 직류에 따라 관련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유사경력 인정

질의

- 2012년 5월 11일 개정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을 보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가진 경우 동일분야는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는 7할 이내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2. [지방교육자치과]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 2]에 따라 호봉을 확정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 2-다-4)의 조항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411호, 2012.5.17)”(66p 참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분야의 경우 10할이내, 비동일분야의 경우 7할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동일 분야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58p 참조)의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은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이에 귀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정규직(상근) 경력의 경우도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다만, 경력이 인정될 경우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귀하께서 소속해있는 기관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경력의 지방공무원 호봉 인정

질의

- 교육행정공무원이 임용전 사립유치원 정규교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지방공무원 호봉에 인정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8. [지방교육자치과]

- 사립유치원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재직하신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경력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에 의거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동일분야의 경우 10할 이내, 비동일분야의 경우 7할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하셨던 유치원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일 경우 7할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 결원직렬 전직 요건

질의

- 공무원임용령제28조(전직의 요건)와 관련하여 결원인 직렬에서 기능직공무원 전직 시행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11. 9. 22.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거 전직이란 동일한 직종 내에서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으로써 결원보충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직렬의 기관 내 결원이 발생하고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직에 의하고자 하는 임용권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전직의 실시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및 제29조 등에 의거 임용권자가 해당기관의 인력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질의

- 2012.06.30.자로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별승진 대상자에 되신분들중에 1) 2012.06.30.자 명예퇴직신청. 2) 2011.07.01.자 승진. 위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 명예퇴직일 전날이면 2012.06.29.일자가 되는 것이니 특별승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4.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명예퇴직하는 2급이하 공무원(기능직 포함)의 경우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처럼 재직기간이 1년 미



만이라면 특별승진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질의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시 왜 기능직공무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5.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각 임용권자(시·도교육청)별로 설치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6~2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포함)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기능직공무원 포함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발령받을시 호봉계산

질의

-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지 올해가 20년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임용(교사)시험을 패스하여 교육공무원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호봉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6. [지방교육자치과]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교사의 신규 임용 호봉 확정 시 10할을 인정하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된 10급 경력의 9급 경력으로 인정 여부

질의

- 지역교육청에서 기능10급으로 임용 후 현재 기능9급(8급 대우)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능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 년수가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된 기능 10급 경력을 9급경력으로 인정받아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0. [지방교육자치과]

- 근속승진은 직종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 당해계급에서 근속승진기간 만큼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귀하께서 현재 기능9급이시라면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기능9급으로서 7년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는 하위계급(기능10급)에서의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학교회계직원 기준

질의

- 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즉 학교회계의 재원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학교회계직원과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 밖의 다른 조직이나 회계에서 보수를 받지만 근무장소가 학교인 근로자 등도 있습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1. 학교회계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제2호의 행정직원 등 직원에 포함되는지?
- 2.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자로서 위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동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제2호의 행정직원 등 직원에 포함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11. 9. 14. [지방교육자치과]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정한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



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 학교직원의 포함 범위로 결정함에 있어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구분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관련 법률(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채용 또는 고용한 인력을 말합니다.

- 따라서 학교회계직원, 위탁업체 직원, 또는 간접 고용된 직원 등이 동법에서 정한 학교직원 인지의 여부는 확일적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동 법률 입법취지에 따라 관련 고용주체가 개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채용, 고용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직원인 경우에는 행정직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립학교 신증설 기준 및 예산 교부 문의

질의

- 공립 초등학교 신설시 충족되어야 할 학생수 및 학급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000세대에 초등학생 수요가 800명 정도 되고, 도시계획상 학교로 결정되어진 곳에 800명이라는 학생수가 설립조건에 불충분하여 교과부에서 학교신설예산 교부를 안하여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 또한 인천시교육청에 2013년 개교예정인 가칭 도담초(초6) 설립신청을 교과부에 했는지 또한 예산교부를 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우리부에서는 학교 신설수요 판단시 급당 인원을 35명, 대도시 신설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36학급 규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해당지역 내 학생 수, 인접지역 내 기존학교의 시설규모, 학생수, 통학여건, 학교 신설시 필요한 교원 확보 및 개교 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인천 도담초등학교 설립 예산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대규모 학교 기준

질의

- 지나치게 많은 학급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를 과대규모의 학교라 알고 있는데, 몇학급이상, 학생수 몇명이상을 과대규모학교라 구분하는지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관련한 적정한 학교규모, 학급규모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7.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교의 설립,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신설비 집행잔액 처리

질의

- 교과부에서 교부한 학교신설비 일부를 시교육청 예비비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예산에 쓸 수 있는지요?
- 또한 학교신설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정산서를 받고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14. [지방교육재정과]

- 사업시행자가 사후 정산 조건으로 학교를 지어준 경우 사업비 정산금액을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 과목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시도의 학교신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신설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 미집행 예산 차기년도 집행가능 여부

질의



- 1. 지방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나요?
- 그리고 회계관련 법령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 2. 반대로, 지방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미집행된 예산을 집행하였다면 어떤 회계 법령 및 근거로 집행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3. 9. [지방교육재정 과]

- 귀하께서 문의한 “예산 집행 중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및 회계관련 법령 및 근거” 및 “미집행 예산에 대한 차기년도 집행 방법”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동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명시이월비임을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합니다.
- 만약, 명시이월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예산을 소급 집행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장학금의 회계처리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규칙”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을 경우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이 원칙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법인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안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7. [지방교육재정 과]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3조,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귀하께서 문의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았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학교에서 기부받은 발전기금은 법인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아니되며 별도의 회계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을 제정하여 학교발전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1부.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토지 소유자이기 위한 기준일

질의

- 지역주택조합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전체세대의 50%는 일반분양하였고, 나머지 50%는 지역주택조합원에 분양하였습니다. 일반분양한 50%의 세대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당해 사업지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토지 소유자”이기 위한 기준일을 알고 싶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의 도시개발사업지역 토지 소유자인지?
 2. 도시개발사업지역 지정일 이전의 토지 소유자인지?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았을 경우, 지역주택조합원이 분양받은 세대는 학교용지부담금 비부과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 [지방교육재정교과] [지방교육재정교과]

-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라 함은 주택조합원 자격유무와 무관하게 분양받은 세대가 개발사업 이전에 해당 개발지역에 거주하였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공립학교 결정시 입안 제안자

질의

- 질문1. 공립고등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관할 시도의 교육감이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입안 제안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요?
- 질문2. 국립대학교에서 관할 시도 교육감과 합의한 경우, 국립대학교에서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공립고등학교) 결정에 대한 입안 제안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6. [지방교육재정교과] [지방교육재정교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제2조 제6호에 학교는 기반시설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처럼 국립대학교가 동법 제26조의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법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학교용지 부담금 제외 여부

질의

-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의제 협의 사항 중 학교용지부담금 제외 대상(교육청 협의)

회신

회신일 : 2011. 11. 8.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용지의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 목적(학교용지의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룸형 주택중 30㎡이하인 경우에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취학수용을 유발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사립학교 계약관련 법**질의**

- 조달물자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 어느법을 적용할지는 수요기관이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바, 교육기관의 경우에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교육청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고 있으나, 사립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해석상 그 적용규정이 모호하여, 일선행정기관 및 계약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가 및 지방 계약법 중 어느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해당법을 적용하는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3. [지방교육재정과]

- 사립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에 따라 해당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는 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사업을 정하여 교부하는 목적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교부기관에서 지정하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집행하기도 하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사립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집행하기도 하는 등 집행방법이 예산교부기관, 관할청, 사립학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 관련 계약 예규를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관련 계약 예규와 대동소이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집행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 직장주택조합아파트사업(일반분양없음)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8. [지방교육재정교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 하면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 다만 법 제5조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제5조의2에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징수의 방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폐교 리스트

질의

- 폐교된 학교 리스트를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폐교 후 매각대상 학교 리스트도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3. [지방교육재정교과]

- 폐교현황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자료실에 연도별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며, 지역별 폐교활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교법에 대한 질의

질의

1. 폐교법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세울때, 사립학교법인과 경기도교육감이 MOU체결하는 방법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의 한가지 방법일 수 있는지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지요? 만약 조례에 의하여 해당폐교의 관리를 교육감이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 했다면, 지역 교육장과 학교법인이 협약(MOU)을 체결할수 있는지요?
2. 폐교법 시행령제4조무상대부기간의 계산은 예를 들어 건축비 3억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축조하고 기부조건으로 무상 대부를 받을때, 연간 대부료가 2천만원이었다면, 건축비3억원을 연간 대부료 2만원으로 나눈 15년간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폐교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다만,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을 했다면 폐교재산의 활용에 대한 결정은 교육장이 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인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교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해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의 기부채납된 재산가액을 부지사용료를 합산한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이 3억원,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한 연간대부료가 2천만원인 경우에 무상대부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폐교재산 용도 변경 내부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등에 관한 특례)제1항에서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폐교재산의 용도(교육연구시설을 노유시설등)를 변경하여 대부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5조의 1항에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교재산의 공유재산 적용 및 대부기간 문의

질의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의 “폐교재산”이란 “공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의미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2항에서 폐교재산을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용 시설로 대부하려는 경우 대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항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해석 할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므로 시·도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 대부기간을 10년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5.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폐교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없이 공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교재산이 행정재산일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교재산을 대부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폐교재산이 일반재산일 경우는 대부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폐촉법」에 따라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문의

질의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의 적용을 받는 학습은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만을 말하는 것인지?
2. 또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인정은 관련 인허가 규정을 득한 때만에 가능한지? 아니면 대부희망자의 사업계획서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3. 법규정에 시설의 종류를 나열하여 박물관 “등”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럼 기타 가능한 시설 또는 사업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8.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폐교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시도교육감임을 뜻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활용 시 인정 범위, 인정 규정 및 기타 가능한 사업종류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부료 환급

질의

- 1.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2.3.21 법개정 제11385호) 취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면제해 주자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계약의 대부분은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



며 법의 명칭 그대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임.

- 따라서 이 법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법개정 적용일자부터의 대부료에 대하여도 무상대부사유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에 의하여 즉시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6. [지방교육재정과]

- 12.3.21.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폐교재산 대부가 '12.3.21.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원 및 녹지 면적 축소 가능여부

질의

-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40만제곱미터 면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가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까지 무상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조의 3항, 4항에 의거하여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하여 일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환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4조의2는 학교용지 및 시설의 확보·설치의 방법, 주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

인과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녹지 축소 및 가처분용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개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학율이 100% 수준이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재정수요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국회의 입법 취지이며, 같은 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수도권 개발사업 시 녹지율 1% 축소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학교시설비용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 지자체, 입주민에게 부담이 전가 되지는 않습니다.

● 학교 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질의

-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40만제곱미터 면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소가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까지 무상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 4조의 3항, 4항에 의거하여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하여 일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을 다른 용도로 변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1.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4조의2는 학교용지 및 시설의 확보·설치의 방법, 주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2. 녹지축소 및 가처분용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3.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변경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 등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질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해석

질의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공사는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조 4항 1호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 아래 부기에 “제5조 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부담금 면제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면 제 5조의 2 2항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토지개발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담금(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8/1000)과 단독주택지에 대한 부담금(단독주택지 분양가격*14/1000) 둘다 내야 되는 것인지 그 중 하나만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둘다 사업지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토지에 대한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아님)
2. 동법 제 7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 개발 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여라고 하는 것이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의미하는 국유지와 공유지란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안에 위치한 국유지와 공유지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님, 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한 국유지와 공유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의 헌법불합치 판결('08. 9. 25)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해 면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에 따라 같은 법을 개정('09.5.28)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 부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제외)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의2 규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대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같은 법 제7조에서의 양여는 무상양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양여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 소관인 중앙 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양여 여부를 협의해야 할 것 이며, 국공유지의 위치는 “개발사업 승인 당시에 그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내 위치한 국공유지 전체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증축비용의 부담조건 변경

질의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인근 초등학교의 3개교실에 대한 증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최종협의하여 관할시청에서 사업승인조건으로 승인들 득하였습니다.
- 1. 3개교실에 대한 증축비용은 관할 교육청의 관리과의 비용검토후 사업승인후 6개월내 협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2. 2012.2/29일이 사업승인후 6개월이 되는날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인근초등학교가 건축한지 오래되어 내진설계가 안된 관계로 증축은 불가능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리모델링 비용은 당초 3개교실에 대한 증축비용보다 훨씬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3. 아다시피 증축비용의 부담은 결국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시 기납부(증축비용)금액만큼 감면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4. 해당 교육청에서는 사업승인조건에 증축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부여되어 준공 시점에서 관할 시청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낼경우 불이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5. 이럴 경우 원활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기탁금으로 납부할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5. [지방교육재정교과] [지방교육재정교과]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2)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으로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의 환경개선(리모델링), 급식소·체육관 증축 등의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3)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4) 아울러 동법에서는 기탁금을 통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질의

-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민간 주택사업시행자가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분양 및 건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주택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또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교과] [지방교육재정교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

상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을 법 제1조에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하면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질의

-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를 시공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득하고 착공을 하였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발급 받았는데
 1. 납부 기간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납부기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5%가 붙는다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에 연체가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한번 붙은 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계속 변동없이 유지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1.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서는 납부고지서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기간 연기 신청은 해당 시도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산금의 가산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5조의 3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질의

-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중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



준)의 제2항의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과 관련하여, 아래 조건하에서, 개정규정 “1천분의 8”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규정 “1천분의 4”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최초 사업승인일 : 1999년 12월 28일 , 공동주택 302세대
2. 변경 사업승인일 : 2007년 11월 9일, 공동주택 438세대(사업승인 불임조건상 “총 분양가액의 1천분의 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3.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2008년 3월 4. 2차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 2011년 10월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시공사 변경후 입주자 모집승인 및 분양을 다시함)상기의 조건하에,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9743호,2009.05.28) 제3조와 관련한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 [지방교육재정과]

-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4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부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신청의 최초 시점은 사업주체와는 별개로,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승인권자가 최초 개발사업의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과의 연계성, 관련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신청인지, 재신청(변경신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문의

질의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분석 중 아래와 같은 조건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 상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확인

회신

회신일 : 2011. 10. 30.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동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은 출자비율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위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하려 하는데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초 분양공급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또한 사용승인일까지 계약체결하지 못한 세대(미분양)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미분양된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최초분양공급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 매 분기 종료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

질의

- 당사는 현재 300세대 미만의 주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당 지자체교육청 문의결과 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기존학교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 1. 상기와 같은 경우 학교 증축 비용에 대한 산정 방법, 비용 부담의 주체, 사업자 부담 비용의 한도액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2. 상기 학교증축 비용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31. [지방교육재정과]

- 1) 공동주택 건설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부족할 경우 교육감은 사업승인에 대하여 “불허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동주택 사업규모를 학생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2)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학교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3) 이와는 별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II

질의

- 현재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진행 중이며 사업승인 조건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2조 3항) 중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나와 있으며 동법 5조 4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면제하여야 한다. 4호의 내용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지원청과는 위의 법령을 근거로 학교신설이 불가하여 주변학교의 증축에 대한 비용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부담금의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징수대상이며 고지서를 발급하여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 그 이유로는 지금 시점에서 증축과 관련된 비용을 알 수 없으니 고지를 하겠다는 것인데 증축을 진행하려면 해당 학교의 현상황을 고려한 설계 및 인허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일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계, 인허가등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진행한다면 그 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인데 지자체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발급되어 부과를 한다면 ① 추후 증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②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 한 것인지(지자체는 환급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③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자체가 협약서를 근거로 발급시점을 유예하여 분양시점에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④ 추후 증축비용 발생 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학교 증축비용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징수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9.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



는 경우 가까운 곳에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4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세부 답변으로 ① 추후 증축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점은 “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지자체에서는 부담금 부과시 교육청과 증축에 대해 협의된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2001.3월~2005.3월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민원인께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③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자체가 협약서를 근거로 발급시점을 유예하여 분양시점에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 추후 증축비용 발생 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 학교용지 부담금의 발급시점이 “분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협의된 비용을 감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의

질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해 공동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시행사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상 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 학교신설에 의한 학생수용이 불가하여 학생수용을 위해 인근초등학교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부담하라(교육청 협의사항)는 조건이 있습니다.
- 이때, 상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상 교실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회사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30. [지방교육재정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개발사업으로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실증축 등의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기준 분양가격**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시 분양가격의 0.8%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만약, 준공이후 할인 분양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은 할인된 분양가격이 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2. 13.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단



독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분양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질의

1.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가격의 0.4%를 측정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점은 최초 2007년 12월 분양을 시작하여 2010.07월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분양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시 사측에서 입주지원책을 실시하여 계약자들의 실제분양가격이 낮아질 경우 (10%할인)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액에서 할인된 비율만큼(10%)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에는 총세대수에서 5개의 미분양만 존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미납부 된 5세대에 대하여 현재 할인된 분양으로 재분양을 할 경우 미납된 5세대의 부담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분양금액이 최초분양금액인지? 아니면 현재 할인분양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5. 1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여부 및 절차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분양된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 중으로 기존학교 학생 수용이 어려워 교육청에서 기존 학교 증축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증축비용 전체부담 또

는 증축 후 기부채납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항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증축비용(전체부담) 또는 전체 증축시설비가 학교용지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면제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관련법규 및 규정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30. [지방교육재정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으로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II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1인(법인 포함)에게 일괄매각하는 것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공동주택 분양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12.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사유 발생시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인근학교의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토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그리고,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즉, 동법 제5조의 분양하거나 분양하는 자의 의미는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분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을 1인(법인 포함)에게 일괄매각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도지사는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당초 건축허가 조건으로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라 하면 해당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된 조건(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조건 등)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승인 당시 법률로 정해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부칙<제9743호, 2009.5.28> 제3조 에 의거, 2009.5.28일 이전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분양가격의 0.4%이고 그 이후는 0.8%로 알고 있는 바, 2009.5.28일 이전 개발사업시행자(A건설)가 분양진행(2007.6.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중 부도처리, 기 분양계약자 전부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전액 환급 후, 2009.5.28일 이후 새로운 사업매수자 시행자(B건설)가 사업계획변경승인(2010.6.24일, 사업주체 변경 A건설 → B건설 승인) 받은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2010. 8.18일 한 후 전세대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 이때 2009.5.28일 이후 이 사업체(B건설)가 전세대 분양한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담금 요율 적용은 2009.05.28. 이후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신청의 최초 시점은 사업주체와는 별개로,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

는 승인권자가 최초 개발사업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승인과의 연계성, 관련규정,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초신청인지, 재신청(변경신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이 되면 그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분양을 하였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제출할 경우 관청에서 법적조치(과태료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에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분납

질의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동일법령 제5조의2에 의거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나,
2.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 불안정으로 분납수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납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8.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유예신청

질의

- 2006.6.7 건축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에 의거 학교용지를 구매하였으나, 현재까지 교육청에 서는 매입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분기별 분양현황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분양 완료된 현재 극심한 경영난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5조4항에 의거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시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유예허가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6.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유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하신 사항이 관할 시,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교용지의 무상 기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승인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건으로 교육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조건이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질의

- 매수자 즉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증빙서류(영수증 원본, 계약서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기재)를 가지고 신청하면 최초분양자에게 알리고 동의여부를 묻는데요, 만약 최초분양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어 알릴 수도 없고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없을 때 매수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매수자 즉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는 것이 관련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2. 1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

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질의

- 전매로 아파트를 3명(부모2, 딸1) 공동명의로 계약하여 등기했으나, 3명 중 한명이 사망(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부의 총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부담자로 신청코자 하는데 무슨 서류를 받으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은 납부한 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동법 제3조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 납부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매에 의하여 아파트를 계약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민법에 따른 상속인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관련

질의

-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에 학교가 없어 입주시기까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변학교의 증축에 관한



비용을 무상공급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항 4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0. [지방교육재정과]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4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 귀속시키고,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문의

질의

- 산업단지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시행주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기부채납할 경우 추후 관할 지자체가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4. 4.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부과 대상

질의

- 학교용지분담금 부과대상(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립)에 해당이 되나 현재 최근 3개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인구수 및 학급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9. [지방교육재정교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최근 3년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야 하며, 법의 목적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모두에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동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규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당연면제 사유인 같은 법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와는 달리 임의 면제 규정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의 수요의 발생, 취학인구수 변동, 학교용지배임비 시도 부담금 마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부담 주체

질의

- 부지면적 57만㎡(소유자 지방공사 68% 정도, 국공유지 32%), 계획세대수 약 3,6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행정계획)을 지방공사에서 제안하여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자산매각으로 공사 소유의 토지(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등)를 일반에 매각하고, 민간 사업자



가 공동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학교용지 조성 개발의 주체를 개발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을 하고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학생수용 불가로 인한 사업승인 불허 가능여부

질의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30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기존의 학교로는 초등학생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허가권자에게 통보되어 허가권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불허 한다는데 300세대 미만은 법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이유로 사업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30. [지방교육재정과]

-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을 인근 주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어,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의 경우일지라도 지자체장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근 학교 수용 현황에 대해 해당 시·도청에서 교육청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에 대한 사항은 관련 인허가(승인)권자인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 및 통계 관련

교육환경평가 시기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해야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라는 시기가 정비계획결정 고시 전까지로 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7.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이하 교육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였듯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개발사업 단계에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예,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이 분명하여 해당 학교용지의 변경 및 주변환경의 변화 요인 등에 따라 인허가 기관 및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란 타 개발 및 정비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단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까지, 택지개발 촉진법은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까지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스마트 교육의 예상되는 부작용

질의



- 3년 후부터 전면 적용되는 스마트교육이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추진 이유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계속해 이용하면 집중력과 인지 발달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정서적으로도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사람들과의 교감과 공감 능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2. [교육정보기획과]

- 스마트교육은 기존의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육환경을 혁신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ICT 기기 활용이 아닌 학생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등 교사-학생 쌍방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 즉, 스마트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을 넓혀주고, 교육내용을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확장시키며, 교육방법을 학생과 학생들 간의 협업과 소통에 중점을 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학교 수업보다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디바이스만을 가지고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보화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스마트교육을 조기에 전면실행하기 보다는 모델학교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사례들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며, 교원들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교육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구역 재심의

질의

- 여관 건물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 여관 면적도 따라 늘어나게 되는 바람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정화구역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객실면적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인해 늘어난 면적 때문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여관 등의 숙박업소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자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소 조항에서는 정화구역 내 하여서는 아니되는 조건을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운영 중인 여관의 영업행위는 변화가 없더라도, 시설 자체는 변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변 여건 및 시설 자체의 변화로 인한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02-2100-6541) 또는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변경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관련

질의

1. 학교 확장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협의결과 “학교를 확장할 경우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를 새롭게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확대가 수반되므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여부를 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라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등 이후 행정절차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2. 학교확장에 따른 변경되는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교육청 협의를 통한 사전 확인결과에 따라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인지?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인지? - 아니면 기존 운영중인 학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 아니라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설치 유무와 필요시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학교확장으로 인해 변경이 예상되는 정화구역은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산자락 및 마을경계부로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이 없음)

회신

회신일 : 2012. 5. 23.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만약 기존 운영중인 학교의 확장으로 학교 부지를 일부 확장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운영여부를 확인하신 후, 운영중인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또는 이전/폐쇄 대책 등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존 운영중인 학교의 확장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대상은 아니며, 따라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NEIS 학생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인인증서

질의

- 제 NEIS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정보를 조회할 때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6.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학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생의 성적, 건강, 출결 등과 같은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으므로 학생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를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생서비스용 인증서는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학생서비스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 배너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학생서비스 및 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시범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2013년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내 공학계열(소재, 재료만) 대학 현황

질의

- 12년 6월 현재 국내 전체 대학에서 공학계열(소재, 재료만)의 대학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7. [교육통계과]

- 질의하신 내용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mainAction.do?process=load>)에 들어가시면 민원인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실 수 있습니다.

☎ 대학현황문의

질의

- 우리나라 대학대학교 현황을 알 수 있는지요? 학교명칭이나 학교위치 등 세부내용까지 알 수 있으면 더욱 좋구요.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7. 29. [교육통계과]

- 자료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이트의 대학별 검색에서 유형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름 DB 현황

질의

- 제가 개발할 어플에서 회원들의 졸업, 재학중인 학교 정보를 받을 계획이라 전국 학교명 DB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교육통계과]

- 우리부는 초·중·고 또는 대학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사이트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 초 · 중 · 고등학교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 대학교



Ⅱ.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과 학 기 술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차이와 문서

질의

-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중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7조2의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 두 법규를 보면 내용상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작성하고 추진하는 차이가 보이는 데요, 두 계획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 어디에서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최신 버전을 확인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2. [기초과학정책과]

- 문의하신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 관련 내용은 2010년 12월에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부분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및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3차('13-'17)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중이며, 2013년도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범부처적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교과부가 주관이 되어 소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에서 나타나듯이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관련 산업정책,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 지식과 정보자원 등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보다 폭넓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 수입 관세감면 가능자 조건 및 신청절차 문의

질의

-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 수입 관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대상자로 해당 되는데 감면대상확인서를 받기 위해선 해당 업체가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4. [기초과학정책과]



- 관세법 제90조 제1 제4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감면율 :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하는 연구용 기자재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011.6.7)”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수입 예정인 연구용 기자재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별도의 감면대상확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 서류를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2. 연구개발용품 용도설명서
 3. 물품 카탈로그 사본
 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5. 송품장(Invoice)
 6.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7. 포장명세서
 8. 원산지 증명서
 9.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서 정한 서류참고로, 귀사에서 향후에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매년 11월 말~12월 초 기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기획팀(02-3460-9034)에서 실시하는 수요 조사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칩

질의

- 저는 5분가량만 햇별을 쬌이면 알레르기가 올라오는데 형태는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중첩식 이거든요.
- 이밖에도 알레르기가 몇 가지 있는데 햇별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도 잘 못 가는데 정말로 피한방울로 60가지의 진단이 가능한가요?

- 아직 실용단계인지 저도검사가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26. [미래기술과]

- 알레르기 진단칩은 현재 2008년부터 병원 등에 판매되어 알레르기 진단검사가 가능하며, 해당 알레르기 진단칩은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호흡기로 들어오는 물질(예를 들면 꽃가루, 동물털, 진드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를 검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 하지만 본 알레르기 진단칩은 햇볕 알레르기를 검사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해당 제품 개발자로부터의 답변), 문의하신 내용 중 햇볕 알레르기와 알레르기 진단칩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극 월동 대원 파견**질의**

- 현재는 공중보건의만 남극 월동 대원에 선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내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90% 이상은 공중보건의가 아닌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할 것 같습니다. 군의관이라고 해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인원은 한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군의관 수요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금 불공평한 지원 기준을 완화시켜주시고.

회신

회신일 : 2011. 11. 25. [원천연구과]

- 현재 극지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하 “농특법”)에 의거하여 매년 2인의 남극세종과학기지 공중보건의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는 이미 남극세종과학기지(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에 대한 지침 중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의 남극세종과학기지’)에 공중보건의 파견을 위한 정원이 확보되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에 대해 군의관의 경우를 제한한다는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의관 파견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남극세종과학기지파견 내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극지연구소-032-260-603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

질의

- 연안법에서 명시하고 2012 해설집에 따르면 자연계열인 수학과는 과학기술분야에 해당됩니다. 실험을 전혀 하지 않는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항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case1 . 자연과학대학 소속 수학과 교수이나 실험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교육대상자 해당여부
- case2. 건축대학 소속 건축전공으로 단순 컴퓨터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만 하는 학부생이 교육대상자 여부
- case3. 생활과학대학 소속 아동가정학과 교원으로 이론만 강의하는 교수의 교육대상자여부
- case4. 생활과학대학 소속 의류학과 대학원생으로 문헌에 의한 논문만 작성하는 비상주(논문협의시에만 학교방문) 박사과정 학생의 교육대상자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6. 1. [연구환경안전과]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의 실험·실습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실내의 유해·위험요인,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안전표지 및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기 안전교육 문의 대상인 실험을 전혀 하지 않은 수학과 교수(1), 단순 컴퓨터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만 하는 학부생(2), 생활과학대학 소속 아동가정학과 이론만 강의하는 교수(3), 의류학과 대학원생으로 문헌에 의한 논문만 작성하는 비상주 박사과정 학생(4)은 연구실에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실험·실습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질의

- 연구실은 총인원이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연안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거하

여 법 전부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8. [연구환경안전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학·연구기관 등 각 기관의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각 연구실에 대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연구기관 내 연구활동 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이라면 금번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으로 법 미적용 대상기관임을 공문으로(교과부 연구환경안전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교육 인정범위

질의

-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에 따르면 기술사는 교과부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별표2(교육훈련의 종류, 내용 및 인정기준)에는 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해당 기술분야 교육으로만 되어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진단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술사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0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법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제도는 3년간 총 90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이중 기본교육 12학점, 전문교육 12학점(시행령 제13조(별표2))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시행규칙 제4조(별표))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질의하신 교육훈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기술사법에 따른 교육훈련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질의

- 기술사 자격증이 주는 혜택이 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처럼 큰가요?
- 회사생활만 하기에다 벼찬데, 별 도움 안되는 교육 과정 만들어 놓고 이수하지 못하면 벌금 100만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2. 1.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 계속교육은 ① 경쟁력 있는 기술사의 육성, ② 윤리관 있는 기술사의 육성, ③ 국제성 있는 기술사의 육성, ④ 기술사 책무에 관한 기본사항(공익성 확보의 책무, 자질향상의 책무, 사회환경의 변화와 글로벌화 대응에의 책무, 적합한 판단향상에 대한 책무)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정부는 기술사에 대해 일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의 설정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우수기술사 양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등 기술사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혜택(가점 등) 부여로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교육의 취지, 이해관계자(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향후 교육훈련 관련 제도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를 통한 기술사 상호인정 여부

질의

-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은 상호 국회비준도 마쳤습니다.
- 이제는, 양국간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기술사 상호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거 같은데, 구체적인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8. [과기인재정책과]

-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FTA 협정 발효(2012.3.15)후 1년 이내에 양국 대표들로 구성될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는 그 논의 결과를 양국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2013년 3월 이전까지 관계부처를 포함한 통상 국제 전문가,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미국측 실무작업반과 기술사 인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상호인정시 준비서류와 관련하여 양국간 기술사 인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현재로선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질의**

1. 저는 지금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건축사 자격을 이용한 건축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보유하고 있는 자격은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직무) 1항 및 3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직무(건설분야)를 수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8. [과기인재정책과]

- 귀하의 경우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건축사 사무소에 기술사가 아닌 건축사로 신고 되어 있고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 감리업무만을 수행한다면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기술사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는 3년간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술사가 교육훈련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신고업무 수탁기관(한국기술사회, ☎ 02-3288-4459)에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



서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운용방식 문의

질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계속 늘어나 신규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이 필요한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왜냐하면 비정규직 인력은 한 연구원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연구에 전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적절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9. [연구기관지원팀]

- 최근 몇 년간 정부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의 질적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10.5)하여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복지·교육 등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규직 정원확대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출연기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해서 문의

질의

- 퇴직 후 적립형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아껴 가며 과학기술인공제회(www.sema.or.kr)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불안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3. 5 [과기인재기반과]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거하여 '03.5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 동 공제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이고,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회 및 정부로부터 주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 매년, 감사원 감사 : 3년마다)
- 또한, 공제회 정관 제11조에 의해 예산과 결산 등 주요사항은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설 과학관 설립 문의**질의**

- 사설 과학관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1. 9. 5. [과기인재기반과]

- 사립과학관(사설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과학관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립과학관 설립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교과부)에서도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시책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소관 시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① 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감독부처

질의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홈페이지를 대거 개선한 후 국민들에게 더욱 홍보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이언스 올에서의 포인트 존에서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책 소개에서 초등, 중학, 고교생들에게 읽을거리를 안내하면서 바로 옆에 흡연하는 외국인의 얼굴을 버젓이 표지를 보여주는 것은 웬일입니까?
-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들의 의식 없는 게시작업을 누가 감독하며 예방하고 또한 징계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12. 20. [과학문화팀]

- 제기하신 도서는 2011 상반기 대학일반부 우수과학도서로 일반인과 대학생 회원을 주 타겟으로 하는 도서 상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에 적절하지 않은 책소개 이미지를 게시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귀하의 지적 후 이미지를 삭제하고 책 제목으로만 소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이언스올은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를 철저하게 검증·관리하여 우수한 과학정보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교육과정(선택교육과정)

질의

1. 광주광역시(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고1 과정의 공통과학이 교재도 주지 않고 과학

1(물1, 생1, 지1, 화1)으로 교체되어 정규수업시간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예 고1 과정의 과학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1 과정의 과학의 내용 중에 과학 1에 없는 내용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입니다.

2. 타 과목 중에도 교재마저 주지 않고 있는 과목이 있으며 더군다나 교재가 없는데 수업이 그 교재로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3. 과학만 해도 교과서도 주지 않고 사교재(ebs나 기타 부교재)를 사라고 하여 정규 교육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과서를 없애고 사교육 교재를 구입해 교과서로 사용하는 게 2중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30. [과기인재양성과]

- 과학과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학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기에 학교의 여건에 따라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등을 먼저 편성하고 과학과목은 이후에 편성·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발행 될 수 있는 '인정교과서' 체제 이므로 교사가 재구성 후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대신 EBS교재로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적용시기

질의

1. 2013년부터 수학교과서가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과서로 바뀐다고 네이버에서 봤는데 개념 설명이 매우 자세해지나요?
2.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의 수학 교과서에 수록되는 내용들이 생활 속 사례와 체험, 수학과 관련된 각종 이야기 위주로 바뀐다. 우선 내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교과서가 바뀐다. 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교 1학년, 2015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2016년에는 고교 3학년의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바뀐다. 2013년-초1,2 중1,2 2014년-초 3,4학년 중3 2015년-초 5,6 고1,2 2016년-고3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초1과 초2는 어릴때부터 사고력을 키워줘야 하니까 상관없는데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서로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많아 빨리 중1,2,3때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로 잘 다져놔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9. [과기인재양성과]

-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된 설명과 공식, 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교과서에 수학적 의미, 역사적 맥락 및 실생활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 편찬시 스토리텔링 형식을 일부 단원(수와 연산, 도형 등)에 적용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교과서 인정체제 전환에 따른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과서를 보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학적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을 도입하여 설명하는데는 분명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도입부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여러 부분에 실생활과 연계되는 내용의 소재 및 문제 제시 등역사적인 맥락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을 계기로 학생활동 중심의 좋은 수학교과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둘째, 문의하신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잘 못 이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서 학년군 체제의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2013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2013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3학년까지의 교과서가 모두 제공되는데 위에 언급한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2013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교과서 형태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여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이 중학교의 경우 내년 신입생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내년 중학교 신입생과 현재 중학생과는 배우는 내용부터 다르다(내년 입학하는 중학생은 집합을 배우지 않음 등)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모든 입시(연합고사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도 교육과정에 따라 문제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며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결국,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라면 스토리텔링형태의 교과서가 어떤 형태의 교과서인지는 후배들을 통해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교과서를 이용하여 배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학교 교육과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 문 대 학

국비 무료 수업 실시 전문대학

질의

- 매월 수당을 받고 국비 무료 수업을 실시하는 전문대학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2. [전문대 학과]

- 국비무료교육은 국비넷(<http://www.gukbi.net>)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과 설치 시점

질의

1. 학과 설치가 꼭 학년도 시작일과 같아야 하나요?
2. 학과 준비를 위하여 학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또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학과를 미리 설치할 수 있나요?
3. 교수도 미리 채용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11. 11. 22. [전문대 학과]

- 대학의 학과설폐는 대학의 자율사항입니다(보건의료, 교육관련학과 제외)학과의 설폐나 정원조정은 학교의 자율사항이나 입시요강발표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치예정학과에 대한 교수 채용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 가을학기 졸업 규정

질의

- 저희 학교엔 가을학기졸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대학엔 가을학기 졸



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해당 관련사항을 학교측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없다, 안된다.”라고만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8. [전문대학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졸업, 수료 및 학기와 수업일수 등은 해당 대학의 학칙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대학의 운영사항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교과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전문대학 명칭 사용에 대해

질의

- 일반 직업전문학교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학점은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문학교 등에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회신일 : 2012. 2. 22. [전문대학과]

-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설치되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시설이며,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거나, 동 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교육기관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대학과 대학원 병행 가능 여부

질의

- 4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현 1학년생)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에 대학원(석사)과정과 함께 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7. 6. [전문대학과]

- 우리부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해당 학교의 학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대학(재학하고 있는 대학,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및 대학원

4학년 재학중 취업한 학생의 성적 기준

질의

- 4학년 재학 중 취업계를 내고 학교에 전혀 출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성적을 어떻게 주며 통과되어 졸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5.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5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선생님께서 재학 중인 신라대학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2010년도) “제50조(학점 취득자격)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 과목 학점취득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대학이 신라대학교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할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제 건축학과의 4년제 트랙 공동운영 여부?

질의

- 현재 운영중인 공과대학의 건축학과는 대부분 5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자격증이나 건축학교육 인증이 필요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다른 학과의 경우와 같이 4년 수료 후 일정자격을 갖추면 학사 자격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5년제 건축학과에서 4년제 트랙 동시 운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학선진화과]

- 문의하신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1항 5호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해 운영이 가능한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일부대학 시행중임)*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모집단위내에서 세부전공을 선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함으로 세부전공을 건축공학(5년), 건축학과(4년)으로 운영이 가능함*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문의

질의

- 2011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과 그 시행일을 2012년 7월로 하는 부칙 조항에 따라 2012년 8월 이후에는 전임강사 명칭으로 임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 8월 이후에도 전임강사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임용기간 종료일까지는 전임강사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12년 8월에는 조건 없이 조교수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6.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도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봅니다.
- 따라서 2012년 7월 21일자로 기존의 전임강사는 별도의 발령 없이 모두 조교수로 되므로 인사기록카드에는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조교수로 임용”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 다만, 호봉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내년 7월 이전에 개정할 계획이므로 그에 따르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 조교수와 전임강사

질의

- 7월이면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임강사란 용어가 없어지고 조교수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임강사(2년) + 조교수(4년), 총 6년이 있어서 부교수 승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의하면 조교수(5년)으로 학칙에서 규정할 예정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이걸 학교에서 신입교수들에게 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의 Case 두개를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Case 1. 2010년 3월 전임강사 임용자 → 2012년 4월 조교수 임용 → 2016년 4월 부교수 임용 예정 Case 2. 2011년 3월 전임강사 임용자 → 2016년 4월 부교수 임용예정(단, 학칙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가정함.) 개정될 학칙에 의하면 2011년 3월 임용자(Case 2)는 개정될 학칙에 의하여 승진을 규정받게 되어 위와 같이 부교수 승진 가능일자가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그래서 혹시 이미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어도, 2012년 7월에 개정 시행될 규칙에 의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11. [대학선진화과]

- 2012.7.22부터는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에 개정한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당시 전임강사인 사람뿐 아니라, 조교수, 부교수, 교수인 사람도 종전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 조교수 경력 5년이면 부교수 승진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개정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전임강사를 거쳐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경우(Case1) 전임강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총 5년의 경력이 있다면 부교수 승진이 가능한 근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 재임용**질의**

-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님을 2년 계약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교원의 업적평가를 통해서 몇 점 이상이면 재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2년 후에 이 분이 기준 점수 이상을 받으시면 본교에서는 이 분을 재임용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16. [대학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교원이라면 재임용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수 창업에 대한 문의

질의

- 사립학교 교수가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6. [대학선진화과]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학 교원은 그 소속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대학 교원이 그 소속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교수신분으로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대표직 가능여부

질의

-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단체를 만드는데 그 교수가 그 대표직을 맡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대표를 맡게 되면 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8.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대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직은 이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함에 해당하므로 대학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표직을 맡게 되면 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수자격기준에 관한 문의

질의

- 전임강사 자격기준이 대학졸업자는 3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사수료자인 경우 대학교수로 임용이 가능한지요?
- 3년의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 [대학선진화과]

- 박사과정 수료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석·박사 재학기간 5년에 대해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으로 보아 30%에서 70%까지 경력을 인정(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대학의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으로 보아 100%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수자격인정 및 호봉산정시 인정비율

질의

- 교수자격 인정시 외국사립대학교(○○○ 대학교)에서 Research Fellow(연구원) 무급으로 일한 경우도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9. [대학선진화과]

- 교수자격 인정시 연구실적의 환산율에 대해서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서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호봉에 관해서는 국립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중유급, 상근일 경우에는 100% 인정하여야 하나, 임시로 임용되어 무



급으로 연구에 종사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립의 경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교원 인사위원회 관련

질의

- 학과의 폐지로 폐지학과 소속 교원을 다른 학과로 변경시키는 경우(근무지변경)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 하는것 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4.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의 정의에 따르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 또한 제8항에서는 ‘전보’에 대해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원의 ‘임면’은 임용을 말하므로, 귀 법인의 정관대로 교원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는 절차를 따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원임용 상통직 인정 판단시 인사자문위원회 필수여부

질의

- 상통직 경력 인정 시 인사자문위원회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 지 상통직 경력 인정 여부에 논란 이 없을 시에는 인사자문위원회 거치지 않고 담당자 재량으로 예규 의 환산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30.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11.10.20)”에 따르면 대학 교원의 상통직 여부 판단은 엄격히 하되, 인정여부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상통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경력 인정여부에 논란이 없음에 대한 판단은 임용대상자의 전력이 대학, 대학원의 전공학과, 학위 및 연구논문, 채용 후 담당할 과목과 상통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원자격증 갱신 가능 여부

질의

- 학사학위 취득자로 중등교원자격증(정보컴퓨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만약 타대학의 수학과로 학사편입을 한다면 교원자격증을 수학으로 갱신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 [대학선진화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자격증을 가진 자가 ‘수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수학과 관련된 학부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수학교사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업무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공무원(조교 및 교수) 호봉 확정시 대학원에서 학위취득경력 산정 기준

질의

-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한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 2)]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별표1]의 연구경력(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적용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7.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2012.2) [별표1]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으로 석사의 경우 각 대학



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은 등록과 수학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 실제 등록은 하였으나, 등록한 학기 중에 수학한 사실이 없다면(성적취득, 논문지도 등)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보수

질의

- 현재 국립대학의 교수로 회사 대표이사로 겸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이사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회사의 이익이 발생되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할 생각인데 공무원법에 영리법인의 보수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2.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서 교육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한 벤처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의 필요성, 적절성, 학생의 교육,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따져 허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이 허가하였을 경우 겸직 및 보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의 범위

질의

- 조교는 정규적인가요 혹은 비정규적인가요?
- 또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4.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는 정규직이나 교육공무원이 아닌 조교는 소속된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므로, 계약의 실재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의 범위에 조교는 해당하지 않고, 제3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공무원'에는 해당합니다. 공무원보수 업무 등의 지침 상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조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3항에 의하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5년이든 10년이든, 휴직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29.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간의 제한 등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직을 명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해당 대학에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교수의 근무기간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호 가목>으로,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



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2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1) 대학의 부교수 직급에 있는 교원이 교수로의 승진을 신청할 때,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승진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신청서에 「본인의 선택으로 정년까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재직기간(희망재직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2) 희망재직기간을 명시하여 교수로 승진이 된 교원이 희망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퇴직 대상인지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6. 15.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교수의 근무기간은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희망 계약기간의 만료는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희망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당연퇴직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③항 겸임교수 관련

질의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③항 및 ○○대학교기금교수등임용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겸임교수의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대학에서 4년까지 겸임교수로 재직한 분의 재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학의 경우 회계법인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사를 초빙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4년 이상은 겸임교수로 근무할 수 없는 위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초빙하여 강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이 규정이 4년 이상의 겸임교수 근무는 불가능한게 맞는지 신규로 임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11. [대학선진화과]

-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교원 외에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따라 “교수자격기

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하며,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로서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한 자입니다.

- 따라서 국립대 겸임교원은 교육공무원은 아니며, 임용기간 등에 대하여 법령에 별도 명시된 부분이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겸임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교육, 연구 등 교원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법정 교원 확보 수에도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위 교육관계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직공무원 민간기업 호봉인정에 대하여

질의

- 교육직 공무원인 경우(교원을 제외한 행정직교육공무원(예) 국립대 조교신분의 행정직원) 민간기업 경력이 여전히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 왜 대우가 틀린것인지?
- 이에 대한 처우는 계속 이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5.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3호) [별표1] 라. 그 밖의 경력, (7) 회사 근무 경력 부분에 교육공무원(국립대 조교 포함)은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대해서는 4월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한 예규 [별표2]에 따르면 대학교원(국립대 조교 제외)의 경우는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상통직 경력)을 7할에서 8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학교원 상통직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산업체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12.1.6)으로 동 예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대 행정조교 신분

질의

- 국공립대 행정조교의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발표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에 포함되는 신분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5. [대학선진화과]

- 조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또한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을 확인한 결과, 조교는 해당 지침 ‘붙임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대 교원의 겸직 가능여부

질의

- 국립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 중인 교수가 (사단법인) ○○교총의 회장에 입후보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6. [대학선진화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원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 때 보직자인 교원에 대하여 겸직 사전허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대학의 장이 신중히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국립대 조교 개인과외 가능여부

질의

- 국립대 조교 신분으로 개인 과외나 강의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8. [대학선진화과]

- 공무원인 국립대 조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모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학원 강의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사회통념상 적절한 강의료를 지급받고 영리업무종사 금지 판단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장의 신고 후 출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인지 여부는, 당해 조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당해 조교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조교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행위 업무 금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 조교 경력 호봉획정

질의

- 국공립대학의 조교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한 경력은 5할인 아닌 8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대학원 졸업 재학기간 2004. 3월~2006. 8월 2년 6개월에 대한 경력은 2년 6개월이 맞는 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중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은 5할을 인정하며, 국공립대 조교 경력은 이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예규에 따라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석사의 경우 그 필요한 수업연한에 대하여 10할을 인정하므로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대 조교의 역할

질의

- 고등교육법 14조에서는 교직원의 구분에서 교원, 직원, 조교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의 교직원의 임무에서 교원과 직원 및 조교의 임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국립대 조교의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9.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조교를 두어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속하는 각 부서나 학과(부) 및 학교 부속시설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직원 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동법 제15조 제3항),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도록 별도로 구분해 놓은 바, 조교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교육, 연구 및 학사 관련 업무라면 「고등교육법」 상의 조교의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으며, 임용의 횟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대 행정조교 수당

질의

- 국립대 조교(교육공무원신분)에 임용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6.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신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 2012.1.12)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2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조교 7호봉의 봉급액은 1,983,500원에서 100,100원을 뺀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립대학 조교 연수기간 복무

질의

- 조교는 1년마다 재임용형식으로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1~4개월까지 외국기관에 연수(외국정부장학금받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교는 3개월간 육아휴직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연수를 허락하면 휴직처리가 되지 않는지, 연수 등의 이유로 일반휴직 등이 되는지, 복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1.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교육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제1항 제5호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제6호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될 때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제시된 1~4개월의 외국기관 연수는 위에서 규정한 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휴직기간(출산 및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군 휴학 기간 문의

질의

- 단기 부사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 휴학은 2년 정도 인결로 알고 있는데 단기 부사관을 할시 군 복무 기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 단기 부사관을 할시 자동으로 군 휴학기간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단기 부사관 되고 나서 따로 학교에 서류를 보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5. [대학선진화과]

- 휴학관련은 재학 중인 대학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해당대학의 학칙이나 규정이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에서 군휴학은 최대 2년, 3년 등 학칙으로 규정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단기부사관까지도 군휴학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재학중인 대학이 단기부사관도 군휴학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면, 단기부사관설발시험 합격 후 복무중인 군부대의 행정실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군 휴학중인 대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 휴학의 기간 만료로 미복학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제대에 따른 대학 재입학 관련 사항 문의

질의

- 입대 전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복학이 아님)하기위하여 2012년 1월 4일 현재 미사용 누적 휴가일(누적일수 13일)을 제대휴가로 전환 사용하면 2012년 2월 23일 군에서 귀가할 수 있으므로 2012년 2월 28일부터는 학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제대일은 2012년 3월 7일이나 상기 기술한 누적휴가를 제대휴가로 사용시 2012년 2월 28일 시작하는 수업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휴가 사용시 2012년2월28일부터 수업 출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률적 또는 교육과학부 규정에 2012년 3월 7일까지 아들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출석은 가능할 지라도 재입학이 불허된다는 법률조항 또는 교육과학부 규정이 있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1. [대학선진화과]

- 문의하신 재입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문의하신 사안은 병역 관련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대학 및 병역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휴학 후 휴학신청**질의**

- 군입대를 하여 2010년 군휴학을 하였고 12년 2월 제대를 하게 됩니다. 사정이 생겨서 다시 1년 더 휴학을 하기 위해 일반 휴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휴학원서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학선진화과]

- 휴학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3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대학에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2.2월 전역대상자는 휴학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강사 방학중 처우개선 문의**질의**

- 대학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차츰 개선이 되고 있어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방학 중의 실업상태이다. 급여도, 경력도, 4대보험도, 일년에 4개월은 받지 못하고, 일년에, 3월~6월, 9월~12월, 이렇게 8개월 동안만 강사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학강사들을 활용하여, 방학 중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회신

회신일 : 2011. 8. 4. [대학선진화과]



- 시간강사의 방학중 급여 지급 방안 강구에 관한 것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사수당 인상, 월급 형태의 보수 지급 등 경제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규모 예산이 일시에 수반되고, 특히 사학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강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제로 지급하도록 하기 보다는 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우리부는 단계적으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국립대의 경우 2013년 까지 시간당 8만원의 강의로 인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대의 경우 강의를 대학정보 공시지표에 포함하고, 대학 재정사업 지표에 반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 상근직의 개념

질의

-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22]상의 유사경력·연구경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학(전문대학교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100%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상근의 개념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2.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거 정원 내에서 유급·상근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10할의 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지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 임시로 임용되어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경력 환산율표 적용 기준 > 유사경력 > 연구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시간강사료 지급 관련 질의

질의

- 시간강사의 비전업에서 전업으로 자격사항이 변경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시간강사료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2. [대학선진화과]

- 시간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에 관한 것으로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특히 귀 대학의 경우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대학 이중등록 금지규정**질의**

-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자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정시모집 등록기간인 2012년 2월 8일~2월 10일 사이에 다른 대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 대학 이중등록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0.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와 같이 이 중학적에 관하여 현행 고등교육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대학이 학문 전념의 필요성 및 학위의 질 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을 학칙이나 관련 규정으로 제한한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같은 학년에 이중으로는 금지 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과 규정**질의**



- 적성이 맞지 않아 타학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데 학칙과 전과규정에는 정원의 20% 이내, 학점 2.5이상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과여석표도 공시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학과에서는 여석대로 전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본 학과만 전출 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일방적인 제한사항(전입학과의 전공과목 B학점이상 이수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전출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 공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은 그런 제한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해당학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학과의 일방적인 전출 불허조치가 제반 법률에 타당한지 문의

회신

회신일 : 2011. 12. 29.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하면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에 대한 허가(일명 전과)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단, 의료인력 관련학과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는 20%범위 안에서 허용)
- 따라서, 모집계열 즉 학부간의 상호 전과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 내에서 합리적인 허용 범위와 방법을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 조교 업무

질의

- 대학 조교들은 머하는 사람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3. 12. [대학선진화과]

- 먼저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의거 교직원 중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로 구분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대학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조교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상기 법령에 의거 조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학교 운영상 필요하여 조교의 지위로 임용한 경우를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사립대학의 교원 및 그 외 직원의 임용은 대학의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합니다.(교

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을 결정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졸업후 학사 학위 포기 가능 여부

질의

- 4년제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취업관련 문제로 대학 학위를 포기할 일이 있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4. [대학선진화과]

- 학칙으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는 곳은 해당대학이므로 취소 판단 여부는 해당 대학에서 판단해야 최종적으로 판단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편입시 필요 서류

질의

- 지금 다니는 대학교에서 편입에 필요한 원서(통합성적표, 수료증명서)를 승인을 해주지 않아 제가 원하는 학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 이런 걱정 때문에 진학준비에도 차질이 많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11. [대학선진화과]

- 성적증명서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으로 알려드립니다.

대학 학생회비

질의



-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학생회비 오리엔테이션비 등 모든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참석시 4년치 학생회비를 납부하라는 별도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학회비를 꼭 내야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8. [대학선진화과]

-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갈등완화 및 학부모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등록금 납입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에 한하여 고지하고 학생회비, 동창회비 등 기타 선택적 납부 경비의 통합고지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대학교는 학생 전체를 대변하여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일체감을 형성하는 다양한 행사 등을 집행은 하지만 총학생회비 관리 는 학과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의무납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학생회비 과다청구

질의

- 학생회비가 결국 학교 배불리는 다른 방법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7. [대학선진화과]

- 학생회비 관련 사항은 규정이 되어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한하여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적경비(학생회비 등)에 대하여는 통합고지 않도록 각대학에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4년간의 학생회비를 한번에 납부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대학에 시정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학생회비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회계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생회는 납부해야될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과 대학원 동시 등록 가능여부

질의

- 주간에 대학교, 야간에 대학원을 동시에 등록하여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0. [대학선진화과]

- 이중학적(동시에 두개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학적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학문의 체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귀하께서 재학 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을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겸임교원의 정당 가입의 적법성 여부**질의**

- 정당법 제22조는 종합대학 겸임 교원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되므로 동 법조항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정당법은 신분 보장이 되는 정식 교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간강사와 같은 유형인 겸임교원의 경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8. 9. [대학선진화과]

- 정당법 제22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겸임, 초빙, 명예, 시간강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조 단서조항 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 사립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교원(겸임교원 등)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학교규정 제정 근거

질의

- 대학교의 학교규칙은 고등교육법 제6조로 제정 또는 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규칙 이외에도 많은 규정이 있는데 이런 학교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근거는 어느 법령에서 찾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2. [대학선진화과]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각호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규정 등은 학교규칙(학칙)에 근거하여 각 대학에서 제·개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학의 학칙, 규정 등은 학교별로 상이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대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학위증 재발급 문의

질의

- 보통 대학교의 학위증을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및 신원의 정보(법적 이름개명, 생년수정)의 수정으로 학위수여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위증이 재발급이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위증의 재발급여부가 공통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학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기준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원 상통직 환산율 확정여부 문의

질의

- 공무원 보수 에 관한 예규 [별표2] 2) 대학교원 상통직 경력 인정대상기관과 환산율을 확정하여서 표시가 돼 있는데요,
- 예)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주식회사 (8할)이 경우에 상통직으로 인정되면 8할을 인정해 주는 건지 최대 8할까지 인정해 주는 건지 환산율을 인사자문회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것 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4. [대학선진화과]

- 주식회사일 경우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 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임용권자가 관련 학문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엄격하게 상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상통으로 인정되면 8할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제적처리

질의

- ○○대학교 - 졸업시험 통과 - 2010년도 2학기 기준 138학점 이수 - 2011년도 1학기 3학점 신청하여 성적 D0 취득 - 140학점 이상 이수하여 졸업 예정이었으나, 누적된 학사경고로 졸업보다 제적이 우위에 있다면서 제적처리됨.
- 문의사항 : 졸업보다 제적이 우선인지와 국립대와 사립대의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 함.(학교별 상이) 이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7. [대학선진화과]

- 졸업, 제적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에 의하여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별로 졸업, 제적 등은 상이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사항 관련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제1항 제1호의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에서 대학원장에 특수대학원의 장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0. [대학선진화과]

- “교육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보직에 대하여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 보직 제청 시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립학교설치령” 제6조 제3항에서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 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들에 근거해 볼 때 특수대학원장 임명 시에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편입관련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근거하여 외국인유학생 편입학을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 3년제 전문대학에서 졸업을 하지 않고 2학년(4학기)까지만 이수한 순수외국인이 국내 4년제 대학 3학년 과정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3.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 외국인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대학교육의 국제화, 개방화 유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차원에서 순수 외국인학생의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경우 3학년 또는 4학년)에 정원 제한 없이 정원의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국가 출신 학생들이 국내 대학 편입후 불적적인 학사관리로 불의가 있어 철저한 학사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계열학과 정원 외 선발인원 관련

질의

- 보건계열 학과의 신입학 또는 편입학 정원 모집 관련 정원 외로 선발할 경우 몇 명까지 선발이 가능한가요?
- 입학정원 대비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학선진화과]

- 보건계열학과 정원 외 편입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 제29조 (입학·편입학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분야별 석학이 있는 대학학과나 기업 정보

질의

- 아이의 장래를 위해 석학이 있는 대학학과나 기업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10. [대학선진화과]

- 교과부에서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02-6393-5600-4)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하께서 희망하는 대학원



을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 징계위원 자격

질의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의할 때, 사립대학의 교원 징계위원회에 타 학교법인의 이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3. 6. [대학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립대학 교원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사장 취임 시 휴직 가능 여부

질의

1.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6호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6호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범주 안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3. 대학의 정관 상 휴직의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때”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4. 마지막으로, 교원이 휴직을 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관 및 부설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9. [대학선진화과]

1.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6호 중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음.
2.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민간단체라 함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은 민간단체로 볼 수 없음.
3.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관 제40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통상 공무원이 아닌 기관을 포함할 때에는 ‘산하기관, 산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4. 부설기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중 비영리단체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립대학교 교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허가) 해당 여부

질의

-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립대학교 교수가 공동주택아파트 동대표후보자 나오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5. [대학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또한, 아파트 동 대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대학교 교수연봉제 운영

질의



- 대학이 교수의 연봉제를 책정하는데 객관적 기준 없이 재단이 교수연봉심의위원회(산단장, 총장, 처장 등으로 구성됨)라는 기구를 대학에 두고 연봉책정의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것은 당국의 취지로 봐 적법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7. [대학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립대학교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호봉 또는 연봉, 교수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학에서 소관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직원의 겸임교원 겸직가능여부

질의

- A라는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이 학위와 관련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자신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연가, 월차 등의 사용)내에서 A대학의 관련학과에 겸임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4. [대학선진화과]

- 겸임교원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자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수 재직기간 연가 산정 문의

질의

- 사립학교 교수로 10년간 재직하시다가 휴직을 하시고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에 임용되고 현재 2년 2개월이 경과된 경우연가 일수가 21일 또는 12일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2. [대학선진화과]

- 연가일수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복무) 기간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합산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대 교수 경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직기간 6년 이상으로 보아 연가일수는 21일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절차 문의**질의**

-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에 탈락하여 재임용거부의사와 거부사유를 교원에게 통지할 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교원이 그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4. [대학선진화과]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한 문서를 교원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받을 필요는 없지만 귀 대학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교원에게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내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께 명시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립학교 임용 시 군호봉 인정유무**질의**



- 직업군인으로 복무 후 퇴직하여 사립학교(대학교)에 재임용될 경우에 군호봉을 인정해 주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9. [대학선진화과]

-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은 대학교원으로 임용 시 100%의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대학에서 호봉확정담당자는 동법 [별표 12]의 기산호봉표, [별표 24]의 경력연수 가감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대학 교원 및 조교) 호봉을 최종 확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호봉확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경력 호봉산정 문의

질의

1.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법인)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몇 %를 적용해야하나요?
2. 대학내의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몇 %를 적용?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나요? 보수업무 편람에 없는 자료들은 담당부서에서 유권해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8. 26. [대학선진화과]

-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대학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 그리고, [별표2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은 ‘정원 내의 유급 및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평가 제도

질의

- 대학의 성적을 주는 기준이 무엇이고 답이 무엇입니까?
-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학생들이 목표로 해야 하는 기준과 답은 또한 무엇입니까?
- 담당교수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상대평가의 목적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1. 3.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학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대학이 정하는 학칙 및 개별대학에서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교원은 기준을 정하여 개별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합니다.
- 따라서, 과목의 평가는 해당 대학의 학칙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의거 정해질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석좌교수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문의****질의**

-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을 때, 비전임교원인 석좌교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5. 25. [대학선진화과]

-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동 조항 제6호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으로는 겸직이 불가하나, 비전임교원 신분인 석좌교수는 이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는 없기에 겸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국회의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국회법 등 법령의 소관 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연한이 3년인 외국대학 졸업자의 우리 나라 대학원 입학자격 문의****질의**



- 네팔에서는 대학의 수업연한이 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2항에서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1조(수업연한) 1항에서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수업연한이 3년인 네팔의 대학에서 졸업한 그 외국인학생은 우리 나라의 석사학위과정을 지원할 때 입학자격의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10. 10. [대학선진화과]

- 세계 각국의 학제와 학위 제도는 다양하며 그 다양한 각국의 학위를 우리나라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평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의 학위를 국내의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은 해당국가의 학제, 교육과정,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업연한, 학위논문, 사회적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기관(대학원 및 기업체)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간강사 전업여부와 강의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

- 시간강사의 전업 비전업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강사료가 학교마다 달라서 질문합니다.
- 교과부의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29. [대학선진화과]

- 시간강사 전업, 비전업의 구별은 대학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우리부는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 부터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전업 시간강사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는 7만원 이상,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는 3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간강사의 사회보장 보험 가입 관련

질의

- 재직자 카드를 만들어서 배움에 참여하고 싶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카드를 신청할수 없고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만들려고 하니 구직자를 위한 카드 신청제도입니다. 시간강사의 직장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1. [대학선진화과]

- 현재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및 고용 안정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며, 사회보장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강사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또한 시간강사에게 적용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현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법령 개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입생 휴학 가능여부

질의

- 신입생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한 학기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학교에서는 1학기를 마쳐야만 휴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2. [대학선진화과]

- 학생의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각 대학의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및 학생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한 사유 이외의 휴학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제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과 방법

질의

-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과를 하려고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6. [대학선진화과]

- 본교/분교간 또는 주/야간의 동일 계열·동일 학부(과)간 모집단위 이동은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내(재적생 기준)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모집단위 이동(轉科) 허용(*본교/분교간 동일 학부(과)간 모집단위 이동도 동일하게 적용)각 대학에서 교과부 지침내에서 학칙으로 정해 전과 등을 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학칙 내용만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학위 인정 문의

질의

- 싱가포르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인가를 받고 영국 대학 프로그램을 위탁 교육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교육기관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면 국내에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대학선진화과]

- 최근 해외 해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교과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해외 석박사의 경우 학술원을 통해 학위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학사학위에 관한 학력 인증을 별도로 검증하는 기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 인가된 학교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추후 그 학위의 인정 여부는 교과부가 아닌 수요기관(진학하는 대학원, 입사하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만약 학위를 취득하는 사유에 따라, 만약 귀하께서 대학원 진학이 사유시라면 그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입학처에 해당 대학의 학위를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학원 개업시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학원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 수료 시 편입 가능여부

질의

- 대학 편입을 할때 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해서 학사편입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수료율 했을 시 일반편입으로 지원 가능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8. [대학선진화과]

- 교과부 2011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편입학의 지원자격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 기준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대학의 경우도 외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의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편입하려는 대학이 정한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다면 편입생으로 선발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외국대학 전임교원의 국내대학 비전임 교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외국대학의 전임 교원을 국내대학에서 겸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수, 명예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또한 외국 대학에서 full-time이 아닌 비전임 교원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전임교원이나 혹은 상기 명칭 등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답변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9. [대학선진화과]

- 국내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교수시간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생의 교육, 지도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을 국내 대학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전임교원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관련 문의사항

질의

- 1. 질의사항 - 외국인교원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대학 <인사규정 및 신규채용 절차와 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인교원의 공개채용의 단계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교원의 공개채용의 경우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 이상이 안되면 진행이 안되나, 외국인교원의 채용의 경우 이런 사항이 제외됩니다. 외국인교원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1명이 지원해도 채용진행이 가능합니다.
- 혹시 이러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4. [대학선진화과]

-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중 효력 유지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합니다.
- 따라서, 외국인 교원 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 임용이 아니어도 법령에 위배되는 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외국학교졸업후 우리나라대학에 편입이가능 여부

질의

- 자녀가 영국에 있는 켈리지예술대학에(메이크업아티트스) 입학하려고 합니다.
- 2, 3년제 학교라고 하는데 여기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3.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편입학은 일반적으로 3학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입학정원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이 학위취득의 경우, 해당국가의 교육법에 의거한 정규 설립된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 외국대학의 학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국의 교육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므로 교과부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절차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해당학력의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의 재외공관의 확인들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편입학 자격에 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 및 편입학전형계획에 의거하여 해당대학에서 이전대학의 국내 학력 인정여부 및 이수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입학 규모 및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편입학 모집 전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유급지원병에서 학점이수 문의

질의

-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유급지원병으로 가는데요. 유급지원병 21개월간 현역생활하고 나머지 15개월 동안 부사관이 됩니다.
- 그럼,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학점 이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2학년때 들을 학점을 부사관때 모두 들어서 복학할때 3학년으로 복학하게 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대학선진화과]

-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바는 군대에서 온라인 강의 청강, 병과교육 등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의 1년을 단축시키는 제도(3+1 병영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간 일괄적인 지침이 아닌 각 대학과 군사령부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으로 귀하께서 재학중인 대학에 확인하시는 것이 더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그밖의 ‘군학점인증제’를 통한 학점의 이수는 나라사랑 포털사이트(www.narasarang.or.kr)의 군 이러닝 란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음악전공인 정규 레슨의 정당성관련 질문

질의

- 보통 음악을 전공하여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님이나 기타 강사님들께 레슨을 받게 되는데, 혹시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께 레슨을 받아도 합법이 됩니까?
- 대가없이 레슨이 이루어지면 별일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레슨비를 건넸을 때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또한, 현재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나 강사가 본인의 전공악기가 아닌 악기에 대해 정식레슨이 가능한가요 (즉, 레슨비를 받고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것)

회신

회신일 : 2011. 9. 9.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전임교원이 대가를 받고 개인지도를 하는 경우, 소속 대학의 장에게 겸직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서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문계와 예체능간 전과 허용여부

질의

-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에 정하여 전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모집계열 즉 인문계와 예체능간의 상호 전과에 제한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의하면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에 대한 허가(일명 전과)는 학칙에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인력 관련학과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만,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는 20%범위 안에서 허용)
- 따라서, 각 모집계열 즉 인문계와 예체능간의 상호 전과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모집단위별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학생 이동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대학은 합리적인 허용 범위와 방법을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전과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모집단위별로 평균평점예고제를 실시하거나 허용범위 설정 등 사전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반휴학 중 군입대 관련

질의

-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를 하였으나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복교 처리가 되어 재입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3. [대학선진화과]

- 재입학이란 대학에서 정한 교육과학정을 모두 이수하지 안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자퇴 및 제적)한 학생의 경우, 이수학년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할 것이나, 해당 대학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거 대학의 수업료는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입학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임상병리 전공심화

질의

- 4년제 학위 때문에 전공심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남지역 2012년도 임상병리전공 심화하는 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2. [대학선진화과]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교과부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오나 그 자료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공식 홈페이지(haksa.kcce.or.kr)를 통하여 운영대학>지역별운영대학에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해

질의

- 일반적으로 재적생이란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본부의 입장은 재적생에 수료생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여 재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회신

회신일 : 2012. 2. 22. [대학선진화과]

- 재적생의 범위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의 학칙, 학사규정에 의해 해당 대학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직중 대학졸업 학력 인정여부

질의

-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재직 중교육대학 계절제 3학년 또는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 하여 졸업하였을 경우, 4년제 대학졸업에 따른 추가학령 2년을 인정해 주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14. [대학선진화과]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통학 가능한 야간대학을 2년간 다녔을 경우 학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에서 규정 한 학력과 경력의 중복에 해당되므로 그중 1개만 산입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호봉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로 재직하면서 야간대학을 수학하여 졸업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2에 의거 추가학령 2년을 인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에서 규정한 학력과 경력의 중복에 해당되므로 학·경력 중복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호봉 재확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은?

질의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시 평균성적을 산출할 때 전공과목의 경우 자격취득에 필요

한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인 42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대학선진화과]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합격요건인 ‘교직과정의 과목(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에서 전공과목은 교원자격검정대상자가 이수한 전공과목전체의 평균성적을 의미하며, 42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해서는 안됩니다.

전업작가와 화가 전임교원 임용 가능

질의

- 문예창작학과에는 전업작가를, 미술학과에는 화가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데 전업작가와 화가를 겸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2. [대학선진화과]

- 겸임교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 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자 - 담당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매년 대학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임강사 명칭 폐지, 시간강사 제도 폐지에 따른 지침

질의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전임강사 명칭 폐지, 시간강사 제도 폐지)에 따라 본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개정에 있어 참고할 세부지침은 어느 시기에 각 대학교로 통지가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학선진화과]

-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하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2.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추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간강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조교수 변경 시기 관련

질의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안내] 에 따르면 대학이 해야 할 후속조치는 “시행일인 '12. 7. 21까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 7. 21.자로 인사기록 정리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문에서 언급되는 '12.7.21자 인사기록 정리 조치라는 것이 정확히 7.21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의 경우 3.1부 혹은 9.1부로 신규임용 및 승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임용과 승진을 위한 평가 또한 학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7.21부로 명칭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바꾸는 것은 재임용 및 승진 일정 산정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 및 관련 규정을 개정 한 후, ① '12.3.1부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변경하는 경우 ② 혹은 '12.7.21 이전의 날짜(예를 들면 5.1부 혹은 7.1부)에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명칭 변경하여 임용하는 경우 ③ '12.9.1부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변경 임용하는 것 (기존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경우가 교과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4. [대학선진화과]

- 전임강사 명칭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7.22)부터입니다.
- 따라서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는 전임강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효력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미리 전임강사의 명칭을 조교수로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법 적용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부가 공문(대학선진화과-6470)으로 안내한 내용에도 '12.7.21(7.22이 정확한 날짜임)자

로 인사기록 정리 등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한편, 명칭 변경에 따른 인사기록 정리와는 별도로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일 도래 전에 학교의 관련 규정(보수, 승진 등)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용계약의 체결은 정비된 규정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임교원 임용 시 최소기준 연구실적

질의

- 전임교원 임용 시 통상 대학교에서 전임교원 연구실적을 최근 3년간 200% 또는 최근 4년간 200%의 연구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더불어 강사 신분이 신설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강사에게도 연구실적을 요구해야 하는지와 요구한다면 요구량에 대하여도 답변해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8. [대학선진화과]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12.7.22 이후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 규정 별표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로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7년, 교수는 10년의 연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자격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대학별로 그 요구 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별 채용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현재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정업무비 중 월정직책급 예산 편성 단가

질의

- 올해 직급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총장, 부총장, 처장, 단과대학장



등 세부적인 예산 편성 단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30.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직위만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를 참고로 월정직책급 지급단가(붙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장 특1·2호봉 구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시험 공개

질의

- 편입시험 필기점수를 대학측에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본인의 점수를 알 수 없게 만들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1. [대학선진화과]

- 대학의 편입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말씀하신 성적의 공개는 대학의 자율 결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편입학 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편입학 부정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내실있는 편입학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편입학 원서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편입생의 교직과목 이수 관련

질의

- 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3. [대학선진화과]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해야 하므로 3학년에 편입하는 학

생의 경우 교직과정이수가 불가합니다.

- 다만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한 학년 및 학과에 편입학했을 때 전적학교의 이수학점을 인정하여 정해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고, 사범대학, 대학 교육과에서 편입한 학생의 경우나복학생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학력인정의 뜻과 범위

질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①항에 해당되면 전문대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하는데, 학력만 인정이 되고 졸업이라곤 할 수 없는 건가요?
- 동등한 학력인정이라면 졸업과 똑같이 봐야 하는게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7.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학교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 상기 법령을 근거로 대부분 국내 대학은 학치기에 소정의 학점(대부분 7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2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편입학 또는 재입학시 3학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는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를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로 보는 것이지 졸업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정원 관련 확보율 문의

질의

- 사립대학의 총정원 범위 내 자체 조정의 경우교원에 대한 평가를 겸임, 초빙교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어있는데 교원확보율에서 겸임 초빙교원 각각 전년도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지 총 겸임, 초빙교원을 포함한 전년도 기준만 초과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9. [대학선진화과]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제4항에 의하면,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6조(교원)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체 조정의 경우 편제 정원 기준 전년도 이상 교원확보율 유지는 겸임, 초빙 각각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교원, 겸임, 초빙교원 포함 총 교원확보율이 전년도 이상 유지하면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위 미소지자의 겸초빙 교원 임용 관련

질의

- 고등교육법 17조의 겸임교원 등에 정한 교원(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의 임용 시 학위 미달자에 대한 임용을 할 경우 자격인정의 신청(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자격심사(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9.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학교의 장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참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충족) 2. 대학인사위원회(국립)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사립)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학점 이수문의

질의

- 학(교)의 강의는 1학점, 2학점 등 처럼 이수할 경우 취득되는 학점이 정해져 있고 1학점은 1주일에 1시간, 2학점은 1주일에 2시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학교는 1주일에 한시간(55분)수업을 하고 3학점을 수여하는 곳이 있던데,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10.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점 인정 문의

질의

- 대학에서 학점 인정할 때 같은 과목이지만, 1, 2로 나누어져 있다면 해당과목의 학점인정은 두 학기를 합산해서 적용되나요?
- 한 학기만 적용되나요?
- 예를 들어 1학기에 A과목1을 2학점, 2학기에 A과목 2를 2학점으로 들었다면 4학점인정인가요?
- 2학점 인정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9.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의 관리,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와 같이 대학의 자율결정사항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임된 전임교원의 시간강사로 위촉가능여부

질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의하면 교원이 횡령 등으로 해임되면 다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보아야 할지, 교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9.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여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자로서,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및 학습의 한 주체자입니다.
- 법령에만 근거하면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볼 수 없으나, 교육의 역할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는 교원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임용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공립대학 적용여부

질의

- 교과부에서는 훈령으로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두어, 국립대학(교)의 기성회(규약등)와 기성회계(관리지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립대학(시·도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기성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의 합리적 재원관리 목적을 위한 기성회계 관리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훈령의 명칭대로 “국립대학(교)…” 이므로, 국립대학에만 적용 가능한 규정인지, 아니면, 공립대학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7 [대학선진화과]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국립대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성회회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에서 설립허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에서 운용중인 기성회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동 규정에서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결산보고서와 예산성립 보고서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2. 시립, 도립대학 등 공립대학의 경우는 설립허가,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기성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국립대학교 기성회직원 가족수당 지급

질의

- 국립대 기성회직원의 배우자가 국가직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여부와 국립대 기성회직원이 국고나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신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4.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학 기성회직원의 배우자가 국가직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은 불가능하고, 국립대학 기성회직원의 인건비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급되지 않고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됩니다.

전국 국립대학 정부지원 예산

질의

- 전국의 국립대학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예산의 총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3. [대학선진화과]

-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http://hiedupport.kedi.re.kr>) → 통계현황 → 현황(대학특성별재정지원현황), 대학통계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총장 임기 관련 문의

질의

- 정년이 4년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외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고 할 때 총장 후보로써 피선거권이 있는지요?
- 만약 피선거권이 있어 선거에서 당선되면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요? 만약 총장으로 임명된 후 임기 만료 전 65세가 되면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9. [국립대학제도과]

- 총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해당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당선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원은 65세가 정년이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되며, 총장 임기만료 전에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잔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립서울대학교의 정확한 법인화일자

질의

- 국립서울대학교의 정확한 법인화일자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1. 9. [국립대학제도과]

-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1년 12월 28일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하여, 등기 신청일인 12월 28일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 설립일이 되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인한 소속공무원 지위

질의

-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되면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 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면 정년보장 및 공무원연금 수급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 그리고 소속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 채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지?
-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외에 다른 국립대 법인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7. [국립대학제도과]

- 2012년 1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범하게 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한 사람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되며, 정년은 퇴직 당시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을 따릅니다.
- 동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으며, 따라서 채용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국립대학 법인화는 여건이 갖추어진 대학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스스로 원할 경우 개별 법률의 제정을 통해 법인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개방이사 추천

질의

1. 사립학교법에서 의미하는 개방이사의 취지와 완전히 다른 법인관계자나 다름없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추천을 할 수 있는지요?
2. 사립학교법에서 의미하는 개방이사의 취지에 맞게 개방이사를 추천 및 선출할 수 있는 방



법이나 절차는?

회신

회신일 : 2011. 10. 31. [사립대학제도과]

-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현행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귀 법인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2배수 추천된 인사 중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방이사제 도입취지에 맞는 개방이사의 선임은 각 대학이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제도도입 취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 신학대학의 포함여부

질의

- 종교시설을 신축하며 부대시설로 신학대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학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27. [사립대학제도과]

- 고등교육법상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상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대학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현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⑤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 대학 공사계약 관련

질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6.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이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 제60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학교내 BTO 사업으로 설치한 판매시설에 대한 교사 분류여부

질의

- 대학교내 BTO 사업으로 판매시설(마트 등) 설치시 판매시설의 건축물은 교사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6. 28.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시설은 교지 내에 설치 가능하며 교사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대학 설립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여러 층의 건물 중 일부 층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층을 교사로 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2. 대학원을 설립하려면 부지의 용도가 '학교용지'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1번의 경우 처럼 부분 소유로 부지의 용도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대학원대학 설립이 가능한지요?
3.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하는 건물주위에 고압가스저장소 같은 것이 있다면 인가를 받기 어려운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4.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원대학의 설립시 교사는 여러 층의 건물 중 일부층만을 교사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건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교육연구시설)이 되어야 하며, 관할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안규정에 따른 법인 임원(이사)의 신원조사 회부 여부(중임의 경우)

질의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장 제1절 제6조(신원조사의 대상)제2항에 따라 신임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법인의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자가 임기만료 전 중임신청을 할 때도 신원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3. [사립대학제도과]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밖에 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 임원이 임기만료 전 중임할 경우 별도의 신원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나(임원 재임 중 결격사유 발생시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 수차례의 중임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원조사를 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립대 운동시설 사용

질의

- 집근처에 사립대가 있어 토, 일 휴일에 대학교 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을 사용하려합니다. 인근 주민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24.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의 시설 운영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는 있으나 대학으로 하여금 특정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의 운영비용 및 시설에 관한 다른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해당 대학의 시설과에 대학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 건설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관할청 허가대상 여부

질의

- 사립대학이 교육시설을 증축함에 있어 건설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장기연불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사항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0.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중 학교법인의 의무부담 행위에는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기본재산에 대한 부담행위,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는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등에 있는 장기연부방식이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사업의 규모, 방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사립대학 법인의 대학교비로의 분교 설립 가능 여부

질의

- 법인에서 교비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대학의 교지와 교사를 구입하여 분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모대학은 타 대학과 합병을 하면서 남겨진 캠퍼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 1) 법인이 교비의 유희자금을 이용하여 교지와 교사를 구입할 수 있는지요?
 - 2) 만일 그것이 불법이라면 법인이 사학진흥재단이든 일반금융권에서 기채를 하여 그 대학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31.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교비회계의 세출 경비에 포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 법인 개방이사 선임

질의

1.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임된 정이사(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의 추천)가 임기중 사퇴로 인해 결원이 발생될 경우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2. 약,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에 의해 추천된 모든 정이사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교과부가 추천한 정이사 또는 구성원이 추천한 정이사가 사퇴할 경우에만 개방이사를 선임하는지 아니면 종전이사가 추천한 정이사가 사퇴하여도 순차적으로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11. 10. 5. [사립대학제도과]

-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사분위에서 선임한 정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꺾워되는 때에는 추천 주체(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 등)와는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이사 선출

질의

- ①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및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라고 하면 본인이 인정한 확인서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 교과부에서 회신한 내용만으로 해석했을 때 횡령 및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도 위 해당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학교법인 재단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②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기관 정관에는 - 이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교인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정관에서 말하고 있는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를 추천되어야하는데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물의를 끼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며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서 수백수천명이 종사하는 회사를 망하게(부도)한 사람이 학교재단 법인이사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3. [사립대학제도과]

- 가.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및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입증 방법

-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저촉 되어 임원의 자격이 없음을 관할청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취임 대상자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 임원취임 대상자가 작성한 무고죄에 대한 본인 확인서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를 인정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
- 나. 횡령 및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도 위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학교법인 이사를 할 수 있는 지?
-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범죄 경력이 있는 자도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학교법인에서 자주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자격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 할 수 있는 자’의 해석은?
 - 위 사안은 당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해석할 사안임.

사립학교법 해석 문의

질의

- 첫째,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을 임용할 경우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의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일간지 등에 일정기간 모집공고)을 하고 있으나, 대학의 장과 직원은 사립학교법 상 공개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법인의 정관에도 공개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면권자(이사장과 이사회 및 총장)가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둘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개인은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대학설립도 주도하였다면 개인도 대학설립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학사행정에 관여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4. [사립대학제도과]

- 직원 채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원 채용은 학교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설립자 여부는 학교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설립자가 이사, 보직 등을 가지지 않는 한 학사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해석 질의

질의

1.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위원회) 규정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대학평의회의 ‘심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심의’에서 부결되었어도 학교의 장이 단순한 심의이므로 참고로만 사용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대학평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일부는 자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6조의2 각 호에 대하여 대학평의위원회에 필수 자문 또는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기구는 아니므로 대학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 설립 절차

질의

1. 중고등학교법인을 가진 학교법인이 즉 기존 학교법인으로 사립대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사립대학교 설립 및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8.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대학의 설립절차 및 기준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따라야 하며, 교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 신청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

질의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사인에 속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4. [사립대학제도과]

1. 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제외)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사인은 사립학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할 수 있습니다.

2.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사인에 속하는 것인지?

- 위 1번 답변에 따라 학교법인과 사인은 모두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 박사과정 설립 관련 교원확보

질의

-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박사과정을 신설할 경우 7명의 관련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의 사회복지학과 교원과 2명의 타학과(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해도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2. [대학원제도과]

-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기 위하여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 및 동 규정 [별표 1-2]에 의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구’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교원(전임교원)의 1/2 이상은 박사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2에 따른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교원 연구실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석/박사과정 신설학과 개설

질의

- 전문대학원에서 신설학과로 융합학과를 개설하여 복수 학위 수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융합기술학과에 ① 기술경영학 전공, ② 발효식품산업 전공 ③ U-City 전공 신설 ⇒ 학위수여는 사회계열 : 경영학(기술경영학전공) 석·박사학위, 이학계열 : 이학(발효식품산업전공) 석·박사학위, 공학계열 : 공학(U-City전공) 석·박사 학위로 수여

회신

회신일 : 2011. 11. 4. [대학원제도과]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에 의거, 대학원에 학과(전공)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석)박사과정의 경우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관련분야 교원은 반드시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확보된 관련 교원의 1/2 이상이 최근 5년간 인문·사회, 예·체능계열은 2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3편 이상 논문 등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 중 하나의 학과 여러 개의 전공을 설치한다거나, 세부 전공별로 학위를 달리하는 것은, 귀교의 학칙에 정하는 바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세부 전공별로 학위명칭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는 모두 학과(전공) 신설 기준을 각각의 세부전공이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전공별 학위명칭을()안의 전공 분야를 달리하는 경우가 통상적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동일학과에



다른 계열의 학위를 모두 각각 수여하는 것은, 내용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설치하고자 예시를 든, 학과(전공)은 각각 별개의 학과로 설치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에서 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학위의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학원 설치 세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입시 면접관 선정과정

질의

- 대학규정상 대학원 입시를 위하여 각 학과에서 학과장이 면접관을 선정하도록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0. [대학원제도과]

- 대학이 입학업무만 담당하는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신입생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이에 입학사정관은 학생부등 계량적인 성적 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면접관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면접관)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대학에 건의를 해보시는게 옳은듯 하며 교과부에서 면접관 선정에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대학 설립 관련 법규 등

질의

- 대학원대학 설립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안과 그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2. [대학원제도과]

- 대학원대학의 설립기준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의 게재된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요령'에 관련 법규 및 신청 양식 등 대학설립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사과정 논문제출 기한 및 재입학**질의**

-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논문을 써야 졸업이 되는데 졸업논문 제출기한을 입학으로부터 10년을 대학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저는 기간에 논문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졸업논문 제출 기한 연기나 재입학 건 모두 권한이 대학에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3.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위수여 및 재입학에 대한 사항 또한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학칙의 제·개정 권한은 해당학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사학위 인정 여부**질의**

- 2개 대학교에서 각각 박사 수료를 하였습니다. 두 학교에서 모두 박사 논문을 쓸 경우 박사 논문으로 모두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4.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에 의하여 학위의 수여는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이중학적 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립대학교 특수대학원 특별과정 운영

질의

- 사립대학에서 특수대학원 특별과정을 외부 업체와 위탁협약을 맺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금 수입 처리를 위탁 업체에서 처리하고 대학은 등록금 수입의 일정부분(약 30% 정도)을 수입 처리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8.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한 대학원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개강좌”는 반드시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대학(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계속교육 차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목적, 대상 및 인원, 과목, 이수기간, 수업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공개강좌(특별과정)는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수강료는 반드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일반예산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즉,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있는 바, 동 공개강좌의 수강료(등록금) 수입 처리 위탁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수여만 원하는 경우

질의

-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박사정원)이 석사학위수여만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원 학칙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학적변동 기간 안에 석박사 통합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을 해준다면 석사과정에 여석이 있어야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재입학생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19. [대학원제도과]

-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이 중도 포기할 경우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생의 졸업 전까지는 박사정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비대학원 관련 문의

질의

- 예비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상위과정(석사학위)을 6학점까지 수강하도록 한 후 대학원 입학 후에 학점을 인정하고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하도록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6. 12.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점은 동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인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수한 학점이 아니라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학점인정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학위 과정의 졸업, 수료 용어개념 및 사용여부

질의

- 비학위 과정의 졸업과 수료에 대한 용어개념 및 사용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비학위과정에서도 “졸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14. [대학원제도과]

- 동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6조」 등에 따른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고등교육법 제26조 및 제29조 등에 의거, 대학교에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 등을 둘 수 있으며, 상세한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에서 학칙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적법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 ‘공개강좌’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계속교육 차원에서 교양증진, 직업교육 또는 연구상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대



학 또는 대학원에 개설하는 별도의 과정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학칙에 그 목적, 대상 및 인원, 과목, 이수기간, 수업료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즉, ‘공개강좌’로 운영되는 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바,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정규 석/박사 학위과정과 혼동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 및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특별과정)를 이수한 경우는, 통상 학위수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사용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졸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수강생들이 과정 이수 후, 마치 정규학위과정 이수자처럼 이력서에 경력 및 학력 등으로 사용하거나, 수료 동기생 명부를 정규 동창회 명부와 함께 등재하여 정규 학위과정 동문인양 행동함으로써 사회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질의

- 대학원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대학과의 MOU를 체결로 복수학위를 줄 수는 없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7. 5.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21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약(MOU)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거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학위의 수여는 최초 입학대학 졸업요건 충족 시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 대학 간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공동명의 학위(Joint Degree) 또는 복수학위(Dual Degree) 모두 수여가 가능합니다.

● 외국대학교 학/석/박사과정의 학위인정

질의

- 외국 대학과정의 대학원과정을 공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사과정도 공부 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박사학위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4. 4. [대학원제도과]

-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정여부는 해당 국가로부터 설립인가여부, 교육과정 및 수업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대학 또는 수요기관에서 인정 및 검증할 사안으로, 동 학위 인정여부는 해당대학 또는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학사 취득후 대학원 입학

질의

- 프랑스 국립 음악원을 재학했습니다. 국가 인정한 학교인데 우리나라 대학교 시스템과 달리 학년제가 아닌 '실력제'로 학점이 없고, ○○과정을 '~실력으로 졸업하였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6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을 3년 안에 패스하여 학사졸업하였는데 국내, 대학원에 갈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6.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33조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의 경우 해당 대학이 학사학위 및 전체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의 벤처기업 CEO로 재직 가능 여부

질의



- 본교 규정에 “우리 대학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단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인 학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CEO로 재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은 교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교내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중학적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3. [대학원제도과]

- 이중학적이라함은 두개의 다른 학적을 가지는 것으로, 예를 들면 A대학교내 두개의 대학원 또는 A와 B대학교 대학원에 각각의 학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대학원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CEO로 재직하는 것은 이중학적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이중학적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이중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한 사람이 동시에 두개의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요? 현재 대학원을 휴학(즉, 자퇴는 하지 않고)하고, 다른 대학원에 등록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9.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동시에 두 개 이상의 대학(원)에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2개의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관하여서는 각 대학(원)의 학칙에서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등록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학칙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학문의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에 대하여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재학 중 학부 등록

질의

- 2개의 학부를 동시에 다니는 것은 이중학제입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인 사람이 학부를 편입 해서 동시에 박사과정과 학부에 재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2. [대학원제도과]

- 현행 교육관계 법령에는 대학(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석·박사학위과정)을 동시에 등록 하여 수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학생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전일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학원 역시 일반대학원은 전일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충실한 수학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학 복수전공 및 부전공

질의

- '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는 법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학중인 대학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서 학칙 개정을 통해 2009년도부터는 법학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금지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는 법학 학위 신입생 입학에 금지한다고 되었지만 재학생의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법학 복수전공과 부전공 금지를 규정한 대학의 학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22. [대학원제도과]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의 법학 학부과정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지식을 쌓고 그 기초 위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보았을 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념하고 기존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동안에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대학에서 학칙으로 복수전공, 부전공을 금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복무 중 대학 재학이 가능한지

질의

-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말에 전역 예정입니다. 그런데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입학(2012년 3월2일)을 하려는데 약 2달 간 군복무 기간과 학교 재학기간이 중복되어 1년을 휴학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 내년에 입학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7. [대학원제도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병무청 및 해당학교에 문의하시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13 MEET 시험 변경사항

질의

- 2013 meet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어시험을 없애고 다른 국어능력인증시험 같은걸로 대체하겠다는 시행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해온 많은 수험생을 생각하여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6. [대학원제도과]

- 시험과목을 개편한 사유는 M/DEET 시험과목 중 언어추론 영역의 각 대학별 입시반영 비중이 미미하고, 입학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측면에 있어서 상관성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여 의치의학협의회에서는 논의를 거친 후에 개편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2013학년도부터 언어영역 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공인 국어능력시험(KBS 한국어능력시험 등)으로 대체됩니다.
- 수험생에게는 시험변경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으나, 국가공인 국어능력시험은 수험생에게는 기존 언어영역 보다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좀 쉬울 것이라 사료되며 심적인 부담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질의**

- 의과대학과 의전원은 커리큘럼이 유사한 것 같은데 의전원의 등록금은 의과대학에 비해 더 고가입니다. 과중한 의전원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2. 9. [대학원제도과]

-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지만 등록금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대학의 설립·운영 규정은 고등교육법등 에따라 학칙 및 규정에 의거 하여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 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열어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우리부에서 각 대학의 등록금의 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치전원 학생 병역 특례 가능한지

질의

- 치전원 본과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병역을 해결하지 못해 2학년이 끝나고 입대를 해야합니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역입대 말고는 방도가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5. [대학원제도과]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에 의거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28세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의과학자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교육역량 강화사업 질문

질의

-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 이랑 자격증이랑 상관이 있나요?
- 주변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격증으로 학점이 인정 된다는 소리를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8. 31. [대학지원과]

- 어떤 부분이 학점인정이 되고 자격증과 연계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드립니다.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각 대학에서 인성, 전공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그 성과로 정부에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간 경쟁 촉진 및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벌박사 장학금 신청 지원자격

질의

-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BK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 하지만 이 사업이 내년에 종료되는 관계로, BK 장학사업도 없어지고, 글로벌 박사 장학생 선발에 지원도 할 수 없으니 정말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저 같이 가을학기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최소한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3. [대학지원과]

- 우리부는 금년도 9월 입학자에게도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사업 지원기회를 부여하고자 8월 말경 하반기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GPF지원팀 (042-869-6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 대학교 선정기준

질의

- 부실 대학교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퇴출 대학교로 선정된 재학생들에게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28. [대학지원과]

- 금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대학 교육의 여건과 질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8개 지표(전문대는 9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추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실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 :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재학생충원율, 학사관리, 등록금 인상수준, 장학금지급율, 학자금 대출 상환율(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9개) 아울러, 추후 퇴출대학으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은 인근대학의 동일학과나 유사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인근대학의 범위나 편입시 전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안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질의

- 국가장학금 신청을 안 하면 학교성적장학금도 안준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점은 정말 잘된 일이지만 왜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적, 근로 장학금까지도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3. 30. [대학장학과]

- 교내성적장학금은 대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되며,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대학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원인 소속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 신청을 통해 교내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학생의 경제적 가계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내장학금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부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유토록 하고 있으니, 민원인 대학의 장학금 운영 정보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장학금 추가신청 기간

질의

-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추가 신청까지도 놓쳐 버렸습니다. 추가 신청기간이 확실히 있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9. [대학장학과]

-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편입생·복학생 신청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선정 절차

질의



- 국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이 충족이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무작정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학장학과]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및 최소한의 성적요건(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결과값을 제공받고 있으며, 신청학생의 성적은 소속대학을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재단은 제공받은 소득 및 성적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이중지원여부 확인 후 장학생 선정여부를 통보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이중수혜 인정범위 문의

질의

- “생활비장학금”으로 지급 시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생활비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이중수혜의 경우 장학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해도 되는가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4. [대학장학과]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중복사실을 해소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 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등은 등록금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기준

질의

- 차상위는 누구를 말하는지 장학재단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6. [대학장학과]

- 2013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8분위 이하 가정의 학부생입니다. 본 제도에서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증명서 등 1종 이상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인자입니다. 다만, 갑자기 경제사정이 곤란해진 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대학의 장학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입 후 (병역)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질의**

- ○○대 ○○과 1학년을 마치고 이듬해 2011년 3월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입대전 등록금 고지서가 나와서 당시생각으로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하려고 하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미리 낸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학교측에 요청했었으나(2011년) 거절하더군요 병역 만료 후 복학은 하겠지만 미리 낸 등록금 돌려받을 수 없는 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25.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3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및 당해학교의 학칙에 의거 등록금 반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령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하면,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이상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항 1호에서 3의2호까지의 규정 사항은 학업의 연속성이 영구히 단절되는 자퇴, 제적된 경우와 2항 4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당해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등록금 반환여부를 판단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국공립 사립대학 학비 지원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경우 학비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차이가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12. 12. 31. [대학장학과]

- '13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경우 연간 450만원(1학기 225만원, 2학기 2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일하나,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의견

질의

- 만학도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데 2학년에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코자합니다, 현재 ○○대학은 폐교절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0. [대학장학과]

- 국가장학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속대학이 폐교대학으로 확정되어 폐교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타 대학으로 편입 후 신입생 신청기간에 맞춰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요청

질의

- 정부에서 좋은 일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제도는 분명 감사하고 환영할 부분입니다. 부디 대학원생들도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9. [대학장학과]

- 우리부에서는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상의 제약으로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학부생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책 연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든든학자금 소득분위 산출근거 공개 가능여부

질의

-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을 신청했습니다. 1학기에는 든든학자금 승인이 됐는데 2학기에는 든든학자금이 승인이 되지 않고 일반상환학자금만 승인이 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니 저희 가정의 소득이 올라가서 든든학자금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 또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저희 가정의 소득이 5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의 소득은 2천을 조금 넘는 정도로 생각되는데,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23. [대학장학과]

- 든든학자금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학생가구의 소득, 재산 등에 따른 소득분위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분위 산정 시 미혼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여부, 직장보수월액, 자동차가액 등을 반영하며, 산정 방법으로 각



항목별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점수로 평가하고 최종 합산한 값을 반영합니다.

- 심사결과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가족정보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시 부모의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시 소득분위를 평가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이 대출신청 시 부모 모두 기입한 경우) 하지만 중요한 개인의 정보가 많은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금 납입 기한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질의

- ○○학교 직원입니다. 등록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함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다면 납입할 등록금액의 몇 %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6.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 등록금 반환

질의

- 등록금은 삼백만원이고 장학금을 백오십만원 받고 실제 백오십만원을 납부하고 3월 20일에 자퇴를 하면 삼백만원에서 1/6을 공제하고 돌려받나요, 아니면 실제 납부금액 백오십만원에서 1/6을 공제하고 돌려받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1. [대학장학과]

- 등록금반환 규정에 의해 학기 개시일 30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수업료의 6분의 5해당 금액

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금액은 6분 5의 금액은 장학금을 받은 기관에 다시 환불해야 될 것을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다시 한 번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시 학기개시일 기준

질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자퇴할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전까지는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환불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기개시일의 기준이 뭔가요? 입학일과 개강일이 다를 경우, 입학일이 학기 개시일인가요? 개강일이 학기 개시일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4. 12. [대학장학과]

- 대학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제6조 제2항 관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학기 개시일이란 당해학교의 학칙에 근거한 학기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 ※ “고등교육법” 20조(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은 입학일을 말함.

이공계 장학금 기준상향에 관하여

질의

- 이공계 계속장학금 기준 학점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여도 성적을 받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성실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해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못받는다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대학장학과]



- 2012년도 국가장학금(이공계)의 계속 지원 기준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과 B⁺수준인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입니다. 우수국가장학사업 취지는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입니다. 아울러, 재학 중 중간평가제도(2+2)를 운영하여 3학년 진급 시 계속 지원 여부 및 비선정된 재학생에게는 신규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퇴로 인한 장학금 환불

질의

-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전적대였던 ○○대에 자퇴원을 내려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2학년 2학기에 받은 성적우수장학금을 환불하고 자퇴를 하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2. [대학장학과]

- 주신 내용은 대학(교) 교내장학금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며 그 중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발 규정은 대학별 자율적인 학칙에 의해 시행하며, 안타깝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학 중인가가 미복학 제적 원인으로 등록금 반환 청구

질의

- 05년에 대학원 음악학과에 입학한 뒤 개인사정으로 2년간 휴학하였고 다시 병역휴학하여 10년도에 복학을 못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나중에서야 제적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에 등록금 반환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의했을 때 관련된 규정이 10년 말에 제정되어서 이전에 제적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일부는 반환 해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3. [대학장학과]

- 2010년 12월 이전의 대학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제적된 경우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 반환)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2010. 12. 2. 개정)

 학자금대출 대상 학교의 범위**질의**

- 학자금대출 대상 학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0. [대학장학과]

- 학자금 대출 대상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5항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일반상환학자금 조건 변경시 연체금 정리 문제**질의**

- 일반상환학자금 기간 조건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연체금이 있는 관계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13. [대학장학과]

- 학자금대출은 최초 대출 약정시 신청자 본인이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및 학자금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최종 동의를 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환학자금은 약정 시점에서 상환계획(거치기간과 상환기



간)을 설정하므로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하지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 일반상환학자금 조건변경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건변경제도는 기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를 해소한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학자금대출 연체를 해소하더라도 학자금대출 제한대상자는 신청불가)

등록금 대출과 WEST 어학연수비 대출과의 중복 수혜가능 여부

질의

- WEST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WEST어학연수비 대출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 학기에 받은 등록금 대출때문에 WEST어학연수비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1. [대학장학과]

- WEST어학연수비 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 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기에, 동일학기에 받은 등록금 대출과 동시에 수혜하실 수 없습니다.(생활비대출도 WEST어학연수비 대출과 동일 학기 중복 수혜불가)
- 단, 동일학기에 받은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WEST어학연수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일반상환학자금 자격기준 충족 시)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록금의 반환

질의

- 1년간 휴학(예 : '11.3월~'12.2월)한 학생이 휴학 기간 중(예 : '11. 8. 10)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표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받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인정한 휴학 기간 1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휴학기간 중의 자퇴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9. [대학장학과]

- 귀하와 같은 경우 등록금 반환일의 기준은 최초 휴학일을 적용합니다. 즉 휴학 신청을 해

당 학기 개시일 전일 하였다면 등록금 전액을 반환 받을 것이며,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라면(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선납 후 복학생의 등록금 인하 차액 반환 여부

질의

- 올해 등록금이 인하되어 무척 반갑기도 했지만 미리 낸 등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은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전화해 보았으나 휴학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2. [대학장학과]

- 등록금을 선납하고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이 인하된 경우 인하 차액만큼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학교에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제도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등록금의 인하 또는 인상 차액에 대해서도 당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등

●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신분보장

질의

1. '06년부터 현재까지 공개채용 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산학협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은 공무원처럼 직급은 없습니다. 채용당시 직책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93조 항목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바하여 강진, 강급, 휴직, 징계, 면직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별다른 사유 없이 팀장으로 강진하는 내용의 한 장의 업무분장 문서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다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자체규정은 미비하여 조항이 있지만 불과 2개월만에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장에서 부장으로 다시 팀장으로 조정하면서 강진이 아니라고 하며 규정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안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5. [산학협력과]

-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해 강임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직원을 둘 수 있고, 임면에 관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사관리규정에 반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면 자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신분이 아닌 일반 산학협력단 직원으로서 신분상 부당한 조치에 대한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한 징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23조, 제28조가 관련 조항입니다.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간의 계약시 수수료 납부

질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할 경우 국가기관인 ○○대학교 총장이 단장에게 위임한 것이므로 인지세, 보증보험증권, 지역개발채권 등 수수료 납부 면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12. [산학협력과]

-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입니다.
-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인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 검토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산촉법 제24조 2항)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체결된 계약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보증보험증권, 지역개발채권 등의 수수료 납부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정부출연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함.

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질의

- 질문 1. 대학원대학교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 질문 2. 대학원대학교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 할 수 있다면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예) 산업체와 계약, 산학연 등
- 질문 3. 대학원대학교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체교원의 몇 % 수준 입니까? 또 그 규정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6. 25.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은~~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대학교 역시 고등교육법 상 대학으로, 교원채용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 산중교수 채용에 별도의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교과부에서 정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만족한다면 채용가능합니다. 인정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전체교원의 몇 %까지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대학의 인력수급계획에 맞추어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법 해석

질의

-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투자 기업체의 지상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해당 건물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률에 의거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은 가능한지?
 2.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 설정기간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최대 20년만 가능한지?
 - 무상사용료 기간 산정 결과에 따라 20년 이상도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11. 10. 12. [산학협력과]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건물의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상기법 제37조는 국유재산법 제37조 및 제27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므로 산업체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설정기간을 20년 이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다만, 지상권 설정기간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최대 20년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겸임교사 자격요건

질의



- 산학겸임교사로 지원하고 싶은 경우 자격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로 자동차업계에서 10년 정도 일했을 경우 산학겸임 교사로 임용이 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16. [산학협력과]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의 근무한 자입니다.



산학협력단 내 부서 배치

질의

- 교비를 사용하는 부서(ex. 취업관련부서)가 교비회계를 그대로 가지고 산학협력단 조직내 부에 들어가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0. 21. [산학협력과]

-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그 직원에게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산학협력단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결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명확히 분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업지원기구가 산학협력단 산하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는 각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직원의 산학협력단 근무

질의

1. 학교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의거하여 학교직원을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는 “파견”과 “전보”중 어느 것인지요? “파견”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학교가 수동적으로 취하는 행정조치이고 “전보”는 학교의 필요에 따른 학교의 능동적 인사조치라고 판단합니다만...
2.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학교직원에게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행위는 학교가 하겠으나 산학협력단의 운영경비라는 측면에서 이들 파견 또는 전보되어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직원의 보수(급여등)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실제로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한 학교직원의 보수를 학교가 부담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법에서 금지하는 “교비회계의 다른회계로의 전출”이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22. [산학협력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급여는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또는 세무업무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각각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보수는 교비회계에서 보수로 처리하며,
 - (2) 산단에서 지급할 경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회계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정과목(일반관리비/인건비)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란 교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을 말하며, 이는 산학협력단에서 계약한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전보(파견)된 직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인사조치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와 대학내 하부조직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래 파견과 전보 규정으로 보아 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으로 보기보다는 산학협력단을 대학내 조직으로 보고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보직변경으로 보아 전보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차후 산학협력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파견, 전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참고하여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
3.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7.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교원자격증 위조 도용사례

질의

- 보수교육 허위 작성, 준교사자격을 방과후학교자격으로 갱신하여 혼선을 빚는 등 한국○ 평가원의 교원자격증 위조 도용 사례를 신고하오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9. [취업지원과]

- 교원자격증 검정은 크게 시험검정과 무시험검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검정은 중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의 일부와 실기교사 자격 일부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시험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험검정을 통한 정교사자격증 공급이 넘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준교사 또한 '82년도부터 대학에서 신규 발급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 실기교사 자격증은 현재, 전문대학에서 무시험검정을 통해 발급이 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에서 실기교사를 거의 채용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방과후학교지도사 등 유사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자격정보시스템(<http://www.pq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이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방과후학교지도사와 같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사전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자자격 국가공인 관할부처

질의

- 한자능력시험을 국가공인으로 인정해주는 관할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국가공인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어디인지) 또 각기 다른 한자능력시험 같은 급수라도 레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21. [취업지원과]

- 한자자격의 공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하고 있으며, 공인자격의 급수는 자격관리기관이 자격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수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시험을 응시하실 때에는 개별 자격시험별로 그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출자법인 민간자격 위탁 운영 여부

질의

- ‘○○제조사 및 ○○지도사’라는 민간자격을 등록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민간자격은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닌 법인 및 단체, 개인이 등록 운영해야 해서 지자체 출자법인(재단법인)에 민간자격을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재단법인으로 민간자격을 민간위탁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3. 7. [취업지원과]

- 국가는 민간자격 관리운영 주체가 될 수 없고(자격기본법제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단체로써 국가와 같은 통치단체의 성격을 가진 공법인(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이므로, 국가와 마찬가지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 관리·운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재단법인간 위탁계약 여부는 양 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사전등록제

질의

-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민간자격증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법 시행 예정은 언제 정도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7. [취업지원과]

- 현재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며, 국회 통과가 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정이수형 자격 관련

질의

- 과정이수형 자격에 관한 자세한 시행 내용과 기존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2. 2. 9. [취업지원과]

- 과정이수형자격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학교의 질 관리를 통한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일부 잘못된 언론보도와 같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 과정 중에 학생에 대한 평가·인증을 거쳐 이를 통과한 경우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졸업자 및 시험 준비를 하던 분들은 지금처럼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현재 특성화고·전문대학의 일부 자격증은 관련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론시험은 면제되고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소홀히하고 자격취득반을 개설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자격취득 과정이 불일치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정규 교육과정의 질 제고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원 수강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사(敎師), 시설·설비 등 기준을 통과한 교육훈련기관에 한하여 과정이수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 맞춤형으로 개편, 체계적인 질 관리, 다양한 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검정형 자격제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객관적 평가과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이고 검정형 자격제도도 종전과 같이 병행될 것이므로 기존 자격 취득자 및 자격 취득 예정자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학과 설치

질의

- 계약학과를 사업체등의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곳에서 수업하는 것이 출석수업인지 아니면 반드시 대학교에서 수업해야 출석수업인지의 여부? 계약학과를 사업체 등의 시설에 설치할 경우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의 구분?
-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범위에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포함)이상인 사업체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주도 상시근로자로 보아 소속직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계약학과 입학자격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사업주의 경우 계약학과에 입학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면 그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 학생이 적어 여러 사업체와 학교가 협약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여러 사업체 중의 1개 사업체의 소유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12. 5. 2. [취업지원과]

- 출석수업은 대학이나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것을 말하



는 것이므로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에서 강의하는 것도 출석수업으로 인정되며, 현장실습은 출석수업으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 보는 수업이며, 원격교육은 강의실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통하여 강의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교육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직원은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사업주는 교육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참여한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에서 출석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기업 지원사업 관련 회계처리

질의

- (1안)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다른 국고보조사업(역량강화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력단에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대응분은 교비회계에서 처리
- (2안)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대응분도 산학협력단 경비로 처리
- (3안)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교비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대응분도 교비로 집행 처리.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둘 수 있는데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학교기업을 교비회계에 둔다면 대응분도 교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는 대응분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력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6. 8. [취업지원과]

- 국고자금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안하신 1안, 2안, 3안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대학에서 설치하시는 학교기업의 형태(산단회계 소속, 교비회계 소속)에 맞게 집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교비회계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마련하려는 경우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정부지원금 수령 후 이를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한 후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교비대응자금은 교비회계 내에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참고 :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8-1. 사업비 관리

① 산업교육기관에 속한 학교기업 중 특성화고는 산업교육기관회계에서, 국·공립대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며, 사립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출연금 수령액을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동 예수금을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여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속한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따른다.

○ 현재 학교기업지원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02-6009-3267~8)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

질의

○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가 대학원대학교에서도 가능한지요? 절차에 관해 무엇을 참조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0. [취업지원과]

○ 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계약학과 개설을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계약학과 운영요령(교과부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참여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그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학과 수업

질의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2조 제1항에는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와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학과와 수업관련하여 모체학과 수업의 몇%로 편성비율을 가



지고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1. 20. [취업지원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개설되는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교육과정으로 모체학과의 인적, 물적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업체가 의뢰하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대학과 협약산업체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단 계약학부 석박사 과정 편입

질의

- 계약학부 석·박사 과정에 편입할 경우 다른 학교 석·박사과정에서 학점이수한 것들이 인정되는지요? (일반 석·박과정, 계약학부에서 계약학부 편입과정)
- 전공이 같을 경우 편입 가능(학점인정)과 전공이 다를 경우 편입과정도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0. [취업지원과]

- 대학원 편입의 경우 어떤 범위까지 학점이 인정되는지 알려드리기에 앞서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교과부지침, 2008.12.30)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서 편입학은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 인정

질의

1.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반 정규대학4년제와 동등하게 인정이 되고 있나요?
2.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가 한국의 일반 대학원 진학에 인정이 되나요?
3. 인정이 되는 사이버 대학이 있다면 어디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13. [이러닝과]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19개교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가 있습니다.
- 동 사이버대학은 졸업(4년제) 시 일반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며 대학원 입학 지원도 가능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의 구체적인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실국마당 → 교육기반통계국(이러닝과) →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또는 “www.cuinfo.net”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강의

질의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학원을 알아보니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관련 사이버 대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법적으로 한부모가정인 제가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있는지요?
-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2. [이러닝과]

- 학비감면 등 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의 자율 결정사항으로 대학별로 각각 상이합니다.
- 각 사이버대학에 관한 현황은 정부지원 포털사이트인 “사이버대학 종합정보시스템 (www.cuinfo.net)”을 통해 사이버대학 인가현황, 학과현황, 자격증취득방법, 대학별 모집요



강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이버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국립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학은 사립대학인 사이버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합니다. 방송통신대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인정 여부

질의

- 국내 소재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중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3. 7. [글로벌정책담당관]

- 국제학교란 'International School'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다국적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제도) 상으로는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며 이들 교육기관 모두 학교 명칭에 '국제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각 교육기관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외국인학교 : 외국인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학교는 현재 전국에 51교가 있으며 이중 내국인 학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1교(청라달튼외국인학교, 인천소재)입니다.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외국교육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과정의 외국교육기관은 채드워싱턴국제학교(인천소재), 대구국제학교(대구소재)가 있습니다. 관할 교육감은 외국교육기관이 일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채드워싱턴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는 관할 교육감에 의해 국내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드워싱턴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이수를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수과목과 시간 등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각각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3) 제주국제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제주국제학교는 현재 KIS Jeju, NLCS Jeju, BHA(Branksome Hall Asia) 3교가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제주국제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입에서의 재외국민자격

질의

-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자격이 각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 한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의 자녀는 자격이 안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8. 1.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대학입시에서 활용하는 재외국민이란,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 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이렇게 분류됩니다.
- 귀하의 경우 자영업자인 듯 사료되며, 이에 기타 재외국민 전형에 포함됩니다. ‘기타 재외국민 자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 직업 유형 : 자영업, 현지 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이 기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08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대학 170개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격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108개 대학에 대한 안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결시에 따른 이수 자격 및 진급 자격 문의

질의

1. 해외한국학교 재학 중인 예체능 학생들이 수학 등 특수 교과목을 자주 결강하려고 합니다.



교과목별 이수 조건이 교과부 지침으로 나온 게 있는지요? 아니면 통상 한국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그것도 없으면 대학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중, 고등은 학기제로 운영을 하지요? 그럼 진급의 경우 학기당 총 수업일수의 3/1 미만 결석자는 진급대상자입니까? 이에 관련한 법령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9.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한국학교 학생부 및 학적관리 등은 국내 초·중등학교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내 학생부의 경우, 교과목별 이수기준 등 교과와 과정의 수료, 입학, 수료, 졸업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0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 등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와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질의에 대한 세부적, 추가적인 질의는 학생부 및 학적 업무를 관할하는 교과부 학교선진화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국학교 정보 및 교직원 채용 정보

질의

1. 해외 교민 또는 공관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정보.
2. 해당 학교의 교사 채용 및 필요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

회신

회신일 : 2012. 4. 16. [재외동포교육담당관]

1. 해외 교민 또는 공관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정보는 교과부 홈페이지 우측하단 [재외 한국학교/교육원] 이동 메뉴를 사용하시면 한국학교가 설치된 15개국 30개교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해당학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학교의 교사 채용 및 필요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한국학교 교사 채용은 학교별 수요에 따라 자체 공고, 자체 선발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한국학교 교사는 파견이 아닌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한국학교별로 자체 선발요건과 채용조건 등을 정하여 채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국학교 보수규정 적용

질의

-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매 학교 교사 채용마다 보수규정이 다릅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인데 급여가 다를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4.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파견교원 이외의 고용휴직 교원의 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관하여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해학교 정관에 따른 계약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외한국학교가 국내법과 현지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고 상정할 경우, 국내법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국학교 설립

질의

- 중국 윈난성의 쿤밍이라는 도시에 한국인만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재학생 수 약 6-70명)하지만 이 학교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교과부에서는 저희 학교를 한국 교과부에 인가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학교가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 인가된 한국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부 지역인 운남성, 사천성, 귀주성에는 인가 받은 학교는 커녕 비인가 학교라도 우리 학교외에는 없습니다. 즉 우리학교가 유일한 한국인 학교입니다)
- 2.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과서 등 영사관을 통해 기본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3. 현재 학교 재정 운영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비인가이다 보니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 계좌가 개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계좌를 단체명으로 바꾸고 싶은데 법인이나 단체등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13. [재외동포교육담당관]



1. ○○한국국제학교를 중국 정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의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소재국 현지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아야 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대한민국 관할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과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유상으로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제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서 수요량을 파악하여 현지 관할 공관을 거쳐 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하도록 하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해당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법인이나 단체 등록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과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재국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교과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설립주체(이사장)인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에 관해서는 소재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소재국 관할 교육기관 또는 주대한민국 관할 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관련 질의

질의

-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6. [인사과]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는 승진임용, 타 기관으로 전보, 정부포상, 명예퇴직, 의원면직(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 등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의 24시간 교대근무

질의

1. 저희는 대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이동으로 2명 24

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월 되었습니다. 주 업무는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및 난방, 온수공급입니다. 근무시간은 가을, 겨울 그리고 특별개관이 있을 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복무규정에 따라서 최대 57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2.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는 유형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많은 제약과 신체 리듬을 깨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당연한 근무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2. [인사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현업공무원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업공무원 지정 받으셨는지, 또는 가능여부를 복무총괄부서에 확인해보시고, 현업공무원 지정이 되었다면 예산의 편성여부에 따라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련

질의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인사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동 승진후보자 명부를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회신일 : 2012. 2. 21. [인사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직위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불문경고에 대한 문의

질의

- 공무원이 불문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도 없는데 어떤 성격과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6. [인사과]

-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직 전형 요강 - 기간제 교사 경력 불인정 이유

질의

- 교육전문직 전형에 보면 경력 요건에 정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용전에 기간제 교사 경력이 있는데 그동안 법이 많이 바뀌어 호봉 승급을 위한 경력에 100% 적용을 받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11조(경력기간)에서도 나경력으로 인정도 받고 있으며 기간제 등 임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교육전문직 전형에 필요한 경력에는 기간제 경력 산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근거나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6. [인사과]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소속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임용권자가 능력있는 교육전문직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선발 전형시 지원자격을 “정규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의 경우 학생지도에 있어서는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을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강동을님께서 언급하였듯이 교감 승진 시에도 정규교원과 구분하여 ‘나’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호봉인정에서 기간제 근무교원의 경력을 근무형태에 따라 100%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전문직 전형에서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년퇴직일의 공무원 신분

질의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합니다.
- 이 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도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13. [인사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월 30일은 그 전날(29일) 24:00, 12월 31일은 그 전날(30) 24:00까지 공무원 신분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평가 반복 가능여부

질의

-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2개월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 후 동일 사유로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0. [인사과]

-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연 60일의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계와 관련한 포상대상자 선정 질의

질의

- 재직 및 퇴직 공무원이 포상대상자 선정되는 경우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징계 및 불문경고를 받았어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9. 26. [인사과]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및 중요비위(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가 아닌 사유로 징계처분된 후 말소된 경우 가능합니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질의

- ○○대학교 정보전산원에 근무하는 전산 6급 ○○○입니다. 이전의 전산업무수당이 2010년부터 기술정보수당에 편입 되었습니다. 법령대로라면 기술정보수당의 11)에 해당하는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정보수당을 받아도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급여포탈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 11) “전산업무”로 인한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때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18. [운영지원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1. 기술분야에는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1)~11)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표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부분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1)~6)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가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산직렬 공무원은 지급대상 1)에 의한 기술정보수당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1)에 의해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자아카데미 장학금과 정부초청장학금

질의

- 박사과정에 지원을 할 때 공자아카데미 장학금과 정부초청장학금이 중복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4. [국제교류부]

- 모집 요강에서 중국정부장학금은 학위과정의 경우를 말합니다. 어학연수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자 아카데미 장학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2011 모집 요강은 국립국제교육원 홈 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www.niied.go.kr 접속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접속 → 공지 사항 접속 → 2011년도 중국정부초청장학생 모집 요강 참고중국 유학의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 바라며, 추후 유학에 관한 질문은 02-3668-138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유학 MBA 지원가능 여부

질의

- 국비 유학생 선발시 International MBA는 지원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남미지역연구분야의 경우 중남미 국가가 아닌 스페인 소재 대학원도 지원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9. 9. [국제교류부]



- mba의 경우, 경영에 속하며 인문과학에 속하오니 지원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남미지역연구는 중남미 지역소재의 대학에서만 지원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비유학생 카페 및 (네이버) 국립국제교육원 공지사항 국비유학생 선발공고를 확인바랍니다.

국비유학 고부가산업 분야 기준

질의

- 현재 저는 공공정책 대학원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할 계획인데요. 특히 저개발국가의 AIDS퇴치의 방법론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제안을 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 공부할 예정입니다. 선발분야 중 “고부가산업” 란에 고부가헬스케어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2. [국제교류부]

-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지원가능하십니다. 다만 기본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한국사능력시험, 학점, 외국어성적 및 대외활동 실적 등을 갖춘 후)지원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비유학생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http://cafe.naver.com/ngsg1977.cafe?iframe_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82&문의관련 아주 자세한 답변을 공지사항으로 달아두었습니다.

국비유학 교수 추천서 필수유무

질의

- 정부초청 국비유학 지원시 교수 추천서가 꼭 필요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31. [국제교류부]

-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선발과견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자격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법률에 근거한 기본지원자격으로
 1. 국내대학졸업자
 2. 공인외국어성적

3. 한국사능력시험

4. 대외활동실적을 갖춘자에 한해반드시 출신대학총장의 직인이 담긴 추천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정부 국비유학생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바랍니다. <http://www.gks.go.kr>

국비유학 그린수송 분야 해당유무

질의

- 조선공학 및 해양 분야에 전공을 두고 있습니다. 11년도 국비유학에 그린수송 분야가 있는데 제 전공이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27. [국제교류부]

- 2011년도 선발분야의 녹색기술산업중의 한 분야의 예시로는 “그린수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린수송시스템 관련 분야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님의 전공하시고자 하는 희망유학분야가 위에 해당되신다면 그 분야로 지원가능하십니다.
- 지원분야는 민원인님의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야로의 수학계획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민원인님의 유학희망국가, 희망대학, 희망전공분야(반드시 스스로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과 전공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를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국비유학 농촌 식량 환경 정책 포함 여부

질의

- 저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와 농업정책 등에 관련된 분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우리나라가 ODA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확대하는 바, 개발도상국에 제가 공부하는 분야를 적용하여 활동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림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장학금 지원은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 그리고 국비 장학금 또한 특별히 농수산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학문 분야나 지역 연구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신성장 동력에는 글로벌 헬스케어와 같은 공공



보건까지 포함하면서 농촌이나 식량 정책, 환경 정책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의아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된다면 어느 분야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5. [국제교류부]

- 우선 한국정부 국비유학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략지역연구, 기초학문연구분야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연구분야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학문분야의 지원자가 모두 지원가능하오며, 그외에도 융합연구분야가 있습니다.
- 융합연구분야중 융합과학기술분야 및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통합적으로 나눈 이유는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며, 국외수학계획서를 잘 작성하시어, 만약 전략지역에서 농수산업을 공부하시고자 하실 경우, 전략지역 연구분야로도 지원가능 하오며, 융합을 통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을 연구하시고자 하실 경우,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도 지원가능하십니다.
- 지원가능한 분야를 수학계획서와 견주어 합리적으로 작성하시어 지원하시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바라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012년도 공고를 잘 참조하시어 지원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국비유학 대외활동실적 조건

질의

- 국비유학생 조건 중 하나가 전공관련 대외활동실적부분이 있던데 제가 중국지역으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중국어 통역 및 중국어강사 활동을 하였었는데 이 부분도 대외활동 실적에 들어가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2. 5. [국제교류부]

- 해당하시는 전공관련 대외활동실적으로 반드시 증빙가능한 실적이어야 하는데, 원하시는 전공이 국제관계학이라고는 하나, 그 희망지역이 중국지역이므로, 중국어능력이 출중함을 증빙가능한 통역 등의 활동도 광범위하게 대외활동관련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사료됩니다. 제출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국비유학 독서교육 전공분야

질의

- 미국에 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유학생 분류에 교육과 관련된 범주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독서교육/초등교육을 전공하고자 합니다. 지원할 수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3. 5. [국제교류부]

- 한국정부 국비유학은 통합적으로 영역을 나누고, 포함되는 학문분야에 지원자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면 기초학문분야중 사회과학, 혹은 고부가 서비스산업중의 글로벌교육 등으로 지원 가능 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독서교육이 그 분야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포함되는지? 그것이 나중에 국가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수학계획서를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몫입니다.

국비유학 응시자격

질의

- 국비장학생은 학사과정만 응시 가능한건가요? 초대졸 과정은 없나요? 독학사 취득하면 학사과정 응시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산업디자인과인데 콘텐츠과를 응시할 수도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21. [국제교류부]

- 한국정부 국비유학은, 해외유학경험이 없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석사 박사과정의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학문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선발분야를 선정하고 있으며, 학문의 통섭을 위해, 광범위로 선발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비유학지원자격으로는
 1. 국내정규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가능자 - 독학사 해당안됨)



2. 성적이 백분율 중 80점 이상인자
 3. 어학성적을 기준점수 이상으로 갖춘 자
 4.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
 5. 전공관련 대외활동실적을 갖춘 자
 6. 수학계획서 등을 제출한 자 등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말씀하신 카페의 공고 및 공지사항 2011, 2010년국비유학생선발공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전공의 경우, 본인이 원하시는 전공을 지원가능하십니까. 학사전공과 다르더라도, 유학희망국가 및 유학희망대학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으로 어드미션을 받을 자신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할지라고, 지원서상의 희망국, 희망대학, 희망전공과 상이한 어드미션을 제출하신다면 국비유학생으로 최종확정 되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게 지원전공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유학 화학공학 전공분야 기준

질의

- 2012년도 국비유학 지원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할 것인데, 화학공학이 일반전형 선발 분야 중 자연과학, 또는 융합과학기술에 제 전공이 해당하는지 여쭙보려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8. [국제교류부]

- 화학공학이 전공이시라면 자연과학 혹은 융합에도 속하시는 분야입니다. 유학희망국가 및 희망대학의 전공을 검색하시어, 융합에 지원하시는 쪽이 나올지? 아니면 해당희망국가 및 지원희망대학에서 자연과학에 속해있는 지를 보시고, 지원분야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개요

질의

- 질의1) 국비유학생은 1년에 몇 번 선발하나요?

- 질의2) 연간 매번 선발하시나요?
- 질의3) 지원분야 내에 자신의 수학분야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원분야에 대한 공고 및 선발공고는 몇 월 경에 확인이 가능한가요?
- 질의4) 지원나이에 제한이 없나요?
- 질의5) 국비 유학 후, 의무재직 및 의무사항이 있나요?
- 질의6) 박사과정에 대한 경쟁율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인원 중 박사과정 모집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8. [국제교류부]

- 질의1) 국비유학은 1년에 한 번 선발합니다.
- 질의2) 1977년부터 매년 선발하였습니다.
- 질의3) 국비유학 공고는 매년 3월경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 질의4) 나이제한 없습니다.
- 질의5) 국비유학 완료 후 의무복무 등은 없습니다.
- 질의6) 박사과정만 별도로 모집하지 않으며 평균경쟁율은 2010년도에 5.5:1, 2011년도에 7:1이며 선발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유학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ngsg1977.cafe>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영어평가 기준**질의**

- 2012 국비유학생 선발 관련하여 영어 평가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번 모집 공고안에 같은 외국어라도 시행기관이 다른 경우, 모두 제출하고, 서류 심사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을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말씀은 모든 영어 성적 점수에 대한 가치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TOEIC 시험과 TOEFL 시험은 그 평가 대상과 취지가 다른 시험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TOEFL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26. [국제교류부]

- 한국정부 국비유학제도는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이후 유학확



정을 일정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응시기회를 위해, 공인 외국어성적인정시험이 종류를 최대한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공인영어성적은 서울대학교언어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토플, 토익, ielts 등의 점수를 환산한 환산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2. 점수부여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시험성적사정위원회에서 합리적, 정당하게 결정되며
3. 시험성적 중 당연히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을 인정되며
4. 응시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어성적이 아닌, 다른 외국어성적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외국어성적일 경우, 영어성적의 경우는 다른 종별의 시험일 경우, 동종 시험에서 높은 점수(지원자에게 유리한 성적)를 인정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비유학생 선발관련 한국사와 영어 시험 기준

질의

- 한국사 3등급 이상이라는 말은, 3등급만 합격하여도 해당 부분 배점의 만점인 20점이 부여되는 것이지요?
- 제시된 영어 성적 기준점수만 넘으면 지원자격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득점자일수록 부분 배점을 높게 처리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4. 4. [국제교류부]

- 한국사능력시험은 pass fail의 개념이므로 3급 이상이면 기본점수를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공인외국어성적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국비유학생 신청시 한국사시험 유효기간

질의

- 내년 2월 석사과정 졸업예정자입니다. 이번년도에 한국사 시험성적이 없는데, 지원가능한지요? 영어성적은 가지고 있으나, 한국사 시험은 오래전에 본것 밖에 없습니다. 혹시 한국

사 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12. 5. 15. [국제교류부]

- 국비유학생 선발과건사업의 모든 선발절차 및 지원자격등도 모두 법률에 근거하오며 한국 사능력시험의 경우도 기본지원자격중의 하나로 정하여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한국 사능력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사오니, 이미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을 소지하셨다면 그것으로 지원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비유학생 전공분야 및 배점 기준

질의

- 질의1) 학부 전공과 유학 할 분야와 무관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질의2) 외국어, 국사의 경우 각 20점의 배점이 있는데, 차등 배점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질의3) 학점의 경우에는 차등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11. 10. 31. [국제교류부]

- 질의1) 학부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지원하시고자 하는 전공의 어드미션을 받으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위원님들에게 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외 활동이나 관련 활동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야겠지요?
- 질의2) 국사는 3급 이상을 합격하시면 20점을 받고, 외국어는 성적별로 점수가 다릅니다.
- 질의3) 학점도 차등배점됩니다. 백분율로 80점이상이면, 지원가능하십니다. 2와 3의 차등 배점은 에서 회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다음 선발까지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gks홈페이지 혹은 네이버 의 국비유학 카페를 이용바랍니다.

정부출연연 근무자의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 여부

질의

- 석사 졸업후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시 연구소에서 지원이 전혀



없고 무급휴직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비유학생이나 정부초청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11. [국제교류부]

- 국비유학생지원자격은 1. 국내대학 졸업자 2. 대학학점이 100점만점 중 80점이상자 3. 외국어능력, 4. 전공관련 대외실적, 5.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소지자입니다. 현재 정부기관에 근무하시더라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지원가능하십니다. 그럼 더 많은 안내는 국비유학생카페 혹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국비장학생 전공분야의 폭

질의

- 국비장학생이 인문, 사회, 자연, 공학분야로 분리되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회신

회신일 : 2012. 5. 4. [국제교류부]

- 현재 한국정부 국비유학생제도는 민원인님 같은 의견(학문의 세분화에 따른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문의 통합화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전략지역연구(중국 등 7개 통합지역), 기초학문연구(인문, 사회, 자연), 융합연구(융합과학, 고부가서비스산업)으로 공고 진행중입니다.
- 예술계통을 한국정부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으며, 예술계통의 전공을 학업계획서를 지원자가 어떻게 작성가능한가? 즉, 학업계획 및 수학후 발전방향 및 목적을 어떻게 한정짓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가능한 분야가 “고부가 서비스산업” 혹은 “사회과학” 분야라고 사료됩니다.

대학 졸업예정자의 국비유학 신청 가능여부

질의

-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써 있는데, 내년 8월 졸업예정자로 9월에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도 지원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5. [국제교류부]

- 2011년도 공지사항(국비유학생선발요강)에도 나와 있듯이 국비유학지원자가 졸업예정증명서 (반드시 학교인정서류)를 제출가능하시면, 지원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gks홈페이지 gks.go.kr의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공고(공지사항)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계획은 내년 초 공지에정이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대학원 재학 중 국비유학 신청**질의**

- 질의1) 국내 대학원 재학 도중에 지원할 수도 있나요?
- 질의2) 국비유학 지원 당시 실제 지원 국가 외국 대학에 합격한 상태에서 지원하면 붙을 확률이 더 많은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2. 14. [국제교류부]

- 질의1) 국내대학원 진학중에도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유학은 해외에서의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만 지원가능하시므로, 현재 국내대학원 진학중이시라면, 해외 석사이상부터 지원하셔야만 합니다.
- 질의2) 두 가지 방법가능합니다. 다만 해외대학과 지원전공으로 어드미션을 받은 후 지원하신다면, 국비유학생 선발이후 1년 이내 유학확정을 받으시고 유학을 가야만 하는데, 이때 유학확정을 빨리 받으실 수 있으시지요. 만약, 기간내에 어드미션을 받지 못해 유학확정을 받지 못하신다면 국비유학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비유학지원시 해외 희망유학국가 및 대학, 전공을 적으시고 지원하시고 선발이후, 어드미션을 받는 것인데, 이때도 희망대학 및 전공에서 반드시 어드미션을 받아야만 실제로 국비유학생을 선발할 경우는 어드미션을 미리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는 학교로 지원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질의3) 국내 대학원을 진학하고 수료후 국비유학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민원인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더욱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국비유학 카페를 방문 해주시거나, 국립국제교육원 gks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 영국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기준

질의

- 영국의 경우 장학금 지급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국 미대 석사는 대부분 1년과정입니다. 1년 과정을 지원할 경우 장학금은 1년만 지급되는지요? 만일 그럴 경우 지급액이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8. [국제교류부]

- 국비유학선발제도 및 방침은 이라는 대통령령인 법률로 정해져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해진 법률대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리며, 영국의 경우 최대 장학금 지급기간은 2년이며,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고 나면, 유학확정시, 어드미션을 받은 대학의 수학기간을 고려하여 영국의 경우 석사과정의 경우 1년과정 혹은 2년과정 등이 있으며, 1년과정의 경우 1년 동안의 장학금만 지급됩니다.
- 또한 장학금지급기준은 각 재외공관을 통해 생활비와 학비를 평균한 금액이오며, 부족한 장학금액은 유학생이 선택한 학교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비유학생들의 경우, 부족한 경우가 없었으며, 이는 국비유학생스스로 주립대학이나 학비가 상대적으로 덜 비싼 곳을 선택하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따로 받는 (국비유학생정도의 자격을 갖춘다면 학교의 외국인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하거나, 혹은 연구조교, 강의조교 등의 생활로 학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전공이 미대라고 하셨는데, 저희 국비유학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이거나, 기초학문분야, 등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 예술분야는 광범위한 분야라고는 하지만 국비유학선발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gks홈페이지, 한국정부 국비유학생제도의 공지사항 공고를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은 국비유학생 네이버 카페를 참고바랍니다.

● 일본 국비장학생 신청기준

질의

- 국비장학생 신청을 일본으로 할 경우, JPTL 2급이상에 한국사능력시험 2급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1. 11. 17. [국제교류부]

- 국비유학생 지원자격은 기본적으로 1.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신 분 중 학업성적이 100점만점 중 80점 이상인자 2. 외국어성적일정수준이상인 자 3.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 4. 전공관련 대외활동 실적을 갖춘 자 5. 학업계획서 및 수학계획서 작성가능자에 한합니다. 이와 관련,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gks 홈페이지의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선발공고를 확인하시고 점검바랍니다.

일본정부초청 연구장학생 선발 요강**질의**

- 일본정부 초청 연구 장학생 요강을 보면 “학부와 대학원 각각의 성적이 70% 이상일 것(응모 마감시점 현재)”이란 문구가 매년 있었습니다. 이 70% 이상의 성적이란 것이 학과 석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들이 실시하는 학점별 100점 환산 점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70%를 정하는지 그 방식 좀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11. 9. 9. [국제교류부]

- 일본문부성초청연구과정지원 자격중 성적 70% 이상은 성적표의 기록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개의 대학이 GPS로 기록하며 그 경우 4.5만점이라면 예시하신대로 $4.5 \times 0.7 = 3.15$ 이므로 3.15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석차 70% 이상, 석차가 없을 경우 평균 70점 이상(특히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적용),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성적이 점수화되지 않고 ‘수우미양가’로 표기될 경우 ‘미’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 기타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niied.go.kr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 공지사항상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kr.emb-japan.go.jp/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전화 : 02-765-3011, 팩스 : 02-742-4629



☎ 저소득층 국비장학생 지원

질의

- 내년 국비 장학생에 저소득층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은 문화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이 인문과학분야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7. [국제교류부]

- 한국정부 국비유학생제도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계열은 다음의 해당서류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우입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차상위계층 범정보호대상자'는 차상위 의료급여, 3. 자활급여, 4. 한부모가정지원사업, 5. 장애수당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의 5가지 경우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경쟁율은 6.6:1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문의

질의

- 필리핀 친구가 한국 대학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초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31. [국제교류부]

-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 선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 국립국제교육원 모집공고 - 1차 선발기관(공관 또는 국내위탁대학) 원서접수 - 1차 선발기관 장학생선발 및 추천 - 국립국제교육원 2차 선발(장학생선발위원회) - 2차 합격생 대학원입학전형-국립국제교육원 최종합격자 발표-비자 및 항공권 발급-입국 및 학업시작(9월 1일) 2012년도 모집요강이 2012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2011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gks.go.kr - 공고 41번). 물론 2012년에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부처 선발은 2012년부터 없으므로 일반지원자들과 같이 응모하면 됩니다.

중국대학원 국비유학 전공 문의

질의

- 제가 학부에서 식물생명과 중어중문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자 하는데 학부전공과 관련 없이 다른 전공의 선택인데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 국비지원 관련 전공을 살펴보니 중국지역학, 인문계열 쪽이던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공만 국비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대학원진학 시 각 대학원 별로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각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건지요?
- 대학교에서 대학원진학시 교수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 HSK 5급이상이면 지원가능한지 등등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31. [국제교류부]

- 한국정부 국비유학생선발은 정해진 지원분야별로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자 중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지원한 국가 및 대학, 전공별로 스스로 어드미션(입학허가증)을 따오셔야만 유학확정을 받고 해외에서 수학이 가능하십니다.
- 민원인님의 경우는 중국지역연구로 지원하시거나, 혹은 기초학문연구 분야중 사회과학(국제정치)중 둘 중 한군데 지원가능하십니다 - 민원인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민원인님이 스스로 해결하고 그 부분을 스스로 해결가능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국비유학생 선발시 보여주셔야만,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중국의 경우 대학원마다 면접이 있고 직접 면접을 보셔야만 합격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국비유학생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국비유학에 가입하시어 많은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요강

질의

- 2011~2012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요강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현재 석사과



정중에 있는데요. 박사과정을 중국내 대학교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9월이 신학기 첫 개강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석사과정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년차 마지막학기에 4월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8. 16. [국제교류부]

- 보통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은 4월에 실시됩니다. 공지가 나가고 지원을 완료하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중국국가유학관리기금으로 지원서를 보내게 됩니다. 개인은 웹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지원을 마치게 됩니다. 전례에 따라 보면 2012년도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선발도 역시 2012년 4월에 모집 공고가 될 것입니다.
- 문의하신 석사 학위 소지자 지원은 중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석사학위 미소지자는 학위를 받은 후에 지원해야 하므로 약 6개월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 접수시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2011년도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niied.go.kr 접속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접속 → 공지 사항 접속 → 2010년도 중국정부초청장학생 모집 요강 참고중국 유학의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비유학과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여부**질의**

- 사정으로 더 이상 외국에서 공부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박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 1. 한국에서 박사를 재학하고 있으면, 국비유학생으로 해외 박사를 지원할 경우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 두번째로는 제가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나오는 글로벌박사펠로우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장학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비유학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0. 31. [국제교류부]

- 국비유학생지원자격은 국내대학 4년제 이상을 졸업한 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민원인님이 국내대학을 졸업하시고 해외에서 석사를 졸업하셨다면 지원자격은 됩니다.
-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신 분은 장학금을 중복수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받으시는 펠로우쉽을 포기하시고 국비유학생으로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국비유학생 선발이

후 그 펠로우십을 포기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현재 2012년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신 분들 중에서도 약 3분의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수혜받으시어, 국비유학생을 포기하신 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박사과정 장학생 문의

질의

- 해외에서 박사과정중인 학생에게도 해당되는 장학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1. 11. 21. [국제교류부]

- 한국정부 국비유학제도는 유학경험이 없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분야의 국가인재를 양성함을 기본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그 기본자격으로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성적, 한국사능력시험, 대외활동실적, 외국어능력, 수학계획서등을 기본자격으로 하여 지원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이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민원인님의 경우, 해외에서 이미 유학중이므로 1. 해당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신청 받으시는 방법(학업성적 및 기타 특정능력 증명) 2. 유학국에서 한국의 정부를 제외한 기타 장학금 신청가능성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2와 관련하여 기타 많은 장학재단 등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삼성장학회, www.slsf.or.kr, 02-751-8811) 전공분야나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 국가별 또는 대학별 선발인원 역시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 단 MBA, 로스쿨, 의과대학원 및 어학과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최대 연 5만달러까지 지원. 입학연도 기준으로 병역 미필자의 경우 학사 만 21세 · 석사 만 25세, 병역을 마친 경우엔 학사 만 25세, 석사 및 박사 만 30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
-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www.ikef.or.kr, 02-753-6269)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이 사재 3,0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장학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 공부할 한국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100명 가량 선발해 연간 최고 5만달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발되면 학업 향상 정도에 따라 학부 과정 4년, 석사 2년, 박사 과정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고등교육재단(www.kfas.or.kr, 02-552-3641)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 사회



과학·자연과학·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약 30명을 선발한다. 학비, 생활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2005~2006년 기준, 5만달러 규모)을 지급하며, 유학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엔 학비나 생활비 또는 연구지원비만을 지원한다.

- 한국과학재단 대통령 과학 장학생(www.kosef.re.kr, 042-869-6114)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장학금. 해외(연 10명 내외, 최대 연 5만달러)와 국내(연 140명 내외, 연 1,000만원 규모)로 나뉘어 선발한다. 수학 및 과학 분야의 탁월성 및 발전가능성을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징. 해외 장학생에게 4년간 학비, 체재비 등 최대 5만달러를 매년 지급한다.
-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www.taekwanggroup.co.kr, 02-3406-0487) 태광그룹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박사학위 과정을 대상으로 한 해에 4명 정도를 선발, 5년간 매년 3만달러를 지급한다. 관련 전공은 경영, 경제, 사회, 인류, 동양사, 응용, 재료, 화학공학.
- 미래에셋 장학금(<http://fund.miraeasset.com>, 02-3774-1500) 연 5만달러 이내에서 학비, 생활비를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30명 내외. 과거 전공 및 성별에 관계없이 경제, 경영, 금융, 파인애플 관련 학부·대학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졸업 후 미래에셋 입사 의무가 없으며, 지원국가에도 제한이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 과학재단 장학금(<http://www.kosef.re.kr>)모집인원 300명, 이공계만 해당, 수도권 및 지방대 절반 비율로 나눔, -IT 해외유학 장학금(<http://www.it-human.or.kr>)모집인원 70명, 주로 전기/전자/컴퓨터/전파/재료 공학과 출신들이 받는 IT 장학금
-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금(<http://www.kfas.or.kr>)모집인원 100명, 문과 이과 예체능, 석사 박사 다 포함한 지원자에게 수혜
- 로타리 친선사절 장학금(www.rotarykorea.org, 02-738-1051) 로타리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재단 각 지구에서 선정해 최대 연 2만5000달러까지 지급한다. 대학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정하는 직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상근한 사람이 대상이다. 로타리 회원 또는 회원과 친척관계인 사람, 현재 유학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가장학기금 <http://www.studentloan.go.kr>
 - 고촌재단 www.kochon.org
 -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http://www.hoguk.or.kr>
 - 김태수 장학재단 <http://www.tscaf.org>
 - 농협 장학회 <http://www.janghak.or.kr>
 - 덕영 재단 <http://www.dukyong.org>
 - 도곡 장학재단 <http://www.dogoksf.or.kr>
 - 동지 장학회 <http://www.dongji.pe.kr>

- 두을 장학재단 <http://dooeul.or.kr>
- 라운백 장학회 <http://lyp.or.kr>
- 롯데 재단 <http://lottefoundation.or.kr>
- 면산 장학재단 <http://www.myeonsan.com>
- 민초 장학재단 <http://www.mincho.or.kr>
- 별밭장학회 <http://www.starfield.or.kr>
- 삼원장학재단 <http://www.samwonsf.or.kr>
- 삼일장학문화재단 <http://www.samil31.com>
- 서산 장학재단 <http://www.seosanschlar.or.kr>
- 아산 재단 <http://www.asanwelfare.or.kr>
- 연강 재단 <http://yonkang.co.kr>
- 연암 장학회 <http://www.youngam.or.kr>
- 윤경 재단 <http://www.woonkyung.or.kr>
- 이티즌 장학회 <http://www.etizen.org>
-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 전북 꿈나무 장학재단 <http://www.jbdream.or.kr>
- 천병선 장학회 <http://www.cheunbs.co.kr>
- 청송 장학회 <http://www.chungsong.pe.kr>
- 청필 평화 장학회 <http://www.bluepen.org>
- 충청남도 장학회 <http://www.cnjh.or.kr>
- 태평양장학문화재단 <http://ascf.amorepacific.co.kr>
- 포스코재단 <http://www.postf.org>
- 하트피아노 장학회 <http://www.heartpiano.co.kr>
- 한국 지도자 육성 장학재단 <http://www.kosffl.or.kr>
- 해암 학술 장학회 <http://www.hainam.or.kr> 등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님의 앞날이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부지원 해외인턴 문의

질의

- <http://www.ggi.go.kr/>에서 정부해외인턴사업홈페이지에서 WEST와 그 외 관련 프로그램
램을 클릭한 후 온라인지원 작성하는 게 있고, 국제교류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1. 2. [기획관리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2년 우수인재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당초에는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해외인턴사업 시스템이 시범 서비스 단계에 있어, 2012년도 1차 “우수인재 글로벌현장학습” 모집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대학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해외인턴사업 시스템이 정식 개통된 후에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지원은 정부해외인턴사업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으로 일원화 할 예정입니다.
- WES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해외인턴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합격통지서는 일정에 따라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G-20해외동포학생 여름캠퍼스

질의

- 재외동포교육의 일원으로 작년에 국제국립교육원과 과학기술부 주최로 처음 실시되었던 G-20 해외동포학생 여름캠퍼스를 올해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3. 9. [기획관리부]

- 작년에 본원에서 실시한 G-20 캠프는 올해 재외동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지는 않으나 본 사업이 이관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 세계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사업으로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korean.net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LK 영어 봉사 장학생 인증서

질의

- TaLK 영어 봉사 장학생 인증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3. [영어교육지원부]

- 장학인증서 발급은 (1회 발급)계약기간을 성공이 끝낸 장학생에게 기수 마치는 시기(1년에 2번 제작)에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개인에게 1회만 제작 : 열심히 활동하였다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장학인증서는 졸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듯합니다.
- 모든 사항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활동기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교육청에서 장학생활동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7기까지 마친 국내장학생의 경우 2월 14일자로 기 발송완료 되었습니다.

국사교과서 부록 자료 발행

질의

-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의 국사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옛 지명이 부록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12. 3. 2. [편사기확실]

- 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기는 하지만 저작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개정이나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의 관련 게시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일정

질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2012년 시험 일정이 나왔는데 모두 4차례 토요일로 나와있더라고요 종교의 이유로 토요일에는 이와 같은 시험을 볼 수 없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로 시험을 번갈아가며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12. 2. 22. [편사기확실]



-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올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일정 중의 일부를 토요일로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미 공지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은, 많은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있는 날을 택하여 이미 공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미 공지된 일정을 변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시험 일정을 잡는다면, 여타 종교에서도 같은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과 인력 확보를 전제로,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특별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증 지참

질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이여야 한다는데요, 중학생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왜 초등학생은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12. 5. 14. [편사기확실]

- 신분증 사전 확인은 모든 시험의 확립된 원칙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이 일반적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고등고시 및 교원임용의 자격시험화됨에 따라 이 원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의 원칙은 공적으로 발급된 신분확인증서(신분증)의 사진 및 주민번호를 그 소지자의 얼굴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재학증명서나 의료보험 증 등 사진이 없는 증서는 신분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공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수험표만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신분확인을 응시원서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 응시생 모두 본인확인을 하지 말아야 형평성이 맞추어진다는 것은 시험의 부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퇴직공무원의 소청청구

질의

- 국립대학 교원이 2.27일 징계처분을 받고 2.28일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라 할지라도 처분 사실을 통지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청구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12. 2. 28. [심사과]

- 징계처분인 경우 퇴직 등으로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시켜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 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파면, 해임 등의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된다면 5(3)년간 공무담임권 제한, 퇴직급여 감액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제거되는 실익이 있으므로 청구이익이 있음이 명백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경우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처분직후 퇴직하여 보수감액, 승진·승급제한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명예감정의 손상이나 퇴직자포상 제외 등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청구대상)가 아니므로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총괄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박준모
강건기

기획

사무관
교육연구사
행정주사

조성현
이정우
박영미

편집정리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전문상담관

황정숙
고재범
정현승
박분희

인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